

연구보고 09-08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이 상 운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A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Legal Experts

연구자 : 이상윤(부연구위원)
Lee, Sang-Yoon

2009. 10. 31.

국문 요약

이 연구는 1996년조사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구체적·미래지향적인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검토·분석함으로써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포함한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실질적·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법생활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53일간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법전문가의 소재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 이내이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유전무죄 및 탈법행위자에 대한 인식,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법전문가의 법생활화 정도를 법생활과 법적 경험(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계약서 숙지정도,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안전사회와 범죄퇴치(시급퇴치 범죄유형, 범죄퇴치 시급사항), 법교육과 학교폭력(법교육정도, 법교육 중점부문,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를 헌법개정(대통령제, 4년중임제,

절대다수대표제, 부통령제, 양원제, 헌법개정 우선순위), 형사법제(사이버모욕죄, 안락사, 면책조건부진술제도, 영장항고제, 국민참여재판제도), 기타법제(입법과정 국민참여 보장, 인터넷실명제, 이중국적, 군가산점제도, 법관평가제도, 법률시장개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요약하고, 법전문가 법의식의 현주소를 밝힌 뒤, 이 보고서의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키워드 : 법의식, 권리의식, 준법정신, 법교육과 헌법교육, 헌법개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ully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legal experts' legal consciousnes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rough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aspects of change in legal consciousness with reference to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of 1996.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mparable references in chronological order to aid future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and furthermore, to put in place a plan for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and possibly make predictions about legal experts' legal interactions in future daily life. Finally, this study aims to make a contribution to realize an advanced law-governed country.

To achieve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1,008 legal experts from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legal circles were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fifty three days from July 6, 2009 to August 30. The researcher visited every legal expert to conduct the survey in person. The maximum sampling error is 95% with a confidence level of $\pm 1.8\%$. After the process of editing, coding, and capturing the raw data, data was entered into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using IBM compatible Pentium PC.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describ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s well as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includes question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the law and the bad law, the evasion of the law, women's legal status in order to determine the legal experts' consciousness of law and their attitude towards the law. Chapter 3 investigates the extent of the law in legal experts' daily life, focusing on the Korean people's legal interactions and legal experience and the law-abiding spirit and con-

sciousness of rights. Chapter 4 examines opinion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Quest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concerned with the criminal case are also examined. Chapter 5 summarizes the research, and exposes the legal experts' legal consciousness in 2009,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 **Key Words** : Legal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Rights, Law-Abiding Spirits, Law and Constitutional Law-related Educati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목 차

| | |
|--------------------------|----|
| 국문요약 | 3 |
| Abstract | 5 |
| 제 1 장 서 론 | 11 |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 1. 연구의 배경 | 11 |
| 2. 연구의 목적 | 14 |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 15 |
| 1. 연구의 대상 | 15 |
| 2. 연구의 내용 | 17 |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20 |
| 1. 정량조사의 실시 | 20 |
| 2. 정성조사의 실시 | 30 |
| 3. 방법론적 특징 | 33 |
| 제 2 장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35 |
| 제 1 절 개 관 | 35 |
| 제 2 절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 36 |
| 1. 법에 대한 인상 | 36 |
| 2. 악법에 대한 인식 | 44 |

| | |
|---------------------------------|-----|
| 제 3 절 유전무죄 및 탈법행위자에 대한 인식 | 51 |
| 1.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 51 |
| 2. 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 57 |
| 제 4 절 여성의 법적 지위 | 62 |
| 1. 여성의 법률상 대우 | 62 |
| 2.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 72 |
| 제 3 장 법전문가의 법생활 | 79 |
| 제 1 절 개 관 | 79 |
| 제 2 절 준법정신과 그 자가진단 | 79 |
| 1. 법준수 정도 | 79 |
| 2. 비준수 이유 | 87 |
| 3. 법준수 자가진단 | 93 |
| 4. 자신의 비준수 이유 | 96 |
| 제 3 절 법생활과 법적 경험 | 100 |
| 1.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100 |
| 2. 계약서 숙지정도 | 105 |
| 3.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111 |
| 4.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118 |
| 제 4 절 안전사회와 범죄퇴치 | 127 |
| 1. 시급퇴치 범죄유형 | 127 |
| 2.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136 |
| 제 5 절 법교육과 학교폭력 | 142 |
| 1.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142 |

| | |
|--------------------------------|------------|
| 2. 법교육 중점부문 | 149 |
| 3.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 157 |
| 제 4 장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 163 |
| 제 1 절 개 관 | 163 |
| 제 2 절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 163 |
| 1. 의원내각제 개헌 | 163 |
| 2. 4년중임제 개헌 | 167 |
| 3. 절대다수대표제 개헌 | 170 |
| 4. 부통령제 개헌 | 173 |
| 5. 양원제 개헌 | 176 |
| 6. 헌법개정 우선순위 | 180 |
| 7. 정성조사 | 182 |
| 제 3 절 형사법제에 관한 태도 | 183 |
| 1. 사이버모욕죄 신설 | 183 |
| 2. 안락사 허용 | 188 |
| 3. 면책조건부진술제도의 도입 | 192 |
| 4. 영장항고제 | 195 |
| 5. 국민참여재판제도 | 200 |
| 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점 | 205 |
| 제 4 절 기타법제에 관한 태도 | 209 |
| 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보장 | 209 |
| 2.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 212 |
| 3. 이중국적 허용 | 218 |
| 4. 군가산점제도 | 221 |

| | |
|------------------------------|---------|
| 5. 법관평가제도 | 226 |
| 6. 법률시장개방 | 231 |
| 제 5 장 결 론 | 237 |
| 【참 고 문 헌】 | 241 |
| 【부 록】 | |
| <부록-1> 응답자의 특성 | 251 |
| <부록-2> 교차집계표 | 253 |
| <부록-3>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설문지 | 309 |
| <부록-4> 정성조사 응답내용 | 325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법은 공동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의 수많은 법제도들이 일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있지만, 그 정당한 사회적 가치의 유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¹⁾ 법치주의의 원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개의 축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 즉 법을 준수하려는 법의식이 필요하다.²⁾ 법의식은 법제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이므로 법치주의 원리의 정착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국민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은 용어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법감정(legal feeling), 법문화(legal culture) 등의 개념도 명확한 구별이 없이 혼용되고 있어 법의식의 개념에 대한 정론적 입장은 없다.³⁾ 다만, 법의식조

1)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3면 참조(이하에서는 이 보고서를 “2008년조사”로 약칭함).

2) 이로부터 법치주의를 “마차”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마차의 두 개의 “바퀴”로, 법의식을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로 비유되고 있다. 박상철·김일환·최철영,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6, 14면(이하에서는 이 보고서를 “1996년조사”로 약칭함).

3) 박상철·최성근·배승희,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16면 이하 참조(이하에서는 이 보고서를 “1994년조사”라 약칭함). 특히 2008년조사, 43면 이하에서는 법의식 개념의 다양성과 그에 관한 학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의 목적이 우리사회의 법의식의 변화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법의식과 법감정 또는 법문화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법의식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⁴⁾에서는 법의식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평가적·감정적인 심리상황, 즉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의식은 법제도와 달리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변화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특성을 가지며, 법제도의 근대화 내지 선진화에 따라 법제도와 법의식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인 법체계와 법의식이 일치되지 않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적되어 왔으며,⁵⁾ 이로부터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 국민법의식 관련 조사들이 행해졌으며, 특히 1990년대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1991년, 1994년, 2008년에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⁶⁾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1991년조사 및 1994년조사의 결과 국민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법의식도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준법정신의 부재 및 법정립·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

4) 2009년도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를 이하에서는 “2009년조사”라 약칭하기로 한다.

5) 황승흠, 법과 사회질서를 보는 사회과학적 시각, 법과 사회 제16·17합본호(1999), 229면 참조.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한국의 전근대적인 법문화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양 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1989), 69면 참조.

6) 박상철·박상희·최성근, 국민법의식조사연구-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 진단-, 한국법제연구원, 1991(이하 이 보고서를 “1991년조사”라 약칭함) ; 1994년조사 ; 2008년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식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및 국민법의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법의식조사연구의 필요성은 우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제도와 법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즉,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으며, 법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법치주의의 실현여부가 좌우되고, 법치주의의 이념은 법의식의 수준과 비례관계를 형성하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제도가 작용하기 위한 배경 또는 여건을 형성하는 법의식의 현대화를 통하여 서구적인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도가 국민생활에 완전히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법의식조사연구는 국민법의식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유형 외에도 특정법령에 대한 국민의 반응조사,⁸⁾ 법관계자의 법의식 및 입법의견조사,⁹⁾ 주요법령의 제정 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사전여론조사 등과 같이 새로운 영역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국제적 차원의 법의식조사 비교연구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 주민의 법의식 비교조사나 해외동포의 법생활 내지 법의식에 관한 조사도 있을 수 있다.¹⁰⁾

또한 법의식은 정치적 공개작업, 입법기관 및 법집행기관, 사회제도, 대중매체, 집단적 계층문화의 구성원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공동체의 합의의 중심축 내지는 기반으로 작용한

7) 최송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 (2007), 3면 참조.

8) 1992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선거관계법제와 국민법의식조사연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9) 이준우·김창규, 입법의견조사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1991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0) 1996년조사, 15면 ; 1994년조사, 31면 참조.

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법의식의 변화양상과 이에 따른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법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법관계자(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 등)의 법의식 또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¹¹⁾ 이로부터 법관계자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국민법의식조사의 완결”¹²⁾로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의식조사를 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이 분야의 조사에 치중하여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체계는 이념적 차원, 제도적 차원, 인적 차원으로 구분되고, 여기에서 인적 차원은 법조인과 일반국민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법의식 역시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법전문가의 법의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간격이 클수록 그 사회의 법제도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¹³⁾은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법의 수용자인 일반국민에 대한 법의식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전문가들의 법의식조사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들에게 조언 및 상담 등을 하는

11) 법전문가의 법의식 관련조사로는 Yi Chang-Hyon, *Sociological Approaches on Lawyers in Korea*, *Korea Journal* (October, 1972) ; 이석진, 한국법관의 실태조사, 사법연구자료, 제3집(1976) ; 1996년조사 등을 들 수 있다.

12) 1996년조사, 16면.

13) 김정오, 우리나라 법의식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우리나라 법의식 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09. 3. 23), 42면 참조.

법전문가들이 법치국가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의 필요성에 더하여 1996년조사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포함한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구체적·미래지향적인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법전문가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9년조사는 법전문가에 대한 직접적·체계적인 법의식 조사·분석을 통하여 실질적·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법생활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다루거나 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관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법관계자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 경찰, 법무사뿐만 아니라 교도관, 원고·피고와 같은 소송인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 경찰, 법무사와 같이 실무상 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판사나 검사 또는 교수와 같은 “법전문가”로부터 구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법관계자에는 법전문가가 포함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로

14) 예컨대 법무서류의 작성 및 법무서류의 제출대행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부터 법전문가를 정의하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시험제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의뢰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와 관련하여 법전문가를 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즉, (㉠) 법률과 법제도와 관계되는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 부처 법제담당자,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기타 법률종사자), (㉡) 법률과 법제도와 관계되는 모든 법과 관계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가(사법연수생 등과 같은 각종 법제도 관련 연수생 등), (㉢) 법률 자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중 교수, 각 부처 법제담당자 등), (㉣) 법률자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가(국회의원 보좌관 등), (㉤) 법조계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판·검사, 변호사 등), (㉥) 법조계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가(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속칭 사무장 등)가 그것이다.¹⁶⁾

이 연구에서 법전문가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전문가는 현실의 사건들을 추상하고, 법적으로 쟁점화하여 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소재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가장 최적의 법리를 궁리하여 정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⁷⁾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조사범위를 설정할 경

에 한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무경력자인 법무사가 취급한다. 그런데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사는 위에 언급된 사항만을 취급할 수 있을 뿐, 상담이나 자문 등은 그 업무내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1996년조사, 16면 참조.

15) 1996년조사, 16면 참조.

16) 박광동, 법전문가의 범의식조사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 범의식 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워크숍 자료집(2009. 3. 23), 76-78면 참조.

17) 김현철, 범의식과 법학교육, 법교육연구 제1권 제1호(2006), 40면.

우, 위의 (㉠)의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조사상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 (㉢), (㉣)의 법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 법률과 법제도와 관계되는 모든 법과 관계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가(사법연수생 등과 같은 각종 법제도 관련 연수생 등), (㉢) 법률 자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중 교수, 각 부처 법제담당자 등), (㉣) 법률자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가(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법의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1) 설문문항의 개발

우선 설문분야와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시계열적 비교를 염두에 두어 1996년조사의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다만,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적·법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더 이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현대사회의 법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1991년조사, 1994년조사, 2008년조사의 설문분야와 설문문항의 필요한 부분은 일치하도록 하여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법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밖의 많은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조사분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친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설문문항을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며,¹⁸⁾ 이에 관한

18) 즉, “제1차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설문분야 및 문항개발 전문가회의”는 2009년 1월 30일에, “제2차 법의식조사연구 설문분야 및 문항개발 전문가회의”는 2009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법전문가들에게 적합한 구조 및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2) 설문분야 및 항목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설문분야는 (ㄱ)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ㄴ) 법전문가의 법생활, (ㄷ) 법전문가의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로 구성되며,¹⁹⁾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및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악법에 대한 인식,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ㄴ) 법전문가법의식의 행동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전문가의 법생활과 관련하여 법생활과 법적 경험(법교육·법적 경험·법지식),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준법정신·권리의식),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ㄷ) 현행법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안락사허용, 이중국적허용, 헌법개정,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등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년 2월 24일에, 위크숍인 “우리나라의 법의식 조사연구의동향과 과제”는 2009년 3월 23일에 각각 개최하였다.

19)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법의식조사연구의 설문분야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법전문가의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는 이 연구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법전문가의 특성상 그 대부분이 법정립·집행기관의 구성원이므로 소속기관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1】 2009년조사의 분야 및 항목

| 조 사 분 야 | 조사항목(총 30문항) | 1996년 조 사 | 2008년 조 사 |
|---------------------------|---|--------------|--------------|
|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 법에 대한 느낌 | ○ | ○ |
| | • 악법에 대한 인식 | | ○ |
| | •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 | ○ |
| | •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의견 | ○ | |
| | • 여성의 법률상 대우와 그 이유 | ○ | ○ |
| 법 생 활 | •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 ○ |
| | • 계약서 숙지정도 | ○ | ○ |
| | •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 | ○ |
| | • 법교육 중점부문 | | ○ |
| | •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와 비준수 이유 | ○ | ○ |
| | •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 | ○ |
| | •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 ○ | ○ |
| | •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 | ○ |
| | •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 | ○ |
| | • 각 부분(정치·행정·경제·노사·교육·교통·환경) 법준수 진단 | ○ | ○ |
| | •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 ○ |
| | •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 ○ |
|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 | •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 |
| | • 사이버모욕죄 | | |
| | • 인터넷실명제 | | ○ |
| | • 안락사 허용 | | ○ |
| | • 이중국적 허용 | | |
| | • 면책조건부진술제도 | | |
| | • 영장항고제 | | |
| •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 • 헌법개정 | | ○ | |

| 조사분야 | 조사항목(총 30문항) | 1996년 조사 | 2008년 조사 |
|--------|--|----------|----------|
|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 | | ○ |
| | • 법관평가제 | | |
| | • 법률시장개방 | | |
| 기본인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직업 • 성별 • 연령 • 종사연수 • 계층 • 이념성향 | |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정량조사의 실시

(1) 예비조사의 실시

2009년조사의 경우에도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6월 23일부터 24일에 걸쳐 법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시된 견해들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의 개요 및 요약된 결과는 아래의 【표-2】 및 【표-3】 과 같다.²⁰⁾

20) 이러한 조사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예시들이 자신의 이념성향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타의 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는 부연설명을 첨부하였고, 기존조사와의 시계열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설문문항에 반영하였다.

【표-2】 예비조사의 개요

| 직업 | 표본수 | 직업 | 표본수 |
|-----|----------------------|-----|-------------------|
| 국 회 | 2명(의원 1명, 국회공무원 1명) | 법조계 | 4명(판사 1명, 변호사 3명) |
| 공무원 | 2명(법제처 1명, 농림수산부 1명) | 학 계 | 2명(법대교수 2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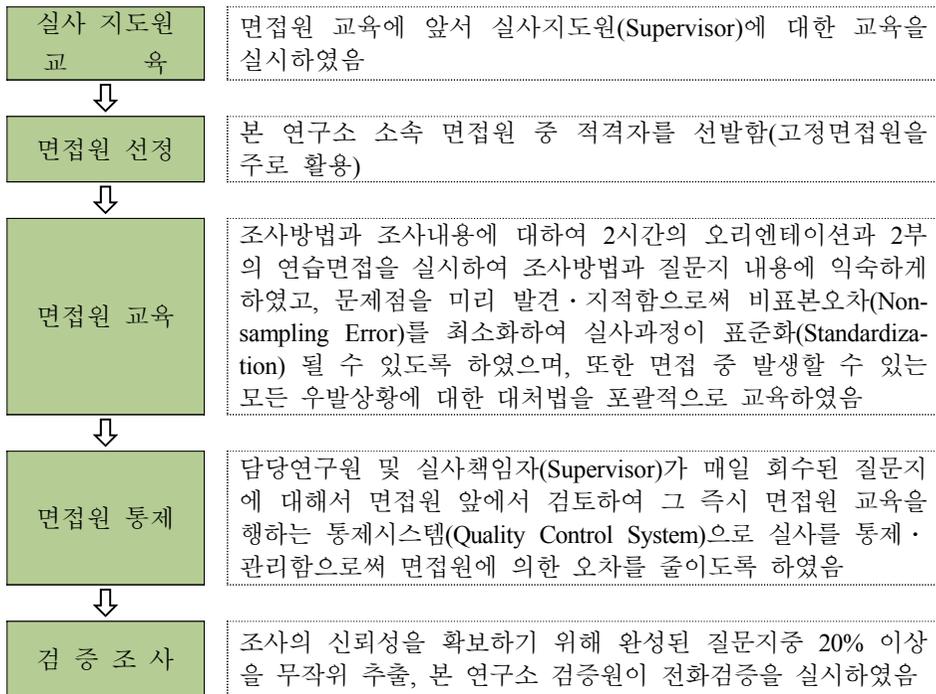
【표-3】 예비조사의 결과

| 구 분 | 응답자·면접원의 의견 |
|-------------------|---|
| 질문지 내용 (응답자의견) | -이념성향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 |
| | -몇몇 문항의 경우 부연설명이 필요함 : 헌법개정(26, 27번), 국민참여재판제도(28번), 법관평가제(29번) 등 |
| | -헌법개정(27번)에 대한 질문에서 예시1(의원내각제)과 2(4년 중임제)의 내용이 모순적이라는 의견 -27번 문항에 대해 응답하기 곤란해 하는 경우 있었음 |
| | -법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 너무 양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 |
| 조사진행방법 (면접원의견) | -조사협력자를 소개 받아 연락했음에도 일부는 설명도 듣기 전에 거부하는 등 접촉과정상 어려움이 예상됨 -기관(정부부처, 국회 등)의 경우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조사협력자가 필수적임 |
| | -개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무장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2) 본조사의 개요

조사의 실시를 위한 실사설계(Fieldwork Design)는 면접원 교육에 앞선 실사지도원에 대한 교육, 한국갤럽 소속 면접원 중 적격자의 선정, 면접원에 대한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등의 교육,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의 면접원에 대한 통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조사 등의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본조사의 실사설계



본조사는 2009년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53일간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법전문가의 소재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조사방식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조사의 개요는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본조사의 개요

| | |
|---------|--|
| 모 집 단 | 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10개 직업 -국회공무원, 국회의원 -행정공무원(중앙), 행정공무원(지방)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교수(법대), 박사(법대) |
| 조 사 지 역 | 전국 |
| 표 본 크 기 | 1,008명 |
| 표본추출방법 | 유의할당 |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 조 사 방 법 | 기관방문 면접조사(자기기입 병행) |
| 조 사 일 시 | 2009.7.6-8.28(53일간) |

조사대상자는 국회의원 등 국회공무원, 전임강사 이상의 법과대학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및 5급 이상의 각종 행정공무원과 사법연수원생으로 하였으며,²¹⁾ 그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표본의 세부내역(국회 및 행정부처)

| 구 분 | 전체인원 | 추출단위 | 인원(명) |
|---------------|-----------------|---------|-------|
| 국 회 (200명) | 공 무 원 (150명) | 국회사무처 | 37 |
| | | 국회도서관 | 38 |
| | | 국회예산정책처 | 37 |
| | | 국회입법조사처 | 38 |

21) 1996년조사의 경우 예비법전문가에 대한 법의식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박사과정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2009년조사에서는 박사과정의 학생을 박사학위를 가진 자, 박사학위자에 한정하여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받은 자인 박사학위자가 예비법전문가로서의 박사과정생보다 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제1장 서론

| 구분 | 전체인원 | 추출단위 | 인원(명) |
|----------------|---------------|----------|-------|
| | 국회의원 (50명) | 한나라당 | 23 |
| | | 민 주 당 | 17 |
| | | 선진과창조의모임 | 7 |
| | | 비교섭단체 | 3 |
| 행정부처 (250명) | 중 앙 (200명) | 소방방재청 | 6 |
| | | 법 제 처 | 5 |
| | | 국무총리실 | 5 |
| | | 교육과학기술부 | 6 |
| | | 외교통상부 | 6 |
| | | 통 일 부 | 6 |
| | | 행정안전부 | 6 |
| | | 기획재정부 | 6 |
| | | 법 무 부 | 6 |
| | | 농림수산부 | 6 |
| | | 지식경제부 | 6 |
| | | 환 경 부 | 6 |
| | | 노 동 부 | 6 |
| | | 국토해양부 | 6 |
| | | 관 세 청 | 5 |
| | | 조 달 청 | 5 |
| | | 통 계 청 | 6 |
| | | 병 무 청 | 6 |
| | | 산 립 청 | 6 |
| | | 중소기업청 | 6 |
| | | 특 허 청 | 5 |
| | | 국가기록원 | 5 |
| | | 국 세 청 | 5 |
| | | 검 찰 청 | 5 |
| | | 방위사업청 | 5 |
| | | 경 찰 청 | 5 |
| | | 문화재청 | 5 |
| | | 농촌진흥청 | 5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5 |
| | | 기 상 청 | 5 |
| | | 해양경찰청 | 5 |
| | | 국 방 부 | 6 |
| | | 문화체육관광부 | 6 |
| | | | |

| 구 분 | 전체인원 | 추출단위 | 인원(명) |
|------|--------------|---------|-------|
| | | 보건복지가족부 | 6 |
| | | 여성부 | 6 |
| | | 국가보훈처 | 5 |
| | 지 방 (50명) | 서울시청 | 4 |
| | | 대전시청 | 3 |
| | | 대구시청 | 3 |
| | | 부산시청 | 3 |
| | | 광주시청 | 3 |
| | | 울산시청 | 3 |
| | | 인천시청 | 3 |
| | | 경기도청 | 4 |
| | | 강원도청 | 3 |
| | | 충북도청 | 3 |
| | | 충남도청 | 3 |
| | | 전북도청 | 3 |
| | | 전남도청 | 3 |
| | | 경북도청 | 3 |
| | | 경남도청 | 3 |
| 제주도청 | 3 | | |

【표-7】 표본의 세부내역(학계)

| 구 분 | 추출단위 | 교수(명) | 박사(명) |
|-------------------------------------|-------|-------|-------|
| 대학교수 (200명) · 박 사 (50명) | 제주대 | 3 | 0 |
| | 경상대 | 4 | 1 |
| | 강원대 | 5 | 1 |
| | 서울시립대 | 5 | 1 |
| | 경북대 | 6 | 2 |
| | 충남대 | 6 | 2 |
| | 충북대 | 6 | 2 |
| | 전북대 | 6 | 2 |
| | 부산대 | 6 | 2 |
| | | |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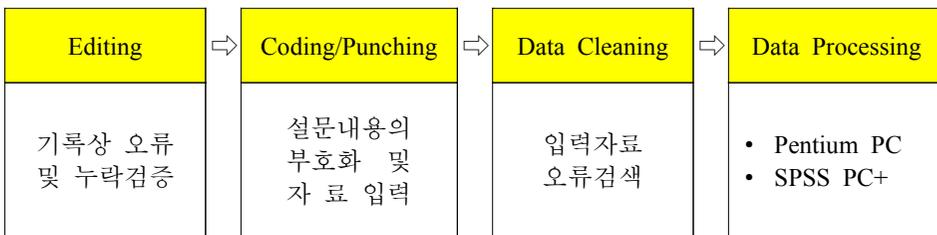
| 구 분 | 추출단위 | 교수(명) | 박사(명) |
|-----|--------|-------|-------|
| | 전남대 | 7 | 2 |
| | 서울대 | 8 | 2 |
| | 경원대 | 3 | 0 |
| | 대구대 | 3 | 0 |
| | 경기대 | 3 | 0 |
| | 광운대 | 3 | 0 |
| | 수원대 | 3 | 0 |
| | 대구가톨릭대 | 3 | 0 |
| | 성신여자대 | 3 | 0 |
| | 청주대 | 3 | 0 |
| | 원광대 | 4 | 1 |
| | 단국대 | 4 | 1 |
| | 동아대 | 4 | 1 |
| | 숙명여자대 | 5 | 1 |
| | 서강대 | 5 | 1 |
| | 건국대 | 5 | 1 |
| | 영남대 | 6 | 2 |
| | 한국외대 | 6 | 2 |
| | 동국대 | 6 | 2 |
| | 아주대 | 6 | 2 |
| | 인하대 | 6 | 2 |
| | 홍익대 | 6 | 2 |
| | 성균관대 | 7 | 2 |
| | 중앙대 | 7 | 2 |
| | 경희대 | 7 | 2 |
| | 이화여대 | 7 | 2 |
| | 연세대 | 7 | 2 |
| | 한양대 | 8 | 2 |
| | 고려대 | 8 | 3 |

| 구 분 | 추출단위 | 교수(명) | 박사(명) |
|-----|------|-------|-------|
|-----|------|-------|-------|

【표-8】 표본의 세부내역(법조계)

| 구 분 | 전체인원 | 추출단위 | 인원(명) |
|--------|------|------------|--------|
| 판 사 | 50 | 고등법원(2개) | 법원별 5 |
| | | 지방법원(8개) | 법원별 5 |
| 검 사 | 50 | 고등검찰청(2개) | 검찰청별 5 |
| | | 지방검찰청(4개) | 검찰청별 5 |
| | | 지청(5개) | 지청별 5 |
| 변호사 | 100 | 수도권 | 70 |
| | | 지방 | 30 |
| 사법연수원생 | 100 | 2007년도 합격자 | 50 |
| | | 2008년도 합격자 | 50 |

자료처리(Data Processing)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본조사의 설문지에는 교차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독립변수로서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성·연령·거주지역·지역규모별 항목,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학력·직업··계층·이념성향·종교 등을 설정하였다. 본 조사에 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사례수 | % |
|--|---|---|
| 전 체 | 1,008 | 100.0 |
| ■ 성 별 ■ 남 자 여 자 | 818 190 | 81.2 18.8 |
| ■ 연 령 별 ■ 19~29 세 30~39 세 40~49 세 50세 이상 | 122 349 352 185 | 12.1 34.6 34.9 18.4 |
| ■ 직 업 별 ■ 입 법 행 정 사 법 학 계 | 199 253 304 252 | 19.7 25.1 30.2 25.0 |
| ■ 직업분류별 ■ 국회공무원 국회 의원 중앙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판 사 검 사 변 호 사 사법연수원생 대학 교수 박사 과정 | 150 49 203 50 46 56 101 101 202 50 | 14.9 4.9 20.1 5.0 4.6 5.6 10.0 10.0 20.0 5.0 |
| ■ 근무연수별 ■ 5년 미만 5년이상~15년미만 15년 이상 | 398 332 275 | 39.5 32.9 27.3 |

| 구 분 | 사례수 | % |
|--|------------------------------|-----------------------------------|
| 모름/무응답 | 3 | 0.3 |
| ■ 지역 별 ■ 서울/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 경북/대구 대전/충북/충남 전남/전북/광주 | 773 55 23 103 54 | 76.7 5.5 2.3 10.2 5.4 |
| ■ 계 층 별 ■ 하 층 중 간 상 층 모름/무응답 | 175 499 329 5 | 17.4 49.5 32.6 0.5 |
| ■ 이념성향별 ■ 진 보 중 도 보 수 모름/무응답 | 226 568 207 7 | 22.4 56.3 20.5 0.7 |

(3) 조사의 한계

첫째, 법의식조사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식조사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된 계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범과 의식의 영역을 수치화 및 통계화의 과정을 거쳐 사실과 현실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특히 법이라는 가치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식 설문조사의 특성상 완전한 가치중립적인 조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방식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코딩의 자동화 없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

한 조사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부분적인 편차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의 적합성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²²⁾

둘째, 현실적 한계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국민과는 달리 법전문가의 경우 조사를 위한 접근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등의 기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사협조사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조사협조사의 섭외 및 협력요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한국갤럽의 조사추진담당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조사를 추진하였다.

2. 정성조사의 실시

(1) 정성조사의 필요성

종래에 행해진 법의식조사연구와는 달리 2009조사에서는 정성조사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정성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정량조사의 한계극복을 들 수 있다. 즉,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는 대면면접조사의 방법론(정량조사)에 입각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판검사·공무원·국회의원·교수·변호사 등의 법전문가가 조사에 민감하고 소속집단이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 및 실사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국민과 달리 법전문가의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대면면접조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균질한 표본추출이 힘들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질문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결과의 심도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다. 이로부터 법 전문가들과의 단체토론 등 직

22) 2008년조사, 38면 참조.

접적 접촉방법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의식과 관련된 사안별 태도 및 그 원인, 문제의식 및 시사점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정성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정설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추후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심도 있는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중간심의에서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최종보고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정량조사에 의한 결과를 정성조사에 의해 검증·보강하여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분석의 심도를 깊게 하며, 나아가 이러한 조사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지금까지 행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정량·정성 동시조사연구의 학술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FGI(Focus Group Interview)

정성조사의 방법으로서 FGI(표적집단면접조사)를 채용하였으며,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면면접조사는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실태파악의 측면이 큰 반면에, FGI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통한 심층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판·검사, 법학자, 국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 법전문가를 그룹화해 이들의 법의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FGI에서는 항목별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하여 법전문가들의 의식을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안별 태도와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다.

이와 같이 FGI는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설문지를 검증하고, 공통질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법전문가조사의 최종결과를 검증 및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

론을 병행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전문가들과의 단체토론을 통하여 사안별로 태도 및 원인, 문제의식 등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심층적·정성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량조사인 대면면접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상호 검증·보완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FGI조사의 개요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DCR Poll에 의뢰하여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0월 22일(9일)에 걸쳐 FGI에 의한 정량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심도 있는 의식분석과 생생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야별 법전문가 9명을 소속분야의 성격에 따라 각 2그룹으로 구성하여 법의식에 대한 심층적 평가 및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위한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0】과 【표-11】과 같다.

【표-10】 FGI조사의 개요

| | |
|-------|--|
| 조사 방법 |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집단그룹 좌담회(FGI) |
| 표본 설계 | <p>표본크기 및 응답자 구성 : 총 9명</p> <p>① 입법부문 : 2명 (보좌관 1, 국회 공무원 1)</p> <p>② 행정부문 : 2명 (사무관 1, 지방공무원 1)</p> <p>③ 사법부문 : 3명 (판사 1, 검사 1, 변호사 1)</p> <p>④ 학 계 : 2명 (공법교수 1, 사법교수 1)</p> |
| 조사 진행 | <p>좌담회 진행일시 :</p> <p>A Group : 2009년 10월 13일 오후 3~5시</p> <p>B Group : 2009년 10월 13일 오후 8~10시</p> <p>설계 및 실사진행 : (주) DCR Poll</p> |

【표-11】 FGI조사 응답자의 특성

| 대분류 | 상세구분 | 소속·직위 | 경 력 |
|-----|-------------|---------|-----|
| 입법 | 보좌관 | 000 의원실 | 11년 |
| | 국회공무원 | 전문위원 | 22년 |
| 행정 | 중앙정부 공무원 | 법무부 | 13년 |
| | 지방정부 공무원 | 00 구청 | 25년 |
| 사법 | 판사 | 00 법원 | 15년 |
| | 검사 | 00 지검 | 13년 |
| | 변호사 | 법무법인 00 | 15년 |
| 학계 | 공법교수 | 00 대학교 | 11년 |
| | 사법교수 | 00 대학교 | 11년 |

3. 방법론적 특징

이상과 같이 2009년조사는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1991년조사, 1994년조사, 1996년조사, 2008년조사 등에서 채용하였던 정량조사인 대면면접조사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성조사(FGI조사)의 방법론을 병행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성조사 방법론을 병행적으로 채용한 것은 정량적 접근임에도 균질의 표본추출이 곤란하다는 등 정량조사문제점을 보강·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정량조사 외의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독립된 정성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교분석의 결과물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전체분석, 특성별분석, 교차분석 등

이 중심이었던 종래와는 달리 시계열분석, 즉 1996년조사와 2009년조사(이하 “96/09”라 한다)의 비교분석, 2008년조사와 2009년조사(이하 “일반/전문”이라 한다)의 비교분석을 전술한 【표-1】에서 체크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법의식 시대적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의 목적인 미래의 입법·법집행·법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의식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제 1 절 개 관

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인식, 법적 가치판단, 법감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조사의 경우에도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라는 테마로 법에 대한 인상, 악법에 대한 인식,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법률상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법을 여기면서 사는 사람(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 보았다.

응답자 1,008명 중 “법”이란 말을 들으면 “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권위적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악법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법률상 대우”를 살펴보면,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며, 여성이 법률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결론적으로 법전문가들은 법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이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부분의 다른 문항들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1. 법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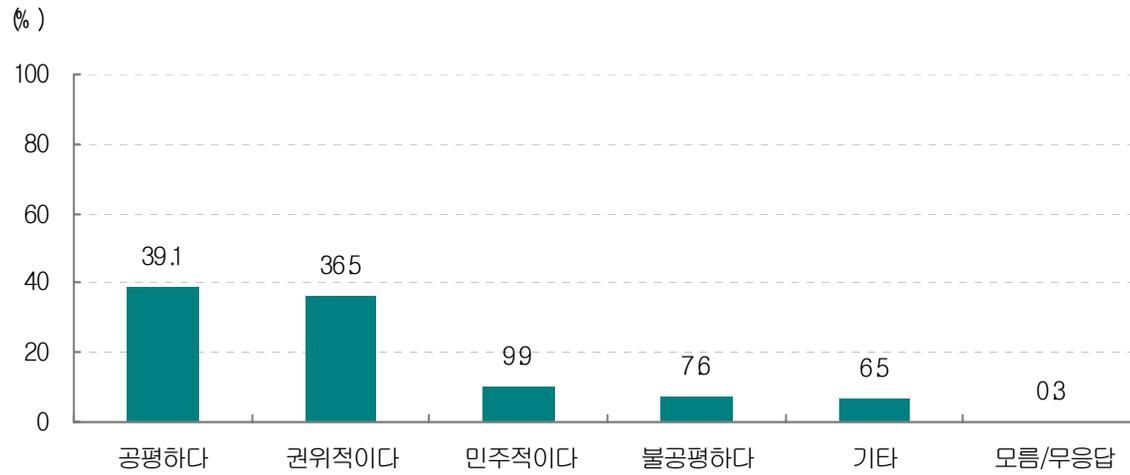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결 과 | % |
|------------|-------|
| 공평하다 | 39.1 |
| 권위적이다 | 36.5 |
| 민주적이다 | 9.9 |
| 불공평하다 | 7.6 |
| 기타 | 6.5 |
| 모름/ 무응답 | 0.3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법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질문한 결과, ‘공평하다’(39.1%)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권위적이다’(36.5%)는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림-1】 법에 대한 인상



-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응답이 ‘공평하다’(39.1%), ‘민주적이다’(9.9%)로서 49%를 점하고 있어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전문가라 하더라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법에 대한 인상은 법적 문제 또는 경험과는 관계없이 형성될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행위규범에 적합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부정적 시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법에 대한 인상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업분류별로 사법,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집단에서 법을 ‘공평하다’(51.3%, 47.8%)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분류별로 입법,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집단에서 법을 ‘권위적’(47.2%, 43.8%)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특성별 법에 대한 인상

(%)

| 구 분 | 사례수 | 공평하다 | 권위적이다 | 민주적이다 | 불공평하다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39.1 | 36.5 | 9.9 | 7.6 | 6.5 | 0.3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입 법 | 199 | 23.1 | 47.2 ↑ | 11.6 | 10.6 | 7.5 | - | 100.0 |
| 행 정 | 253 | 33.2 | 42.7 | 11.5 | 5.5 | 7.1 | - | 100.0 |
| 사 법 | 304 | 51.3 ↑ | 25.7 | 9.9 | 7.6 | 4.9 | 0.7 | 100.0 |
| 학 계 | 252 | 42.9 | 34.9 | 7.1 | 7.5 | 7.1 | 0.4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 보 | 226 | 28.3 | 43.8 ↑ | 9.7 | 12.4 | 5.3 | 0.4 | 100.0 |
| 중 도 | 568 | 40.0 | 34.7 | 10.6 | 7.0 | 7.6 | 0.2 | 100.0 |
| 보 수 | 207 | 47.8 ↑ | 34.3 | 8.7 | 3.9 | 4.8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7 | 57.1 | 14.3 | - | 14.3 | 14.3 | - | 100.0 |

- 특히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이것은 법의식에 있어서 계층간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법의식제고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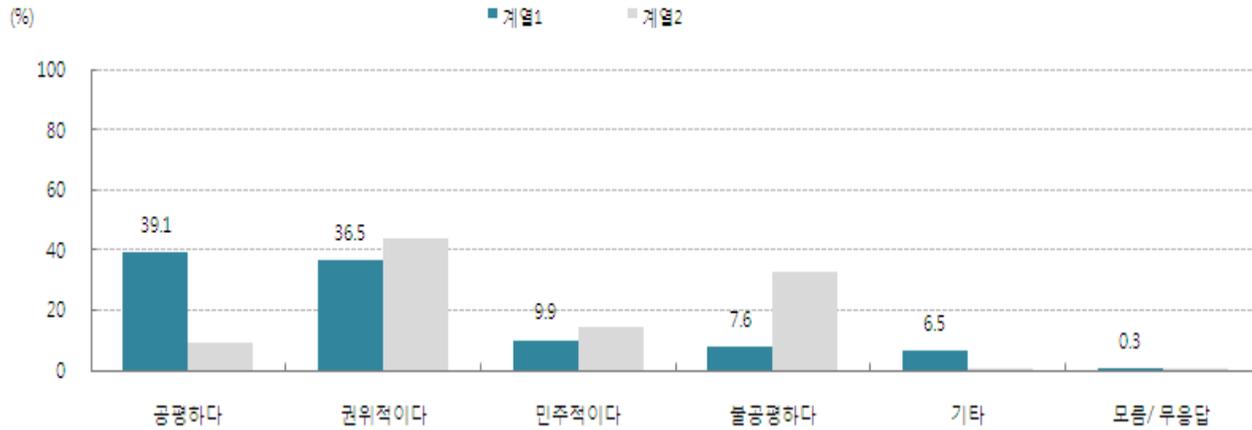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공평하다 | 39.1 | 8.9 |
| 권위적이다 | 36.5 | 43.6 |
| 민주적이다 | 9.9 | 14.2 |
| 불공평하다 | 7.6 | 32.6 |
| 기타 | 6.5 | 0.6 |
| 모름/ 무응답 | 0.3 | 0.1 |
| 계 | 100.0 | 100.0 |

- 법에 대한 인상과 관련하여 2009년조사(법전문가)에서는 ‘공평하다’(39.1%), ‘권위적이다’(3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8년 조사(일반국민)에서는 ‘권위적이다’(43.6%), ‘불공평하다’(3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2】 법에 대한 인상 비교(일반/전문)²³⁾



23) 계열1은 2009년조사, 계열2는 2008년조사.

- 이와 같이 법전문가에 비하여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따르는 수범자로서의 일반국민과 수범자임과 동시에 법을 다루거나 적용하는 법전문가라는 서로 다른 위치로부터 나타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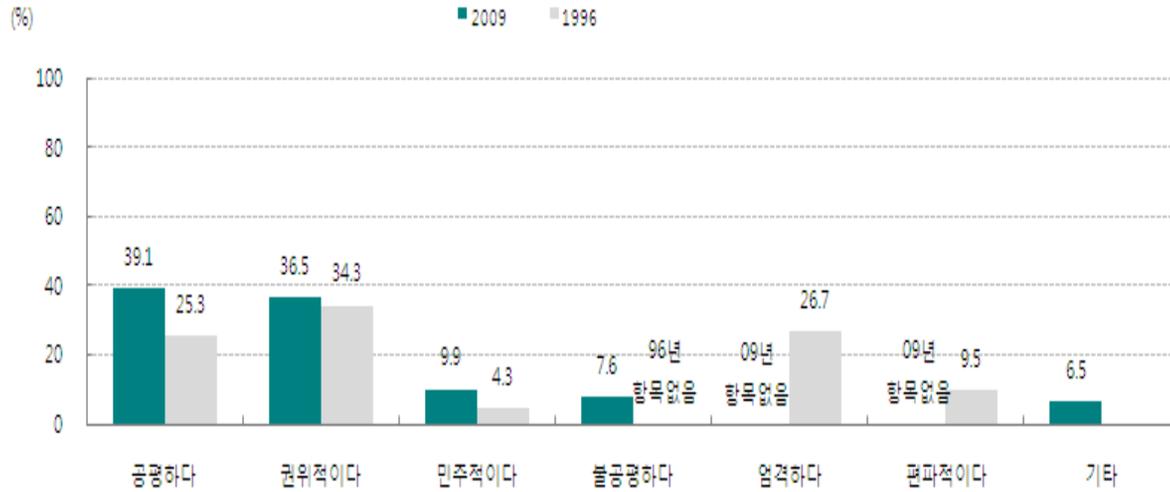
(4) 비교분석(96/09)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전문가('96) (N=727) |
|---------|-----------------------|---------------------|
| 공평하다 | 39.1 | 8.9 |
| 권위적이다 | 36.5 | 43.6 |
| 민주적이다 | 9.9 | 14.2 |
| 불공평하다 | 7.6 | 32.6 |
| 엄격하다 | - | 26.7 |
| 편파적이다 | - | 9.5 |
| 기타 | 6.5 | 0.6 |
| 모름/ 무응답 | 0.3 | 0.1 |
| 계 | 100.0 | 100.0 |

- 법에 대한 인상과 관련하여 1996년조사에서는 ‘권위적이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조사에서는 ‘공평하다’(39.1%)와 ‘권위적이다’(36.5%)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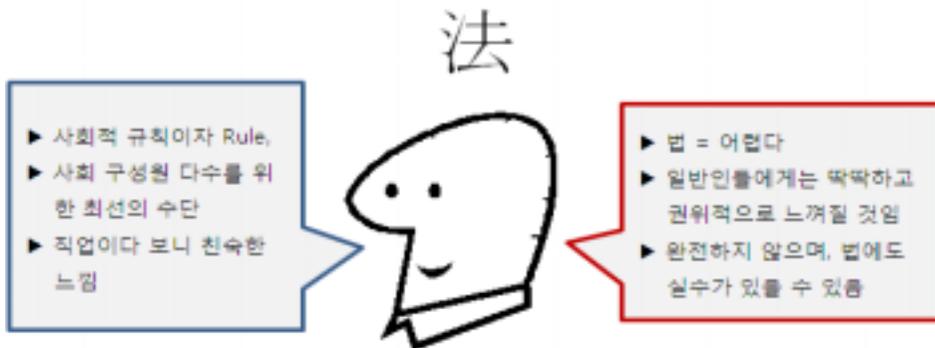
【그림-3】 법에 대한 인상 비교(96/09)



(5) 정성조사

- 참석자에게 법에 대한 느낌을 질문을 한 결과, 참석자의 다수가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한 기능적 도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석대상이 법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식이나 느낌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친숙하다는 의견도 나타나는 반면, 일반인에게는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법의 존재의미가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현행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 역시 제기되었다.

【그림-4】 법에 대한 인상(정성조사)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공평하다’(39.1%), ‘권위적이다’(3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정성조사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다만, 정성조사에서는 일반국민에게 법이 딱딱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 현행법제의 불완전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일반국민이 더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불편법령이나 부당한 법령의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악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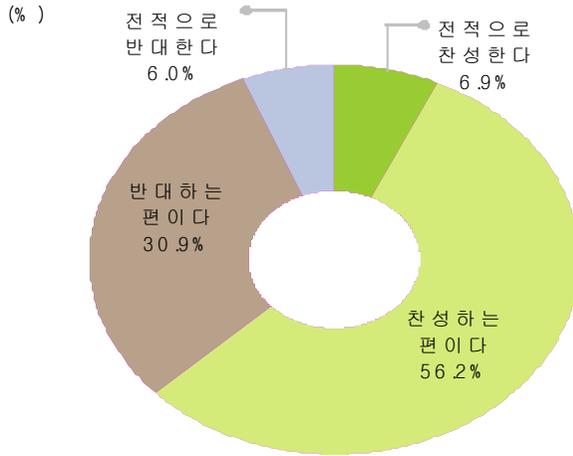
문2) 귀하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6.9 ↗ 63.1 |
| 찬성하는 편이다 | 56.3 ↘ |
| 반대하는 편이다 | 30.9 ↗ 36.9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6.0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악법에 대한 인식



- 법사상적으로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는 논제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결에서 출발한다.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은 당연히 개폐되어야 하지만, 실존하는 법으로서의 현상유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개폐에 의한 정의의 이익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적 정의가 합목적성이나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고, 자연법에 반하는 법은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로부터 ‘악법도 법이다’는 논제에 관한 이론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 이와 같이 ‘악법도 법이다’는 것은 어떤 법률이 도덕적으로 그릇되거나 부당하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거나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권자나 상위법에 의해 폐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즉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법에 복종해

- 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²⁴⁾
- 그 이론적 근거로서 19세기말의 독일 법학자인 베르그봄(K. M. Bergbohm)은 법체계의 존재가 아무리 강제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많은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평화·질서·안전을 보장하는 한 모든 구성원은 법에 저항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²⁵⁾
 -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17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숨졌다는 내용을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이 사례를 준법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²⁶⁾
 -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하는 악일뿐이다’²⁷⁾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서 정당한 법의 준수 및 정당한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3.1%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초규범적 판단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1994), 10면 참조.

25) 강정인, 위의 논문, 10면 참조.

26) 2008년조사, 112면 참조.

27) 황상윤, 악법도 법인가, 월간말 통권 제266호(2008. 8), 101면 참조.

- 특히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권력·정치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법과 법집행을 전제로 하는 준법정신의 고취 및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특성별 분석

- 악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해당기관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특성별 악법에 대한 인식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계 |
|------------------|--------------|----------------|---------------|-------------|---------------|----------------|-------------|--------------|
| 전 체 | 1,008 | 6.9 | 56.3 | 63.2 | 30.9 | 6.0 | 36.8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4.5 | 53.0 | 57.5 | 37.4 | 5.0 | 42.5 | 100.0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6.3 | 54.5 | 60.8 | 31.3 | 7.8 | 39.2 | 100.0 |
| 15년 이상 | 275 | 11.3 | 62.9 | 74.2 ▼ | 20.7 | 5.1 | 25.8 | 100.0 |
| 모름/무응답 | 3 | - | 66.7 | 66.7 | 33.3 | - | 33.3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 보 | 226 | 6.6 | 35.4 | 42.0 | 44.2 | 13.7 | 58.0 | 100.0 |
| 중 도 | 568 | 5.6 | 60.4 | 66.0 | 30.1 | 3.9 | 34.0 | 100.0 |
| 보 수 | 207 | 11.1 | 67.6 | 78.7 ▼ | 18.4 | 2.9 | 21.3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57.1 | 57.1 | 28.6 | 14.3 | 42.9 | 100.0 |

-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당기관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 동안의 실무경험 등으로부터 정당한 법과 법집행

을 전제로 하는 준법정신의 고취 및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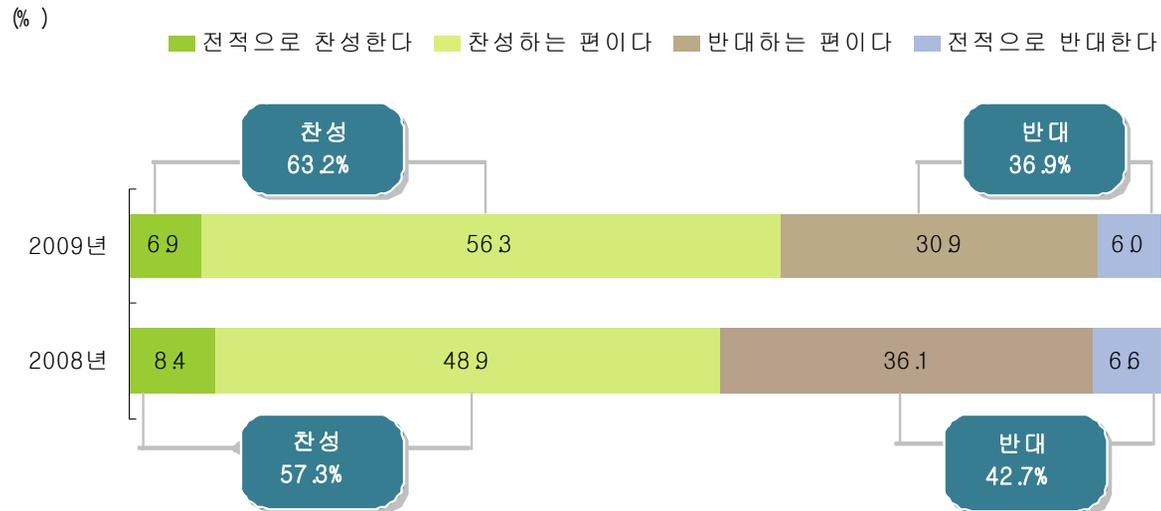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2) 귀하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6.9 ↘ 63.2 | 8.4 ↘ 57.3 |
| 찬성하는 편이다 | 56.3 ↘ | 48.9 ↘ |
| 반대하는 편이다 | 30.9 ↘ 36.8 | 36.1 ↘ 42.7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6.0 ↘ | 6.6 ↘ |
| 계 | 100.0 | 100.0 |

-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일반국민(57.3%)에 비해 전문가집단(63.2%)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악법에 대한 인식 비교(일반/전문)



- 이와 같이 일반국민과 법전문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정당한 법과 법집행을 전제로 하는 준법정신의 고취 및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초규범적 판단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질서유지를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도의 차이는 연령의 경우 일반국민 중 19-29세가 21.0%, 법전문가 중 12.1%였다는 점,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경우 일반국민 중 29.2%, 법전문가 중 22.4%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정성조사

-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석자가 법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악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제시되었다.
- 입법부문과 사법부문에서는 ‘이유여하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행정부문과 학계에서는 ‘법질서 준수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 개정 전까지라는 단서를 다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찬성(63.2%)이 과반이상으로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36.8%)의견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법연수생과 20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근무연수 5년 미만이 응답자의 40%를 차지하는 응답자 대상의 구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결과를 보면,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정성조사의 결과에서는 절대다수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악법여부를 떠나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대다

수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점에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제 3 절 유전무죄 및 탈법행위자에 대한 인식

1.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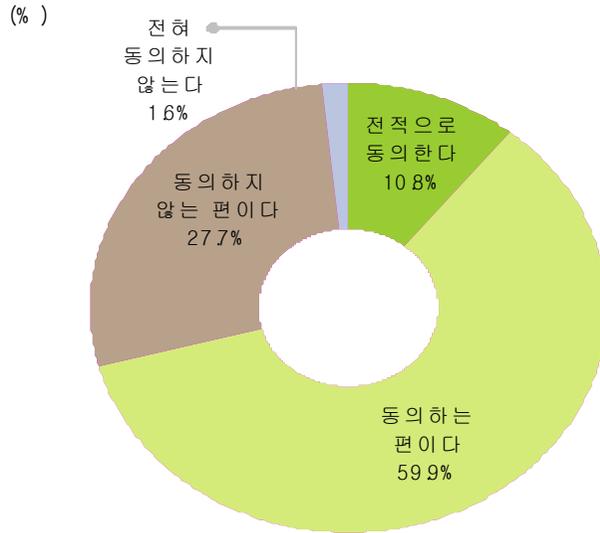
문3)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10.8 ↗ 70.7 |
| 동의하는 편이다 | 59.9 ↘ |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27.7 ↗ 29.3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6 ↘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70.7%로 나타났다.

【그림-7】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 최근 대기업 관련사건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을 때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함께 사법불신, 법집행과정에서의 편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응답자 중 70.7%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법의 잣대를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 즉 금전적 과다에 좌우되는 사법정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법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법조비리의 예방을 위한 법조윤리교육의 철저, 기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통용된다’는 의견은 남자집단보다는 여자집단(76.8%)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14】 특성별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③+④ | 계 |
|------------------|--------------|-------------|-------------|---------------|---------------|---------------|-------------|--------------|
| 전 체 | 1,008 | 10.8 | 59.9 | 70.7 | 27.7 | 1.6 | 29.3 | 100.0 |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818 | 10.5 | 58.8 | 69.3 | 29.1 | 1.6 | 30.7 | 100.0 |
| 여 자 | 190 | 12.1 | 64.7 | 76.8 ↑ | 21.6 | 1.6 | 23.2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 보 | 226 | 18.1 | 67.3 | 85.4 ↑ | 13.3 | 1.3 | 14.6 | 100.0 |
| 중 도 | 568 | 8.6 | 60.4 | 69.0 | 29.9 | 1.1 | 31.0 | 100.0 |
| 보 수 | 207 | 8.7 | 50.7 | 59.4 | 37.2 | 3.4 | 40.6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57.1 | 71.4 | 28.6 | - | 28.6 | 100.0 |

- 이와 같이 여자집단(76.8%)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법률상 지위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난 것은 진보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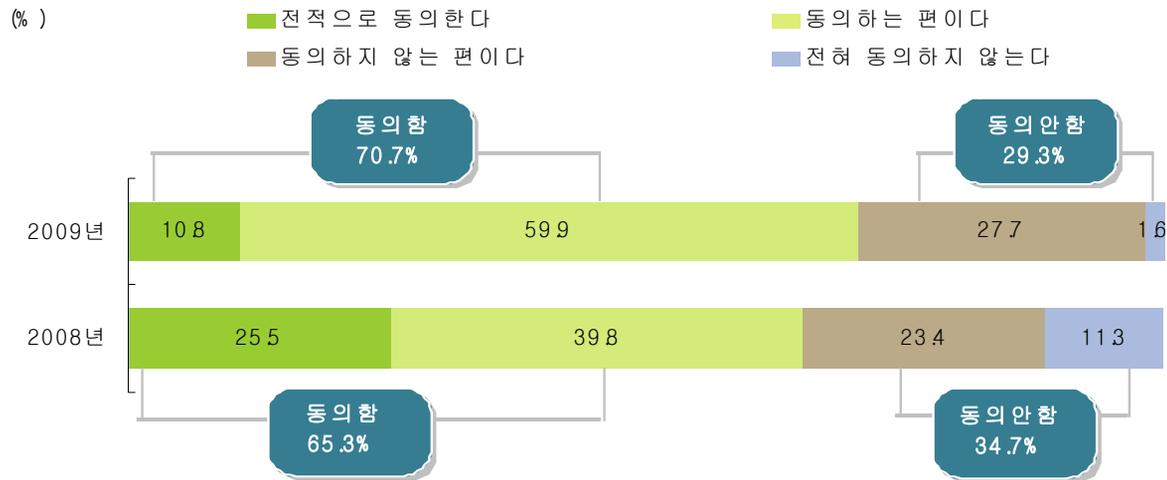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3)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10.8 ↘ 70.7 | 25.5 ↘ 65.3 |
| 동의하는 편이다 | 59.9 ↘ | 39.8 ↘ |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27.7 ↘ 29.3 | 23.4 ↘ 34.7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6 ↘ | 11.3 ↘ |
| 계 | 100.0 | 100.0 |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 (65.3%)에 비해 법전문가(70.7%)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8】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비교(일반/전문)



- 조사결과에서는 일반국민에 비하여 법전문가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돈과 권력이 재판을 좌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상에 대한 엄격한 대처의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정성조사

- 대부분의 참석자는 유전무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로 정보접근성과 법적 조력자의 유무, 자본주의 하에서의 환경차이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점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고 느끼고 있다.
- 한편 인식의 형성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했으며, 일부 참석자에서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적은 수준에 그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도 유전무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0.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3%), 또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및 학계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82.9%, 80.2%, 78.2%로 나타나 사법부(48.7%)와 큰 차이를 보였고, 이념성향별로 보수적인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59.4%로 진보적인 응답자(85.4%)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이러한 정량조사의 결과는 정성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법전문가의 유전무죄에 관한 일반적 인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2. 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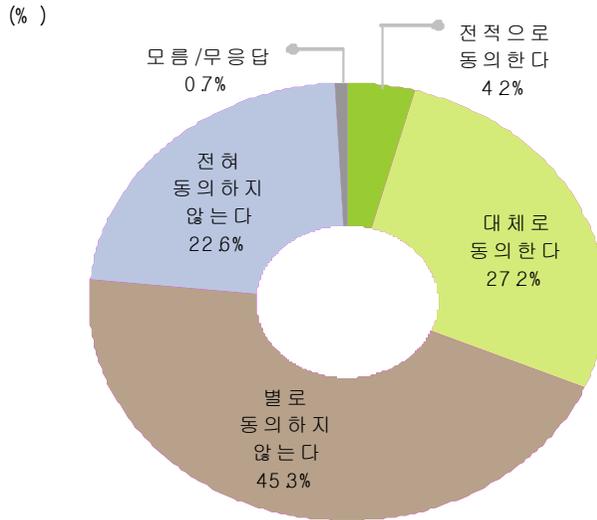
문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4.2 ▽ 31.3 |
| 대체로 동의한다 | 27.2 ▽ |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5.3 ▽ 68.0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2.6 ▽ |
| 모름/ 무응답 | 0.7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68.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9】 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 탈법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태도는 사회전반에 걸친 준법정신의 저하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의식이며, 특히 탈법행위자에 대한 비판 및 고발정신은 이기적 권리의식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 탈법행위자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난 것은 법전문가의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엄격·공정한 법의 해석·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2) 특성별 분석

-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이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는 의견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업분류별로는 학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74.6%)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역

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15】 특성별 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

| 구 분 | 사례수 | ① 적으로 동의한다 | ② 대체로 동의한다 | ①+② |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4.2 | 27.2 | 31.3 | 45.3 | 22.6 | 68.0 | 0.7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7.0 | 28.1 | 35.2 | 46.7 | 17.6 | 64.3 | 0.5 | 100.0 |
| 행 정 | 253 | 6.7 | 35.6 | 42.3 | 42.3 | 15.0 | 57.3 | 0.4 | 100.0 |
| 사 법 | 304 | 1.6 | 23.4 | 25.0 | 47.4 | 26.3 | 73.7 | 1.3 | 100.0 |
| 학 계 | 252 | 2.4 | 22.6 | 25.0 | 44.8 | 29.8 | 74.6 ↑ | 0.4 | 100.0 |
| ▣ 계 층 별 ▣ | | | | | | | | | |
| 하 층 | 175 | 6.3 | 33.1 | 39.4 | 40.0 | 20.6 | 60.6 | - | 100.0 |
| 중 간 | 499 | 4.2 | 28.1 | 32.3 | 46.3 | 20.4 | 66.7 | 1.0 | 100.0 |
| 상 층 | 329 | 3.0 | 22.5 | 25.5 | 46.8 | 27.1 | 73.9 ↓ | 0.6 | 100.0 |
| 모름/무응답 | 5 | - | 40.0 | 40.0 | 40.0 | 20.0 | 60.0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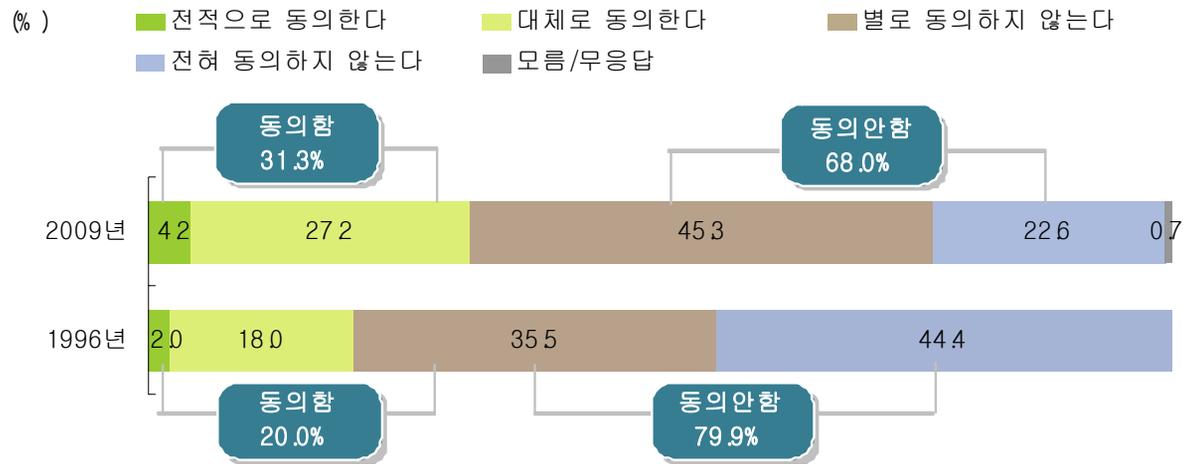
(3) 비교분석(96/09)

문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2009 (N=1,008) | 1996 (N=797)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4.2 ↘ 31.3 | 2.0 ↘ 20.0 |
| 대체로 동의한다 | 27.2 ↘ | 18.0 ↘ |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5.3 ↘ 68.0 | 35.5 ↘ 79.9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2.6 ↘ | 44.4 ↘ |
| 모름/ 무응답 | 0.7 | - |
| 계 | 100.0 | 100.0 |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대해 1996년도와 2009년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79.9%→68.0%).

【그림-10】 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비교(96/09)



- 이와 같이 1996년조사(79.9%)에 비하여 2009년조사(68.0%)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법전문가의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의 엄격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보다 엄격·공정한 법의 해석·집행이 요청되고 있다.

제 4 절 여성의 법적 지위

1. 여성의 법률상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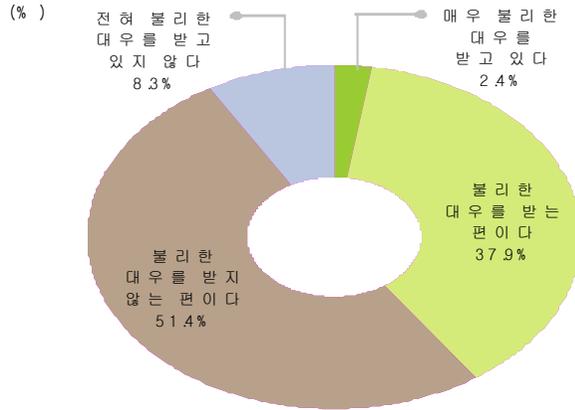
문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2.4 ↘ 40.3 |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7.9 ↓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51.4 ↘ 59.7 |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8.3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59.7%)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1】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 이에 대하여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가 찬성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39.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도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은 이미 남성과 큰 차이가 없고, 이러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여성의 객관적 조건 및 사회적 대우를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로부터 응답자의 14.8%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서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14.8%)을 들고 있는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성별로는 여자집단(56.8%)에서, 직업분류별로는 학계(50.4%)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

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같은 의견(불리한 대우를 받는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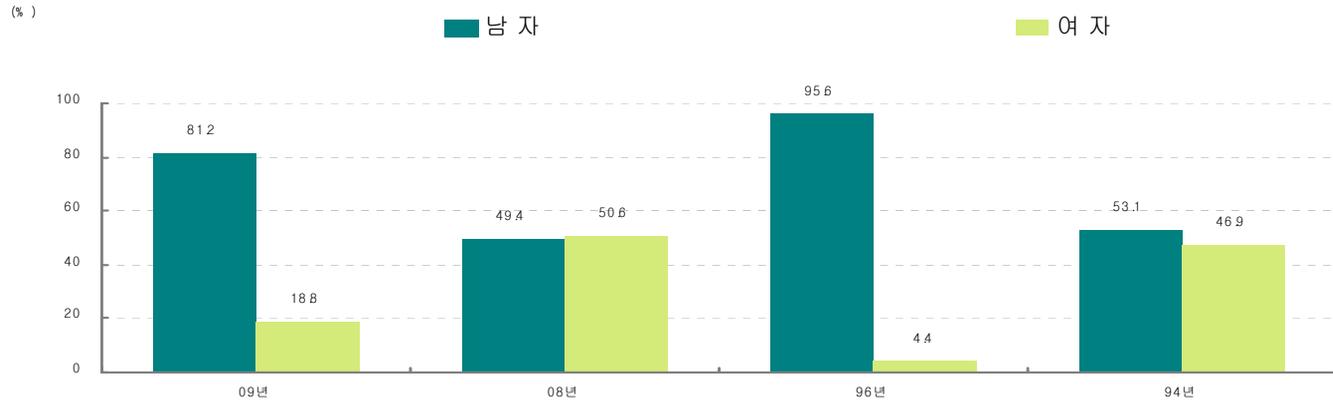
【표-16】 특성별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②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①+② | ③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④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③+④ | 계 |
|------------|--------------|--------------------|------------------|---------------|------------------|-----------------------|-------------|--------------|
| 전 체 | 1,008 | 2.4 | 37.9 | 40.3 | 51.4 | 8.3 | 59.7 | 100.0 |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818 | 2.2 | 34.2 | 36.4 | 53.7 | 9.9 | 63.6 | 100.0 |
| 여 자 | 190 | 3.2 | 53.7 | 56.8 ↑ | 41.6 | 1.6 | 43.2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 |
| 20 대 | 122 | 1.6 | 42.6 | 44.3 ↑ | 51.6 | 4.1 | 55.7 | 100.0 |
| 30 대 | 349 | 2.3 | 41.0 | 43.3 | 47.9 | 8.9 | 56.7 | 100.0 |
| 40 대 | 352 | 3.7 | 36.9 | 40.6 | 51.7 | 7.7 | 59.4 | 100.0 |
| 50대 이상 | 185 | 0.5 | 30.8 | 31.4 | 57.3 | 11.4 | 68.6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입 법 | 199 | 2.5 | 41.7 | 44.2 | 48.7 | 7.0 | 55.8 | 100.0 |
| 행 정 | 253 | 1.2 | 28.5 | 29.6 | 58.9 | 11.5 | 70.4 | 100.0 |
| 사 법 | 304 | 1.3 | 36.8 | 38.2 | 52.3 | 9.5 | 61.8 | 100.0 |
| 학 계 | 252 | 4.8 | 45.6 | 50.4 ↑ | 44.8 | 4.8 | 49.6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 보 | 226 | 4.0 | 50.0 | 54.0 ↑ | 37.6 | 8.4 | 46.0 | 100.0 |
| 중 도 | 568 | 2.1 | 35.6 | 37.7 | 55.8 | 6.5 | 62.3 | 100.0 |
| 보 수 | 207 | 1.4 | 30.9 | 32.4 | 54.6 | 13.0 | 67.6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42.9 | 42.9 | 42.9 | 14.3 | 57.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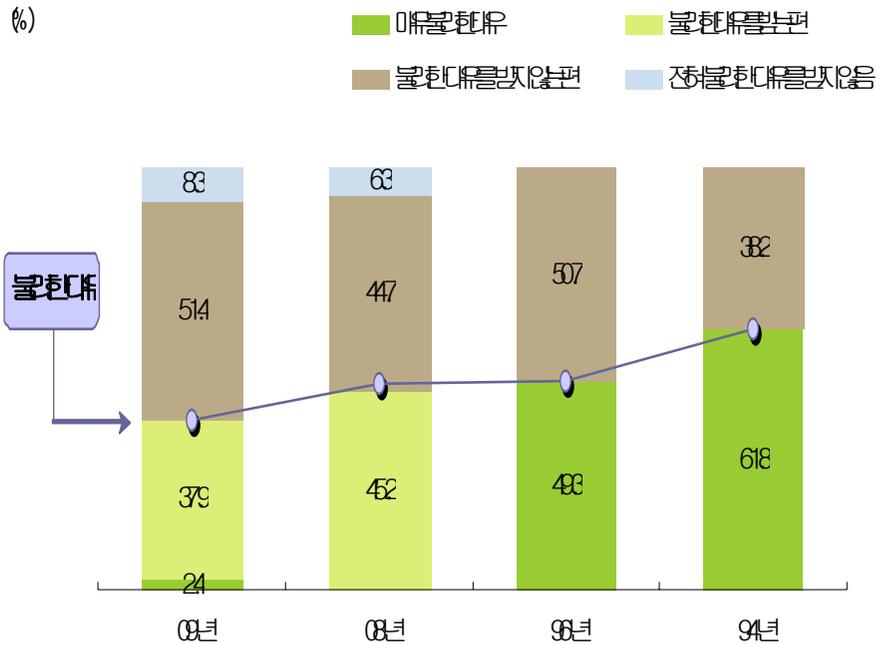
- 여성의 법률상 대우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특성(성별)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문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 전에 응답자 특성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각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1994년조사(일반국민)에서는 남자 53.1%, 여자 46.9%, 1996년조사(법전문가)에서는 남자 95.6%, 여자 4.4%였으며, 2008년조사(일반국민)에서는 남자 49.4%, 여자 50.6%, 2009년조사(법전문가)에서는 남자 81.2%, 여자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전문가의 조사에서는 성비의 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2】 시기별 성비차이



- 1994년조사(일반국민)에서 1996년조사(전문가) 사이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크게 감소(61.8%→49.3%)하다가, 12년 후인 2008년조사(일반국민)는 1996년조사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49.3%→49.0%), 또다시 2009년조사(전문가)에서는 1년 사이에 약 10%p 가량 감소(49.0%→40.3%)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차이라기보다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의 성비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13】 시기별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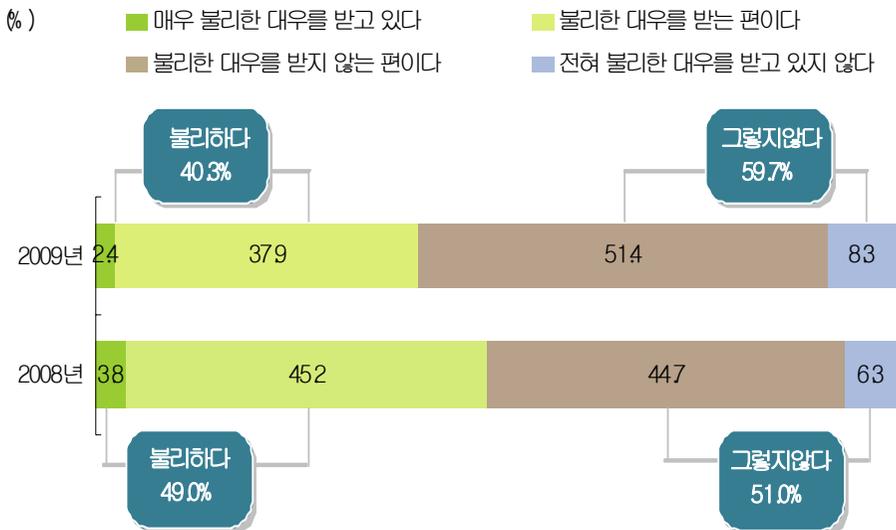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2.4 ↘ 40.3 | 3.8 ↘ 49.0 |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7.9 ↘ | 45.2 ↘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51.4 ↘ 59.7 | 44.7 ↘ 51.0 |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8.3 ↘ | 6.3 ↘ |
| 계 | 100.0 | 100.0 |

○ 여성의 법률상 대우에 대하여, 법전문가 들은 일반국민보다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4】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비교(일반/전문)



-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의식의 차이는 남녀성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남녀성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법률상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는 양자가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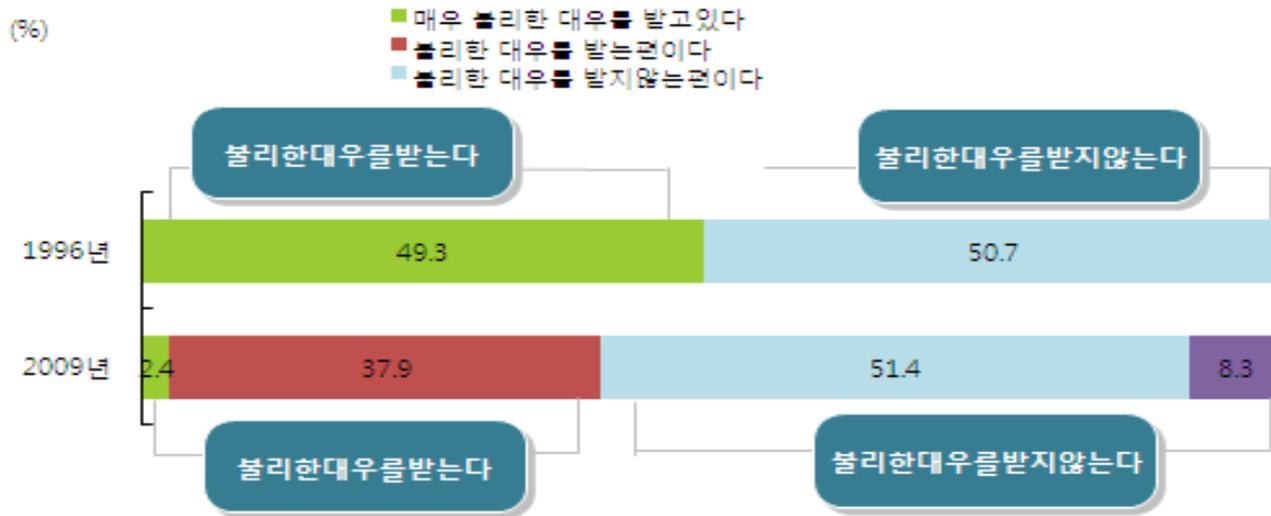
(4) 비교분석(96/09)

문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전문가('96) (N=727) |
|---------------------|-----------------------|---------------------|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2.4 ↘ 40.3 | - ↘ 49.3 |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7.9 ↘ | - ↘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51.4 ↘ 59.7 | - ↘ 50.7 |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8.3 ↘ | - ↘ |
| 계 | 100.0 | 100.0 |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96년도 조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10%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0.7% → 59.7%).

【그림-15】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비교(96/09)



(5) 정성조사

- 거의 모든 참석자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은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법률상이 아닌 사회인식이나 분위기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한 차별은 남아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이 역시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응답하였다.
-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불리한 대우 받는다’ 40.3%, ‘불리한 대우 받지 않는다’ 59.7%로 나타나 비교적 응답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또한 여성이 법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39.4%)를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남녀 간의 지위차이’(25.1%)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은 본 조사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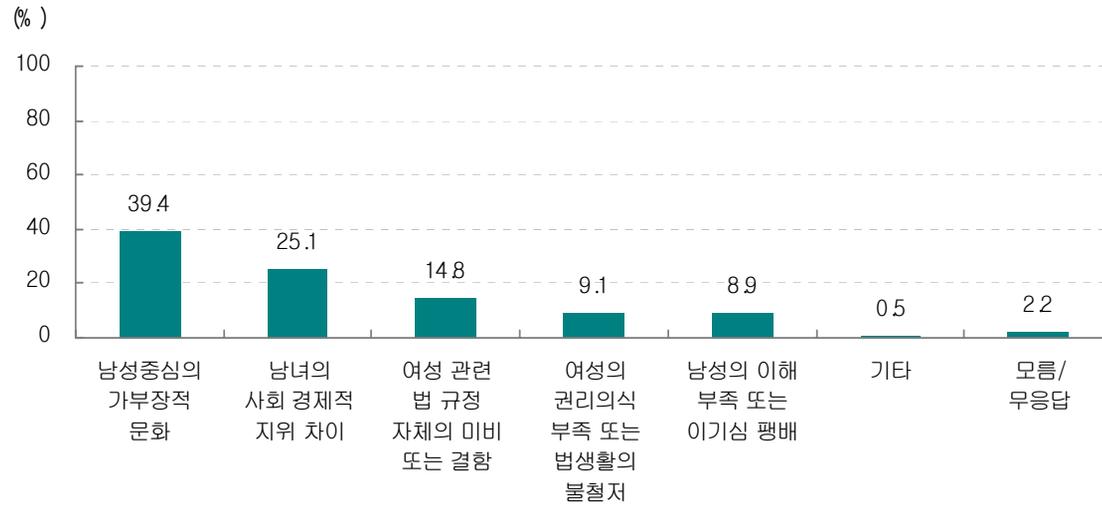
문4-1)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39.4 |
|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25.1 |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4.8 |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9.1 |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8.9 |
| 기타 | 0.5 |
| 모름/ 무응답 | 2.2 |
| 계(N=406) | 100.0 |

(1) 전체분석

-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N=406)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 39.4%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림-16】 법률상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제 2 장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또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서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25.1%)에 이어 ‘여성관련 법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14.8%)으로 나타나 법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헌법, 가족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법률의 실제적 집행과정에서도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이나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제36조 제1항)의 대원칙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요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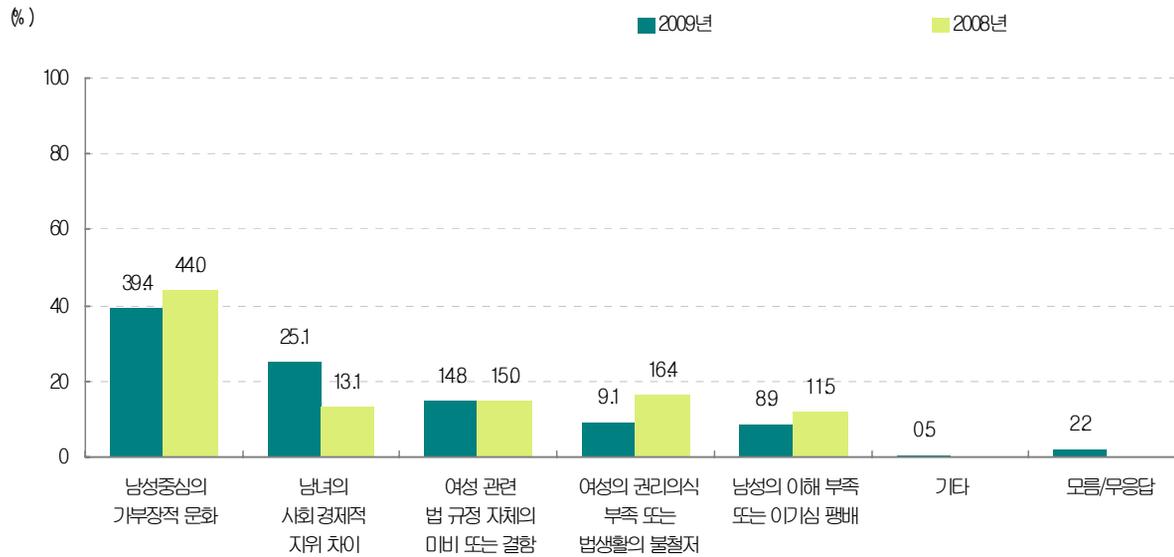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4-1)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406) | 일반국민('08) (N=1,474) |
|-------------------------|---------------------|------------------------|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39.4 | 44.0 |
|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25.1 | 13.1 |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4.8 | 15.0 |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9.1 | 16.4 |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8.9 | 11.5 |
| 기타 | 0.5 | - |
| 모름/무응답 | 2.2 | - |
| 계 | 100.0 | 100.0 |

-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39.4%, 44.0%)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성비의 차이, 즉 2009년조사의 경우에는 남성이 81.2%, 여성이 18.8%였고, 1996년 조사의 경우에는 남성이 95.6%, 여성이 4.4%였다는 점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남녀성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이의 폭이 틀리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다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17】 법률상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비교(일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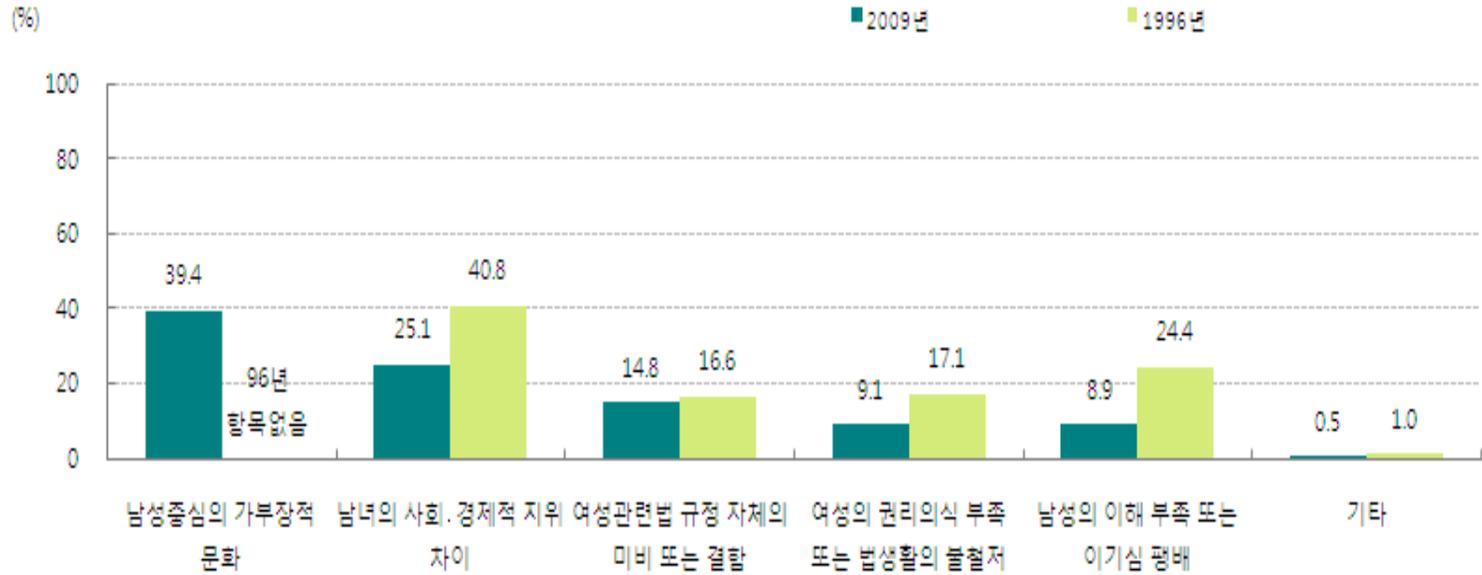
(3) 비교분석(96/09)

문4-1)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406) | 전문가('96) (N=727) |
|-------------------------|---------------------|---------------------|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39.4 | - |
|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25.1 | 40.8 |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14.8 | 16.6 |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9.1 | 17.1 |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8.9 | 24.4 |
| 기타 | 0.5 | 1.0 |
| 모름/무응답 | 2.2 | - |
| 계 | 100.0 | 100.0 |

-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96년 조사에서는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09년도 조사에서는 새로 추가된 항목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39.4%)

【그림-18】 법률상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제 3 장 법전문가의 법생활

제 1 절 개 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의식은 우리사회의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확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그 힘이다. 법치주의의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사회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준법정신, 권리의식 등 법전문가의 법생활화의 실태와 수준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부터 2009년조사에서는 준법정신과 그 자가진단(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법준수 자가진단), 법생활과 법적 경험(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계약서 숙지정도,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안전사회와 범죄퇴치(시급퇴치 범죄유형,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법교육과 학교폭력(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법교육 중점부문,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 2 절 준법정신과 그 자가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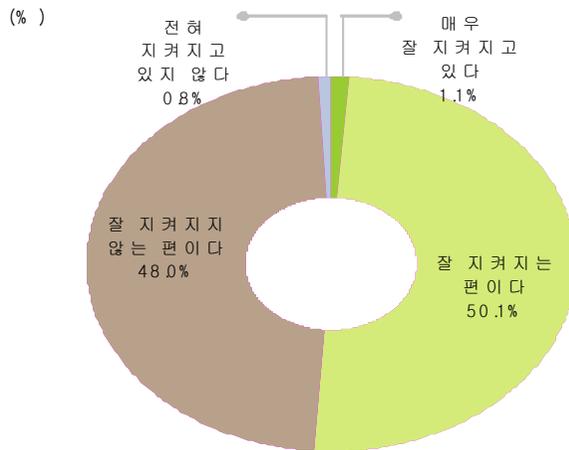
1. 법준수 정도

| 문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결 과 | %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1.1 |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50.1 |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48.0 |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0.8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묻은 결과, ‘지켜지고 있다’(51.2%)는 응답과 ‘지켜지지 않는다’(48.8%)는 응답이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19】 (우리사회)법준수 정도



- 법규범의 현실적합성이 확보되고, 법집행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적 강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준수가 이루어져야만 선진적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실태조사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법의식 수준의 선진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특성별 분석

-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에 대해, 연령별로 20~30대가 40~50대(이상)보다 우리사회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

【표-17】 특성별 (우리사회)법준수 정도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잘 지켜지는 편이다 | ①+② | ③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③+④ | 계 |
|--------|-------|----------------|--------------|--------|-----------------|-----------------|------|-------|
| 전 체 | 1,008 | 1.1 | 50.1 | 51.2 | 48.0 | 0.8 | 48.8 | 100.0 |
| 연 령 별 | | | | | | | | |
| 20 대 | 122 | 2.5 | 52.5 | 54.9 ↑ | 44.3 | 0.8 | 45.1 | 100.0 |
| 30 대 | 349 | 0.9 | 56.2 | 57.0 ↑ | 42.4 | 0.6 | 43.0 | 100.0 |
| 40 대 | 352 | 1.1 | 45.7 | 46.9 | 52.0 | 1.1 | 53.1 | 100.0 |
| 50대 이상 | 185 | 0.5 | 45.4 | 45.9 | 53.5 | 0.5 | 54.1 | 100.0 |

(3) 교차분석

○ 우리사회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우리 사회의 한 단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우리사회의 법준수에 대한 긍정집단의 경우 부정집단에 비해 호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20】 교차분석 (우리사회)법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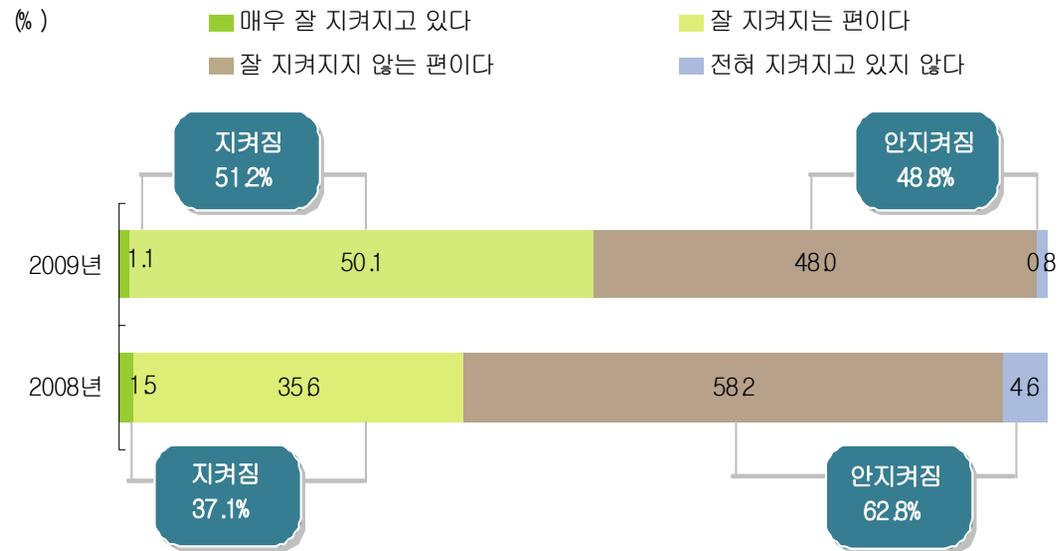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1.1 ↗ 51.2 | 1.5 ↗ 37.1 |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50.1 ↘ | 35.6 ↘ |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48.0 ↘ 48.8 | 58.2 ↘ 62.8 |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0.8 ↘ | 4.6 ↘ |
| 계 | 100.0 | 100.0 |

- 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해, 법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1】 (우리사회)법준수 정도 비교(일반/전문)



- 이와 같이 2009년조사에서는 우리사회에서의 법준수 정도에 대하여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51.2%로서 많았지만, 2008년조사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37.1%,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62.8%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의 경우 법정립 및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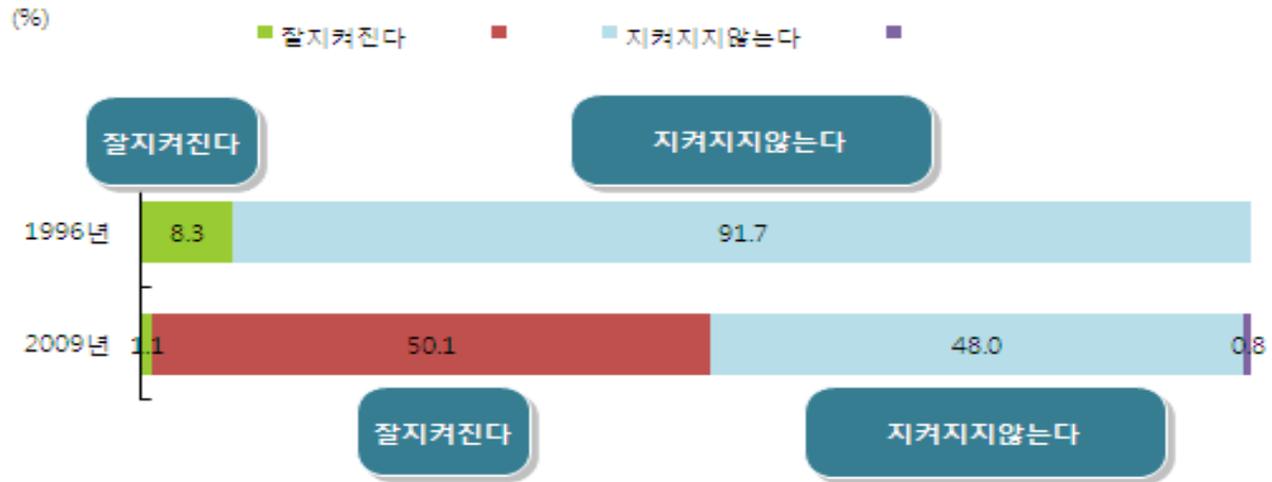
(5) 비교분석(일반/전문)

문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전문가('96) (N=727) |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1.1 ↘ 51.2 | - ↘ 8.3 |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50.1 ↘ | - ↘ |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48.0 ↘ 48.8 | - ↘ 91.7 |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0.8 ↘ | - ↘ |
| 계 | 100.0 | 100.0 |

- 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해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8.3% → 51.2%), 이로부터 1996년도에 비하여 준법정신의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22】 (우리사회)법준수 정도 비교(96/09)



(6) 정성조사

- 우리사회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우리사회가 대체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는 반면, 사법부와 학계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응답이 나타났다.
- 참석자 스스로의 법질서 준수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소한 교통법규 등에서는 위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정량조사에서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를 질문한 결과, ‘지켜지고 있다’(51.2%)는 응답과 ‘지켜지지 않는다’(48.8%)는 응답이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99.0%)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 이것은 일반국민과의 본인 스스로의 법질서 준수정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정성조사의 결과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통하는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법전문가들은 자신과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 비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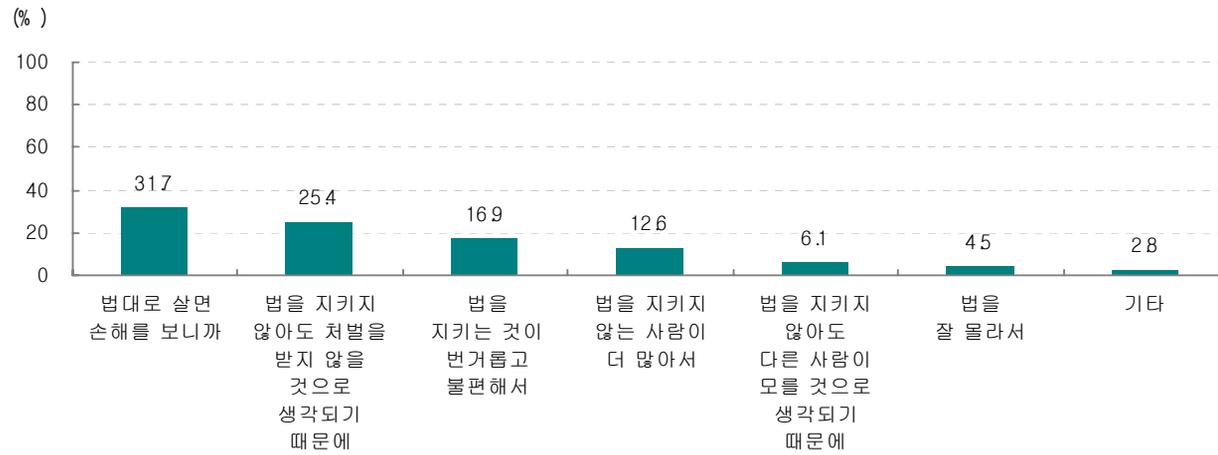
문6-1)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31.7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25.4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16.9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12.6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1 |
| 법을 잘 몰라서 | 4.5 |
| 기타 | 2.8 |
| 계(N=492)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N=492)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31.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25.4%)라는 응답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23】 (우리사회)비준수 이유



- 이와 같이 법전문가의 경우도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은 ‘법을 지키면 이익을 본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정책연구원(ISP)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66개국 중 중간인 30위권이며,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²⁸⁾
- 이로부터 법을 지키면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에 대한 준법행위 인센티브제(준법마일리지)를 들 수 있으며, 이를 각 행정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안 걸리면 그만’에서 ‘지키면 이익’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 끝으로 법전문가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법집행의 요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직업분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인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라는 의견은 입법(35.4%)과 행정집단(4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라는 의견은 사법집단(3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8)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2009년 6월 30일자 참조.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불법시위를 통한 의견수용률이 42.4%로 합법시위(28.2%)보다 높았다고 한다.

【표-18】 특성별 (우리사회)비준수 이유

(%)

| 구 분 | 사례수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 법을 잘 몰라서 | 기타 | 계 |
|-----------|-----|----------------|------------------------------------|---------------------|---------------------|------------------------------------|----------|-----|-------|
| 전 체 | 492 | 31.7 | 25.4 | 16.9 | 12.6 | 6.1 | 4.5 | 2.8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99 | 35.4 ↑ | 24.2 | 11.1 | 11.1 | 6.1 | 9.1 | 3.0 | 100.0 |
| 행 정 | 112 | 45.5 ↑ | 19.6 | 10.7 | 13.4 | 7.1 | 2.7 | 0.9 | 100.0 |
| 사 법 | 137 | 24.1 | 31.4 ↑ | 20.4 | 8.8 | 8.0 | 3.6 | 3.6 | 100.0 |
| 학 계 | 144 | 25.7 | 25.0 | 22.2 | 16.7 | 3.5 | 3.5 | 3.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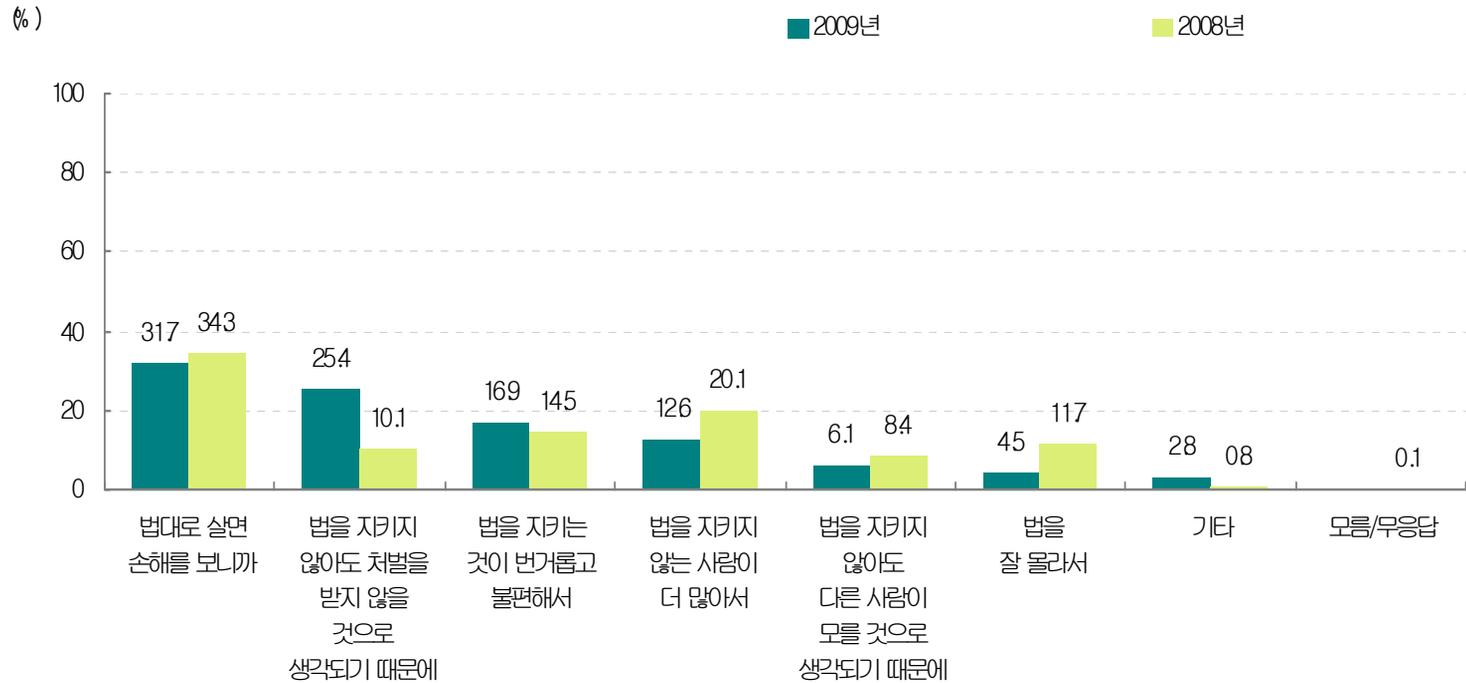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6-1)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492) | 일반국민('08) (N=1,889) |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31.7 | 34.3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25.4 | 10.1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16.9 | 14.5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12.6 | 20.1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 6.1 | 8.4 |
|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 |
| 법을 잘 몰라서 | 4.5 | 11.7 |
| 기타 | 2.8 | 0.8 |
| 모름/무응답 | - | 0.1 |
| 계 | 100.0 | 100.0 |

-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1.7%, 34.3%)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그 뒤를 이어 법전문가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25.4%)를, 일반국민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20.1%)를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림-24】 (우리사회)비준수 이유 비교(일반/전문)



- 이와 같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이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전문가의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25.4%)를,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20.1%)를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국민의 경우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수범자임과 동시에 법집행·해석 등의 주체인 법전문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3. 법준수 자가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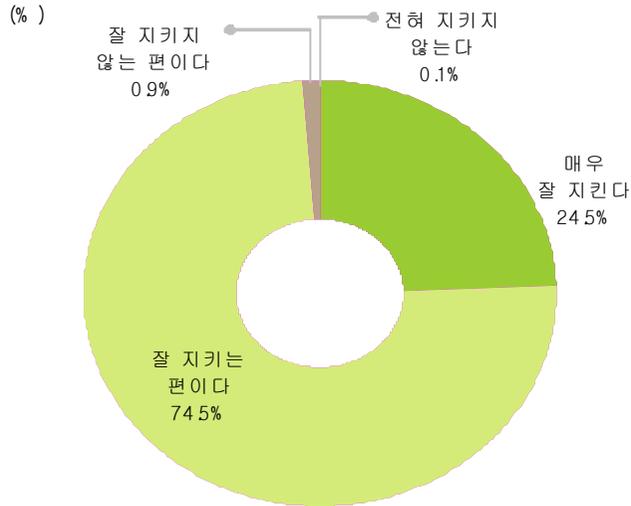
문7)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잘 지킨다 | 24.5 ↗ 99.0 |
| 잘 지키는 편이다 | 74.5 ↓ |
|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 0.9 ↗ 1.0 |
| 전혀 지키지 않는다 | 0.1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에 이어 본인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99.0%)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여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25】 법준수 자가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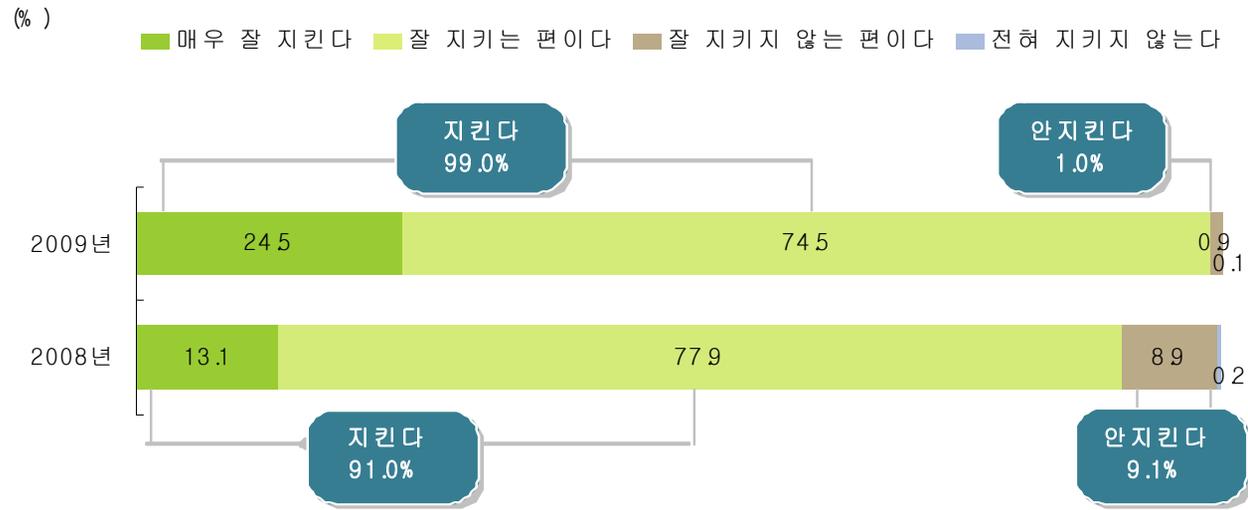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7)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잘 지킨다 | 24.5 \uparrow 99.0 | 13.1 \uparrow 91.0 |
| 잘 지키는 편이다 | 74.5 \downarrow | 77.9 \downarrow |
|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 0.9 \uparrow 1.0 | 8.9 \uparrow 9.1 |
| 전혀 지키지 않는다 | 0.1 \downarrow | 0.2 \downarrow |
| 계 | 100.0 | 100.0 |

○ 자기 자신의 법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잘 지킨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99.9%, 91.0%).

【그림-26】 법준수 자가진단 비교(일반/전문)



-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본인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99.0%)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것은 일반국민(91.0)에 비하여 법전문가의 법준수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자신의 비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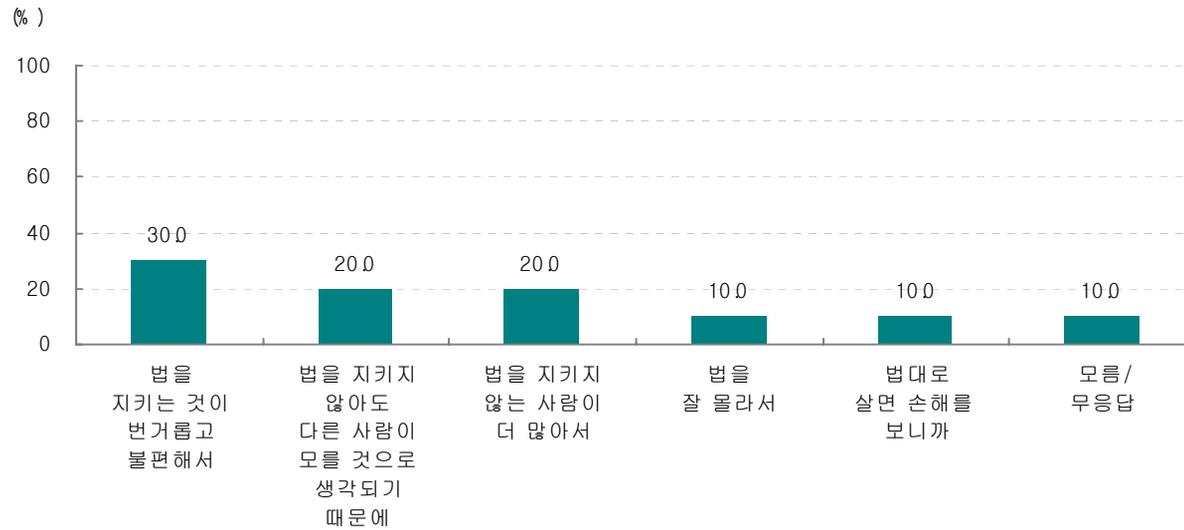
문7-1)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 과 | % |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30.0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20.0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20.0 |
| 법을 잘 몰라서 | 10.0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10.0 |
| 모름/ 무응답 | 10.0 |
| 계(N=10) | 100.0 |

(1) 전체분석

-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N=1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3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27】 (자신)비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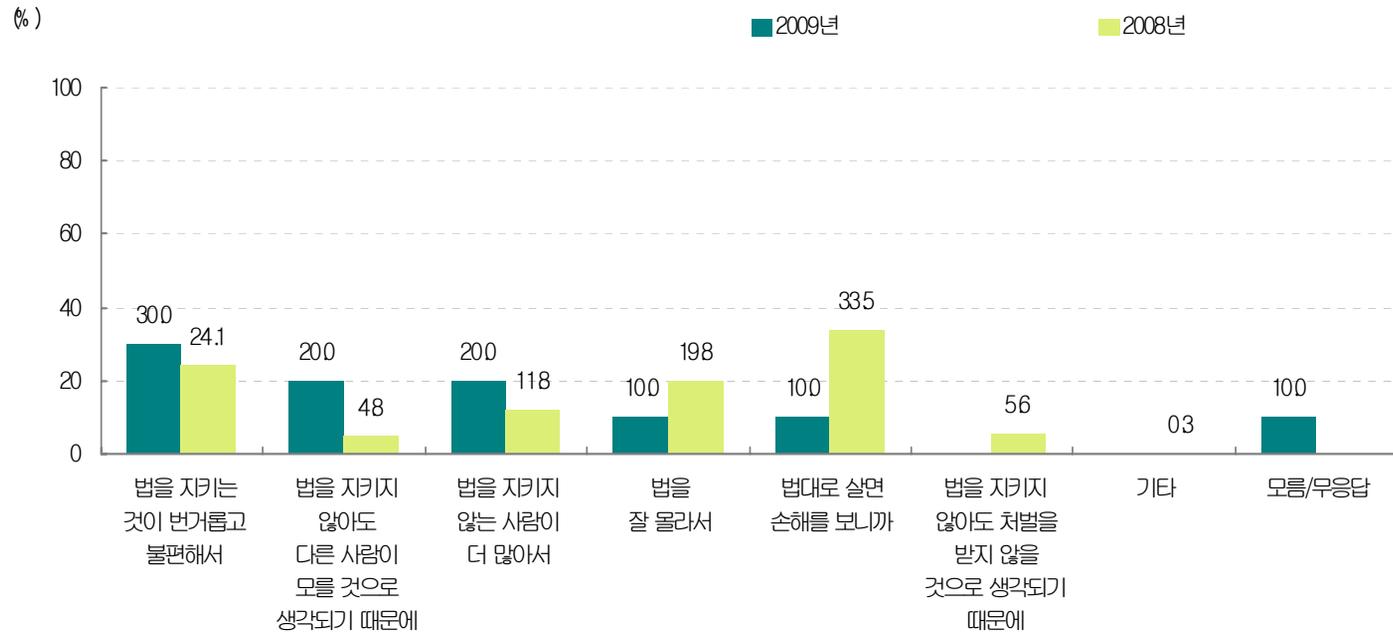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7-1)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 | 일반국민('08) (N=272) |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30.0 | 24.1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20.0 | 4.8 |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20.0 | 11.8 |
| 법을 잘 몰라서 | 10.0 | 19.8 |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10.0 | 33.5 |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 | 5.6 |
| 기타 | - | 0.3 |
| 모름/무응답 | 10.0 | - |
| 계 | 100.0 | 100.0 |

-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경우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30.0%)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3.5%)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8】 (자신)비준수 이유 비교(일반/전문)



제 3 절 법생활과 법적 경험

1.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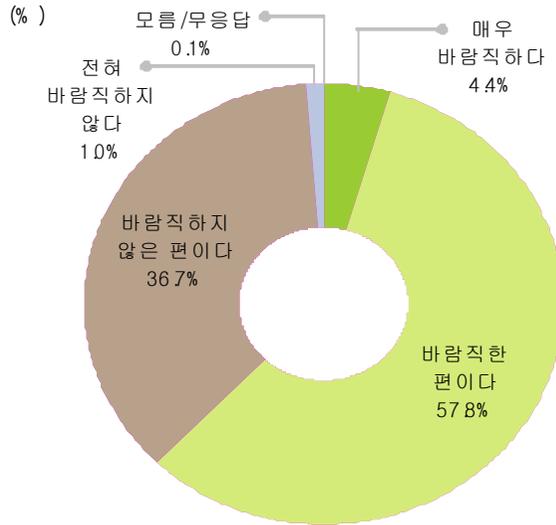
문11) 귀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바람직하다 | 4.4 ↗ 62.2 |
| 바람직한 편이다 | 57.8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36.7 ↘ 37.7 |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0 ↓ |
| 모름/ 무응답 | 0.1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소송제기에 대해 법전문가 10명중 6명 정도 ‘바람직하다’(62.2%)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9】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이러한 결과는 과거 분쟁발생의 해결방법으로서 법에 호소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송회피문화가 불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법의식의 선진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 특성별 분석

-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집단에서 ‘바람직하다’(78.2%)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9】 특성별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한 편이다 | ①+② | ③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4.4 | 57.8 | 62.2 | 36.7 | 1.0 | 37.7 | 0.1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0 | 55.3 | 59.3 | 39.3 | 0.7 | 40.0 | 0.7 | 100.0 |
| 국회 의원 | 49 | 6.1 | 65.3 | 71.4 | 28.6 | - | 28.6 | -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2.0 | 63.5 | 65.5 | 33.0 | 1.5 | 34.5 | -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6.0 | 48.0 | 54.0 | 46.0 | - | 46.0 | - | 100.0 |
| 판 사 | 46 | 6.5 | 45.7 | 52.2 | 47.8 | - | 47.8 | - | 100.0 |
| 검 사 | 56 | 3.6 | 48.2 | 51.8 | 48.2 | - | 48.2 | - | 100.0 |
| 변 호 사 | 101 | 7.9 | 70.3 | 78.2 ↑ | 21.8 | - | 21.8 | -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5.0 | 57.4 | 62.4 | 34.7 | 3.0 | 37.6 | - | 100.0 |
| 대학 교수 | 202 | 5.0 | 53.5 | 58.4 | 40.1 | 1.5 | 41.6 | - | 100.0 |
| 박사 과정 | 50 | - | 60.0 | 60.0 | 40.0 | - | 40.0 | - | 100.0 |

(3) 교차분석

- 앞에서 언급된 법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결과로 법은 공평하고 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긍정집단과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부정집단으로 구분하여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집단의 경우 부정집단에 비해 소송을 통해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0】 교차분석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 | | |
|-------------------------|----------|-----------------------------|------------------------------|
| | | 긍정집단 법은 '공평하고, 민주적이다' | 부정집단 법은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 |
| 법률문제를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 66.8 | 58.0 |
| | 바람직하지 않다 | 33.2 | 4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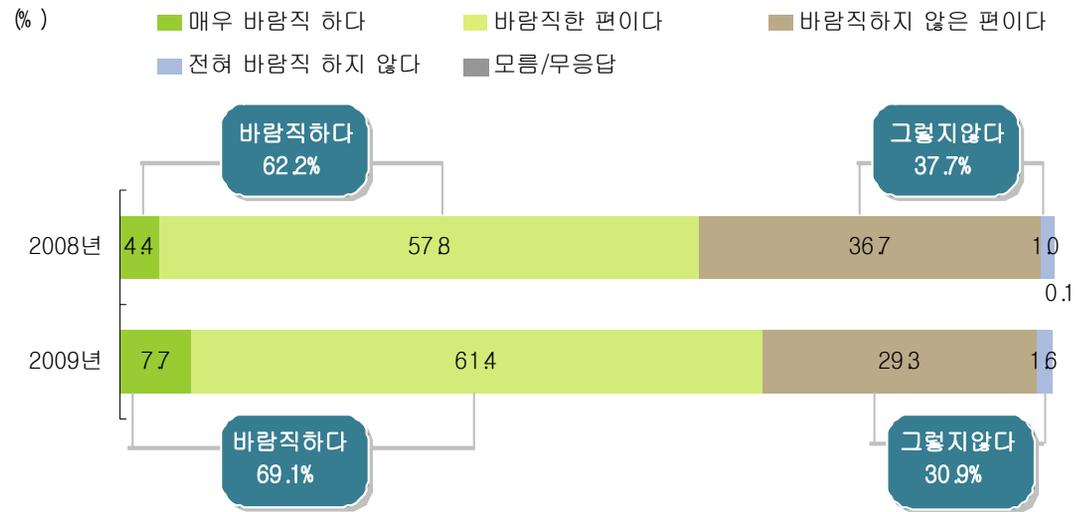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1) 귀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바람직하다 | 4.4 ▽ 62.2 | 7.7 ▽ 69.1 |
| 바람직한 편이다 | 57.8 ▽ | 61.4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36.7 ▽ 37.7 | 29.3 ▽ 30.9 |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0 ▽ | 1.6 ▽ |
| 모름/무응답 | 0.1 | - |
| 계 | 100.0 | 100.0 |

-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법률문제 발생시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62.2%, 69/1%).

【그림-31】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비교(일반/전문)



2. 계약서 숙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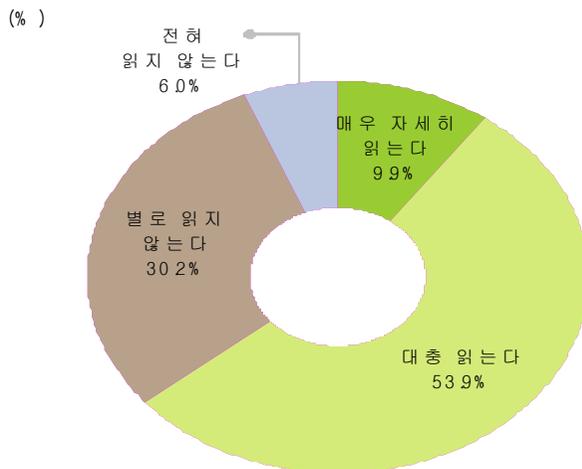
문12) 귀하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9.9 ↘ 63.9 |
| 대충 읽는다 | 54.0 ↘ |
| 별로 읽지 않는다 | 30.2 ↘ 36.1 |
| 전혀 읽지 않는다 | 6.0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법전문가의 63.9% 이상이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 규정(약관)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그림-32】 계약서 숙지정도



(2) 특성별 분석

- 계약서 규정(약과)과 관련하여, 성별로는 여자집단이(70.5%), 직업별로는 판사집단 (80.4%)에서 ‘읽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20】 특성별 계약서 숙지정도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자세히 읽는다 | ② 대중 읽는다 | ①+② | ③ 별로 읽지 않는다 | ④ 전혀 읽지 않는다 | ③+④ | 계 |
|------------------|--------------|-----------------------|----------------|---------------|----------------------|----------------------|-------------|--------------|
| 전 체 | 1,008 | 9.9 | 54.0 | 63.9 | 30.2 | 6.0 | 36.1 | 100.0 |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818 | 10.3 | 52.1 | 62.3 | 31.1 | 6.6 | 37.7 | 100.0 |
| 여 자 | 190 | 8.4 | 62.1 | 70.5 ↑ | 26.3 | 3.2 | 29.5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13.3 | 52.0 | 65.3 | 30.0 | 4.7 | 34.7 | 100.0 |
| 국회 의원 | 49 | 16.3 | 36.7 | 53.1 | 46.9 | - | 46.9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3.4 | 58.1 | 61.6 | 33.5 | 4.9 | 38.4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4.0 | 60.0 | 64.0 | 26.0 | 10.0 | 36.0 | 100.0 |
| 판 사 | 46 | 6.5 | 73.9 | 80.4 ↑ | 19.6 | - | 19.6 | 100.0 |
| 검 사 | 56 | 8.9 | 57.1 | 66.1 | 32.1 | 1.8 | 33.9 | 100.0 |
| 변 호 사 | 101 | 8.9 | 55.4 | 64.4 | 32.7 | 3.0 | 35.6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11.9 | 40.6 | 52.5 | 30.7 | 16.8 | 47.5 | 100.0 |
| 대학 교수 | 202 | 7.9 | 57.4 | 65.3 | 27.7 | 6.9 | 34.7 | 100.0 |
| 박사 과정 | 50 | 36.0 | 42.0 | 78.0 | 16.0 | 6.0 | 22.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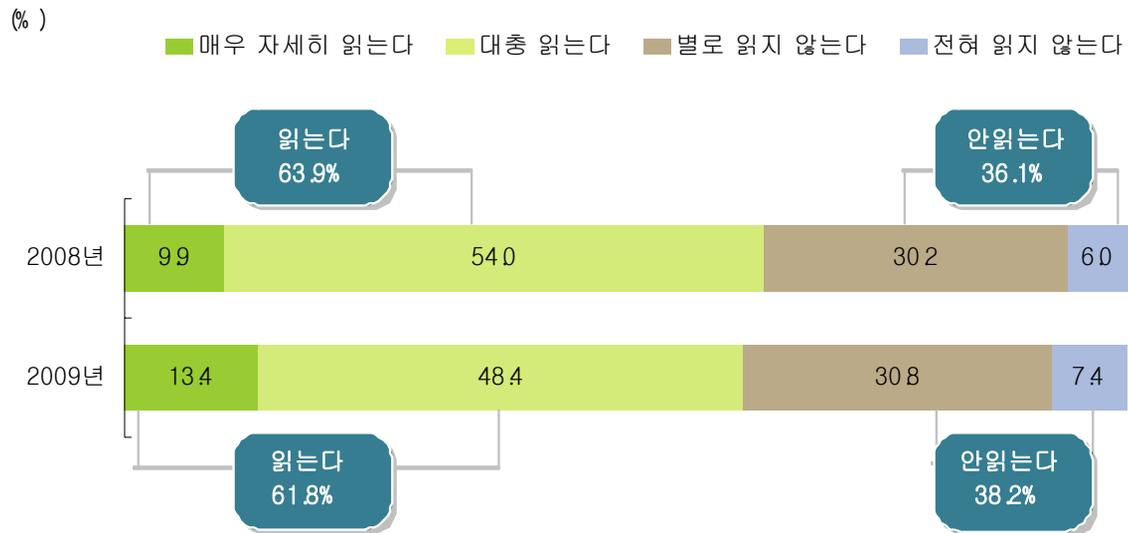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2) 귀하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9.9 ↘ 63.9 | 13.4 ↘ 61.8 |
| 대충 읽는다 | 54.0 ↘ | 48.4 ↘ |
| 별로 읽지 않는다 | 30.2 ↘ 36.1 | 30.8 ↘ 38.2 |
| 전혀 읽지 않는다 | 6.0 ↘ | 7.4 ↘ |
| 계 | 100.0 | 100.0 |

-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보험이나 펀드 가입시 계약서를 ‘읽는다’는 의견이 높았다(63.9%, 61.8%).

【그림-33】 계약서 숙지정도 비교(일반/전문)



(4) 비교분석(96/09)

문12) 귀하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전문가('96) (N=727) |
|------------|-----------------------|---------------------|
| ----- | ----- | ----- |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9.9 ↘ 63.9 | 14.0 ↘ 79.3 |
| 대충 읽는다 | 54.0 ↘ | 65.3 ↘ |
| 별로 읽지 않는다 | 30.2 ↘ 36.1 | 20.8 ↘ 20.8 |
| 전혀 읽지 않는다 | 6.0 ↘ | - ↘ |
| ----- | ----- | ----- |
| 계 | 100.0 | 100.0 |

- 계약서 숙지정도와 관련하여 1996년도에 비해 ‘읽는다(자세히+대충)’는 응답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9.3% → 63.9%).

【그림-34】 계약서 숙지정도 비교(96/09)



3.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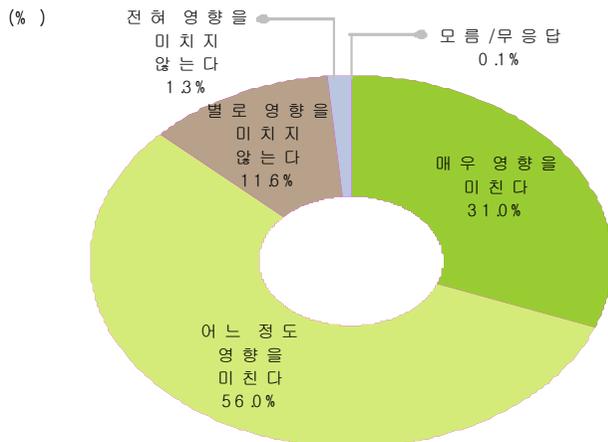
문16) 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영향을 미친다 | 31.0 ↗ 87.0 |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6.1 ↘ |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6 ↗ 12.9 |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3 ↘ |
| 모름/ 무응답 | 0.1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87.0%)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림-35】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이것은 전술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사항, 즉 사법불신이나 법집행과정에서의 편향성 등의 문제로서, 조사결과로부터 법의 잣대를 돈이나 재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 즉 금전적 과다에 좌우되는 사법정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선변호인제도,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법조비리의 예방을 위한 법조윤리교육의 철저, 기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권력/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85.3%)보다 여자집단(94.2%)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일수록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21】 특성별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구분 | 사례수 | ① 매우 영향을 미친다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①+②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체 | 1,008 | 31.0 | 56.1 | 87.0 | 11.6 | 1.3 | 12.9 | 0.1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30.4 | 54.9 | 85.3 | 13.2 | 1.3 | 14.5 | 0.1 | 100.0 |
| 여자 | 190 | 33.2 | 61.1 | 94.2 ↑ | 4.7 | 1.1 | 5.8 | -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199 | 45.7 | 49.2 | 95.0 | 4.5 | 0.5 | 5.0 | - | 100.0 |
| 행정 | 253 | 39.5 | 54.9 | 94.5 | 5.1 | - | 5.1 | 0.4 | 100.0 |
| 사법 | 304 | 12.2 | 61.2 | 73.4 ↓ | 23.4 | 3.3 | 26.6 | - | 100.0 |
| 학계 | 252 | 33.3 | 56.3 | 89.7 | 9.5 | 0.8 | 10.3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48.2 | 45.6 | 93.8 ↑ | 6.2 | - | 6.2 | - | 100.0 |
| 중도 | 568 | 26.9 | 59.0 | 85.9 | 12.5 | 1.6 | 14.1 | - | 100.0 |
| 보수 | 207 | 23.7 | 58.9 | 82.6 | 15.0 | 1.9 | 16.9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71.4 | 85.7 | 14.3 | - | 14.3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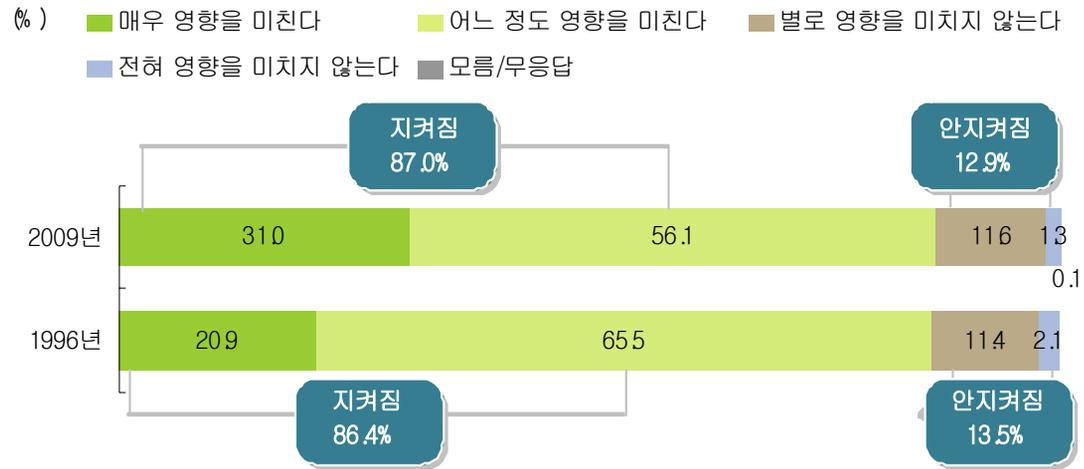
(3) 비교분석(96/09)

문16) 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2009 (N=1,008) | 1996 (N=797) |
|----------------|--------------------|--------------------|
| 매우 영향을 미친다 | 31.0 ↗ 87.0 | 20.9 ↗ 86.4 |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6.1 ↓ | 65.5 ↓ |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6 ↘ 12.9 | 11.4 ↘ 13.5 |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3 ↓ | 2.1 ↓ |
| 모름/ 무응답 | 0.1 | - |
| 계 | 100.0 | 100.0 |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9년 조사와 1996년조사 결과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86.4% → 87.0%), 이로부터 여전히 사법불신 등의 풍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6】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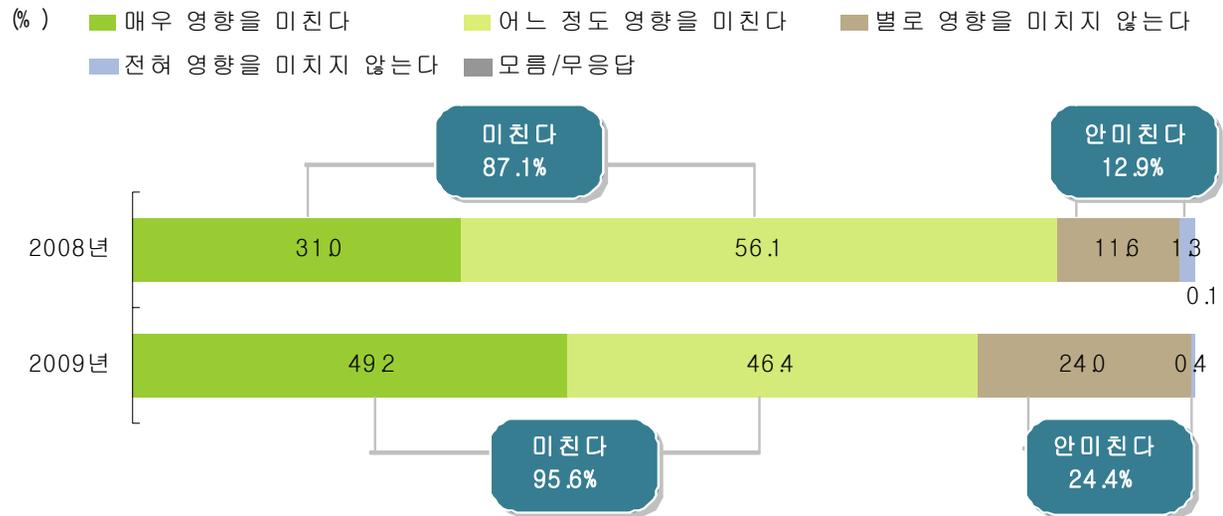
(4) 비교분석(일반/전문가)

문16) 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영향을 미친다 | 31.0 ↘ 87.0 | 49.2 ↘ 95.6 |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56.1 ↘ | 46.4 ↘ |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6 ↘ 12.9 | 24 ↘ 24.4 |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3 ↘ | 0.4 ↘ |
| 모름/무응답 | 0.1 | - |
| 계 | 100.0 | 100.0 |

-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7.0%, 95.6%).

【그림-37】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일반/전문)



4.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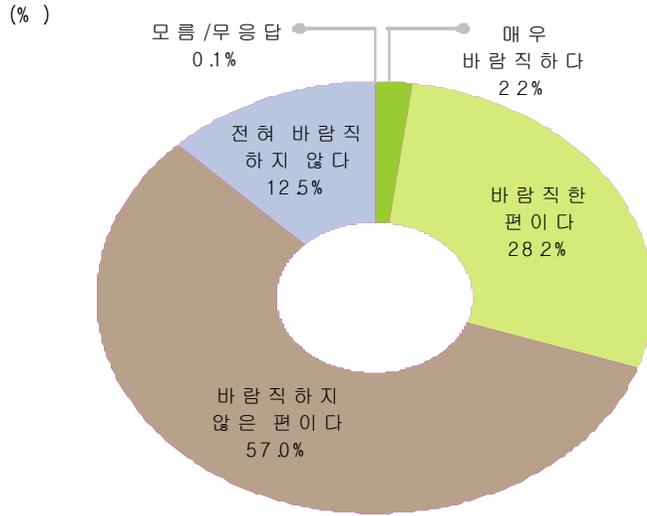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바람직하다 | 2.2 \uparrow 30.4 |
| 바람직한 편이다 | 28.2 \downarrow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57.0 \uparrow 69.5 |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2.5 \downarrow |
| 모름/ 무응답 | 0.1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10명중 7명이 ‘바람직하지 않다’(69.5%)고 응답했다.

【그림-38】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제103조)의 중요한 내용으로
는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압력단체들에 의한 법원의 재판기능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의 독립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기능은 법원 외부의 국
가기관이나 여론에 기초한 각종 압력단체로부터 오는 간섭으로부
터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²⁹⁾ 이와 같이 재판의 독립이 요청됨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것 등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여론이다.
- 특정한 사건이 사회전체에 중요한 의미나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
언론과 사회구성원은 이 사건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갖게 되며,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성격규정과 판사 등 사건처리 당사자적
입장에서 사건구성과 사건재판을 개인적 심리과정이나 사회담론적
상황 속에서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29)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1084면 참조.

사건관련성에 관한 태도와 사회담론을 촉발·유도·정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보도이다.³⁰⁾ 이로부터 국민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보도의 보도구성양식과 사건판단방식이 그대로 일반국민이 사건을 조망·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언론보도의 사건보도양식과 사건판단양식은 사람과 사건의 중대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적합한 화술양식일 수 있지만, 사건에 관여된 행위와 인과관계의 분석, 행위와 법조문의 상응성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죄적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양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 재판은 법을 저울로 하여 사건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활동과정으로서 법을 비롯한 도덕적·사회적 판단기준이 음양으로 개입되며, 특히 반인륜적 범죄나 성관련범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사회적 여론에 기초한 언론보도가 구조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소지 내지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재판 전이나 재판과정에서 사건 및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³¹⁾ 물론 미국의 사법제도 하에서의 언론이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하에서의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0) 최상진·김기범,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사회문제 제5권 제1호(1999), 142-143면 참조. 이하 이 절에서는 특별하게 명기하지 않는 한, 이 논문을 참조로 하였다.

31) 이로부터 미국에서는 재판에 계류되었거나 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능한 한 억제·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미국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재판에 관계된 보도의 억제와 상반되는 원리로서 갈등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0.4%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재판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판이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 언론보도에 대한 방지·억제대책을 법체계에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제적 대처방법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이로부터 사법부가 스스로 언론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방어하는 내부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재판의 절차적 정의, 재판활동의 투명화와 탈권위주의화,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 사법부 자체의 내적 정의실현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사법에 대한 불신이나 거리감 해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 따라서 조사결과는 사회정의의 수호자이자 법전문가라는 재판관, 나아가 재판·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국민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집단(71.0%)에서, 직업분류별로는 사법기관(81.3%)에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집단(82.6%)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직업분류별로는 입법기관(50.3%),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집단(54.0%)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특성별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한 편이다 | ①+② | ③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2.2 | 28.2 | 30.4 | 57.0 | 12.5 | 69.5 | 0.1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2.6 | 26.4 | 29.0 | 57.8 | 13.2 | 71.0 ↑ | - | 100.0 |
| 여 자 | 190 | 0.5 | 35.8 | 36.3 | 53.7 | 9.5 | 63.2 | 0.5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3.0 | 46.7 | 49.7 | 44.2 | 6.0 | 50.3 ↓ | - | 100.0 |
| 행 정 | 253 | 2.8 | 35.6 | 38.3 | 54.9 | 6.7 | 61.7 | - | 100.0 |
| 사 법 | 304 | 2.0 | 16.8 | 18.8 | 63.2 | 18.1 | 81.3 ↑ | - | 100.0 |
| 학 계 | 252 | 1.2 | 19.8 | 21.0 | 61.9 | 16.7 | 78.6 | 0.4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3.5 | 42.0 | 45.6 | 46.9 | 7.1 | 54.0 ↓ | 0.4 | 100.0 |
| 중 도 | 568 | 1.9 | 27.1 | 29.0 | 60.2 | 10.7 | 71.0 | - | 100.0 |
| 보 수 | 207 | 1.4 | 15.9 | 17.4 | 59.4 | 23.2 | 82.6 ↑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28.6 | 28.6 | 57.1 | 14.3 | 71.4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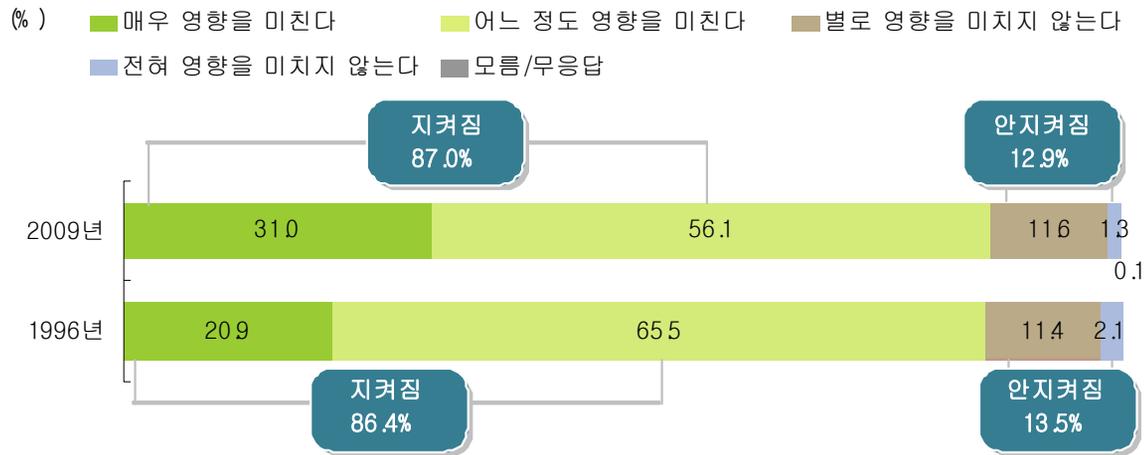
(3) 비교분석(96/09)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2009 (N=1,008) | 1996 (N=797) |
|--------------|--------------------|-----------------|
| 매우 바람직하다 | 2.2 ↘ 30.4 | - ↘ 19.5 |
| 바람직한 편이다 | 28.2 ↘ | -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57.0 ↘ 69.5 | - ↘ 79.5 |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2.5 ↘ | - ↘ |
| 모름/ 무응답 | 0.1 | - |
| 계 | 100.0 | 100.0 |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96년도 조사(79.5%)에 비해 다소 낮아진 69.5%로 나타났다.

【그림-39】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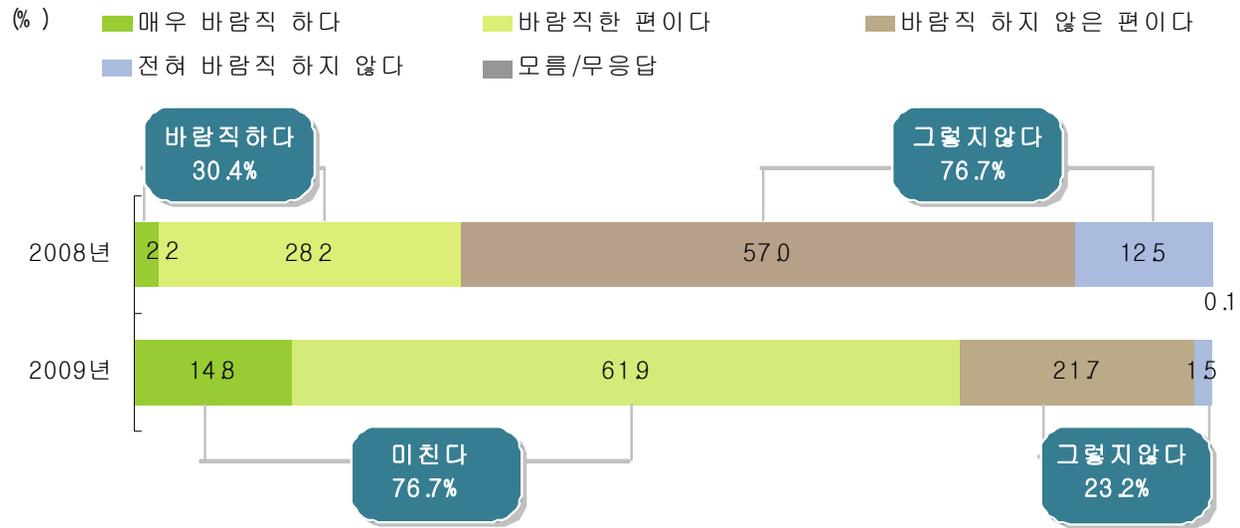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바람직하다 | 2.2 ↘ 30.4 | 14.8 ↘ 76.7 |
| 바람직한 편이다 | 28.2 ↘ | 61.9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 57.0 ↘ 69.5 | 21.7 ↘ 23.2 |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2.5 ↘ | 1.5 ↘ |
| 모름/무응답 | 0.1 | - |
| 계 | 100.0 | 100.0 |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법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전문가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69.5%)는 의견이, 일반국민의 경우 ‘바람직하다’(76.7%)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0】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일반/전문)



제 4 절 안전사회와 범죄퇴치

1. 시급퇴치 범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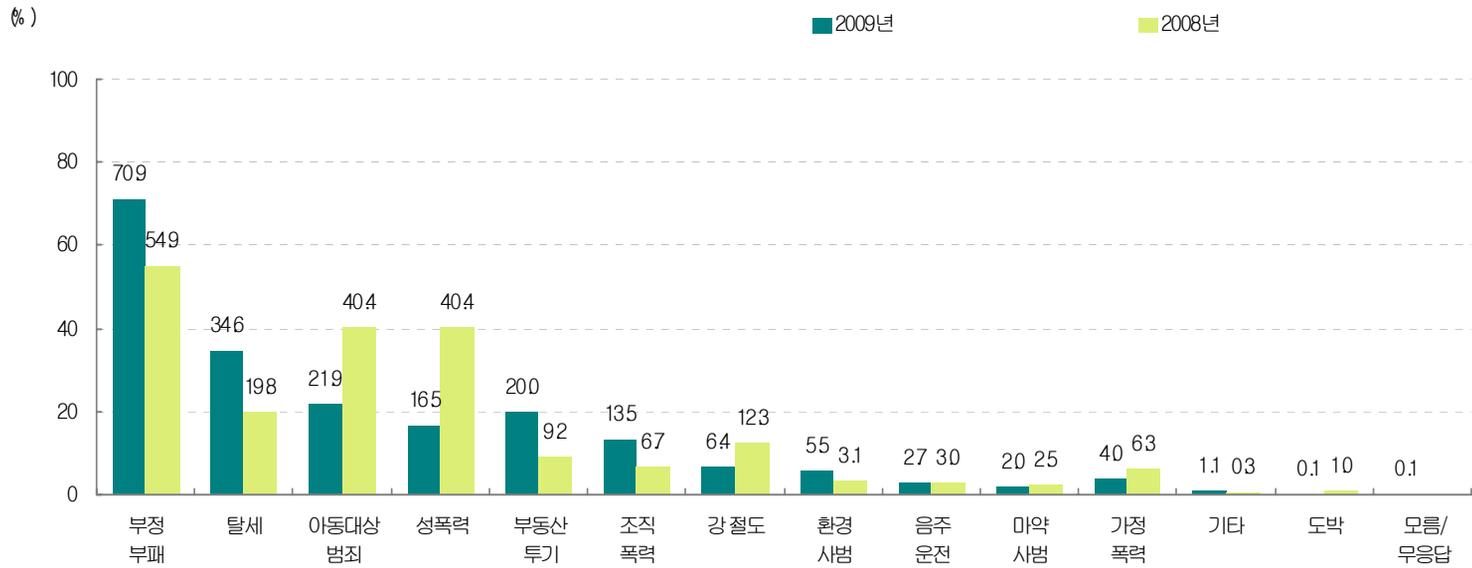
문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결 과 | 가장 % | 중복 % |
|------------|---------|---------|
| 부정부패 | 59.2 | 70.9 |
| 탈세 | 9.8 | 34.6 |
| 아동 대상범죄 | 8.8 | 21.9 |
| 부동산투기 | 6.5 | 20.0 |
| 성폭력 | 6.9 | 16.5 |
| 조직폭력 | 3.4 | 13.5 |
| 강·절도 | 2.1 | 6.4 |
| 환경사범 | 0.9 | 5.5 |
| 가정폭력 | 0.3 | 4.0 |
| 음주운전 | 0.9 | 2.7 |
| 마약사범 | 0.7 | 2.0 |
| 기타 | 0.3 | 1.1 |
| 도박 | - | 0.1 |
| 모름/ 무응답 | 0.1 | 0.1 |
| 계(N=1,008) | 100.0 | (중복응답) |

(1) 전체분석

-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에 대하여, ‘부정부패’ (70.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세’ 또한 34.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중복 응답 기준).

【그림-41】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탈세는 모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탈세는 넓은 의미의 부정부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부정부패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인 반면, 탈세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을 1순위로 지적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와 사후척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공직부패란 일반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권력의 남용”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부패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공직부패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민간부패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부패개념을 형법적으로 전환해보면, 공직부패의 경우에는 수뢰죄, 증뢰죄,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나타나고, 민간부패의 경우에는 횡령죄, 배임죄, 탈세 등으로 발현된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7년 180개국 중에서 세계 43위, 뇌물공여지수는 2006년 22위 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민간부패 뿐만 아니라 공직과 관련한 부패의 척결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직부패는 특정 분야에서 만연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는 그 업무의 특성상 대민접촉이 많거나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예컨대 세무, 식품위생, 건축, 소방, 경찰, 병무 등과 관련한 행정영역에서 공직 부패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다만, 부패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이해되고 있다. 부패범죄의 경우, 예컨대 뇌물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자도 증뢰죄와 수뢰죄가 되어 결국 아무런 피해자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부패범죄는 그 자체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특성에 더하여 그것을 적발하여 처벌까지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부패범죄는 그에 대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부패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집단이 ‘부정부패’와 ‘탈세’가 가장 시급히 퇴치되어야 할 범죄라고 지적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대응책과 사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적인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공직체계 또는 시민사회에서 부패 없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공직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나 비리철폐에 의한 내사 등과 같은 공직내부의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편, 부패에 대한 사후적 대응책으로는 부패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이 요구된다. 흔히 부패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부패범죄가 주로 고위공직자나 민간기업의 고위직급군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패범죄로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범죄라고 할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정

형이 징역 3년 이상 및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이 80% 이상이 이르고 있다.

-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관대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공무원조직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범죄 척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히 공직체계에서는 내부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부패범죄를 엄격히 수사하여 소추함으로써 “부패행위는 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인상을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에 대하여 ‘부정부패’와 ‘탈세’가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로 여겨지는 가운데, 직업별로 ‘부정부패’는 검사집단(87.5%)에서, ‘탈세’는 중앙직 공무원집단(4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위 2개를 제외한 그 다음 순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와 ‘조직폭력’은 남자집단에서, ‘아동대상범죄’와 ‘성폭력’은 여자집단에서 좀더 높게 나타났다.

【표-23】 특성별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

| 구 분 | 사례수 | 부정부패 | 탈세 | 아동대상범죄 | 부동산투기 | 성폭력 | 조직폭력 | 강·절도 | 환경사범 |
|------------------|--------------|---------------|---------------|---------------|-------------|---------------|---------------|------------|------------|
| 전 체 | 1,008 | 70.9 | 34.6 | 21.9 | 20.0 | 16.5 | 13.5 | 6.4 | 5.5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71.0 | 34.7 | 19.3 | 21.1 | 14.5 | 16.0 ↑ | 6.5 | 6.0 |
| 여 자 | 190 | 70.5 | 34.2 | 33.2 ↑ | 15.3 | 24.7 ↑ | 2.6 | 6.3 | 3.2 |
| ▣ 직 업 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64.7 | 37.3 | 31.3 | 16.7 | 21.3 | 10.7 | 8.0 | 3.3 |
| 국회 의원 | 49 | 67.3 | 24.5 | 36.7 | 8.2 | 26.5 | 8.2 | 4.1 | 8.2 |
| 중앙직공무원 | 203 | 52.2 | 41.9 ↑ | 20.7 | 22.2 | 19.2 | 16.7 | 7.9 | 7.4 |
| 지방직공무원 | 50 | 70.0 | 28.0 | 30.0 | 18.0 | 10.0 | 20.0 | 6.0 | 8.0 |
| 판 사 | 46 | 82.6 | 32.6 | 21.7 | 19.6 | 13.0 | 13.0 | 2.2 | 4.3 |
| 검 사 | 56 | 87.5 ↑ | 25.0 | 16.1 | 26.8 | 1.8 | 25.0 | 7.1 | 1.8 |
| 변 호 사 | 101 | 77.2 | 26.7 | 16.8 | 24.8 | 17.8 | 13.9 | 4.0 | 5.9 |
| 사법연수원생 | 101 | 71.3 | 39.6 | 17.8 | 18.8 | 27.7 | 5.9 | 5.9 | 5.0 |
| 대학 교수 | 202 | 83.2 | 34.7 | 16.3 | 21.3 | 7.4 | 14.9 | 6.9 | 4.5 |
| 박사 과정 | 50 | 78.0 | 32.0 | 24.0 | 16.0 | 18.0 | 4.0 | 6.0 | 8.0 |

(3) 비교분석(일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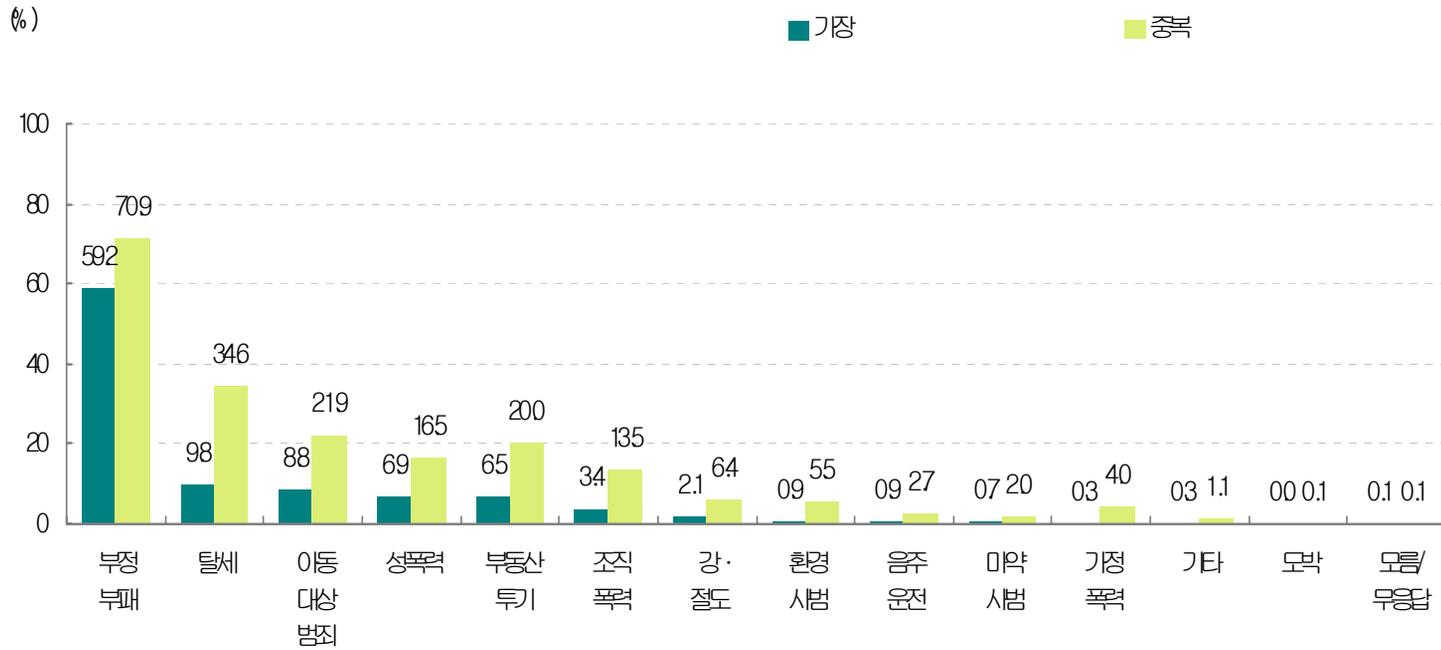
문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부정부패 | 70.9 | 54.9 |
| 탈세 | 34.6 | 19.8 |
| 아동 대상범죄 | 21.9 | 40.4 |
| 부동산투기 | 20.0 | 9.2 |
| 성폭력 | 16.5 | 40.4 |
| 조직폭력 | 13.5 | 6.7 |
| 강·절도 | 6.4 | 12.3 |
| 환경사범 | 5.5 | 3.1 |
| 가정폭력 | 4.0 | 6.3 |
| 음주운전 | 2.7 | 3.0 |
| 마약사범 | 2.0 | 2.5 |
| 기타 | 1.1 | 0.3 |
| 도박 | 0.1 | 1.0 |
| 모름/ 무응답 | 0.1 | - |
| 계 | (중복응답) | (중복응답) |

-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70.9%, 54.9%). 그다음으로는 법전문가의 경우 ‘탈세’(34.6%)를, 일반국민의 경우 ‘아동 대상범죄’(40.4%)와 ‘성폭력’(40.4%)을 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범죄로 꼽았다.

- 일반국민의 경우 ‘아동대상범죄’나 ‘성폭력’을 탈세 다음으로 꼽고 있는 것은 최근 성폭행으로 아동에게 치유가 불가능한 장애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아동성범죄에 일반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기간의 연장,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공소시효의 연장, 신상정보의 공개 확대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론재판이나 이중처벌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이후 피해아동의 상처는 치유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중요하고, 또한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서는 법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안전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점과 법정정책방향성 도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4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비교(일반/전문)



(4) 정성조사

-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에 대해 부문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 행정부문과 사법부문에서는 ‘부정부패’를, 입법부문에서는 ‘아동성폭력 등 죄질나쁜 범죄’를, 학계에서는 ‘상습화 가능성 높은 범죄’를 각각 꼽았다.
-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으로 ‘부정부패’(70.9%)와 ‘탈세’(34.6%)가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아동대상범죄’(21.9%)와 ‘성폭력’(16.5%)으로 응답된 바 있고, 이것은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로서 법전문가의 인식 상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는 ‘부정부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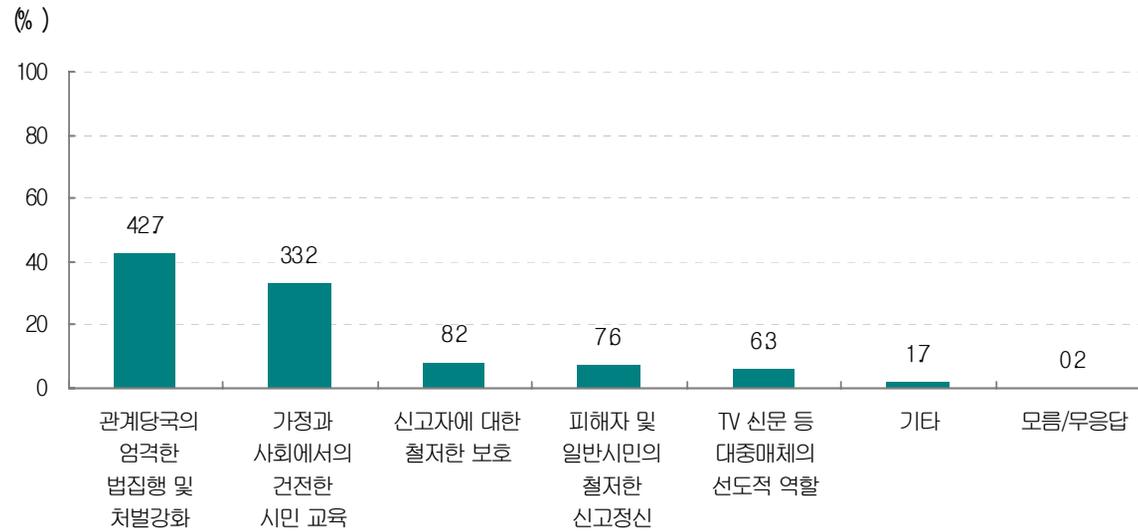
문10)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42.7 |
|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33.2 |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8.2 |
|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7.6 |
|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3 |
| 기타 | 1.7 |
| 모름/ 무응답 | 0.2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42.7%)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림-43】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이번 설문조사에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가 42.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이 33.2%로 나타났으며, 이 두가지의 응답률을 합산하면 총 75.9%가 된다.
- 이로부터 범죄퇴치를 위한 급선무가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의 강화’ 및 ‘건전한 시민교육’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범죄행위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사회의 불안전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한편, 범죄 없는 사회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구성원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교육·계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범죄학에서는 1차적 예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3차적 예방이라 한다.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교육과 계몽 등을 통한 1차적 예방,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등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범죄위험원을 감시하는 2차적 예방, 범죄가 발생한 이후 엄격한 법집행과 그 처벌을 확보하는 3차적 예방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법질서의 확립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법질서의 확립은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범죄와의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법적용에 있어서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그 실천원리로서의 평등원칙을 고려해 보면,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죄판결 및 당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기관이 정치적 외압 등에 따라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의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민의 인권의식이 고양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한 의견표현의 기회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나타나 법질서 확립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능동적인 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법질서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EF)은 2008년 3월 12일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매일경제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제1회 법질서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법치시스템 순위는 26위로 카타르(16위), 말레이시아(20위)보다 낮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 이와 같이 법치시스템 평가점수를 포함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1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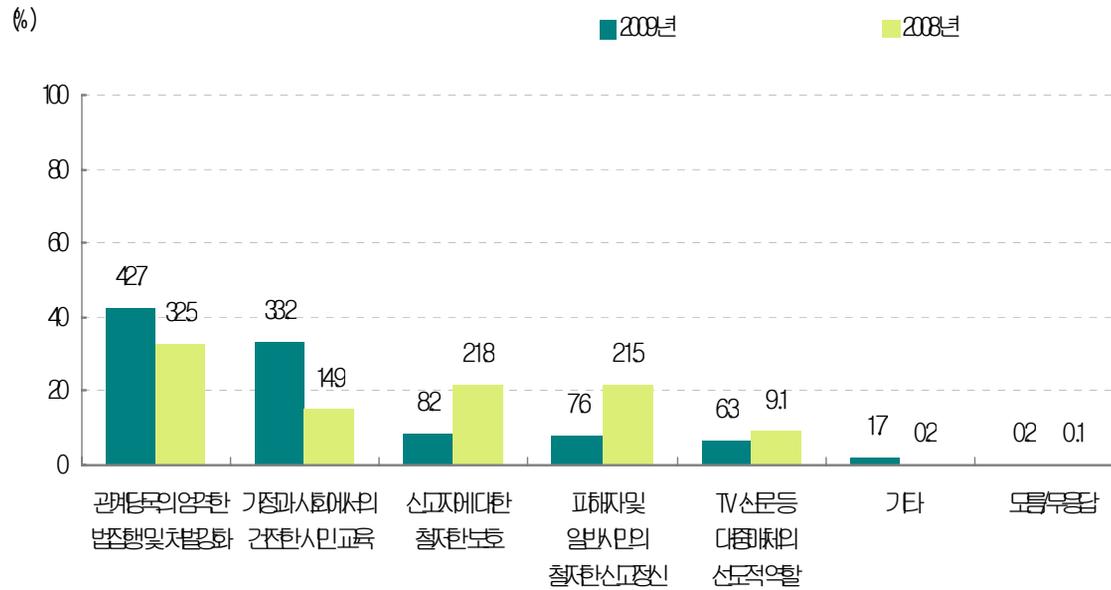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0)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42.7 | 32.5 |
|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33.2 | 14.9 |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8.2 | 21.8 |
|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7.6 | 21.5 |
|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3 | 9.1 |
| 기타 | 1.7 | 0.2 |
| 모름/무응답 | 0.2 | 0.1 |
| 계 | 100.0 | 100.0 |

-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42.7%, 32.5%)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법전문가의 경우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33.2%)을, 일반국민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를 그 다음으로 들었다.

【그림-44】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비교(일반/전문)



(3) 정성조사

- 참석자의 다수가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어려서부터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현실에 맞는 법 정비와 공정한 법집행, 폭력적 표현물 규제 등의 세부적인 의견도 제기되었음
- 정량조사에서는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라는 의견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이 33.2%로 뒤를 이었다(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응답자가 보수적인 경우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라는 응답이 53.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정량조사에서는 현상에 대한 대처라는 측면을, 정성조사에서는 근본적인 감소대책을 각각 높게 평가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제 5 절 법교육과 학교폭력

1.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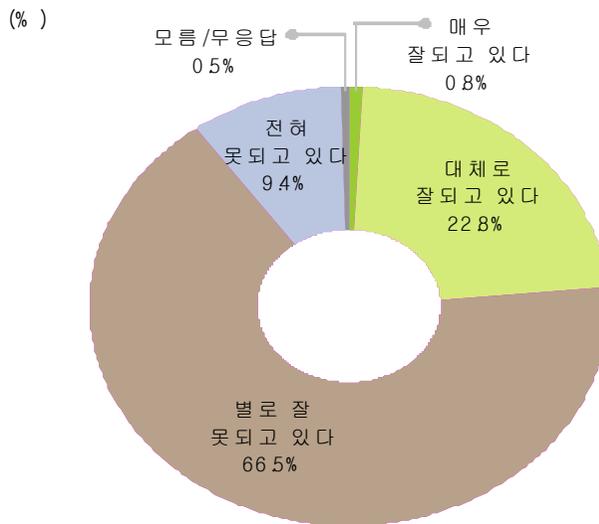
문13)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잘되고 있다 | 0.8 |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22.8 |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66.5 |
| 전혀 못 되고 있다 | 9.4 |
| 모름/ 무응답 | 0.5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학교에서의 법교육 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못 되고 있다’는 응답이 4명중 3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5】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이와 같이 응답자의 75.9%가 초·중·고교 법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법교육의 내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법치주의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거나 ‘폐법’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사회적 갈등은 법적 잣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³²⁾ 여기에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의 건전한 법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32) 성낙인,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2008), 125면 참조.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법치국가의 정립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법교육의 정립시대가 도래하였다. 즉, 2005년 법무부에 법교육연구위원회³³⁾가 설립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법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화두로 제기되었으며, 2006년부터 정부는 국가적 과업의 하나로 법무부업무로서 법교육 항목이 채택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교육지원법이 성립됨으로써 국가적 법률 어젠더로 자리 잡게 되었고, 기구의 체계화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그리고 민간차원의 법교육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재단’ 내의 법교육센터, 한국법교육학회 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 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의미의 법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것을 체계화·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의나 주장만을 통해서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법교육 지원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등의 다양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특성별 분석

- 초중고교의 법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못 되고 있다’(82.1%)는 의견은 학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법교육연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법원, 변호사회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구 정립되었다.

34) 윤일중,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방향,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2008), 165-191면 참조.

【표-24】 특성별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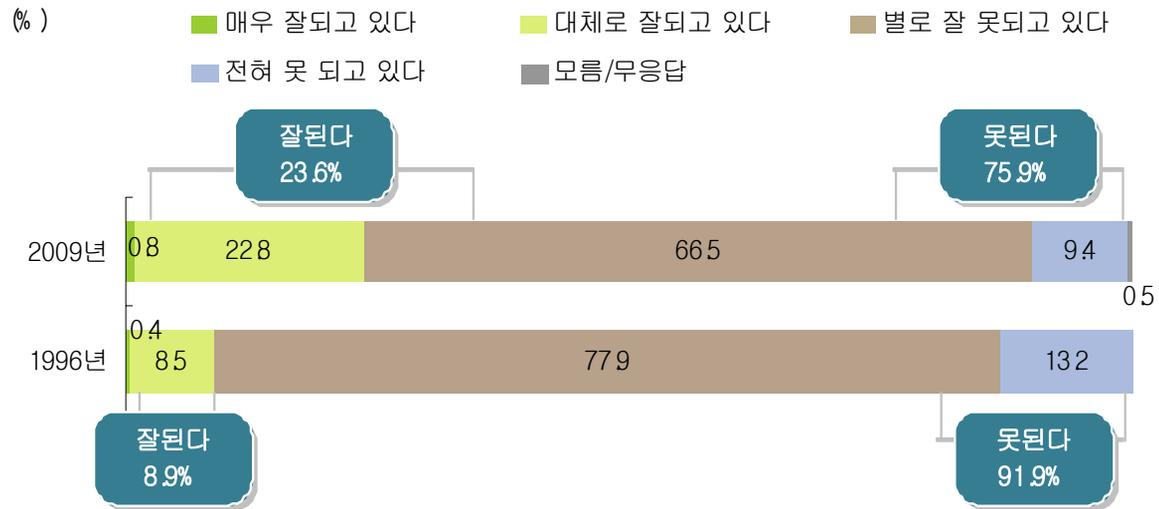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잘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되고 있다 | ①+② | ③ 별로 잘 못 되고 있다 | ④ 전혀 못 되고 있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0.8 | 22.8 | 23.6 | 66.5 | 9.4 | 75.9 | 0.5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0.5 | 18.6 | 19.1 | 68.3 | 12.1 | 80.4 | 0.5 | 100.0 |
| 행 정 | 253 | 0.4 | 28.5 | 28.9 | 63.2 | 7.9 | 71.1 | - | 100.0 |
| 사 법 | 304 | 1.3 | 26.3 | 27.6 | 66.4 | 5.3 | 71.7 | 0.7 | 100.0 |
| 학 계 | 252 | 0.8 | 16.3 | 17.1 | 68.3 | 13.9 | 82.1 ↑ | 0.8 | 100.0 |

(3) 비교분석(96/09)

| 결 과 | 2009 (N=1,008) | 1996 (N=797) |
|-------------|--------------------|--------------------|
| 매우 잘되고 있다 | 0.8 ↘ 23.6 | 0.4 ↘ 8.9 |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22.8 ↘ | 8.5 ↘ |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66.5 ↘ 75.9 | 77.9 ↘ 91.1 |
| 전혀 못 되고 있다 | 9.4 ↘ | 13.2 ↘ |
| 모름/ 무응답 | 0.5 | - |
| 계 | 100.0 | 100.0 |

- 초중고교의 법교육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2009년조사에는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23.6%로 1996년조사(8.9%)에서보다 법교육 실태에 대한 의견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6】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비교(96/09)



-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법교육지원법에 의한 각종 지원체계의 정비, 민간단체에서의 법교육 실시 등,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헌법교육’의 실시 등으로 법교육의 현실적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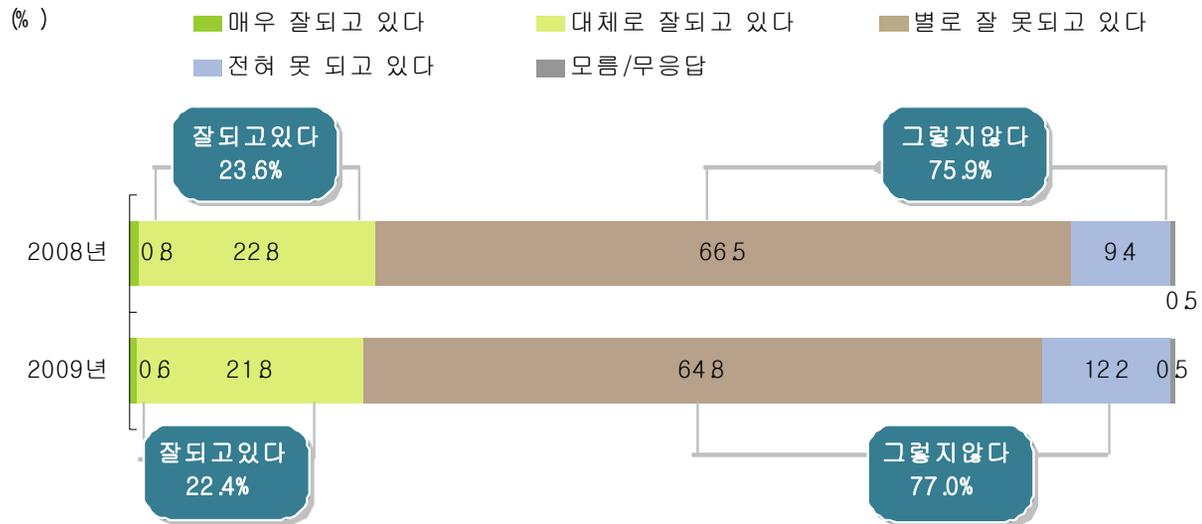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3)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매우 잘되고 있다 | 0.8 ↘ 23.6 | 0.6 ↘ 22.4 |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22.8 ↘ | 21.8 ↘ |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66.5 ↘ 75.9 | 64.8 ↘ 77.0 |
| 전혀 못 되고 있다 | 9.4 ↘ | 12.2 ↘ |
| 모름/무응답 | 0.5 | 0.5 |
| 계 | 100.0 | 100.0 |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에 대해서,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잘 못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75.9%, 77.9%).

【그림-47】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비교(일반/전문)



2. 법교육 중점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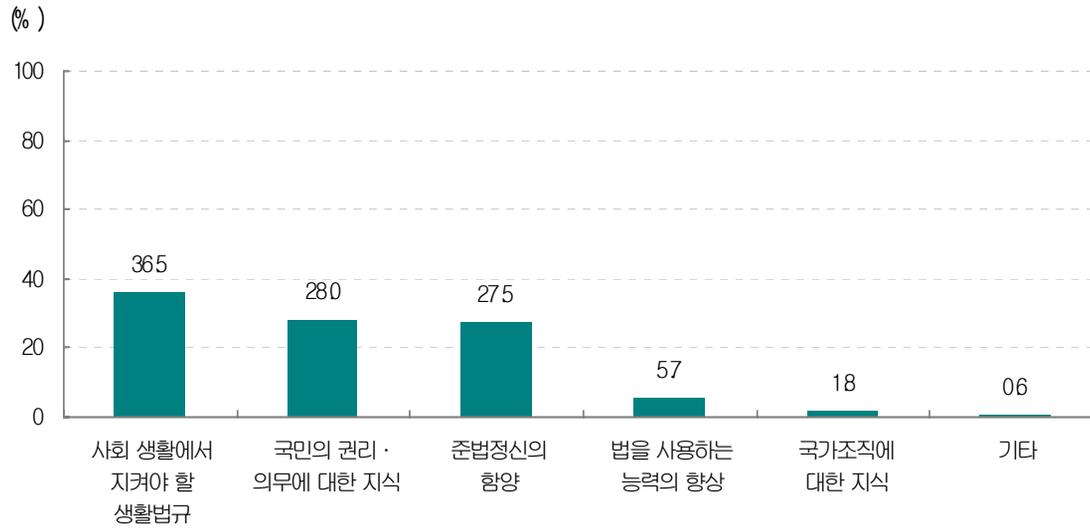
문14) 귀하는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6.5 |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 28.0 |
| 준법정신의 함양 | 27.5 |
|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5.7 |
|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1.8 |
| 기타 | 0.6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6.5%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28.0%)과 ‘준법정신 함양’(27.5%)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림-48】 법교육 중점부문



- 이와 같이 법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36.5%)로 나타난 것은 실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그 외의 대부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28.0%)과 ‘준법정신 함양’(27.5%),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1.8%)로 나타나 헌법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종래 헌법교육은 대학의 정규교과목 이외에는 따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87년 헌법체제의 전개에 따라 민주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이 불출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빈번해 지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으로써 헌법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³⁵⁾
- 최근 헌법교육은 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져 왔고,³⁶⁾ 그 성과가 기대되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교과목은 물론 일반국민, 나아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헌법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 이 실태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초·중·고교에서의 법교육에서도 그 우선순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최근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초·중·고교 학생들이 단순히 피교육자가 아니라 직접 촛불의 점화자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즉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

35) 성낙인, 전개논문, 134면 참조.

36)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례에 대하여는 김대화·박 훈,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2008), 62-63면 참조.

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현상 등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³⁷⁾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이 가져올 사회적 함의 및 책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서의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혼재되어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헌법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법규 중심의 법교육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학 교육이 아닌 헌법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성문의 헌법전의 구조,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사, 국가기관의 구조와 기능, 인권 등의 기본권교육 등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법교육 중점분야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는 성별로는 남자집단(38.8%)에서, 직업별로는 공무원(중앙/지방)집단(47.8%, 44.0%)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집단(4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은 성별로는 여자(33.7%), 직업별로는 사법연수원생(44.6%),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집단(42.0%)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준법정신의 함양’은 직업별로는 검사집단(55.4%)에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집단(37.2%)에서 높게 나타났다.

37) 김대화·박 훈, 위의 논문, 75면.

【표-25】 특성별 법교육 중점부문

(%)

| 구 분 | 사례수 |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 준법 정신의 함양 |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국가 조직에 대한 지식 | 기타 | 계 |
|------------------|--------------|--------------------|------------------|---------------|----------------|--------------|------------|--------------|
| 전 체 | 1,008 | 36.5 | 28.0 | 27.5 | 5.7 | 1.8 | 0.6 | 100.0 |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818 | 38.8 ↑ | 26.7 | 27.0 | 5.1 | 1.8 | 0.6 | 100.0 |
| 여 자 | 190 | 26.8 | 33.7 ↑ | 29.5 | 7.9 | 1.6 | 0.5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26.7 | 40.0 | 22.7 | 10.0 | 0.7 | - | 100.0 |
| 국회 의원 | 49 | 26.5 | 32.7 | 26.5 | 8.2 | 4.1 | 2.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47.8 ↑ | 23.2 | 23.2 | 4.4 | 0.5 | 1.0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44.0 ↑ | 20.0 | 34.0 | - | 2.0 | - | 100.0 |
| 판 사 | 46 | 39.1 | 13.0 | 37.0 | 10.9 | - | - | 100.0 |
| 검 사 | 56 | 33.9 | 10.7 | 55.4 ↑ | - | - | - | 100.0 |
| 변 호 사 | 101 | 37.6 | 24.8 | 35.6 | 1.0 | - | 1.0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21.8 | 44.6 ↑ | 14.9 | 7.9 | 10.9 | - | 100.0 |
| 대학 교수 | 202 | 39.6 | 25.7 | 27.7 | 5.4 | 1.0 | 0.5 | 100.0 |
| 박사 과정 | 50 | 38.0 | 30.0 | 22.0 | 8.0 | - | 2.0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 보 | 226 | 28.8 | 42.0 ↑ | 18.6 | 6.2 | 2.7 | 1.8 | 100.0 |
| 중 도 | 568 | 40.1 ↑ | 24.8 | 27.5 | 6.2 | 1.1 | 0.4 | 100.0 |
| 보 수 | 207 | 35.7 | 20.3 | 37.2 ↑ | 3.9 | 2.9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57.1 | 28.6 | - | -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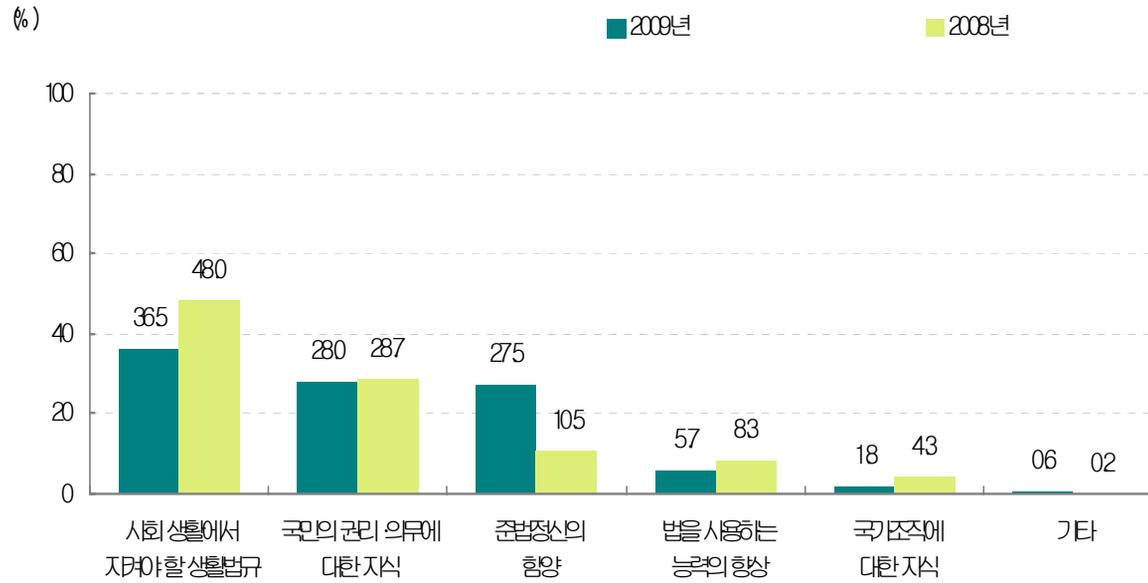
(3)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4) 귀하는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6.5 | 48.0 |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 28.0 | 28.7 |
| 준법정신의 함양 | 27.5 | 10.5 |
|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5.7 | 8.3 |
|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1.8 | 4.3 |
| 기타 | 0.6 | 0.2 |
| 계 | 100.0 | 100.0 |

- 법교육의 중점부분에 대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36.5%, 48.0%).

【그림-49】 법교육 중점부문 비교(일반/전문)



(4) 정성조사

- 중점을 두어야 할 법 교육으로는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교육’과 ‘법 개념에 대한 이해’를 들고 있으며, 또한 법교육 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량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응답들이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의견이 36.5%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28.0%)과 ‘준법정신 함양’(27.5%)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 이와 같이 정성조사에서 나타난 응답들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법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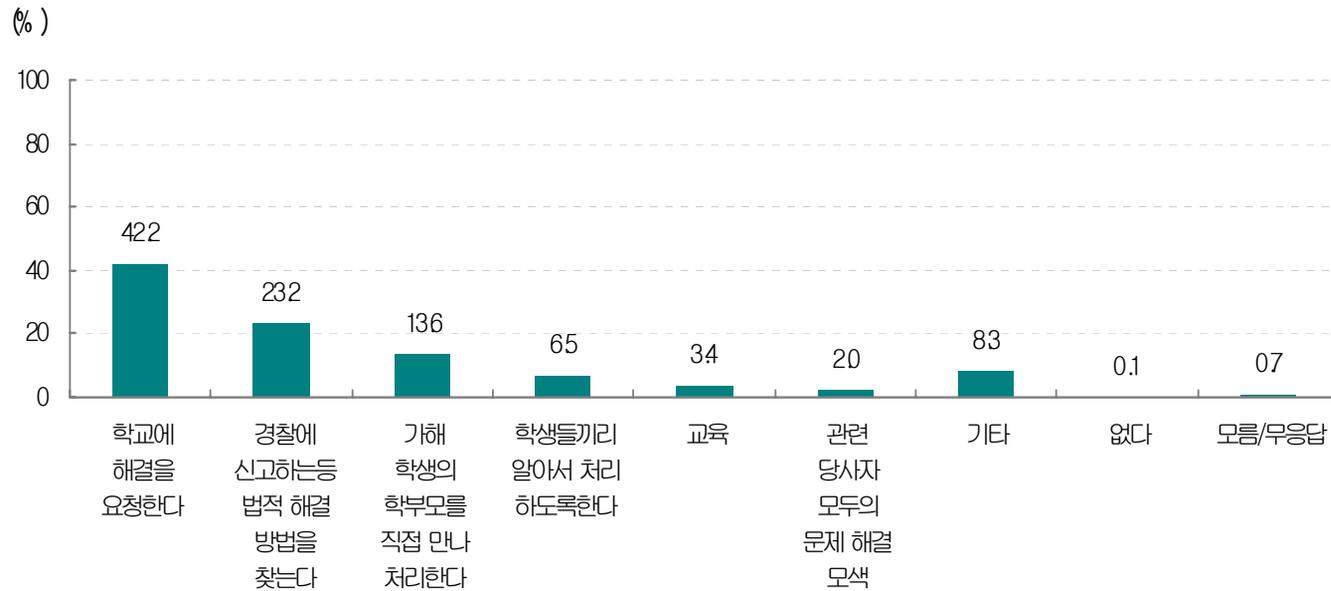
문15)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 42.2 |
|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 23.2 |
|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 13.6 |
|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 6.5 |
| 교육 | 3.4 |
|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해결 모색 | 2.0 |
| 기타 | 8.3 |
| 없다 | 0.1 |
| 모름/ 무응답 | 0.7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42.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의견이 2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0】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문제로 되고 있으며,³⁸⁾ 이 번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즉 범국가적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 최근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단따돌림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집단따돌림과 그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 이 번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해결방법으로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42.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미성숙이나 합리성의 결여에 따른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 때문인지 법적 해결방법(23.2%)보다 학교를 우선적 해결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의 해결은 학교에 해결요청(42.2%)→법적 해결(23.2%)→학부모간 직접해결(13.6%)→학생들끼리 처리(6.5%)→당사자 모두의 공동해결(2.0%)이라는 사이클로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당사자의 공동해결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집단따돌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 학생들 간에 해결할 문제, 학부모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학생의 인간적 권리의 동등성과 그들의 미성숙이나 합리성의 결여에 따른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재정립할

38) 2008년조사, 225-226면 참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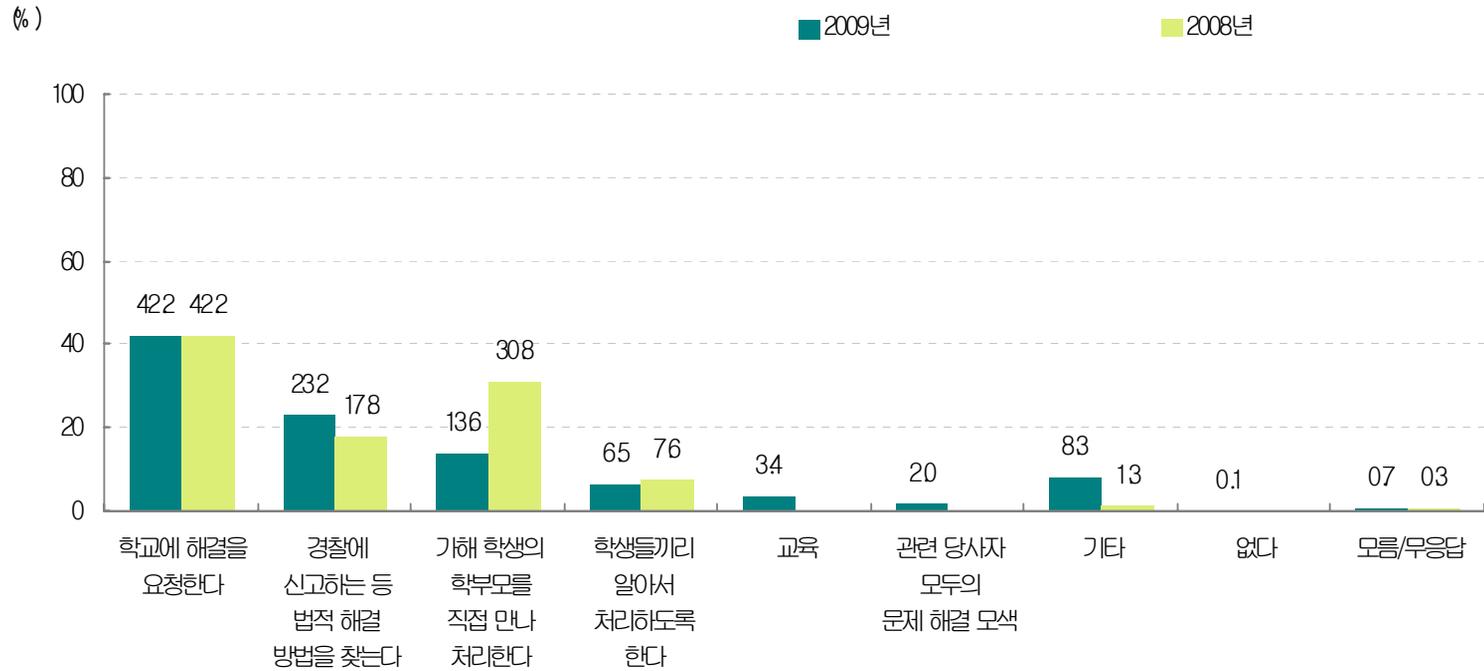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5)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전문가('09) (N=1,008) | 일반국민('08) (N=3,007) |
|-------------------------|-----------------------|------------------------|
|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 42.2 | 42.2 |
|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 23.2 | 17.8 |
|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 13.6 | 30.8 |
|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 6.5 | 7.6 |
| 교육 | 3.4 | - |
| 관련 당사자 모두의 문제 해결 모색 | 2.0 | - |
| 기타 | 8.3 | 1.3 |
| 없다 | 0.1 | - |
| 모름/무응답 | 0.7 | 0.3 |
| 계 | 100.0 | 100.0 |

- ‘학교내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학교에 해결 요청’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 해결방법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30.8%)하는 것을, 법전문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 모색’(23.2%)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51】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비교(일반/전문)



(3) 정성조사

- 학교 내 집단따돌림 해결방법으로는 ‘타인배려, 다름에 대한 포용 등 교육을 통한 교화’와 ‘학교에서의 관심과 관리감독’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 정량조사에서는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결방법으로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2.2%,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2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성조사에서는 예방차원에 주목한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에서는 후속대책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학교의 관리기능을 통한 해결’을 높게 꼽는다는 것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 4 장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제 1 절 개 관

법전문가의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를 묻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에 대한 법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현행법제 중 조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의성을 유지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2009년조사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보장,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안락사, 이종국적, 면책조건부진술제도, 영장항고제, 군가산점제도, 헌법개정, 국민참여재판제도, 법관평가제,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절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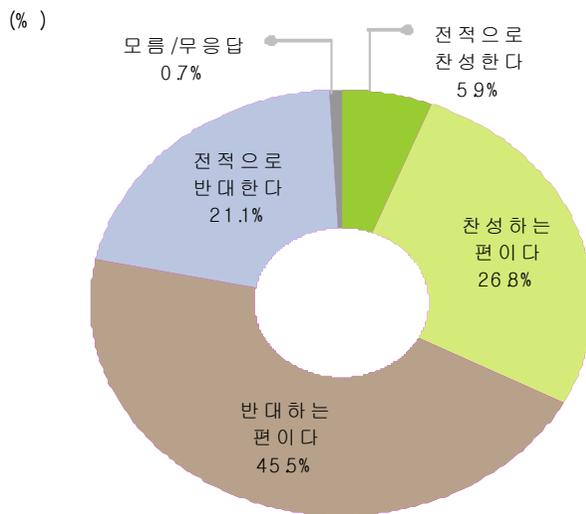
1. 의원내각제 개헌

|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 <대통령제→의원내각제> | |
| 결 과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5.9 |
| 찬성하는 편이다 | 26.8 |
| 반대하는 편이다 | 45.5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21.1 |
| 모름/ 무응답 | 0.7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반대한다’(66.7%)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52】 헌법개정(대통령제→의원내각제)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컨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및 국회출석·발언권,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투표제도,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국무회의의 설치 및 중요정책 심의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다양한 실험과 변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 적 환경에 고유한 제도, 즉 “한국식 대통령제”³⁹⁾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견해에는 통일을 대비하여 지역안배의 적절한 반영을 통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장기적 도입의견)과 제헌헌법부터 위에서 서술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익숙하고, 권력분립 및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의원내각제가 장점이 크다는 주장(단기적 도입의견)이 있다.⁴⁰⁾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통령제의 50년 이상의 경험에서 축적된 정치적 자산,⁴¹⁾ 정부형태 변경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정의 효율성과 정치적 책임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형태의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현실, 즉 헌법의식과 헌정운영의 경험 등에 관한 현실적·경험적 측면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⁴²⁾ 향후 헌법개정의 추진

39) 정종섭,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모델, 서울대학교 법학 제 43권 제3호(2002), 265면. 여기에서 정교수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대통령의 역할설정과 국정운영방식, 대통령의 참모들의 운용방식, 내각의 역할과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동계획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40)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8, 174면. 이하 이를 “헌자위보고서”라 하며, 여기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는 5%저지조항, 건설적 불신임제도, 양원제, 당적변경 문제, 수상독재화 견제 등이 있으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벤치마킹의 사례로 들고 있다. 헌위보고서, 199면.

41) 즉, 대통령제는 우리의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배척되기 보다는 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50여년간……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피와 땀으로 얻은 훌륭한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법학 제39권(2002), 107면.

42) 류시조, 헌법개정의 논의방향,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2006), 135-136면 참조.

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대통령제 개정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검사집단 (78.6%)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26】 특성별 헌법개정-대통령제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5.9 | 26.8 | 32.6 | 45.5 | 21.1 | 66.7 | 0.7 | 100.0 |
| ■ 직업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7 | 28.7 | 33.3 | 48.0 | 18.7 | 66.7 | - | 100.0 |
| 국회 의원 | 49 | 2.0 | 34.7 | 36.7 | 38.8 | 24.5 | 63.3 | -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6.4 | 26.1 | 32.5 | 47.8 | 18.2 | 66.0 | 1.5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10.0 | 24.0 | 34.0 | 44.0 | 22.0 | 66.0 | - | 100.0 |
| 판 사 | 46 | 2.2 | 23.9 | 26.1 | 58.7 | 13.0 | 71.7 | 2.2 | 100.0 |
| 검 사 | 56 | - | 21.4 | 21.4 | 42.9 | 35.7 | 78.6 ↑ | - | 100.0 |
| 변 호 사 | 101 | 6.9 | 30.7 | 37.6 | 42.6 | 19.8 | 62.4 | -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6.9 | 29.7 | 36.6 | 43.6 | 18.8 | 62.4 | 1.0 | 100.0 |
| 대학 교수 | 202 | 7.4 | 22.8 | 30.2 | 42.1 | 26.7 | 68.8 | 1.0 | 100.0 |
| 박사 과정 | 50 | 6.0 | 30.0 | 36.0 | 52.0 | 12.0 | 64.0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7.1 | 28.8 | 35.8 | 44.2 | 19.5 | 63.7 | 0.4 | 100.0 |
| 중 도 | 568 | 5.5 | 26.8 | 32.2 | 46.0 | 20.8 | 66.7 | 1.1 | 100.0 |
| 보 수 | 207 | 5.3 | 25.1 | 30.4 | 46.4 | 23.2 | 69.6 ↓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14.3 | 28.6 | 28.6 | 42.9 | 71.4 | - | 100.0 |

2. 4년중임제 개헌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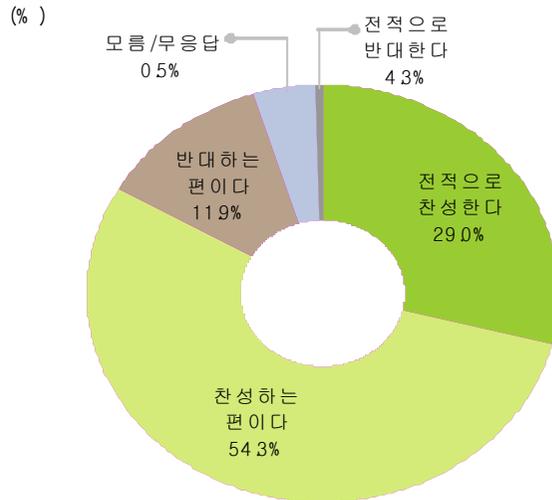
<5년단임제→4년중임제>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29.0 ▷ 83.3 |
| 찬성하는 편이다 | 54.4 ┘ |
| 반대하는 편이다 | 11.9 ▷ 16.2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4.3 ┘ |
| 모름/ 무응답 | 0.5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5년단임제에서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찬성한다’(83.3%)고 응답했다.

【그림-53】 헌법개정(5년단임제→4년중임제)



- 우리나라 헌법은 과거의 독재정치와 권위주의정치의 반성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70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8조 제2항).⁴³⁾
- 이러한 5년단임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대통령에 의한 정책의 영속성과 계속성 보장의 어려움,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봉쇄로 인한 책임정치의 부재 등이 그 한계로 인식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⁴⁴⁾

4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1987년 당시 헌법심의과정에서 제안되었던 6년단임(민정당안)과 4년1차중임안(민주당안)을 절충한 것으로서 1987년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44) 이에 대하여 단임제 옹호론자에 의하면, 단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 좌우되지 않고, 그의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5년단임제에 관한 찬반론에 대하여는 조재현,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18권 제4호(2008), 245-247면 참조.

- 이러한 5년단임제는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를 겪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지만,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장기집권을 막는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⁵⁾ 즉,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선의 위험을 그동안의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제로 하는 경우, 4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⁴⁷⁾
-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응답자의 83.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임제가 한 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성을 전혀 물을 수 없는 단임제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는 민주적 제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성별 분석

- 5년단임제 개정과 관련하여, 성별로는 남자집단(85.7%)에서 직업분류별로는 사법기관(87.2%)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45) 류시조, 헌법개정의 논의방향(전개), 138면.

46) 문광삼, 현행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공법연구 제34권 제1호(2005), 7면 이하 참조.

47) 즉, 민주주의가 이행을 넘어 공고화 단계에 이른 이제는 “장기집권의 망령”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4년중임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일영,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과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수정,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1호(2008), 88-89면.

【표-27】 특성별 헌법개정(5년단임제→4년중임제)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29.0 | 54.4 | 83.3 | 11.9 | 4.3 | 16.2 | 0.5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32.4 | 53.3 | 85.7 ↑ | 9.9 | 3.9 | 13.8 | 0.5 | 100.0 |
| 여 자 | 190 | 14.2 | 58.9 | 73.2 | 20.5 | 5.8 | 26.3 | 0.5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24.1 | 57.3 | 81.4 | 14.1 | 4.5 | 18.6 | - | 100.0 |
| 행 정 | 253 | 33.2 | 51.0 | 84.2 | 11.9 | 3.2 | 15.0 | 0.8 | 100.0 |
| 사 법 | 304 | 30.9 | 56.3 | 87.2 ↑ | 10.2 | 2.3 | 12.5 | 0.3 | 100.0 |
| 학 계 | 252 | 26.2 | 53.2 | 79.4 | 12.3 | 7.5 | 19.8 | 0.8 | 100.0 |

3. 절대다수대표제 개헌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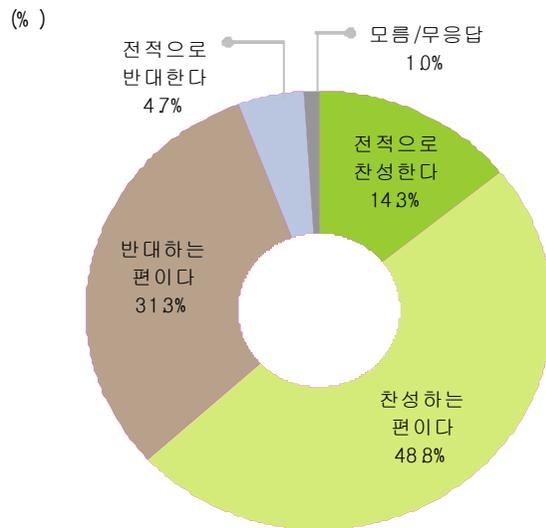
<상대다수대표제→절대다수대표제>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4.3 ⊃ 63.1 |
| 찬성하는 편이다 | 48.8 ⊃ |
| 반대하는 편이다 | 31.3 ⊃ 35.9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4.7 ⊃ |
| 모름/ 무응답 | 1.0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응답자의 10명중 6명이 ‘찬성한다’(63.1%)고 응답했다.

【그림-54】 헌법개정(상대다수대표제→절대다수대표제)



- 현행헌법(제67조 제1·2항) 및 공직선거법(제18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선거권자의 과반수는 물론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수로도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부터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 이후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득표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⁴⁸⁾

48)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3대 대통령선거(노태우 대통령)에서는 37%,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 대통령)에서는 42%,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대통령)에서는 40.3%,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대통령)에서는 47.8%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 이러한 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는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대통령은 다수의 대표자가 아니라 소수의 대표자, 즉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소수과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의 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으로부터 절대다수대표제로의 변경하고,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응답자의 63.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득표율로 인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불안정의 해소, 결선투표과정에서 정당간의 정책연합이 가능하여 대통령제가 가지는 승자독식의 폐해감소, 여소야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의 예방, 국회를 통한 간접선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통제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2) 특성별 분석

- 상대다수대표제 개정에 대해서, 직업분류별로는 입법기관(71.4%)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28】 특성별 헌법개정-상대다수대표제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4.3 | 48.8 | 63.1 | 31.3 | 4.7 | 35.9 | 1.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15.1 | 56.3 | 71.4 ↑ | 26.1 | 1.5 | 27.6 | 1.0 | 100.0 |
| 행 정 | 253 | 11.1 | 56.9 | 68.0 | 27.7 | 3.2 | 30.8 | 1.2 | 100.0 |
| 사 법 | 304 | 14.8 | 43.1 | 57.9 | 36.5 | 4.9 | 41.4 | 0.7 | 100.0 |
| 학 계 | 252 | 16.3 | 41.7 | 57.9 | 32.5 | 8.3 | 40.9 | 1.2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19.9 | 50.0 | 69.9 ↑ | 24.3 | 4.9 | 29.2 | 0.9 | 100.0 |
| 중 도 | 568 | 12.9 | 50.4 | 63.2 | 32.7 | 3.2 | 35.9 | 0.9 | 100.0 |
| 보 수 | 207 | 12.6 | 44.4 | 57.0 | 33.3 | 8.2 | 41.5 | 1.4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14.3 | 14.3 | 71.4 | 14.3 | 85.7 | - | 100.0 |

4. 부통령제 개헌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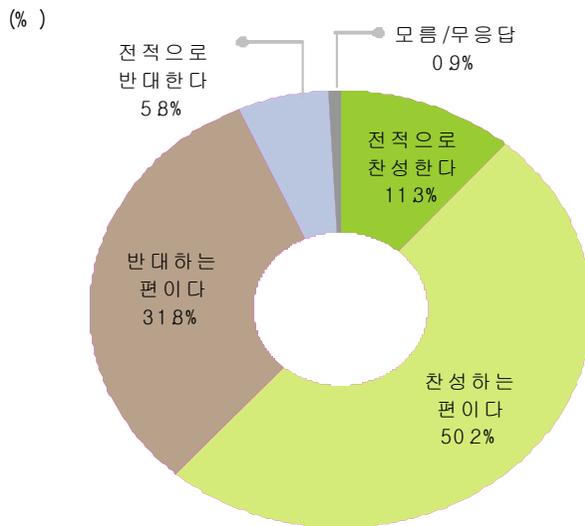
<국무총리제→부통령제>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1.3 ↘ 61.5 |
| 찬성하는 편이다 | 50.2 ↘ |
| 반대하는 편이다 | 31.8 ↘ 37.6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5.8 ↘ |
| 모름/ 무응답 | 0.9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응답자의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5】 헌법개정(국무총리제→부통령제)



-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가장 이질적이며 오히려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무총리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이후 1954년 개정헌법을 제외하고는 국무총리제를 채용하고 있다.⁴⁹⁾
- 국무총리제는 임시정부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헌법사 중에서 가장 익숙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종아리 맞는 아이’라든가 ‘대독

49) 우리 헌법상 부통령과 국무총리의 존재형태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 국무총리를 함께 둔 경우도 있었고, 국무총리를 두지 않고 미국헌법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둔 경우가 있었으며,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정중섭,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모델(전계), 274면.

총리' 또는 '얼굴마담'이나 '방탄총리' 등의 별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모호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⁵⁰⁾ 또한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인 각료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의 경우도 제대로 행사된 바가 없어 그 제도적 실효성도 문제로 되어 왔다.

- 이로부터 권력구조의 체계에 있어서 부통령제에 갈음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도로서 도입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라는 정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 스페어타이어'와 같은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개헌론이 주장되어 왔다. 즉, 대통령이 정치일선의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챙기고, 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도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책임제라는 정치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 이번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1.5%)이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부통령제로의 개헌에는 보다 많은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권력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통령책임제라는 정치시스템의 효율성·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정치의 원리를 관철하자는 법전문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특성별 분석

- 국무총리제 헌법개정에 대한 특성별 의견을 살펴보면, 남자집단(62.2%)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고, 직업분류별로는 사법기관(65.8%)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권영설, 한국의 대통령제와 그 헌법운동, 중앙법학 제9집 제2호(2007), 19-20면 참조.

51) 류시조, 헌법개정의 논의방향(전개), 139-140면 참조.

【표-29】 특성별 헌법개정(국무총리제→부통령제)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1.3 | 50.2 | 61.5 | 31.8 | 5.8 | 37.6 | 0.9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13.0 | 49.3 | 62.2 ↑ | 30.8 | 6.4 | 37.2 | 0.6 | 100.0 |
| 여 자 | 190 | 4.2 | 54.2 | 58.4 | 36.3 | 3.2 | 39.5 | 2.1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9.0 | 54.3 | 63.3 | 33.2 | 2.5 | 35.7 | 1.0 | 100.0 |
| 행 정 | 253 | 9.9 | 50.2 | 60.1 | 33.6 | 5.1 | 38.7 | 1.2 | 100.0 |
| 사 법 | 304 | 13.8 | 52.0 | 65.8 ↑ | 29.3 | 4.3 | 33.6 | 0.7 | 100.0 |
| 학 계 | 252 | 11.5 | 44.8 | 56.3 | 32.1 | 10.7 | 42.9 | 0.8 | 100.0 |

5. 양원제 개헌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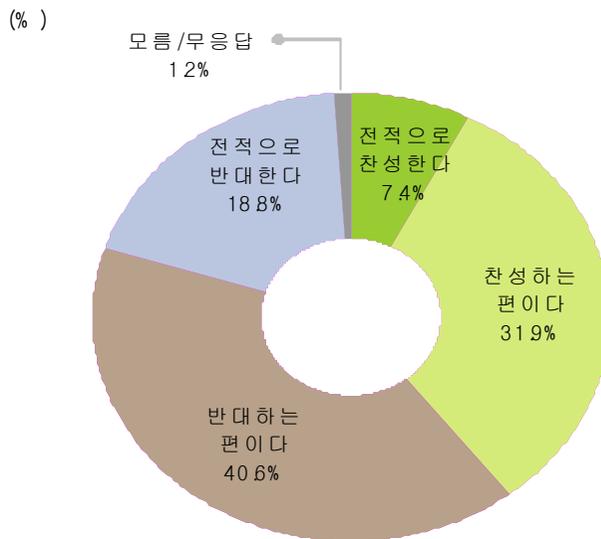
<단원제→양원제>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7.4 ▽ 39.4 |
| 찬성하는 편이다 | 31.9 ▽ |
| 반대하는 편이다 | 40.6 ▽ 59.4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18.8 ▽ |
| 모름/ 무응답 | 1.2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법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4%).

【그림-56】 헌법개정(단원제→양원제)



-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양원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원제로 운영되었고, 제2공화국에서 1년이 못되는 기간 동안 양원제를 채택하였을 뿐, 그 후에는 계속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⁵²⁾
- 이에 따라 양원제에 관한 논의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 그에 관한 논의가 의원내각제개헌, 지역갈등의 해소 및 분권의 추진,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의회제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

52) 우리나라 의회제도의 변천에 대하여는 송 우 편, 韓國憲法改正史, 集文堂, 1980 ; 金哲洙, 憲法改正 : 回顧와 展望, 대학출판사, 1986 참조.

기되고 있다.⁵³⁾

- 양원제의 문제는 의회제도나 의회운영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개혁이나 통일국가를 대비한 논의에 있어서는 종래의 의원내각제나 연방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양원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에 대하여, 응답자의 5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양원제로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형태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부통령제와 양원제를 단일한 안건으로 개헌론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⁵⁴⁾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친화적 국가구조의 모색에 있어서 유력한 제도적 방안으로서의 양원제라는 점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특성별 분석

- 단원제 개정과 관련하여, 남자집단(60.8%)이 여자집단(53.7%)보다 반대의견이 높았고, 직업 분류별로는 사법기관(65.1%)이 반대의견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적인 집단 일수록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3) 이러한 논점에 대하여는 송길웅, 양원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0), 183~184면 ; 최진욱,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재황, 국회의 조직과 운영, 고시계 1994년 6월호, 93면 등을 참조.

54) 예컨대, 류시조 교수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독선을 막고, 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양원제라는 점에서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양원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개헌논의에 있어서도 부통령제와 양원제는 독립된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일안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한다. 류시조, 헌법개정의 논의방향(전계), 140-141면.

【표-30】 특성별 헌법개정(단원제→양원제)

(%)

| 구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 한다 | ② 찬성 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 하는 편이다 | ④ 전적 으로 반대 한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체 | 1,008 | 7.4 | 31.9 | 39.4 | 40.6 | 18.8 | 59.4 | 1.2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8.2 | 30.2 | 38.4 | 39.0 | 21.8 | 60.8 ↑ | 0.9 | 100.0 |
| 여자 | 190 | 4.2 | 39.5 | 43.7 | 47.4 | 6.3 | 53.7 | 2.6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199 | 9.0 | 39.7 | 48.7 | 38.2 | 12.1 | 50.3 | 1.0 | 100.0 |
| 행정 | 253 | 5.9 | 34.0 | 39.9 | 42.7 | 15.8 | 58.5 | 1.6 | 100.0 |
| 사법 | 304 | 5.9 | 28.0 | 33.9 | 43.8 | 21.4 | 65.1 ↑ | 1.0 | 100.0 |
| 학계 | 252 | 9.5 | 28.6 | 38.1 | 36.5 | 24.2 | 60.7 | 1.2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8.8 | 35.0 | 43.8 | 40.7 | 14.2 | 54.9 | 1.3 | 100.0 |
| 중도 | 568 | 6.9 | 32.2 | 39.1 | 41.2 | 18.5 | 59.7 | 1.2 | 100.0 |
| 보수 | 207 | 7.2 | 28.0 | 35.3 | 38.6 | 25.1 | 63.8 ↓ | 1.0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28.6 | 42.9 | 42.9 | 14.3 | 57.1 | - | 100.0 |

6. 헌법개정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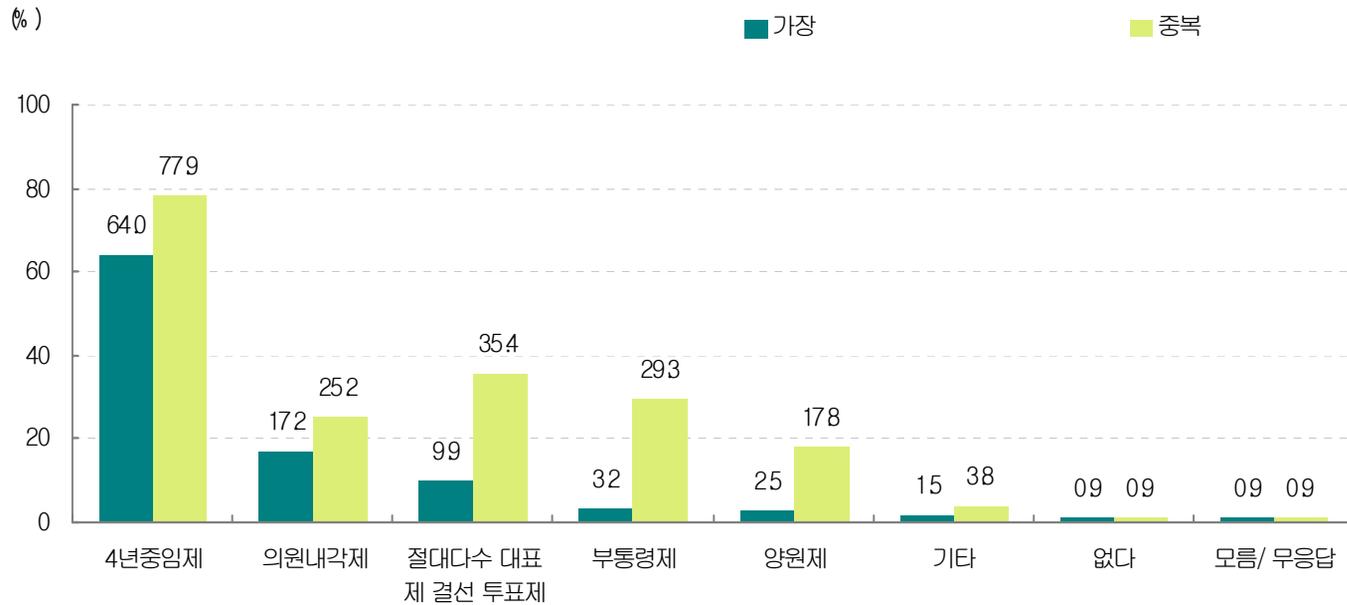
문27)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귀하는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가장 % | 중복 % |
|---------------|---------|---------|
| 4년중임제 | 64.0 | 77.9 |
|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 9.9 | 35.4 |
| 부통령제 | 3.2 | 29.3 |
| 의원내각제 | 17.2 | 25.2 |
| 양원제 | 2.5 | 17.8 |
| 기타 | 1.5 | 3.8 |
| 없다 | 0.9 | 0.9 |
| 모름/ 무응답 | 0.9 | 0.9 |
| 계(N=1,008) | | 100.0 |

(1) 전체분석

-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4년중임제’(77.9%)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절대다수 대표제’(35.4%), ‘부통령제’(29.3%)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그림-57】 헌법개정 우선순위



7. 정성조사

(1) 조사결과

| 대분류 | 상세구분 | 의원내각제 | 4년중임제 | 결선투표제 | 부통령제 | 양원제 |
|------|-------------|-------------|-------------|-------------|-------------|-------------|
| 입법 | 보좌관 | X | 찬성 | X | X | X |
| | 국회 공무원 | X | 찬성 | X | X | X |
| 행정 | 중앙정부 공무원 | X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지방정부 공무원 | X | 찬성 | 찬성 | △ (보류) | △ (보류) |
| 사법 | 판사 | X | 찬성 | 찬성 | 찬성 | X |
| | 검사 | X | 찬성 | X | X | X |
| | 변호사 | X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학계 | 공법교수 | X | 찬성 | X | X | X |
| | 사법교수 | X | X | X | 찬성 | X |
| 정량조사 | 찬성 | 32.6 | <u>83.3</u> | <u>63.1</u> | <u>61.5</u> | 39.4 |
| | 반대 | <u>66.7</u> | 16.2 | 35.9 | 37.6 | <u>59.4</u> |

(2) 결과분석

- 통치구조와 관련한 헌법개정에 대해 찬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4년 중임제’(8명), ‘결선투표제’ (4명), ‘부통령제’(4명), ‘양원제’(2명)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의원내각제’에 대한 찬성응답은 없었다.
- 정량조사에서도 ‘4년중임제’에 대해서는 압도적 찬성(83.3%)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66.7%와 59.4%로 더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정성조사의 결과, 전반적으로는 권력구조 외의 개헌내용에 대해서는 고려가 적은 편인 가운데, 영토조항과 경제, 지자체,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개헌논의를 전개함에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형사법제에 관한 태도

1. 사이버모욕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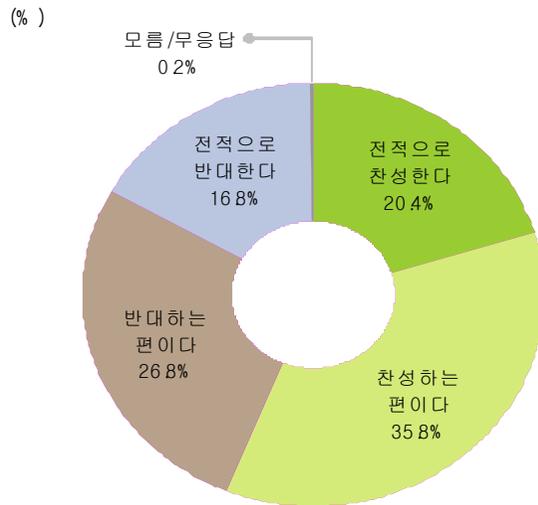
문20) 귀하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20.4 ↗ 56.3 |
| 찬성하는 편이다 | 35.8 ↘ |
| 반대하는 편이다 | 26.8 ↗ 43.6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16.8 ↘ |
| 모름/ 무응답 | 0.2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56.3%로 나타났다.

【그림-58】 사이버모욕죄



-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가 56.3%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43.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여부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논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그 신설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기연예인의 자살이 계기가 되었다.⁵⁵⁾

55) 고 최진실씨의 자살로서, 이것은 사이버에서 자신에 대한 인터넷 악성댓글(악플)

이를 계기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되, 이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그 법정형도 가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⁵⁶⁾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의지가 표명됨과 동시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정치권과 언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현행법상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방법”이라 함)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 제2항)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도 적용할 수 있다.⁵⁷⁾ 결국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관한 문제는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비방행위에 대해 처벌법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대응법규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그 소추여부도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이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를 넘은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행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전과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해의 범위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결국 표현의 자유

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에 못 이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6) 장윤석 의원(대표발의) 등 23인이 2008년 10월 30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7), 나경원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이 2008년 11월 3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83)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7)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현철,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2009), 205-213면 참조.

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법정형을 높이고, 기존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은 처벌만능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치적인 의견표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모욕행위가 우리사회에서 허용되는 도를 넘은 경우에는 그것을 규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모욕에 대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전혀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특별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신설한다면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는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⁵⁸⁾
-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전문가의 의견을 묻은 결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도 사이버상의 개인의 인격권보호와 표현의 자유간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8) 실제로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OECD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으며, 세에언론자유위원회(WFPC)와 국제언론인협회(IPJ)는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김현철,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전계), 218면.

(2) 특성별 분석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하여, 해당기관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표-31】 특성별 사이버모욕죄 신설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20.4 | 35.8 | 56.3 | 26.8 | 16.8 | 43.6 | 0.2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15.3 | 32.4 | 47.7 | 31.9 | 20.1 | 52.0 | 0.3 | 100.0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16.3 | 37.7 | 53.9 | 26.5 | 19.3 | 45.8 | 0.3 | 100.0 |
| 15년 이상 | 275 | 33.1 | 38.2 | 71.3 | 20.0 | 8.7 | 28.7 | - | 100.0 |
| 모름/무응답 | 3 | - | 66.7 | 66.7 | - | 33.3 | 33.3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11.1 | 25.7 | 36.7 | 32.3 | 31.0 | 63.3 | - | 100.0 |
| 중 도 | 568 | 18.5 | 37.7 | 56.2 | 29.2 | 14.3 | 43.5 | 0.4 | 100.0 |
| 보 수 | 207 | 36.7 | 42.0 | 78.7 | 13.5 | 7.7 | 21.3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28.6 | 28.6 | 42.9 | 28.6 | 71.4 | - | 100.0 |

2. 안락사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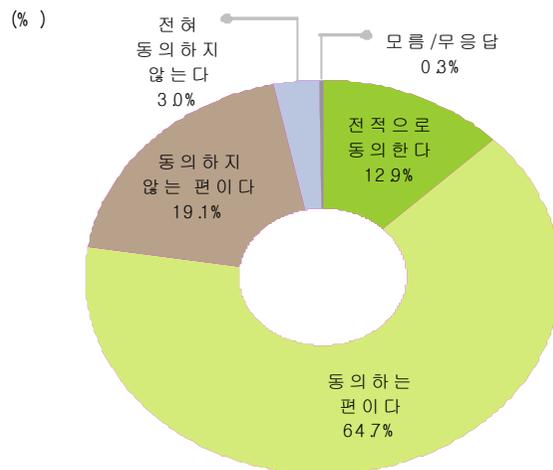
문21) 귀하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12.9 77.6 |
| 동의하는 편이다 | 64.7 |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19.1 22.1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0 |
| 모름/ 무응답 | 0.3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동의한다’(77.6%)는 의견이 4명 중 3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59】 안락사 허용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락사의 허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비율이 총 77.6%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보수적 이자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놀랄만한 수치라 할 수 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설문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이른바 ‘김 할머니 연명치료중단’사건이다.⁵⁹⁾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 (2009다17417) 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게 되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시가 없더라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
- 이러하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우

59) 이 사건은 김 할머니의 자식이 특별대리인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환자(김 할머니)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항구적 식물인간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공급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남부지원 형사1부가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尊嚴死·소극적 안락사) 인정판결에 대하여 의료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⁶⁰⁾

- 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이 판례는 김할머니의 사례에 국한된 판단일 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⁶¹⁾
- 우리나라는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안락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안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에서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77.6%)도 설문대상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영

60) 외국의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에서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 오리건주가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그 이후 2002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미국 40개주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등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엄격한 카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도 지난해 11월, 16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여성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

61)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5일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존엄사법안에 따르면, 존엄사의 허용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의학적 판단상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시서의 작성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2인 이상의 증인입회 후 의료지시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조력 및 환자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중단·보류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향후 안락사 내지 존엄사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특성별 분석

- 안락사 허용에 대해 직업분류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85.0%)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표-32】 특성별 안락사 허용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2.9 | 64.7 | 77.6 | 19.1 | 3.0 | 22.1 | 0.3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14.1 | 64.8 | 78.9 | 18.1 | 2.5 | 20.6 | 0.5 | 100.0 |
| 행 정 | 253 | 17.0 | 68.0 | 85.0 ↑ | 14.2 | 0.8 | 15.0 | - | 100.0 |
| 사 법 | 304 | 10.2 | 62.5 | 72.7 | 23.7 | 3.3 | 27.0 | 0.3 | 100.0 |
| 학 계 | 252 | 11.1 | 63.9 | 75.0 | 19.4 | 5.2 | 24.6 | 0.4 | 100.0 |

3. 면책조건부진술제도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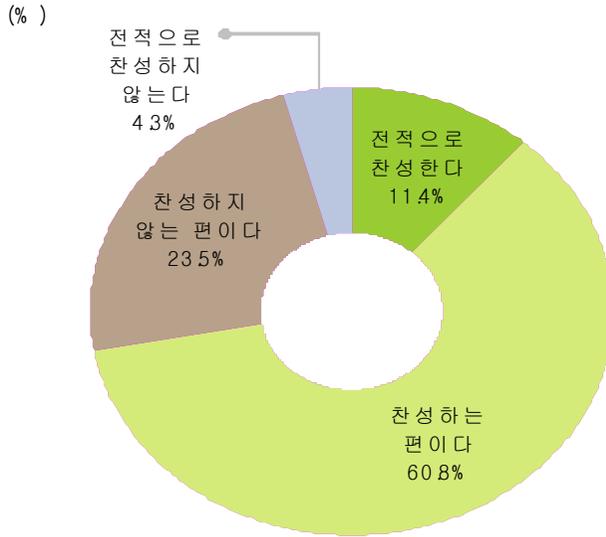
문23) 귀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뇌물제공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진술(Plea-Bargaining)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1.4 ↗ 72.2 |
| 찬성하는 편이다 | 60.8 ↘ |
|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 23.5 ↗ 27.8 |
|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 4.3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면책조건부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자가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60】 면책조건부진술



-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면책조건부진술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2%로 압도적인 것과는 달리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은 매우 심하다. 여기에서 면책조건부진술제도에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양형과정에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정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유죄협상제도 또는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⁶²⁾

62) 협상제도는 원래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미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은 기소사실 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의 종류는 무죄, 유죄, 불항쟁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협상(Plea Bargaining)이란 이러한 답변을 둘러싸고 미리 피의자와 검사가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형사절차상 협상은 그 대상에 따라 혐의에 관한 협상인 혐의사실협상과 양형에 관한 협상인 양형협상으로 나누어진다.

-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장점은 특히 피해자 없는 범죄 등에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체계 하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혐의나 양형에 관하여 협의 내지 협상한다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도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사사법에서는 효율성 내지 소송경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실체진실을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2009년 8월에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협상제도를 신설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재판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주축이 되어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2009년 초부터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 면책조건부진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도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피의자나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절차를 이원화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유무에 관해 다투는 사건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를 투입하여 방어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은 유죄협상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시킴으로서 형사사법의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다.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해둠으로써 충분한 정보 없이 자백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설명 및 확인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대하여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도입에 비판적인 견해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동한 협상제도는 배심재판제도를 그

근거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고, 국민의 범감정상 검찰측과 피고인측이 혐의나 양형에 관해 협상 내지 협의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는 범죄의 지능화에 따른 형사사법의 효율성제고와 형사사법에서 정의의 관점이 대립되는 분야이다. 특히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의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보면, 수사나 공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필요한 형사사법의 환경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만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에 부응하는 면책조건부진술제도 내지 협상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영장항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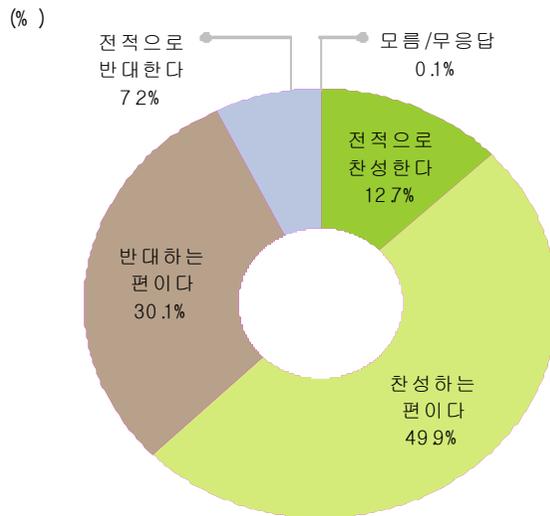
문24) 귀하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2.7 \uparrow 62.6 |
| 찬성하는 편이다 | 49.9 \downarrow |
| 반대하는 편이다 | 30.1 \uparrow 37.3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7.2 \downarrow |
| 모름/ 무응답 | 0.1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응답자가 6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61】 영장항고제



- 영장항고제도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기각한 경우, 검찰이나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법원도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결국 현행법 하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지방법원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재판에 대하여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법실무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에 찬성한 의견이 주로 검사집단에서 나온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의 대부분이 판사집단에서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오래 전부터 검찰과 학계의 일부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영장항고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장항고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에는 영장항고제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되었지만,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결국 영장항고제가 도입되지 않았다.⁶³⁾

63) 참고로 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영장항고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1심법원 및 항소법원의 결정,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및 수사절차에서의 판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절차에서의 판사의 처분”에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모든 강제처분이 포함된다. 또한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검사는 예심수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속뿐만 아니라 모든 영장결정에 대해 검사의 항고가 인정된다. 한편,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은 “판사가 다음의 재판을 할 경우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간이재판소의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재판소에, 그 외의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판사소속의 재판소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구속,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이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영장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8년 12월 29일에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영장항고제의 도입도 추진해 2009년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항고제도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무부가 영장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그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특성별 분석

- 영장항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집단(76.3%)에서 직업별로는 검사집단(98.2%)에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대로, 직업별로 판사집단의 경우 영장항고제 도입에 ‘반대한다’(82.6%)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특성별 영장항고제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 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 하는 편이다 | ④ 전으로 반대 한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2.7 | 49.9 | 62.6 | 30.1 | 7.2 | 37.3 | 0.1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13.6 | 45.8 | 59.4 | 32.0 | 8.4 | 40.5 | 0.1 | 100.0 |
| 여 자 | 190 | 8.9 | 67.4 | 76.3 ↑ | 21.6 | 2.1 | 23.7 | -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6.0 | 61.3 | 67.3 | 28.7 | 3.3 | 32.0 | 0.7 | 100.0 |
| 국회 의원 | 49 | 6.1 | 63.3 | 69.4 | 26.5 | 4.1 | 30.6 | -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5.9 | 57.1 | 63.1 | 29.6 | 7.4 | 36.9 | -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6.0 | 76.0 | 82.0 | 16.0 | 2.0 | 18.0 | - | 100.0 |
| 판 사 | 46 | - | 17.4 | 17.4 | 50.0 | 32.6 | 82.6 ↑ | - | 100.0 |
| 검 사 | 56 | 71.4 | 26.8 | 98.2 ↑ | 1.8 | - | 1.8 | - | 100.0 |
| 변 호 사 | 101 | 9.9 | 36.6 | 46.5 | 44.6 | 8.9 | 53.5 | -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22.8 | 47.5 | 70.3 | 23.8 | 5.9 | 29.7 | - | 100.0 |
| 대학 교수 | 202 | 12.9 | 44.6 | 57.4 | 34.2 | 8.4 | 42.6 | - | 100.0 |
| 박사 과정 | 50 | 4.0 | 56.0 | 60.0 | 34.0 | 6.0 | 40.0 | - | 100.0 |

5. 국민참여재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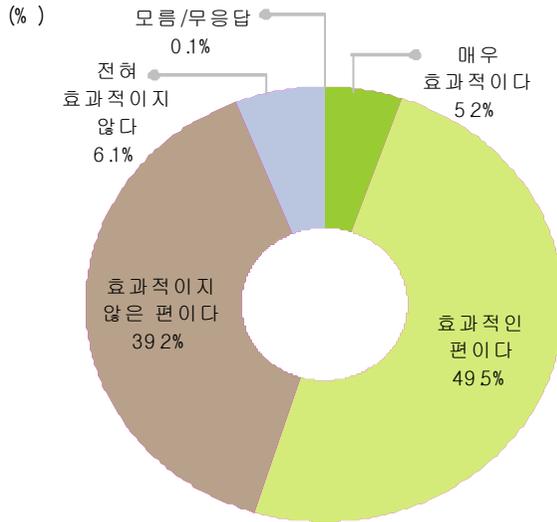
문28)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매우 효과적이다 | 5.2 ↗ 54.7 |
| 효과적인 편이다 | 49.5 ↘ |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 39.2 ↗ 45.2 |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6.1 ↘ |
| 모름/무응답 | 0.1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4.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림-62】 국민참여재판제도



- 이번 조사결과에서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54.7%)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45.2%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전문가들의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자료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결과⁶⁴⁾를 들 수 있다. 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의 결과⁶⁵⁾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우

64) 상세한 내용은 박미숙,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참조.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장 7명과 변호인 7명, 검사 40명이 응답했다.

6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첫째,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공정성 보장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설문에 응답한 판사의 85.7%와 변호사 전원(100%)은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검사도 절반이 넘는 57.5%(23명)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한 판사는 71.4%에 달했다. 변호사의 경우 전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검사는 40%가 이에 동의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법조인들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압력에 의해

리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 다만, 국민참여재판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45.2%로 나온 것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수임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⁶⁶⁾ 일반 사선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수임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임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 위주로 시행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⁶⁷⁾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열린 참여재판 86건 가운데 6건(6.9%)의 재판에서 배심원이 낸 무죄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판사의 71.4%, 검사의 67.5%가 배심원들이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변호사는 전원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금전이나 정치적 유혹·압력에 영향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사와 변호사 전원, 검사의 70%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셋째, 설문에 응답한 법조인들은 배심원의 사건이해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배심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법률용어 이해 부분은 제외)와 관련해 판사와 변호사는 각각 9.4점과 9.3점을 줬으며, 검사는 8.5점을 줬다. 7.5점이 보통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판 중 사용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판사의 경우 85.7%, 변호사는 71.4%가 대체로 이해했다고 한 반면, 검사의 경우 67.5%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66)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7일까지 이뤄진 80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사선변호인이 수임한 사건은 단 17건(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 수임건수는 각각 38건(중첩사건 13건 제외)으로 나타나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78.8%에 달하는 수치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을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6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09년 6월 12일 국선전담변호사 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1.3%인 46명이 현재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의견에 구속력이 없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⁶⁸⁾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집단보다는 남자집단이 좀 더 효과적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지방)집단에서 ‘효과적이다’(76.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일수록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68)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참심원이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심원의 판단에 구속력이 당연히 인정되고, 미국과 같은 배심제 국가에서 배심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직업법관을 구속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단의 평결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34】 특성별 국민참여재판제도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효과적이다 | ② 효과적인 편이다 | ①+② | ③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5.2 | 49.5 | 54.7 | 39.2 | 6.1 | 45.2 | 0.1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5.7 | 51.0 | 56.7 ↑ | 36.8 | 6.4 | 43.2 | 0.1 | 100.0 |
| 여 자 | 190 | 2.6 | 43.2 | 45.8 | 49.5 | 4.7 | 54.2 | -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7 | 56.7 | 61.3 | 36.7 | 2.0 | 38.7 | - | 100.0 |
| 국회 의원 | 49 | 2.0 | 55.1 | 57.1 | 40.8 | 2.0 | 42.9 | -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5.9 | 56.7 | 62.6 | 36.0 | 1.5 | 37.4 | -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14.0 | 62.0 | 76.0 ↑ | 24.0 | - | 24.0 | - | 100.0 |
| 관 사 | 46 | 8.7 | 54.3 | 63.0 | 32.6 | 4.3 | 37.0 | - | 100.0 |
| 검 사 | 56 | - | 16.1 | 16.1 ↓ | 60.7 | 23.2 | 83.9 | - | 100.0 |
| 변 호 사 | 101 | 2.0 | 31.7 | 33.7 | 56.4 | 9.9 | 66.3 | -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11.9 | 43.6 | 55.4 | 34.7 | 9.9 | 44.6 | - | 100.0 |
| 대학 교수 | 202 | 3.5 | 51.5 | 55.0 | 38.1 | 6.4 | 44.6 | 0.5 | 100.0 |
| 박사 과정 | 50 | - | 54.0 | 54.0 | 34.0 | 12.0 | 46.0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7.5 | 58.0 | 65.5 ↑ | 30.1 | 4.0 | 34.1 | 0.4 | 100.0 |
| 중 도 | 568 | 5.3 | 50.5 | 55.8 ↑ | 38.7 | 5.5 | 44.2 | - | 100.0 |
| 보 수 | 207 | 2.4 | 38.2 | 40.6 | 49.3 | 10.1 | 59.4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 | 28.6 | 28.6 | 71.4 | - | 71.4 | - | 100.0 |

6.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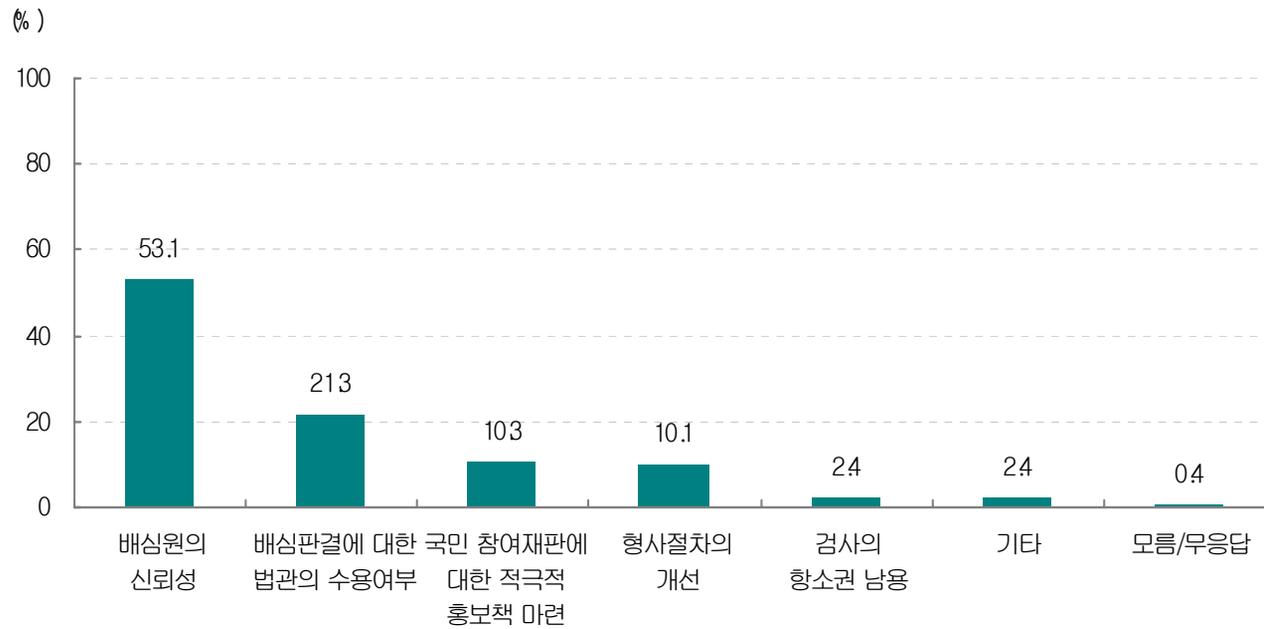
문28-1) 그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배심원의 신뢰성 | 53.1 |
|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 | 21.3 |
|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 10.3 |
| 형사절차의 개선 | 10.1 |
| 검사의 항소권 남용 | 2.4 |
| 기타 | 2.4 |
| 모름/ 무응답 | 0.4 |
| 계(N=456) | 100.0 |

(1) 전체분석

-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자(N=456)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점을 물은 결과, ‘배심원의 신뢰성’(53.1%)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21.3%)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63】 국민참여재판제도 보완점



-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는 배심원의 신뢰성과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를 들 수 있다.
- 우선 배심원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한 선정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배심원 평의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의 관계로 밀접한 인적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공정하게 국민참여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또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념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⁶⁹⁾
- 다음으로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재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기속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9) 여기에서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을 말한다. 그밖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상서는 김대성,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을 참조.

(2) 정성조사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는 참석자에 따라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국민의 관심과 법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찬성의견과 ‘비효율적’이라는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 한편 귀속력이 없는 참조조항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제한적 찬성의견과 배심원 선정과 판결에서의 주관성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정량조사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4.7%,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5.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았고, 사법부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정성조사에서의 결과 의견이 양분되는 가운데 찬성응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제 4 절 기타법제에 관한 태도

1. 입법과정의 국민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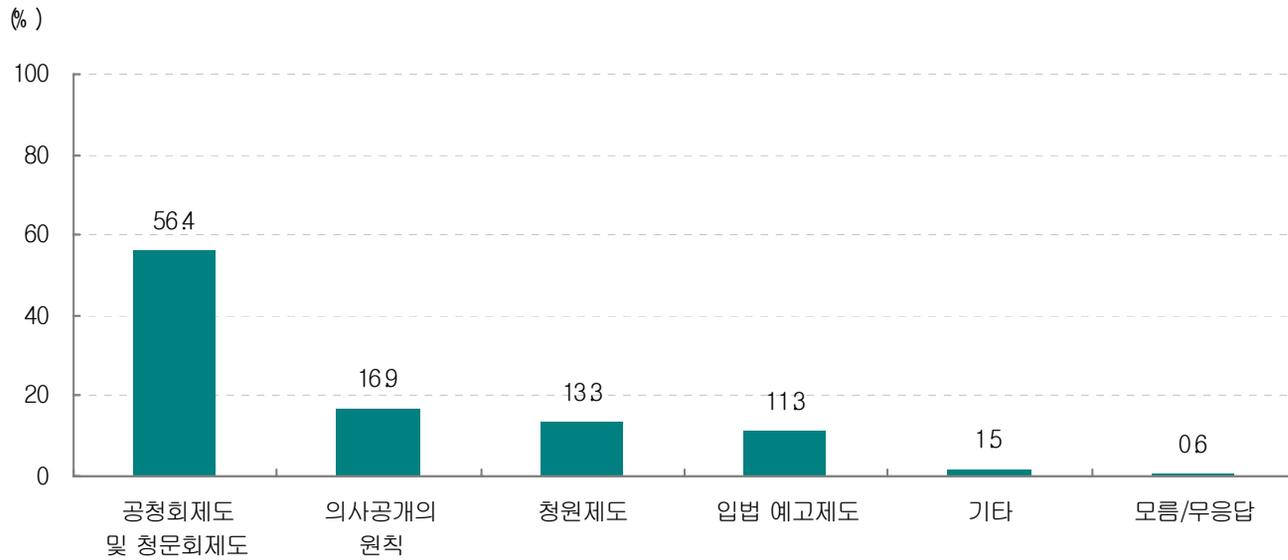
문18) 귀하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 과 | % |
|---------------|-------|
|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 56.4 |
| 의사공개 원칙 | 16.9 |
| 청원제도 | 13.3 |
| 입법 예고제도 | 11.3 |
| 기타 | 1.5 |
| 모름/ 무응답 | 0.6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보장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56.4%)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이것은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림-64】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보장



- 공청회제도는 국회나 행정기관 등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하며, 이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국민참여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 청문회제도는 국회위원회가 중요안건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1988년 국회법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국회법 제65조). 이 청문회는 개회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항), 공개함이 원칙이며(제4항), 위증·증인거부 등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제5항). 청문회는 크게 특정사건·사안(事案)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청문회, 어떤 사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성격을 띤 입법청문회, 정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감독청문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13대 국회에서 1988년 11월 4일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청문회가 열린 후, 많은 청문회가 개최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거나 비판의 원인을 제공하곤 하였다. 이와 같이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는 공개정치를 유도하여 민주정치실현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그러한 역할의 제고를 위한 이론적 연구 및 법제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입법과정시 국민의 참여보장을 위한 개선점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은 판사 집단(71.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특성별 입법과정시 국민의 참여 보장

(%)

| 구 분 | 사례수 | 공청회 제도 및 청문회 제도 | 의사 공개의 원칙 | 청원제도 | 입법 예고제도 | 기타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56.4 | 16.9 | 13.3 | 11.3 | 1.5 | 0.6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9.3 | 14.7 | 16.7 | 16.0 | 2.0 | 1.3 | 100.0 |
| 국회 의원 | 49 | 55.1 | 10.2 | 12.2 | 22.4 | - | -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50.2 | 19.7 | 12.3 | 15.3 | 2.0 | 0.5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62.0 | 16.0 | 6.0 | 16.0 | - | - | 100.0 |
| 관 사 | 46 | 71.7↑ | 6.5 | 8.7 | 6.5 | 2.2 | 4.3 | 100.0 |
| 검 사 | 56 | 51.8 | 26.8 | 16.1 | 5.4 | - | - | 100.0 |
| 변 호 사 | 101 | 64.4 | 14.9 | 7.9 | 8.9 | 4.0 | - | 100.0 |
| 사범연수원생 | 101 | 50.5 | 21.8 | 14.9 | 11.9 | - | 1.0 | 100.0 |
| 대학 교수 | 202 | 60.9 | 18.8 | 13.9 | 5.4 | 1.0 | - | 100.0 |
| 박사 과정 | 50 | 68.0 | 4.0 | 22.0 | 4.0 | 2.0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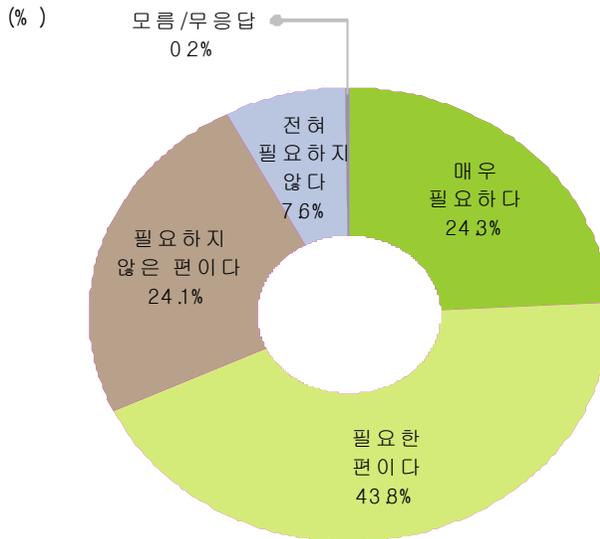
2.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 | |
|---|--------------------|
| 문19) 귀하는 인터넷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결 과 | % |
| ----- | ----- |
| 매우 필요하다 | 24.3 ↘ 68.1 |
| 필요한 편이다 | 43.8 ↘ |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24.1 ↘ 31.7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7.6 ↘ |
| 모름/ 무응답 | 0.2 |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68.1%)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 인터넷에 의한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65】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 일반적으로 본인확인제란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대신 해당 게시판의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⁷⁰⁾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70) 김여라, 인터넷실명제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호(2008. 8), 8-11면 참조.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을 2006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률 제44조의 5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¹⁾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한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용하는 게시판에까지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200년대 초반 이후로 활성화된 바 있다. 그 당시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날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방식이나 내용에 의해서도 언제나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표현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표현의 자유보다는 표현에 대한

71) 종전에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경우 30만명 이상, 언론사의 경우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표현으로 인한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⁷²⁾

- 즉,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의 검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선거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비방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법리나 선거법 등 기존의 민형사상의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라는 새로운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이 인터넷상에서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본질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 이에 더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는 헌법적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⁷³⁾ 첫째, 게시판의 개념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섭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익명표현의 자유’⁷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게시판은

72) 2008년조사, 254-255면 참조. 여기에서는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반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게시판문화와 세계적으로 유일한 주민등록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예외적인 논쟁사안이라고 한다.

73) 김현철, 사이버모욕죄의 헌법적 쟁점(전개), 221-222면 참조.

74)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126-130면 ; 문재완,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2005), 149-162면 등을 참조.

영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본인인증절차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한다. 다섯째, 본인확인 혹은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보안문제 및 도용문제가 있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68.1%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는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향후 인터넷실명제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익명성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역기능을 배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이버공간문화정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2) 특성별 분석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50대이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필요하다’(83.2%)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적인 성향의 집단일수록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특성별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

| 구 분 | 사례수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 한편이다 | ①+② | ③ 필요 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24.3 | 43.8 | 68.1 | 24.1 | 7.6 | 31.7 | 0.2 | 100.0 |
| ▣ 연령별 ▣ | | | | | | | | | |
| 20 대 | 122 | 18.9 | 45.1 | 63.9 | 28.7 | 7.4 | 36.1 | - | 100.0 |
| 30 대 | 349 | 18.6 | 44.4 | 63.0 | 30.1 | 6.6 | 36.7 | 0.3 | 100.0 |
| 40 대 | 352 | 23.6 | 42.9 | 66.5 | 23.0 | 10.2 | 33.2 | 0.3 | 100.0 |
| 50대 이상 | 185 | 40.0 | 43.2 | 83.2 ↑ | 11.9 | 4.9 | 16.8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11.9 | 37.6 | 49.6 | 35.0 | 15.5 | 50.4 | - | 100.0 |
| 중 도 | 568 | 21.8 | 46.7 | 68.5 | 24.8 | 6.3 | 31.2 | 0.4 | 100.0 |
| 보 수 | 207 | 44.9 | 43.0 | 87.9 ▼ | 9.7 | 2.4 | 12.1 | -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28.6 | 42.9 | 42.9 | 14.3 | 57.1 | - | 100.0 |

3. 이중국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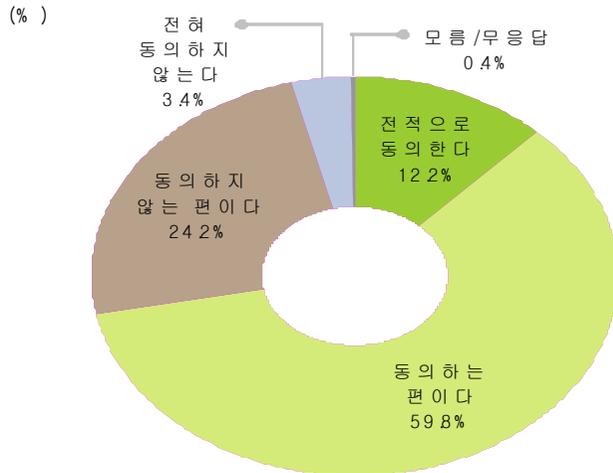
문22) 이중국적(二重國籍)허용과 관련하여 ‘세계적 고급인력 유치’와 ‘인권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중,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해외입양아,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 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12.2 ↗ 72.0 |
| 동의하는 편이다 | 59.8 ↘ |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24.2 ↗ 27.6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4 ↘ |
| 모름/ 무응답 | 0.4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상당수가 인권적 측면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0%).

【그림-66】 이중국적 허용



- 국경을 넘어 사람·물건·정보 등이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개인을 특정한 국가에 결부시키는 법률적 기초인 국적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국적 취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로부터 정부는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에 따른 병역, 이중 투표권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가 2009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한 국적법개정안에서는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새로이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상당수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2년 이내에 제출하면,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화교 등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복

수국적의 허용 자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수자들의 사회통합과 권리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국적법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⁷⁵⁾ 즉,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에 귀국해 고급인력으로 인정받아 쉽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층적 위화감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일본 등에서 생활하는 해외동포에 대한 배려, 즉 영주권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복수국적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복수국적자의 학교입학·사회보장제도·참정권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2.0%가 이중국적의 허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상당수의 이중국적을 가지는 자의 존재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절대적인 이상으로 여겨져 왔던 국적유일의 전통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화시대의 인재유치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권적 차원에서의 이중국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국적법개정안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75)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7621.html>> 참조.

4. 군가산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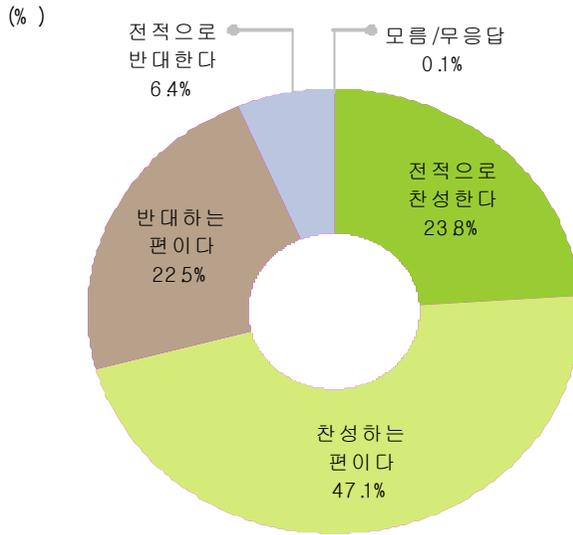
문25)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23.8 ↘ 70.9 |
| 찬성하는 편이다 | 47.1 ↘ |
| 반대하는 편이다 | 22.5 ↘ 29.0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6.4 ↘ |
| 모름/ 무응답 | 0.1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9%).

【그림-67】 군가산점제도



-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 특히 실역복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역사적으로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채용 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인 경우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2호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에게 적용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9년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07년에 다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고(제74조의2 제2항),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74조의2 제3항),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4조의2 제4항).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내지 부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의무복무의 이행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제대 후 의무복무의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주려는 보상의 문제에 있어야 하지만, 남녀성대결양상만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⁷⁶⁾

- 여하튼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군복무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지만, 위헌결정의 배경에는 그 당시의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문제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들에

76) 안상수, 군가산점제도 부활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제7권 제2호(2007), 322면 참조.

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산점제도가 재도입돼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는 군가산점제도가 과거의 군가산점에 비해 차별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 제도는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여성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병역면제자들의 공직참여를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군가산점제도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군가산점은 의무제대군인의 보편적 보상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여성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⁷⁾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실질적 손실의 보상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혹은 소수집단이 모두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합의도출 또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특성별 의견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집단(79.3%)에서 직업분류별로는 행정기관(81.0%)에서 ‘찬성한다’는 의

77) 안상수, 군가산점제도 부활논쟁과 남성의 의식, 페미니즘연구 제7권 제2호(2007), 344-346면 참조.

견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37】 특성별 군가산점제도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23.8 | 47.1 | 70.9 | 22.5 | 6.4 | 29.0 | 0.1 | 100.0 |
| ▣ 성 별 ▣ | | | | | | | | | |
| 남 자 | 818 | 27.1 | 52.2 | 79.3 ↑ | 16.9 | 3.8 | 20.7 | - | 100.0 |
| 여 자 | 190 | 9.5 | 25.3 | 34.7 | 46.8 | 17.9 | 64.7 | 0.5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 | |
| 20 대 | 122 | 13.1 | 40.2 | 53.3 | 34.4 | 12.3 | 46.7 | - | 100.0 |
| 30 대 | 349 | 13.8 | 48.7 | 62.5 | 29.8 | 7.4 | 37.2 | 0.3 | 100.0 |
| 40 대 | 352 | 27.0 | 48.0 | 75.0 | 20.2 | 4.8 | 25.0 | - | 100.0 |
| 50대 이상 | 185 | 43.8 | 47.0 | 90.8 ▼ | 5.4 | 3.8 | 9.2 | -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18.6 | 42.7 | 61.3 ↓ | 26.6 | 12.1 | 38.7 | - | 100.0 |
| 행 정 | 253 | 37.5 | 43.5 | 81.0 ↑ | 16.6 | 2.4 | 19.0 | - | 100.0 |
| 사 법 | 304 | 19.7 | 47.4 | 67.1 | 25.0 | 7.6 | 32.6 | 0.3 | 100.0 |
| 학 계 | 252 | 19.0 | 54.0 | 73.0 | 22.2 | 4.8 | 27.0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18.6 | 46.0 | 64.6 | 23.9 | 11.5 | 35.4 | - | 100.0 |
| 중 도 | 568 | 23.8 | 46.5 | 70.2 | 24.5 | 5.3 | 29.8 | - | 100.0 |
| 보 수 | 207 | 29.5 | 49.8 | 79.2 ▼ | 16.4 | 3.9 | 20.3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7 | 28.6 | 57.1 | 85.7 | - | 14.3 | 14.3 | - | 100.0 |

5. 법관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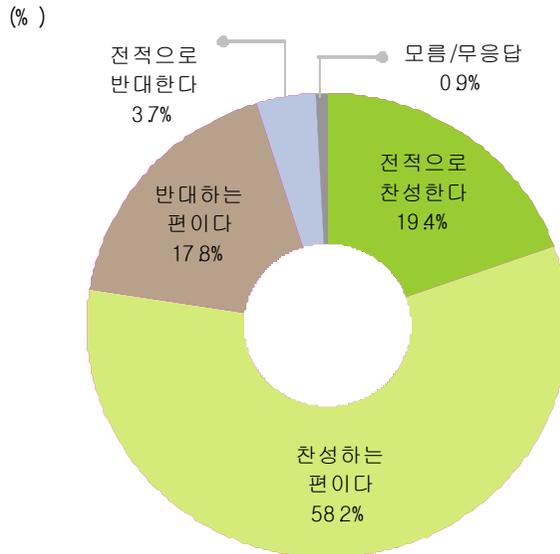
문29)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법관평가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9.4 ↗ 77.7 |
| 찬성하는 편이다 | 58.2 ↘ |
| 반대하는 편이다 | 17.8 ↗ 21.4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3.7 ↘ |
| 모름/무응답 | 0.9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법관평가제에 대하여 4명중 3명이 ‘찬성한다’(77.7%)고 응답했으며, 이것은 그 동안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원리 하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던 법관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곱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림-68】 법관평가제



- 법관평가제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판사의 업무수행능력과 법정태도, 인품 및 자질 등을 평가해 법원에 인사자료로 제출하려는 제도로서 법관의 공정한 재판진행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후반에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법관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 서울변호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법관평가는 서울변호사협회 소속변호사 6,287명 가운데 491명(7.8%)만 참가하였다. 평가대상은 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과 행정법원, 가정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703명이다. 평가대상기간은 1년이고, 200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재판이 평가근거가 된다.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법관평가위원회가 배포한 설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이를 위해 법관평가표를 만들었는데, 이 법관평가표는 주로 법관의 재판운영태도를 묻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법정개정시간을 준수했는지, 사전에 기록을 검토했는지, 법정에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했는지,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재산이나 지위고하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법관평가제에 대해서는 일선법원의 판사들은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법관평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될 수 있고, 법관이 변호사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법관평가표의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⁷⁸⁾
- 외국의 경우 법관평가제도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일본의 경우 법관평가제는 2003년에 처음 실시된 바 있다. 일본의 재판관평가제도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평가의 유형은 재판관 임용시 평가와 인사평가로 구분된다. 두 경우 모두 변호사들이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심사주체에 제공하고, 그것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법관평가제는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하와이주에서는 신규법관 선임이나 재임심사시 법관선임위원회가 설치된다. 법관선임위원회는 법관이 되려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6명의 법관후보자를 선정해 주지사에게 전달하고, 3년에 한 번씩 법관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법관 재임시에 활용한다. 법관선임위원회는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일반시민을 포함시키

78) 이현환,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2009), 109-110면 참조.

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법관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우리사회에 민주화의 경향과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평가제는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법관의 업무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법관평가제에 관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조사결과도 존재한다. 2008년 11월 21일 CBS의 조사결과⁷⁹⁾에 따르면, 법관평가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49.4%로 나타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인 13.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40.9%)에 비해 남성(57.6%)층의 찬성의견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59.6)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북(찬성 23.1% · 반대 26.6%) 응답자만 의견차가 비등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법원평가제의 도입에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7.7%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변호사집단의 대부분(96%)이 찬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판사집단의 경우는 28.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적 정착에 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을 추정할 수 있다.

(2) 특성별 분석

- 법관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변호사집단(96.0%)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일수록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 이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표-38】 특성별 법관평가제

(%)

| 구 분 | 사례수 | ①적으로 찬성한다 | ②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반대하는 편이다 | ④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9.4 | 58.2 | 77.7 | 17.8 | 3.7 | 21.4 | 0.9 | 100.0 |
| ▣ 직업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21.3 | 62.7 | 84.0 | 14.0 | 0.7 | 14.7 | 1.3 | 100.0 |
| 국회 의원 | 49 | 4.1 | 73.5 | 77.6 | 18.4 | 2.0 | 20.4 | 2.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15.8 | 65.5 | 81.3 | 13.8 | 3.0 | 16.7 | 2.0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28.0 | 56.0 | 84.0 | 16.0 | - | 16.0 | - | 100.0 |
| 판 사 | 46 | - | 28.3 | 28.3 ↓ | 50.0 | 21.7 | 71.7 | - | 100.0 |
| 검 사 | 56 | 21.4 | 44.6 | 66.1 | 28.6 | 3.6 | 32.1 | 1.8 | 100.0 |
| 변 호 사 | 101 | 33.7 | 62.4 | 96.0 ↑ | 4.0 | - | 4.0 | -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12.9 | 55.4 | 68.3 | 24.8 | 5.9 | 30.7 | 1.0 | 100.0 |
| 대학 교수 | 202 | 23.8 | 55.0 | 78.7 | 16.8 | 4.5 | 21.3 | - | 100.0 |
| 박사 과정 | 50 | 18.0 | 56.0 | 74.0 | 22.0 | 4.0 | 26.0 | -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 보 | 226 | 25.2 | 61.9 | 87.2 ↑ | 9.7 | 2.2 | 11.9 | 0.9 | 100.0 |
| 중 도 | 568 | 18.5 | 59.0 | 77.5 ↑ | 19.4 | 2.5 | 21.8 | 0.7 | 100.0 |
| 보 수 | 207 | 15.9 | 53.1 | 69.1 ↑ | 21.7 | 7.7 | 29.5 | 1.4 | 100.0 |
| 모름/무응답 | 7 | 14.3 | 28.6 | 42.9 | 28.6 | 28.6 | 57.1 | - | 100.0 |

(3) 정성조사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이익단체인 변호사가 평가의 주체가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타났다.

- 정량조사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77.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21.4%였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변호사그룹에서는 압도적 찬성(96.0%)의견이, 검사그룹에서는 높은 반대(71.7%)가 나타나 두 그룹간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 정성조사와 비교할 경우 판사와 변호사 모두 찬성의견이었으나 판사의 경우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6. 법률시장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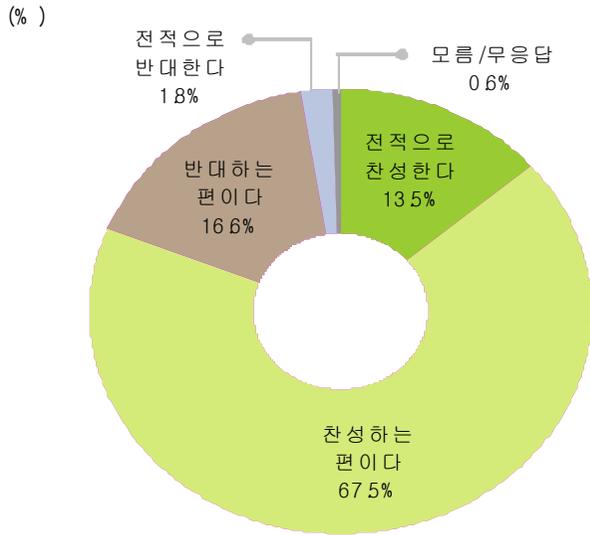
문30) 2007년 한미 FTA 협상안 타결로 인한 대한민국 법률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결 과 | %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13.5 ↗ 81.1 |
| 찬성하는 편이다 | 67.6 ↘ |
| 반대하는 편이다 | 16.6 ↗ 18.4 |
| 전적으로 반대한다 | 1.8 ↘ |
| 모름/ 무응답 | 0.6 |
| ----- | |
| 계(N=1,008) | 100.0 |

(1) 전체분석

-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81.1%)고 응답했다.

【그림-69】 법률시장개방



- 지지하는 바와 같이 WTO출범 이후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서비스협상에서는 건설, 통신, 해운, 유통, 금융, 시정각, 교육, 법률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가 논의되었으며, 2001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시장개방계획을 담은 제안을 하였으며,⁸⁰⁾ 이 제안에서는 제한적 면허방식(Limited Licensing Approach)방식으로 외국변호사에게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을

80) 이 제안을 받고 우리나라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요청을 한 나라는 미국, EC,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11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외국변호사의 외국법자문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요청하였고,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과 국내 변호사의 고용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EC, 호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대만이다. 뉴질랜드는 국내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련서비스의 개방을 요청했다.

허용하도록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제도를 도입하고, 외국로펌의 국내지사(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허용하지만, 외국로펌의 국내변호사의 고용과 동업·합작은 금지하고 있었다.

- 이에 기초하여 2009년 3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 9524호)이 성립,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나라와 법률시장개방에 합의한 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원자격국의 법령이나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인 국제관습법을 자문하고,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 그동안 외국변호사는 국내로펌이나 기업에 일반직원의 형태로 고용되어 고용주에 대해서만 자문할 수 있었지만, 외국법자문사는 일반인에게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이 본격화된 것이다.⁸¹⁾ 물론 이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외국법자문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법률시장개방은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법안의 시행과는 별도로 FTA가 발효되어야 해당국가의 변호사들의 국내진출이 가능하다.
- 정부는 법률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 활동허용,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업무제휴로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수입, 합

81) 또한 외국법자문사는 제한된 업무만 가능하고, 한국법정에서 소송대리나 법정번호 등 국내법 관련 사무는 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후 활동하게 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을 얻으면 연간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로펌도 본점사무소가 해당국에서 5년 이상 운영됐고, 대표자가 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해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때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 법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회사를 설립해 국내변호사 고용허용 등 3단계의 개방원칙을 수립·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계적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법률시장개방에 대하여 응답자의 81.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법률시장개방의 불가피성과 법률시장의 전략적 개방협상의 중요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단계적 개방계획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전면개방과 기업의 경쟁력강화, 국내법률시장의 기반잠식, 법률서비스의 비용증가와 법률문화의 상업화, 변화사업계 전반의 수입감소와 양극화, 국내법학교육의 왜곡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특성별 분석

-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연령과 근무연수가 높을수록(길수록)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직업분류별로는 행정기관에서 ‘찬성한다’(92.1%)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법부문의 경우 6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물론 이것은 사법부문 중 변호사그룹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39】 특성별 법률시장개방

(%)

| 구 분 | 사례수 |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①+②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전 체 | 1,008 | 13.5 | 67.6 | 81.1 | 16.6 | 1.8 | 18.4 | 0.6 | 100.0 |
| ■ 연령별 ■ | | | | | | | | | |
| 20 대 | 122 | 14.8 | 60.7 | 75.4 | 18.9 | 4.9 | 23.8 | 0.8 | 100.0 |
| 30 대 | 349 | 10.3 | 66.2 | 76.5 | 20.6 | 2.0 | 22.6 | 0.9 | 100.0 |
| 40 대 | 352 | 14.8 | 69.3 | 84.1 | 14.2 | 1.1 | 15.3 | 0.6 | 100.0 |
| 50대 이상 | 185 | 16.2 | 71.4 | 87.6 | 11.9 | 0.5 | 12.4 | -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 법 | 199 | 16.6 | 67.8 | 84.4 | 14.1 | 0.5 | 14.6 | 1.0 | 100.0 |
| 행 정 | 253 | 19.0 | 73.1 | 92.1 | 5.9 | 0.8 | 6.7 | 1.2 | 100.0 |
| 사 법 | 304 | 5.6 | 63.5 | 69.1 | 27.3 | 3.3 | 30.6 | 0.3 | 100.0 |
| 학 계 | 252 | 15.1 | 66.7 | 81.7 | 16.3 | 2.0 | 18.3 | -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11.6 | 64.3 | 75.9 | 20.6 | 3.3 | 23.9 | 0.3 | 100.0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11.1 | 69.3 | 80.4 | 17.8 | 0.9 | 18.7 | 0.9 | 100.0 |
| 15년 이상 | 275 | 18.9 | 70.5 | 89.5 | 9.1 | 0.7 | 9.8 | 0.7 | 100.0 |
| 모름/무응답 | 3 | 33.3 | 33.3 | 66.7 | 33.3 | - | 33.3 | - | 100.0 |

(3) 정성조사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참석자에서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실력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제 4 장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정량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1.1%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변호사 그룹에서는 다른 응답자 그룹에 비해 찬성의견이 57.4%로 전체평균에 비해 낮고, 반대 의견이 42.6%로 전체평균(18.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정성조사에서도 변호사 참석자의 경우, 피할 수 없는 개방에 찬성은 하지만, 국가정보의 유출 등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소속집단의 우려(함의)를 비춘 바 있다.

제 5 장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의식은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욕·정신·힘이며,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좌표가 되기 때문에 법의식의 현주소와 변화양상의 파악과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법생활의 선진화와 국가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입법 및 법집행의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실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2009년조사를 2008년조사 및 1996년조사와 각각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의식 조사연구의 완결도를 제고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방법론적으로는 정성조사(FGI조사)를 병행적으로 실시하여 정량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법의식의 입체적 파악을 도모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 조사결과, 1996년조사와 2009년조사의 비교분석, 2008년조사와 2009년조사의 비교분석, 정성조사의 결과로 나누어 요약·분석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적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2009년조사의 응답자 1,008명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권위적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악법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법률상 대우’를 살펴보면,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며, 여성이 법률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과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법전문가들은 우리사회와 자신의 법준수 정도를(특히 자신)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책조건부진술제와 영장항고제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헌법개정의 경우 5년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6년조사와 2009년조사의 시계열적 비교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한 인상과 관련하여 1996년조사에서는 ‘권위적이다’(43.6%)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조사에서는 ‘공평하다’(39.1%)와 ‘권위적이다’(36.5%)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았다.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1996년조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10%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0.7% → 59.7%).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1996년조사에서는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2009년도 조사에서는 새로 추가된 항목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39.4%)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996년조사(79.5%)에 비해 다소 낮아진 69.5%로 나타났다. 탈법행위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대해 1996년조사와 2009년조사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79.9%→68.0%). 이와 같이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이 높아져 진일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하여는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8.3%→51.2%) 준법의식의 월등한 향상을 엿볼 수 있다.

셋째, 2008년조사와 2009년조사의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한 인상에 대하여 2009년조사에서는 ‘공평하다’(39.1%), ‘권위적이다’(36.5%)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8년조사에서는 ‘권위적이다’(43.6%), ‘불공평하다’(3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악법에 대한

인식도 일반국민(57.3%)에 비해 전문가집단(63.2%)에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65.3%)에 비해 전문가(70.7%)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법준수 정도에 대해, 법전문가들(51.2%)은 일반국민(37.1%)에 비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1.7%, 34/3%)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자신의 법준수에 대해서는 법전문가(99.9%)와 일반국민(91.0%) 모두 ‘잘 지킨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30.0%)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3.5%)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문가(70.9%)와 일반국민(54.9%) 모두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어야 할 범죄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법전문가의 경우 ‘탈세’(34.6%)를, 일반국민의 경우 ‘아동대상범죄’(40.4%)와 ‘성폭력’(40.4%)을 우선적으로 없어야 할 범죄로 꼽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에 대해서, 법전문가(75.9%)와 일반국민(77.9%) 모두 ‘잘 못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에 대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학교에 해결요청’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법의식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나 법준수 정도, 최근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FGI에 의한 정성조사에서는 법의 난해성, 현행법제의 불완전성 및 그 개선의 필요성, 법의 강제적 측면과 당위적 측면의 조화노력, 준법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법교

육의 실현), 집단따돌림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정량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으로 부터의 대안제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법전문가들은 탈법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태도, 준법의식의 함양이나 권리의식의 확산 등에 관한 요청으로부터 보아 우리사회에서의 법의 지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법률상 지위의 개선,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다문화사회와 이중국적에 대한 긍정적 반응 등으로부터 보아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제고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유전무죄 현상을 통한 사법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선진적 법치주의의 정착·발전시키고,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개별적 과제 외에도 실효적 법교육의 강화, 정부의 법정책·제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이 주로 법전문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독립된 결과물로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또한 2008년조사에 이어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의 완결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비교분석한다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1996년조사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그 동안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계열분석 또한 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들에 입각한 충분하고 정치한 분석이 행해지지 못한 아쉬움은 연구를 마치면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초적 결과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은 관련전문가 등의 몫으로 남기면서 글을 마치고 한다.

【참고문헌】

-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1994.
- 강은희 · 이은희 · 임은정,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02.
- 곽한영, 법의식과 법교육-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원, 2007.
- 권미경,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비교분석,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사회갈등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다현,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영향 연구 :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제2호, 2006.
- 김대화 · 박 훈,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08.
- 김시엽 · 김지영, 한국인의 법의식 : 법리(法理)와情理(情理)의 갈등,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03.
- 김신영 · 신동준,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6-R19, 2006.
- 김영란,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 김영인,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법의식 및 정치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제42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3.

【참 고 문 헌】

- 金容圭·郭東憲·朴晋泰, 農村社會의 法意識, 법학논고 第2輯,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김은경, 준법의식 현황과 과제,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의 전개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0. 6.
- 김일영,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과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수정,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 김정오, 규범마찰과 분쟁야기에 따른 정서변화의 양태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_____, 법원의 법문화 : 법원의 이미지 Vs. 법원의 현실, 법과 사회 제21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1.
- 김종철,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 류시조, 헌법개정의 논의방향-권력구조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 문재완,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5. 12.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 박상철 외 2인,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 _____,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상철, 새천년 새정치를 위한 정치법학의 임무, 지정, 1995.
- _____, 韓國人の 法意識, 사법행정 제33권 제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5.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 박은정, 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위하여-규범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한국인상-, 정책포럼 2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0. 2.
- 박재윤, 법교육에 관한 연구-초·중등학교 법교육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19권, 1992.
-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 서경림 외, 제주도민의 법의식,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성낙인,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08.
- 손경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과 언론의 역할, 법과 사회 제18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0.
- 송기춘,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7.
- 심재우, 박병호 교수의 전통적 법, 법의식과 현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2.
- 안청시·백창재 편, 한국정치자금제도-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양 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4.
- _____,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1989.
- _____, 정부형태의 기본문제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참 고 문 헌】

- _____,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2권, 연세대학교, 1982.
- _____, 한국인의 법의식, 사상과 정책, 법문사, 1989.
- _____,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 1968.
- _____, 한국의 법문화론, 고시연구, 1997. 7.
- 양승두 외, 한국의 법문화 I,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윤일중,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방향,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08.
- 오병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평가와 과제,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7.
- 이범열, 헌법의식, 고시계 1988년 11월호(통권 제381호), 1988. 10.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 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5.
- _____, 일본헌법제도론, 세종출판사, 2006.
- 이세정 · 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이승우,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헌법개정의 방향,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이은영, 한국의 계약문화,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제25호, 2003.
- 이종수,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 이헌환, 대법원장의 지위와 사법행정권,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임상혁, 소송기피의 문화전통에 대한 재고와 한국사회, 법과 사회 제25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3.
-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 2007. 2.
- 임 용,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1권, 1998.
- 임현모,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3.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 1975.
- _____,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경학, 國民의 法意識과 法感情, 사법행정 제31권 제6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0. 6.
- 장문철,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식(ADR), 인권과 정의 제215호, 1994.
- 장미향·성한기, 집단따돌림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사회 및 성격, 한국심리학회 제21권 제1호, 2007.
-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법학 제3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山訟)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극원, 법 경시풍조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정만희,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66호, 2002. 4.

【참고문헌】

- 정종섭,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모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 조홍석·변학수, 한국과 독일의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공법학연구 제 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조재현,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최달근, 男女平等에 대한 法意識의 實態調査研究(二), 아시아여성연구 제11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72. 12.
- 최상진·김기범,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사회문제 제5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9.
- 최송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 2006. 10.
- _____,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공법연구 제 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10.
- 최 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대논문집 제17집, 1972.
- 최응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기초질서 확립 방안 전 문가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 최종고, 한국의 傳統的 法文化와 現代的 法意識, 저스티스 제28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5. 12.
- 최종고, 한국법문화의 근대화과정, 석당논총(石堂論叢) 제9집, 1984.
- 한상범, 현대 한국인의 법의식·법사상과 법학, 법학논총 제13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

- 함병춘·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의 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출판부, 1975.
-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 한도현 외, 한국경제선진화와 법치, 백산서당, 2004.
- 황상윤, 악법도 법인가, 월간말 통권 제266호, 2008. 8.
- 황승흠, 법과 사회질서를 보는 사회과학적 시각, 법과 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99.
- _____, 법의식조사의 법사회학 : 방법론 모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 M. Rehbinder, 이영희·최종고 역, 법사회학, 1984.
-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 역, 법과 사회, 법문사, 1990.
- 芦部信喜, 憲法(第三版), 有斐閣, 2005.
- 六本佳平, 法社會學, 有斐閣, 1986.
-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岩波新書, 2005.
- 和田仁孝 編, 法社會學, 法律文化社, 2006.
- 和田仁孝 外, 法社會學の可能性, 法律文化社, 2004.
- 外尾健一·廣中俊雄·樋口陽一, 人權と司法, 勁草書房, 1984.
- 樋口陽一, 比較の中の日本国憲法, 岩波書店, 1979.

부
속

<부록-1> 응답자의 특성

| | | 사례수 | % |
|------------|------------|--------|-------|
| 전체 | 채별 | (1008) | 100.0 |
| 남성 | 자 | (818) | 81.2 |
| 여성 | 별 | (190) | 18.8 |
| 연령 | 연령 | | |
| 20대 | 대 | (122) | 12.1 |
| 30대 | 대 | (349) | 34.6 |
| 40대 | 대 | (352) | 34.9 |
| 50대 | 이상 | (185) | 18.4 |
| 직업 | 직업 | | |
| 직무 | 직무 | (150) | 14.9 |
| 회원의원 | 회원의원 | (49) | 4.9 |
| 중요직 | 중요직 | (203) | 20.1 |
| 지방직 | 지방직 | (50) | 5.0 |
| 판검사 | 판검사 | (46) | 4.6 |
| 간사 | 간사 | (56) | 5.6 |
| 면허사 | 면허사 | (101) | 10.0 |
| 사법연수생 | 사법연수생 | (101) | 10.0 |
| 대학교수 | 대학교수 | (202) | 20.0 |
| 박사과정 | 박사과정 | (50) | 5.0 |
| 직업 | 직업 | | |
| 인원 | 인원 | (199) | 19.7 |
| 행정 | 행정 | (253) | 25.1 |
| 사법 | 사법 | (304) | 30.2 |
| 학계 | 학계 | (252) | 25.0 |
| 근무연수 | 근무연수 | | |
| 5년미만 | 5년미만 | (398) | 39.5 |
| 5년이상~15년미만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32.9 |
| 15년이상 | 15년이상 | (275) | 27.3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3) | .3 |
| 지역 | 지역 | | |
| 서울/경기/인천 | 서울/경기/인천 | (773) | 76.7 |
| 부산/경남/울산 | 부산/경남/울산 | (55) | 5.5 |
| 경북/대구 | 경북/대구 | (23) | 2.3 |
| 대전/충북/충남 | 대전/충북/충남 | (103) | 10.2 |
| 전남/전북/광주 | 전남/전북/광주 | (54) | 5.4 |
| 계층 | 계층 | | |
| 하층 | 하층 | (175) | 17.4 |
| 중상 | 중상 | (499) | 49.5 |
| 상층 | 상층 | (329) | 32.6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5) | .5 |
| 이념성향 | 이념성향 | | |
| 보수 | 보수 | (226) | 22.4 |
| 중도 | 중도 | (568) | 56.3 |
| 진보 | 진보 | (207) | 20.5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7) | .7 |

표3.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계 |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동의하는 편이다 | |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10.8 | 59.9 | 70.7 | 27.7 | 1.6 | 29.3 | 10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818) | 10.5 | 58.8 | 69.3 | 29.1 | 1.6 | 30.7 | 100.0 | |
| 여자 | (190) | 12.1 | 64.7 | 76.8 | 21.6 | 1.6 | 23.2 | 100.0 | |
| 연령 | | | | | | | | | |
| 20대 | (122) | 5.7 | 61.5 | 67.2 | 31.1 | 1.6 | 32.8 | 100.0 | |
| 30대 | (349) | 10.6 | 57.6 | 68.2 | 30.7 | 1.1 | 31.8 | 100.0 | |
| 40대 | (362) | 13.4 | 62.8 | 76.1 | 22.2 | 1.7 | 23.9 | 100.0 | |
| 50대 이상 | (185) | 9.7 | 57.8 | 67.6 | 30.3 | 2.2 | 32.4 | 100.0 | |
| 직업별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16.0 | 70.0 | 86.0 | 13.3 | .7 | 14.0 | 100.0 | |
| 국회의원 | (49) | 14.3 | 59.2 | 73.5 | 20.4 | 6.1 | 26.5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14.3 | 67.5 | 81.8 | 17.7 | .5 | 18.2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18.0 | 56.0 | 74.0 | 24.0 | 2.0 | 26.0 | 100.0 | |
| 판사 | (46) | .0 | 21.7 | 21.7 | 71.7 | 6.5 | 78.3 | 100.0 | |
| 검사 | (56) | 3.6 | 26.8 | 30.4 | 66.1 | 3.6 | 69.6 | 100.0 | |
| 변호사 | (101) | 3.0 | 53.5 | 56.4 | 43.6 | .0 | 43.6 | 100.0 | |
| 사법연수원생 | (101) | 6.9 | 56.4 | 63.4 | 36.6 | 1.0 | 36.6 | 100.0 | |
| 대학교수 | (202) | 11.9 | 66.8 | 77.7 | 20.8 | 1.5 | 22.3 | 100.0 | |
| 박사과정 | (50) | 8.0 | 72.0 | 80.0 | 18.0 | 2.0 | 20.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입법 | (199) | 15.6 | 67.3 | 82.9 | 15.1 | 2.0 | 17.1 | 100.0 | |
| 행정 | (253) | 15.0 | 65.2 | 80.2 | 19.0 | .8 | 19.8 | 100.0 | |
| 사법 | (304) | 3.9 | 44.7 | 48.7 | 49.3 | 2.0 | 51.3 | 100.0 | |
| 학계 | (252) | 11.1 | 67.1 | 78.2 | 20.2 | 1.6 | 21.8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8.5 | 62.3 | 70.9 | 27.6 | 1.5 | 29.1 | 100.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10.8 | 57.8 | 68.7 | 28.9 | 2.4 | 31.3 | 100.0 | |
| 15년 이상 | (275) | 14.2 | 59.3 | 73.5 | 25.8 | .7 | 26.5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33.3 | 33.3 | 66.7 | .0 | 66.7 | 100.0 | |
| 지역별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11.4 | 62.2 | 73.6 | 24.6 | 1.8 | 26.4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5.5 | 43.6 | 49.1 | 50.9 | .0 | 50.9 | 100.0 | |
| 경북/대구 | (23) | 8.7 | 69.6 | 78.3 | 17.4 | 4.3 | 21.7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10.7 | 58.3 | 68.9 | 31.1 | .0 | 31.1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9.3 | 42.6 | 51.9 | 46.3 | 1.9 | 48.1 | 100.0 | |
| 계층별 | | | | | | | | | |
| 하층 | (175) | 19.4 | 60.0 | 79.4 | 20.0 | .6 | 20.6 | 100.0 | |
| 중상 | (499) | 9.8 | 61.7 | 71.5 | 26.5 | 2.0 | 28.5 | 100.0 | |
| 상층 | (329) | 7.6 | 57.1 | 64.7 | 33.7 | 1.5 | 35.3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20.0 | 60.0 | 80.0 | 20.0 | .0 | 20.0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보 | (226) | 18.1 | 67.3 | 85.4 | 13.3 | 1.3 | 14.6 | 100.0 | |
| 중도 | (588) | 8.6 | 60.4 | 69.0 | 29.9 | 1.1 | 31.0 | 100.0 | |
| 보수 | (207) | 8.7 | 50.7 | 59.4 | 37.2 | 3.4 | 40.6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14.3 | 57.1 | 71.4 | 28.6 | .0 | 28.6 | 100.0 | |

표4. 여성의 불리한대우

문)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계 |
|--------------|--------|-----|------------------|----------------|-------|-------------------|-------------------|-------|---|
| | |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2.4 | 37.9 | 40.3 | 51.4 | 8.3 | 59.7 | 10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818) | 2.2 | 34.2 | 36.4 | 53.7 | 9.9 | 63.6 | 100.0 | |
| 여자 | (190) | 3.2 | 53.7 | 56.8 | 41.6 | 1.6 | 43.2 | 100.0 | |
| 연령 | | | | | | | | | |
| 20대 | (122) | 1.6 | 42.6 | 44.3 | 51.6 | 4.1 | 55.7 | 100.0 | |
| 30대 | (349) | 2.3 | 41.0 | 43.3 | 47.9 | 8.9 | 56.7 | 100.0 | |
| 40대 | (352) | 3.7 | 36.9 | 40.6 | 51.7 | 7.7 | 59.4 | 100.0 | |
| 50대 이상 | (185) | .5 | 30.8 | 31.4 | 57.3 | 11.4 | 68.6 | 100.0 | |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2.7 | 46.0 | 48.7 | 44.0 | 7.3 | 51.3 | 100.0 | |
| 국회의원 | (49) | 2.0 | 28.6 | 30.6 | 63.3 | 6.1 | 69.4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1.5 | 30.0 | 31.5 | 58.6 | 9.9 | 68.5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0 | 22.0 | 22.0 | 60.0 | 18.0 | 78.0 | 100.0 | |
| 판사 | (46) | 2.2 | 19.6 | 21.7 | 69.6 | 8.7 | 78.3 | 100.0 | |
| 검사 | (56) | .0 | 23.2 | 23.2 | 62.5 | 14.3 | 76.8 | 100.0 | |
| 변호사 | (101) | 1.0 | 30.7 | 31.7 | 57.4 | 10.9 | 68.3 | 100.0 | |
| 사법연수원생 | (101) | 2.0 | 58.4 | 60.4 | 33.7 | 5.9 | 39.6 | 100.0 | |
| 대학교수 | (202) | 5.4 | 44.1 | 49.5 | 46.5 | 4.0 | 50.5 | 100.0 | |
| 박사과정 | (50) | 2.0 | 52.0 | 54.0 | 38.0 | 8.0 | 46.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임법 | (199) | 2.5 | 41.7 | 44.2 | 48.7 | 7.0 | 55.8 | 100.0 | |
| 행정법 | (253) | 1.2 | 28.5 | 29.6 | 58.9 | 11.5 | 70.4 | 100.0 | |
| 사법 | (304) | 1.3 | 36.8 | 38.2 | 52.3 | 9.5 | 61.8 | 100.0 | |
| 학계 | (252) | 4.8 | 45.6 | 50.4 | 44.8 | 4.8 | 49.6 | 100.0 | |
| 근무연수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1.8 | 45.2 | 47.0 | 47.2 | 5.8 | 53.0 | 100.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4.5 | 34.0 | 38.6 | 52.7 | 8.7 | 61.4 | 100.0 | |
| 15년 이상 | (275) | .7 | 32.4 | 33.1 | 55.3 | 11.6 | 66.9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0 | .0 | 100.0 | .0 | 100.0 | 100.0 | |
| 지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2.3 | 40.5 | 42.8 | 49.0 | 8.2 | 57.2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3.6 | 36.4 | 40.0 | 52.7 | 7.3 | 60.0 | 100.0 | |
| 경북/대구 | (23) | .0 | 34.8 | 34.8 | 55.5 | 8.7 | 65.2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1.9 | 26.2 | 28.2 | 64.1 | 7.8 | 71.8 | 100.0 | |
| 전남/전북/경주 | (54) | 3.7 | 25.9 | 29.6 | 57.4 | 13.0 | 70.4 | 100.0 | |
| 계층 | | | | | | | | | |
| 하층 | (175) | 4.0 | 37.1 | 41.1 | 47.4 | 11.4 | 58.9 | 100.0 | |
| 중상 | (499) | 1.4 | 38.5 | 39.9 | 52.7 | 7.4 | 60.1 | 100.0 | |
| 상층 | (329) | 3.0 | 37.4 | 40.4 | 51.4 | 8.2 | 59.6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0 | 40.0 | 40.0 | 60.0 | .0 | 60.0 | 100.0 | |
| 이념성향 | | | | | | | | | |
| 진보 | (226) | 4.0 | 50.0 | 54.0 | 37.6 | 8.4 | 46.0 | 100.0 | |
| 중도 | (588) | 2.1 | 35.6 | 37.7 | 55.8 | 6.5 | 62.3 | 100.0 | |
| 보수 | (207) | 1.4 | 30.9 | 32.4 | 54.6 | 13.0 | 67.6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0 | 42.9 | 42.9 | 42.9 | 14.3 | 57.1 | 100.0 | |

표4-1.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문) (문4)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1, 2번)’는 응답자만)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남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불철저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406 | 39.4 | 25.1 | 14.8 | 9.1 | 8.9 | 5 | 2.2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298 | 40.3 | 25.5 | 12.8 | 9.4 | 10.1 | 3 | 1.7 | |
| 여자 | 108 | 37.0 | 24.1 | 20.4 | 8.3 | 5.6 | 9 | 3.7 | |
| 연령 | | | | | | | | | |
| 20대 | 54 | 42.6 | 14.8 | 18.5 | 14.8 | 5.6 | 1.9 | 1.9 | |
| 30대 | 151 | 38.4 | 26.5 | 15.2 | 10.6 | 7.9 | .0 | 1.3 | |
| 40대 | 143 | 37.1 | 26.6 | 13.3 | 7.7 | 10.5 | 7 | 4.2 | |
| 50대 이상 | 58 | 44.8 | 27.6 | 13.8 | 3.4 | 10.3 | .0 | .0 | |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73 | 39.7 | 20.5 | 19.2 | 9.6 | 4.1 | 1.4 | 5.5 | |
| 국회 의원 | 15 | 60.0 | 13.3 | 20.0 | .0 | 6.7 | .0 | .0 | |
| 중앙직공무원 | 64 | 46.3 | 26.6 | 14.1 | 9.4 | 3.1 | .0 | 1.6 | |
| 지방직공무원 | 111 | 63.6 | 27.3 | 9.1 | .0 | .0 | .0 | .0 | |
| 판사 | 10 | 50.0 | 30.0 | 10.0 | .0 | 10.0 | .0 | .0 | |
| 검사 | 13 | 38.5 | 23.1 | 15.4 | 15.4 | 7.7 | .0 | .0 | |
| 변호사 | 32 | 25.0 | 40.6 | 6.3 | 6.3 | 18.8 | .0 | 3.1 | |
| 사법연수원생 | 61 | 39.3 | 18.0 | 14.8 | 16.4 | 9.8 | 1.6 | .0 | |
| 대학 교수 | 100 | 34.0 | 28.0 | 16.0 | 6.0 | 15.0 | .0 | 3.0 | |
| 박사 과정 | 27 | 37.0 | 33.3 | 11.1 | 14.8 | 3.7 | .0 | .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임업 | 88 | 43.2 | 19.3 | 19.3 | 8.0 | 4.5 | 1.1 | 4.5 | |
| 행정 | 75 | 48.0 | 26.7 | 13.3 | 8.0 | 2.7 | .0 | 1.3 | |
| 사법 | 116 | 36.2 | 25.9 | 12.1 | 12.1 | 12.1 | .9 | .9 | |
| 학계 | 127 | 34.6 | 27.6 | 15.0 | 7.9 | 12.6 | .0 | 2.4 | |
| 근무연수 | | | | | | | | | |
| 5년 미만 | 187 | 38.5 | 20.3 | 17.1 | 12.8 | 8.0 | .5 | 2.7 | |
| 5년이상-15년미만 | 128 | 36.7 | 31.3 | 11.7 | 7.8 | 10.2 | .0 | 2.3 | |
| 15년 이상 | 91 | 46.1 | 26.4 | 14.3 | 3.3 | 8.8 | 1.1 | 1.1 | |
| 지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331 | 39.3 | 23.6 | 14.5 | 9.4 | 10.0 | .6 | 2.7 | |
| 부산/경남/울산 | 22 | 40.9 | 27.3 | 22.7 | 4.5 | 4.5 | .0 | .0 | |
| 경북/대구 | 8 | 75.0 | 25.0 | .0 | .0 | .0 | .0 | .0 | |
| 대전/충북/충남 | 29 | 34.5 | 27.6 | 17.2 | 17.2 | 3.4 | .0 | .0 | |
| 전남/전북/광주 | 16 | 31.3 | 50.0 | 12.5 | .0 | 6.3 | .0 | .0 | |
| 계층 | | | | | | | | | |
| 하층 | 72 | 40.3 | 18.1 | 18.1 | 13.9 | 6.9 | 1.4 | 1.4 | |
| 중간 | 169 | 39.7 | 24.1 | 13.6 | 9.0 | 10.6 | .0 | 3.0 | |
| 상층 | 133 | 38.3 | 30.8 | 15.0 | 6.8 | 6.8 | .8 | 1.5 | |
| 모름/무응답 | 2 | 50.0 | .0 | .0 | .0 | 50.0 | .0 | .0 | |
| 이념성향 | | | | | | | | | |
| 진보 | 122 | 34.4 | 24.6 | 16.4 | 10.7 | 13.9 | .0 | .0 | |
| 중도 | 214 | 39.7 | 27.1 | 13.6 | 8.4 | 6.5 | .9 | 3.7 | |
| 보수 | 67 | 46.3 | 19.4 | 16.4 | 9.0 | 7.5 | .0 | 1.5 | |
| 모름/무응답 | 3 | 66.7 | 33.3 | .0 | .0 | .0 | .0 | .0 | |

(continued)

표5. 법을 어기면서 사는사람에 대한 의견

문)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 사태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전적으로 동의한다 | 대체로 동의한다 |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4.2 | 27.2 | 31.3 | 45.3 | 22.6 | 68.0 | .7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3.9 | 25.9 | 29.8 | 44.9 | 24.8 | 69.7 | .5 | 100.0 | |
| 여자 | (190) | 5.3 | 32.6 | 37.9 | 47.4 | 13.2 | 60.5 | 1.6 | 100.0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4.9 | 27.9 | 32.8 | 49.2 | 16.4 | 66.6 | 1.6 | 100.0 | |
| 30대 | (349) | 2.6 | 25.8 | 28.4 | 48.4 | 22.3 | 70.8 | .9 | 100.0 | |
| 40대 | (362) | 5.4 | 27.3 | 32.7 | 42.6 | 24.1 | 66.8 | .6 | 100.0 | |
| 50대 이상 | (165) | 4.3 | 29.2 | 33.5 | 42.2 | 24.3 | 66.5 | .0 | 100.0 | |
| 직업 | | | | | | | | | | |
| 직업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7.3 | 27.3 | 34.7 | 46.0 | 18.7 | 64.7 | .7 | 100.0 | |
| 국회의원 | (49) | 6.1 | 30.6 | 36.7 | 49.0 | 14.3 | 63.3 | .0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6.9 | 36.0 | 42.9 | 41.9 | 14.8 | 56.7 | .5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6.0 | 34.0 | 40.0 | 44.0 | 16.0 | 60.0 | .0 | 100.0 | |
| 판사 | (46) | 2.2 | 10.9 | 13.0 | 32.6 | 54.3 | 87.0 | .0 | 100.0 | |
| 검사 | (56) | .0 | 14.3 | 14.3 | 51.8 | 33.9 | 86.7 | .0 | 100.0 | |
| 변호사 | (101) | 1.0 | 22.8 | 23.8 | 55.4 | 17.8 | 73.3 | 3.0 | 100.0 | |
| 사법연수생 | (101) | 3.0 | 34.7 | 37.6 | 43.6 | 17.8 | 61.4 | 1.0 | 100.0 | |
| 대학교수 | (202) | 2.5 | 21.8 | 24.3 | 44.1 | 31.7 | 75.7 | .0 | 100.0 | |
| 박사과정 | (50) | 2.0 | 26.0 | 28.0 | 48.0 | 22.0 | 70.0 | 2.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199) | 7.0 | 28.1 | 35.2 | 46.7 | 17.6 | 64.3 | .5 | 100.0 | |
| 행정 | (253) | 6.7 | 35.6 | 42.3 | 42.3 | 15.0 | 57.3 | .4 | 100.0 | |
| 사법 | (304) | 1.6 | 23.4 | 25.0 | 47.4 | 26.3 | 73.7 | 1.3 | 100.0 | |
| 학계 | (252) | 2.4 | 22.6 | 25.0 | 44.8 | 29.8 | 74.6 | .4 | 100.0 | |
| 근무연수 | | | | | | | | | | |
| 5년 미만 | (338) | 2.3 | 29.9 | 32.2 | 45.5 | 21.4 | 66.8 | 1.0 | 100.0 |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4.5 | 21.1 | 25.6 | 46.7 | 26.8 | 73.5 | .9 | 100.0 | |
| 15년 이상 | (275) | 6.5 | 30.9 | 37.5 | 42.9 | 19.6 | 62.5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0 | .0 | 100.0 | .0 | 100.0 | .0 | 100.0 | |
| 지역 | | | | | | | | | | |
| 지역별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4.1 | 27.3 | 31.4 | 45.9 | 21.7 | 67.7 | .9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0 | 27.3 | 27.3 | 40.0 | 32.7 | 72.7 | .0 | 100.0 | |
| 경북/대구 | (23) | .0 | 26.1 | 26.1 | 52.2 | 21.7 | 73.9 | .0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7.8 | 27.2 | 35.0 | 39.8 | 25.2 | 65.0 | .0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3.7 | 25.9 | 29.6 | 50.0 | 20.4 | 70.4 | .0 | 100.0 | |
| 계 | | | | | | | | | | |
| 계층 | | | | | | | | | | |
| 계층별 | | | | | | | | | | |
| 하층 | (175) | 6.3 | 33.1 | 39.4 | 40.0 | 20.6 | 60.6 | .0 | 100.0 | |
| 중층 | (498) | 4.2 | 28.1 | 32.3 | 46.3 | 20.4 | 66.7 | 1.0 | 100.0 | |
| 상층 | (329) | 3.0 | 22.5 | 25.5 | 46.8 | 27.1 | 73.9 | .6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0 | 40.0 | 40.0 | 40.0 | 20.0 | 60.0 | .0 | 100.0 | |
| 이력사항 | | | | | | | | | | |
| 이력사항별 | | | | | | | | | | |
| 진보 | (226) | 7.1 | 28.3 | 35.4 | 40.3 | 23.9 | 64.2 | .4 | 100.0 | |
| 중도 | (568) | 3.0 | 27.8 | 30.8 | 47.2 | 21.1 | 68.3 | .9 | 100.0 | |
| 보수 | (207) | 4.3 | 24.6 | 29.0 | 45.9 | 25.1 | 71.0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0 | 14.3 | 14.3 | 42.9 | 28.6 | 71.4 | 14.3 | 100.0 | |

표6. 우리사회의 법준수 실태

문)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계 |
|------------|--------|--------------|------------|------|------------|-------------|------|-------|
| |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 잘 지켜지지 않는다 |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1.1 | 50.1 | 51.2 | 48.0 | .8 | 48.8 | 100.0 |
| 남자 | (818) | 1.3 | 49.1 | 50.5 | 48.9 | .6 | 49.5 | 100.0 |
| 여자 | (190) | .0 | 54.2 | 54.2 | 44.2 | 1.6 | 45.8 | 100.0 |
| 연령 | | | | | | | | |
| 20대 | (122) | 2.5 | 52.5 | 54.9 | 44.3 | .8 | 45.1 | 100.0 |
| 30대 | (349) | .9 | 56.2 | 57.0 | 42.4 | .6 | 43.0 | 100.0 |
| 40대 | (352) | 1.1 | 45.7 | 46.9 | 52.0 | 1.1 | 53.1 | 100.0 |
| 50대 이상 | (185) | .5 | 45.4 | 45.9 | 53.5 | .5 | 54.1 | 100.0 |
| 직업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7 | 46.0 | 46.7 | 52.0 | 1.3 | 53.3 | 100.0 |
| 국회의원 | (49) | 2.0 | 59.2 | 61.2 | 38.8 | .0 | 38.8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2.0 | 55.2 | 57.1 | 42.4 | .5 | 42.9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0 | 50.0 | 50.0 | 50.0 | .0 | 50.0 | 100.0 |
| 판사 | (46) | .0 | 37.0 | 37.0 | 63.0 | .0 | 63.0 | 100.0 |
| 감사 | (56) | 1.8 | 57.1 | 58.9 | 39.3 | 1.8 | 41.1 | 100.0 |
| 변호사 | (101) | .0 | 56.4 | 56.4 | 43.6 | .0 | 43.6 | 100.0 |
| 사법연수원생 | (101) | 3.0 | 56.4 | 59.4 | 38.6 | 2.0 | 40.6 | 100.0 |
| 대학교수 | (202) | .5 | 40.6 | 41.1 | 58.4 | .5 | 58.9 | 100.0 |
| 박사과정 | (50) | .0 | 50.0 | 50.0 | 48.0 | 2.0 | 50.0 | 100.0 |
| 직업분류별 | | | | | | | | |
| 입법 | (199) | 1.0 | 49.2 | 50.3 | 48.7 | 1.0 | 49.7 | 100.0 |
| 행정 | (253) | 1.6 | 54.2 | 55.7 | 43.9 | .4 | 44.3 | 100.0 |
| 사회 | (304) | 1.3 | 53.6 | 54.9 | 44.1 | 1.0 | 45.1 | 100.0 |
| 학계 | (252) | .4 | 42.5 | 42.9 | 56.3 | .8 | 57.1 | 100.0 |
| 근무연수별 | | | | | | | | |
| 5년 미만 | (398) | 1.5 | 53.3 | 54.8 | 44.5 | .8 | 45.2 | 100.0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6 | 49.4 | 50.0 | 48.8 | 1.2 | 50.0 | 100.0 |
| 15년 이상 | (275) | 1.1 | 46.2 | 47.3 | 52.4 | .4 | 52.7 | 100.0 |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100.0 |
| 지역별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1.2 | 50.7 | 51.9 | 47.2 | .9 | 48.1 | 100.0 |
| 부산/경남/울산 | (55) | .0 | 43.6 | 43.6 | 56.4 | .0 | 56.4 | 100.0 |
| 경북/대구 | (23) | .0 | 34.8 | 34.8 | 65.2 | .0 | 65.2 | 100.0 |
| 대전/충북/충남 | (103) | 1.9 | 51.5 | 53.4 | 45.6 | 1.0 | 46.6 | 100.0 |
| 전남/전북/광주 | (54) | .0 | 51.9 | 51.9 | 48.1 | .0 | 48.1 | 100.0 |
| 계 | | | | | | | | |
| 하층 | (175) | .0 | 50.3 | 50.3 | 49.1 | .6 | 49.7 | 100.0 |
| 중상 | (499) | 1.4 | 52.9 | 54.3 | 45.1 | .6 | 45.7 | 100.0 |
| 상층 | (329) | 1.2 | 45.3 | 46.5 | 52.3 | 1.2 | 53.5 | 100.0 |
| 모름/무응답 | (5) | .0 | 80.0 | 80.0 | 20.0 | .0 | 20.0 | 100.0 |
| 이별성향별 | | | | | | | | |
| 진보 | (226) | .4 | 47.3 | 47.8 | 52.2 | .0 | 52.2 | 100.0 |
| 중도 | (508) | 1.4 | 51.2 | 52.6 | 46.7 | .7 | 47.4 | 100.0 |
| 보수 | (207) | 1.0 | 49.8 | 50.7 | 47.3 | 1.9 | 49.3 | 100.0 |
| 모름/무응답 | (7) | .0 | 57.1 | 57.1 | 42.9 | .0 | 42.9 | 100.0 |

표6-1. (우리사회)비준수 이유

문) (문6)에서‘지켜지지 않는다(3,4번)’는 응답자만)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법대로 살면 | 법을 지키지 | 법을 지키는 | 법을 지키지 | 법을 지키지 | 법을 잘 | 기타 |
|--------------|-------|-------|--------|--------|--------|--------|--------|------|----|
| | | | 손해를 | 않아도 | 것이 | 않는 사람이 | 않아도 다른 | 몰라서 | |
| | | | 보니까 | 처벌을 받지 | 번거롭고 | 더 많아서 | 사람이 모를 | | |
| | | | | 않을 것으로 | 불편해서 | | 것으로 | | |
| | | | | 생각되기 | | | 생각되기 | | |
| | | | 때문에 | | | | 때문에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42) | 31.7 | 25.4 | 16.9 | 12.6 | 6.1 | 4.5 | 2.8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45) | 31.1 | 25.2 | 17.8 | 12.1 | 6.9 | 3.7 | 3.2 | |
| 여성 | (87) | 34.5 | 26.4 | 12.6 | 14.9 | 2.3 | 8.0 | 1.1 | |
| 연령 | | | | | | | | | |
| 20대 | (55) | 25.5 | 27.3 | 20.0 | 9.1 | 9.1 | 7.3 | 1.8 | |
| 30대 | (15) | 32.0 | 23.3 | 16.0 | 9.3 | 9.3 | 8.7 | 1.3 | |
| 40대 | (187) | 34.2 | 26.2 | 15.5 | 15.0 | 3.7 | 1.1 | 4.3 | |
| 50대 이상 | (100) | 30.0 | 26.0 | 19.0 | 15.0 | 4.0 | 3.0 | 3.0 | |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80) | 36.3 | 25.0 | 11.3 | 11.3 | 5.0 | 10.0 | 1.3 | |
| 국회 의원 | (19) | 31.6 | 21.1 | 10.5 | 10.5 | 10.5 | 5.3 | 10.5 | |
| 중앙직공무원 | (87) | 46.0 | 18.4 | 9.2 | 14.9 | 8.0 | 2.3 | 1.1 | |
| 지방직공무원 | (25) | 44.0 | 24.0 | 16.0 | 8.0 | 4.0 | 4.0 | .0 | |
| 관사 | (29) | 20.7 | 37.9 | 20.7 | 3.4 | 6.9 | 6.9 | 3.4 | |
| 감사 | (23) | 26.1 | 34.8 | 21.7 | 4.3 | 8.7 | .0 | 4.3 | |
| 변호사 | (44) | 25.0 | 15.9 | 18.2 | 15.9 | 11.4 | 6.8 | 6.8 | |
| 사법연수원생 | (41) | 24.4 | 41.5 | 22.0 | 7.3 | 4.9 | .0 | .0 | |
| 대학 교수 | (119) | 23.5 | 28.6 | 23.5 | 16.8 | 2.5 | 1.7 | 3.4 | |
| 박사 과정 | (25) | 36.0 | 8.0 | 16.0 | 16.0 | 8.0 | 12.0 | 4.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법 | (99) | 35.4 | 24.2 | 11.1 | 11.1 | 6.1 | 9.1 | 3.0 | |
| 행정 | (112) | 45.5 | 19.6 | 10.7 | 13.4 | 7.1 | 2.7 | .9 | |
| 사법계 | (137) | 24.1 | 31.4 | 20.4 | 8.8 | 8.0 | 3.6 | 3.6 | |
| 학계 | (144) | 25.7 | 25.0 | 22.2 | 16.7 | 3.5 | 3.5 | 3.5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180) | 27.2 | 26.7 | 18.3 | 12.8 | 6.7 | 6.7 | 1.7 | |
| 5년 이상-15년 미만 | (166) | 33.7 | 23.5 | 19.3 | 9.0 | 6.6 | 3.0 | 4.8 | |
| 15년 이상 | (145) | 35.2 | 25.5 | 12.4 | 16.6 | 4.8 | 3.4 | 2.1 | |
| 모름/무응답 | (1) | .0 | 100.0 | .0 | .0 | .0 | .0 | .0 | |
| 지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372) | 31.2 | 25.8 | 15.9 | 12.6 | 6.2 | 4.8 | 3.5 | |
| 부산/경남/울산 | (31) | 22.6 | 36.7 | 19.4 | 6.5 | 6.5 | 6.5 | .0 | |
| 경북/대구 | (15) | 26.7 | 26.7 | 13.3 | 33.3 | .0 | .0 | .0 | |
| 대전/충북/충남 | (46) | 39.6 | 18.8 | 14.6 | 12.5 | 10.4 | 4.2 | .0 | |
| 전남/전북/광주 | (26) | 38.5 | 15.4 | 34.6 | 7.7 | .0 | .0 | 3.8 | |
| 계층 | | | | | | | | | |
| 하층 | (87) | 40.2 | 14.9 | 16.1 | 13.8 | 5.7 | 5.7 | 3.4 | |
| 중상 | (228) | 32.0 | 28.9 | 13.6 | 12.3 | 7.5 | 3.5 | 2.2 | |
| 상층 | (176) | 26.7 | 26.1 | 21.6 | 12.5 | 4.5 | 5.1 | 3.4 | |
| 모름/무응답 | (1) | 100.0 | .0 | .0 | .0 | .0 | .0 | .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보 | (118) | 40.7 | 21.2 | 19.5 | 9.3 | 2.5 | 3.4 | 3.4 | |
| 중도 | (289) | 30.1 | 26.8 | 14.9 | 13.4 | 8.2 | 4.5 | 2.2 | |
| 보수 | (102) | 26.5 | 26.5 | 18.6 | 13.7 | 4.9 | 5.9 | 3.9 | |
| 모름/무응답 | (3) | .0 | 33.3 | 33.3 | 33.3 | .0 | .0 | .0 | |

(continued)

표6-1. (우리사회)비준수 이유

| | | |
|--|--|--|
| | | |
|--|--|--|

문) (문6)에서 ‘지켜지지 않는다(3,4번)’는 응답자만)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만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림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울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림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녀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향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림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100.0 | <input type="checkbox"/> |

표8-1. 분야별 법준수 정도-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계 |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1.4 | 10.8 | 12.2 | 64.3 | 23.5 | 87.8 | 100.0 | | |
| 남자 | 818 | 1.5 | 11.1 | 12.6 | 63.8 | 23.6 | 87.4 | 100.0 | | |
| 여자 | 190 | 1.1 | 9.5 | 10.5 | 66.3 | 23.2 | 89.5 | 100.0 |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1.6 | 20.5 | 22.1 | 60.7 | 17.2 | 77.9 | 100.0 | | |
| 30대 | 349 | 1.7 | 12.0 | 13.8 | 64.5 | 21.8 | 86.2 | 100.0 | | |
| 40대 | 352 | 1.7 | 9.1 | 10.8 | 62.5 | 26.7 | 89.2 | 100.0 | | |
| 50대 이상 | 185 | .0 | 5.4 | 5.4 | 69.7 | 24.9 | 94.6 | 100.0 | | |
| 직업 | | | | | | | |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7 | 11.3 | 12.0 | 73.3 | 14.7 | 88.0 | 100.0 | | |
| 국회의원 | 49 | 4.1 | 38.8 | 42.9 | 51.0 | 6.1 | 57.1 | 100.0 | | |
| 중앙직공무원 | 203 | 1.0 | 7.9 | 8.9 | 67.0 | 24.1 | 91.1 | 100.0 | | |
| 지방직공무원 | 50 | .0 | .0 | .0 | 68.0 | 32.0 | 100.0 | 100.0 | | |
| 판사 | 46 | .0 | .0 | .0 | 73.9 | 26.1 | 100.0 | 100.0 | | |
| 검정사 | 56 | 3.6 | 7.1 | 10.7 | 64.3 | 25.0 | 89.3 | 100.0 | | |
| 변호사 | 101 | 2.0 | 9.9 | 11.9 | 73.3 | 14.9 | 88.1 | 100.0 | | |
| 사범연수원생 | 101 | 3.0 | 22.8 | 25.7 | 49.5 | 24.8 | 74.3 | 100.0 | | |
| 대학교수 | 202 | 1.0 | 8.4 | 9.4 | 60.4 | 30.2 | 90.6 | 100.0 | | |
| 박사과정 | 50 | .0 | 6.0 | 6.0 | 54.0 | 40.0 | 94.0 | 100.0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199 | 1.5 | 18.1 | 19.6 | 67.8 | 12.6 | 80.4 | 100.0 | | |
| 행정 | 253 | .8 | 6.3 | 7.1 | 67.2 | 25.7 | 92.9 | 100.0 | | |
| 사학 | 304 | 2.3 | 12.2 | 14.5 | 63.8 | 21.7 | 85.5 | 100.0 | | |
| 학계 | 252 | .8 | 7.9 | 8.7 | 59.1 | 32.1 | 91.3 | 100.0 | | |
| 근무연수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2.0 | 14.3 | 16.3 | 62.6 | 21.1 | 83.7 | 100.0 | |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1.5 | 10.2 | 11.7 | 65.7 | 22.6 | 88.3 | 100.0 | | |
| 15년 이상 | 275 | .4 | 6.5 | 6.9 | 65.1 | 28.0 | 93.1 | 100.0 | | |
| 모름/무응답 | (3) | .0 | .0 | .0 | 66.7 | 33.3 | 100.0 | 100.0 | | |
| 지역 | | | | | | | | | | |
| 지역별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1.3 | 12.3 | 13.6 | 64.9 | 21.5 | 86.4 | 100.0 | | |
| 부산/경남/울산 | 55 | .0 | 5.5 | 5.5 | 70.9 | 23.6 | 94.5 | 100.0 | | |
| 경북/대구 | (23) | .0 | .0 | .0 | 60.9 | 39.1 | 100.0 | 100.0 | | |
| 대전/충북/충남 | 103 | 1.9 | 8.7 | 10.7 | 56.3 | 33.0 | 89.3 | 100.0 | | |
| 전남/전북/광주 | 54 | 3.7 | 3.7 | 7.4 | 64.8 | 27.8 | 92.6 | 100.0 | | |
| 계 총 | | | | | | | | | | |
| 총 | 175 | 1.7 | 10.3 | 12.0 | 59.4 | 28.6 | 88.0 | 100.0 | | |
| 상 | 499 | .6 | 12.6 | 13.2 | 65.7 | 21.0 | 86.8 | 100.0 | | |
| 상 | 329 | 2.4 | 8.5 | 10.9 | 64.4 | 24.6 | 89.1 | 100.0 | | |
| 모름/무응답 | (5) | .0 | .0 | .0 | 80.0 | 20.0 | 100.0 | 100.0 | | |
| 이념성향 | | | | | | | | |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9 | 10.2 | 11.1 | 60.6 | 28.3 | 88.9 | 100.0 | | |
| 중도 | 568 | 1.2 | 11.1 | 12.3 | 67.4 | 20.2 | 87.7 | 100.0 | | |
| 보수 | 207 | 2.4 | 10.6 | 13.0 | 59.4 | 27.5 | 87.0 | 100.0 | | |
| 모름/무응답 | (7) | .0 | 14.3 | 14.3 | 71.4 | 14.3 | 85.7 | 100.0 | | |

표8-2. 분야별 법준수 정도-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전체 | 채별 | (1008) | 10.1 | 71.1 | 81.3 | 17.7 | 9 | 18.6 | 2 | 100.0 | | |
| 남자 | 자 | (818) | 11.1 | 70.7 | 81.8 | 17.0 | 1.0 | 18.0 | 2 | 100.0 | | |
| 여성 | 자 | (190) | 5.8 | 73.2 | 78.9 | 20.5 | 5 | 21.1 | 0 | 100.0 | | |
| 20대 | 연령 | (122) | 5.7 | 64.8 | 70.5 | 27.0 | 2.5 | 29.5 | 0 | 100.0 | | |
| 30대 | 연령 | (349) | 10.0 | 71.6 | 81.7 | 17.8 | 6 | 18.3 | 0 | 100.0 | | |
| 40대 | 연령 | (362) | 9.7 | 72.4 | 82.1 | 17.0 | 9 | 17.9 | 0 | 100.0 | | |
| 50대 이상 | 연령 | (165) | 14.1 | 71.9 | 85.9 | 12.4 | 5 | 13.0 | 1.1 | 100.0 | | |
| 각 직업 | 별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 (150) | 7.3 | 72.7 | 80.0 | 19.3 | 7 | 20.0 | 0 | 100.0 | | |
| 국회의원 | | (49) | 6.1 | 61.2 | 67.3 | 30.6 | 2.0 | 32.7 | 0 | 100.0 | | |
| 중앙직공무원 | | (203) | 19.7 | 77.8 | 97.5 | 2.5 | 0 | 2.5 | 0 | 100.0 | | |
| 지방직공무원 | | (50) | 24.0 | 72.0 | 96.0 | 4.0 | 0 | 4.0 | 0 | 100.0 | | |
| 관공 | 사 | (46) | 0 | 84.8 | 84.8 | 15.2 | 0 | 15.2 | 0 | 100.0 | | |
| 변공 | 사 | (56) | 12.5 | 75.0 | 87.5 | 12.5 | 0 | 12.5 | 0 | 100.0 | | |
| 변후 | 사 | (101) | 5.9 | 78.2 | 84.2 | 15.8 | 0 | 15.8 | 0 | 100.0 | | |
| 사법연수원생 | | (101) | 8.9 | 53.5 | 62.4 | 33.7 | 4.0 | 37.6 | 0 | 100.0 | | |
| 대학교수 | | (202) | 5.9 | 65.8 | 71.8 | 25.7 | 1.5 | 27.2 | 1.0 | 100.0 | | |
| 박사과정 | | (50) | 4.0 | 74.0 | 78.0 | 22.0 | 0 | 22.0 | 0 | 100.0 | | |
| 직업부류 | 별 | | | | | | | | | | | |
| 일행 | 사 | (199) | 7.0 | 69.8 | 76.9 | 22.1 | 1.0 | 23.1 | 0 | 100.0 | | |
| 사행 | 사 | (253) | 20.6 | 76.7 | 97.2 | 2.8 | 0 | 2.8 | 0 | 100.0 | | |
| 사학 | 계 | (304) | 7.2 | 70.4 | 77.6 | 21.1 | 1.3 | 22.4 | 0 | 100.0 | | |
| 학계 | | (252) | 5.6 | 67.5 | 73.0 | 25.0 | 1.2 | 26.2 | 0.8 | 100.0 | | |
| 근무연수 | 별 | | | | | | | | | | | |
| 5년 미만 | | (398) | 8.3 | 67.1 | 75.4 | 23.6 | 1.0 | 24.6 | 0 | 100.0 | | |
| 5년이상-15년미만 | | (332) | 8.1 | 74.4 | 82.5 | 16.3 | 9 | 17.2 | 3 | 100.0 | | |
| 15년 이상 | | (275) | 15.3 | 73.1 | 88.4 | 10.5 | 7 | 11.3 | 4 | 100.0 | | |
| 모름/무응답 |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0 | 100.0 | | |
| 지역 | 별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773) | 10.0 | 69.6 | 79.6 | 19.1 | 1.0 | 20.2 | 3 | 100.0 | | |
| 부산/경남/울산 | | (55) | 3.6 | 81.8 | 85.5 | 14.5 | 0 | 14.5 | 0 | 100.0 | | |
| 경북/대구 | | (23) | 17.4 | 47.8 | 65.2 | 30.4 | 4.3 | 34.8 | 0 | 100.0 | | |
| 대전/충북/충남 | | (103) | 12.6 | 82.5 | 95.1 | 4.9 | 0 | 4.9 | 0 | 100.0 | | |
| 전남/전북/광주 | | (54) | 11.1 | 70.4 | 81.5 | 18.5 | 0 | 18.5 | 0 | 100.0 | | |
| 계총 | | | | | | | | | | | | |
| 하총 | | (175) | 9.1 | 69.1 | 78.3 | 21.1 | 6 | 21.7 | 0 | 100.0 | | |
| 중상 | | (48) | 9.2 | 72.3 | 81.6 | 17.4 | 1.0 | 18.4 | 0 | 100.0 | | |
| 상총 | | (329) | 12.2 | 70.2 | 82.4 | 16.4 | 9 | 17.3 | 3 | 100.0 | | |
| 모름/무응답 | | (5) | 0 | 80.0 | 80.0 | 0 | 0 | 0 | 20.0 | 100.0 | | |
| 이별 | 성향 | | | | | | | | | | | |
| 진보 | | (226) | 8.0 | 67.7 | 75.7 | 23.0 | 1.3 | 24.3 | 0 | 100.0 | | |
| 중도 | | (568) | 10.4 | 72.2 | 82.6 | 16.2 | 9 | 17.1 | 4 | 100.0 | | |
| 보수 | | (207) | 11.6 | 71.5 | 83.1 | 16.4 | 5 | 16.9 | 0 | 100.0 | | |
| 모름/무응답 | | (7) | 14.3 | 85.7 | 100.0 | 0 | 0 | 0 | 0 | 100.0 | | |

표8-3. 분야별 법준수 정도-경제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2.2 | 39.4 | 41.6 | 53.1 | 5.3 | 58.3 | .1 | 100.0 |
| 남자 | 818 | 2.6 | 41.4 | 44.0 | 51.5 | 4.4 | 55.9 | .1 | 100.0 |
| 여자 | 190 | .5 | 30.5 | 31.1 | 60.0 | 8.9 | 68.9 | .0 | 100.0 |
| 연령 | | | | | | | | | |
| 20대 | 122 | .8 | 35.2 | 36.1 | 54.1 | 9.8 | 63.9 | .0 | 100.0 |
| 30대 | 349 | 3.2 | 39.8 | 43.0 | 51.9 | 5.2 | 57.0 | .0 | 100.0 |
| 40대 | 352 | 2.0 | 38.6 | 40.6 | 53.7 | 5.4 | 59.1 | .3 | 100.0 |
| 50대 이상 | 185 | 1.6 | 42.7 | 44.3 | 53.5 | 2.2 | 55.7 | .0 | 100.0 |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7 | 35.3 | 36.0 | 58.0 | 6.0 | 64.0 | .0 | 100.0 |
| 국회의원 | 49 | 6.1 | 42.9 | 49.0 | 44.9 | 6.1 | 51.0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203 | 2.0 | 45.8 | 47.8 | 49.3 | 2.5 | 51.7 | .5 | 100.0 |
| 지방직공무원 | 50 | .0 | 46.0 | 46.0 | 54.0 | .0 | 54.0 | .0 | 100.0 |
| 판사 | 46 | .0 | 34.8 | 34.8 | 60.9 | 4.3 | 65.2 | .0 | 100.0 |
| 검찰 | 56 | 3.6 | 30.4 | 33.9 | 62.5 | 3.6 | 66.1 | .0 | 100.0 |
| 변호사 | 101 | 4.0 | 46.5 | 50.5 | 48.5 | 1.0 | 49.5 | .0 | 100.0 |
| 사범연수원생 | 101 | 2.0 | 38.6 | 40.6 | 48.5 | 10.9 | 59.4 | .0 | 100.0 |
| 대학교수 | 202 | 2.5 | 32.2 | 34.7 | 58.4 | 6.9 | 65.3 | .0 | 100.0 |
| 박사과정 | 50 | 2.0 | 46.0 | 48.0 | 40.0 | 12.0 | 52.0 | .0 | 100.0 |
| 직업분류 | | | | | | | | | |
| 일급 | 199 | 2.0 | 37.2 | 39.2 | 54.8 | 6.0 | 60.8 | .0 | 100.0 |
| 행정장 | 253 | 1.6 | 45.8 | 47.4 | 50.2 | 2.0 | 52.2 | .4 | 100.0 |
| 사법계 | 304 | 2.6 | 39.1 | 41.8 | 53.0 | 5.3 | 58.2 | .0 | 100.0 |
| 학계 | 252 | 2.4 | 34.9 | 37.3 | 54.8 | 7.9 | 62.7 | .0 | 100.0 |
| 근무연수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3.0 | 35.4 | 38.4 | 55.0 | 6.5 | 61.6 | .0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2.1 | 43.1 | 45.2 | 50.3 | 4.5 | 54.8 | .0 | 100.0 |
| 15년 이상 | 275 | 1.1 | 40.4 | 41.5 | 53.8 | 4.4 | 58.2 | .4 | 100.0 |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0 | 100.0 |
| 지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2.2 | 39.1 | 41.3 | 53.3 | 5.3 | 58.6 | .1 | 100.0 |
| 부산/경남/울산 | 55 | 1.8 | 43.6 | 45.5 | 47.3 | 7.3 | 54.5 | .0 | 100.0 |
| 경북/대구 | 23 | .0 | 34.8 | 34.8 | 56.5 | 8.7 | 65.2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103 | 1.9 | 41.7 | 43.7 | 53.4 | 2.9 | 56.3 | .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54 | 3.7 | 37.0 | 40.7 | 53.7 | 5.6 | 59.3 | .0 | 100.0 |
| 계 | | | | | | | | | |
| 하층 | 175 | 1.7 | 34.3 | 36.0 | 58.3 | 5.7 | 64.0 | .0 | 100.0 |
| 중상 | 499 | 1.2 | 40.5 | 41.7 | 52.5 | 5.6 | 58.1 | .2 | 100.0 |
| 상층 | 329 | 4.0 | 40.1 | 44.1 | 51.4 | 4.6 | 55.9 | .0 | 100.0 |
| 모름/무응답 | 5 | .0 | 60.0 | 60.0 | 40.0 | .0 | 40.0 | .0 | 100.0 |
| 이별성향 | | | | | | | | | |
| 진보 | 226 | .4 | 29.2 | 29.6 | 60.6 | 9.3 | 69.9 | .4 | 100.0 |
| 중도 | 568 | 2.3 | 41.4 | 43.7 | 51.8 | 4.6 | 56.3 | .0 | 100.0 |
| 보수 | 207 | 3.9 | 44.9 | 48.8 | 48.3 | 2.9 | 51.2 | .0 | 100.0 |
| 모름/무응답 | 7 | .0 | 42.9 | 42.9 | 57.1 | .0 | 57.1 | .0 | 100.0 |

표8-4. 분야별 법준수 정도-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아니고 있다 | 전혀 아니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채별 | (1008) | 1.6 | 24.5 | 26.1 | 61.0 | 12.8 | 73.8 | .1 | 100.0 |
| 남자 | 자 | (818) | 1.8 | 23.0 | 24.8 | 60.6 | 14.4 | 75.1 | .1 | 100.0 |
| 여성 | 자 | (190) | .5 | 31.1 | 31.6 | 62.6 | 5.8 | 68.4 | .0 | 100.0 |
| 연령 | 연 | | | | | | | | | |
| 20대 | 대 | (122) | 1.6 | 32.0 | 33.6 | 55.7 | 10.7 | 66.4 | .0 | 100.0 |
| 30대 | 대 | (349) | 1.7 | 24.1 | 25.8 | 64.8 | 9.5 | 74.2 | .0 | 100.0 |
| 40대 | 대 | (362) | 2.3 | 24.4 | 26.7 | 59.7 | 13.4 | 73.0 | .3 | 100.0 |
| 50대 이상 | 대 | (165) | .0 | 20.5 | 20.5 | 60.0 | 19.5 | 79.5 | .0 | 100.0 |
| 직업 | 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원 | (150) | .7 | 21.3 | 22.0 | 68.7 | 9.3 | 78.0 | .0 | 100.0 |
| 국회의원 | 원 | (49) | 2.0 | 22.4 | 24.5 | 57.1 | 18.4 | 75.5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원 | (203) | 1.0 | 27.6 | 28.6 | 60.6 | 10.8 | 71.4 | .0 | 100.0 |
| 지방직공무원 | 원 | (50) | 2.0 | 28.0 | 30.0 | 64.0 | 6.0 | 70.0 | .0 | 100.0 |
| 판사 | 사 | (46) | .0 | 21.7 | 21.7 | 67.4 | 10.9 | 78.3 | .0 | 100.0 |
| 검정사 | 사 | (56) | 3.6 | 21.4 | 25.0 | 58.9 | 16.1 | 75.0 | .0 | 100.0 |
| 헌법 | 사 | (101) | 3.0 | 28.7 | 31.7 | 56.4 | 11.9 | 68.3 | .0 | 100.0 |
| 사범연수원생 | 생 | (101) | 3.0 | 29.7 | 32.7 | 60.4 | 6.9 | 67.3 | .0 | 100.0 |
| 대학교수 | 수 | (202) | 1.5 | 20.3 | 21.8 | 57.9 | 19.8 | 77.7 | .5 | 100.0 |
| 박사과정 | 과 | (50) | .0 | 24.0 | 24.0 | 60.0 | 16.0 | 76.0 | .0 | 100.0 |
| 직업분류 | 분 | | | | | | | | | |
| 일행 | 행 | (199) | 1.0 | 21.6 | 22.6 | 65.8 | 11.6 | 77.4 | .0 | 100.0 |
| 사행 | 행 | (253) | 1.2 | 27.7 | 28.9 | 61.3 | 9.9 | 71.1 | .0 | 100.0 |
| 사학 | 학 | (304) | 2.6 | 26.6 | 29.3 | 59.9 | 10.9 | 70.7 | .0 | 100.0 |
| 학계 | 계 | (252) | 1.2 | 21.0 | 22.2 | 58.3 | 19.0 | 77.4 | .4 | 100.0 |
| 근무연수 | 수 | | | | | | | | | |
| 5년 미만 | 년 | (398) | 1.8 | 23.9 | 25.6 | 64.1 | 10.3 | 74.4 | .0 | 100.0 |
| 5년이상-15년미만 | 년 | (332) | 2.1 | 25.9 | 28.0 | 59.0 | 12.7 | 71.7 | .3 | 100.0 |
| 15년 이상 | 년 | (275) | .7 | 23.6 | 24.4 | 59.3 | 16.4 | 75.6 | .0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3) | .0 | 33.3 | 33.3 | 33.3 | 33.3 | 66.7 | .0 | 100.0 |
| 지역 | 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천 | (773) | 1.4 | 24.2 | 25.6 | 62.4 | 11.9 | 74.3 | .1 | 100.0 |
| 부산/경남/울산 | 산 | (55) | .0 | 27.3 | 27.3 | 65.5 | 7.3 | 72.7 | .0 | 100.0 |
| 경북/대구 | 구 | (23) | 4.3 | 13.0 | 17.4 | 43.5 | 39.1 | 82.6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남 | (103) | 1.9 | 29.1 | 31.1 | 53.4 | 15.5 | 68.9 | .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주 | (54) | 3.7 | 22.2 | 25.9 | 59.3 | 14.8 | 74.1 | .0 | 100.0 |
| 계 | 계 | | | | | | | | | |
| 하층 | 층 | (175) | 1.7 | 25.7 | 27.4 | 58.9 | 13.7 | 72.6 | .0 | 100.0 |
| 중상 | 상 | (489) | 1.0 | 24.8 | 25.9 | 61.7 | 12.4 | 74.1 | .0 | 100.0 |
| 상층 | 층 | (329) | 2.4 | 23.1 | 25.5 | 61.1 | 13.1 | 74.2 | .3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5) | .0 | 40.0 | 40.0 | 60.0 | .0 | 60.0 | .0 | 100.0 |
| 이념성향 | 향 | | | | | | | | | |
| 진보 | 보 | (226) | .4 | 28.8 | 29.2 | 58.8 | 11.5 | 70.4 | .4 | 100.0 |
| 중도 | 도 | (568) | 1.6 | 23.8 | 25.4 | 64.4 | 10.2 | 74.6 | .0 | 100.0 |
| 보수 | 수 | (207) | 2.9 | 21.7 | 24.6 | 53.6 | 21.7 | 75.4 | .0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7) | .0 | 28.6 | 28.6 | 71.4 | .0 | 71.4 | .0 | 100.0 |

표8-5. 분야별 법준수 정도-교육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성별 | (1008) | 4.7 | 60.5 | 65.2 | 32.0 | 2.7 | 34.7 | .1 | 100.0 |
| | 남자 | (818) | 5.0 | 59.8 | 64.8 | 32.5 | 2.6 | 35.1 | .1 | 100.0 |
| | 여자 | (190) | 3.2 | 63.7 | 66.8 | 30.0 | 3.2 | 33.2 | .0 | 100.0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7.4 | 64.8 | 72.1 | 24.6 | 3.3 | 27.9 | .0 | 100.0 |
| | 30대 | (349) | 5.7 | 58.5 | 64.2 | 33.8 | 2.0 | 35.8 | .0 | 100.0 |
| | 40대 | (362) | 3.4 | 60.8 | 64.2 | 34.1 | 3.4 | 35.5 | .3 | 100.0 |
| | 50대 이상 | (165) | 3.2 | 61.1 | 64.3 | 33.5 | 2.2 | 35.7 | .0 | 100.0 |
| | 직업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3.3 | 59.3 | 62.7 | 34.7 | 2.7 | 37.3 | .0 | 100.0 |
| | 국회의원 | (49) | 8.2 | 59.2 | 67.3 | 30.6 | 2.0 | 32.7 | .0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5.4 | 54.2 | 59.6 | 38.4 | 2.0 | 40.4 | .0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4.0 | 68.0 | 72.0 | 24.0 | 4.0 | 28.0 | .0 | 100.0 |
| | 관사 | (46) | .0 | 71.7 | 71.7 | 28.3 | .0 | 28.3 | .0 | 100.0 |
| | 감사 | (56) | 3.6 | 73.2 | 76.8 | 19.6 | 3.6 | 23.2 | .0 | 100.0 |
| | 변호사 | (101) | 5.9 | 65.3 | 71.3 | 27.7 | .0 | 27.7 | 1.0 | 100.0 |
| | 사범연수원생 | (101) | 6.9 | 62.4 | 69.3 | 27.7 | 3.0 | 30.7 | .0 | 100.0 |
| | 대학교수 | (22) | 4.0 | 60.4 | 64.4 | 31.2 | 4.5 | 35.6 | .0 | 100.0 |
| | 박사과정 | (50) | 4.0 | 46.0 | 50.0 | 46.0 | 4.0 | 50.0 | .0 | 100.0 |
| | 직업부류 | | | | | | | | | |
| | 일행 | (199) | 4.5 | 59.3 | 63.8 | 33.7 | 2.5 | 36.2 | .0 | 100.0 |
| | 행정 | (253) | 5.1 | 56.9 | 62.1 | 35.6 | 2.4 | 37.9 | .0 | 100.0 |
| | 사회 | (304) | 4.9 | 66.8 | 71.7 | 26.3 | 1.6 | 28.0 | .3 | 100.0 |
| | 학계 | (252) | 4.0 | 57.5 | 61.5 | 34.1 | 4.4 | 38.5 | .0 | 100.0 |
| | 근무연수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5.5 | 59.3 | 64.8 | 33.2 | 2.0 | 35.2 | .0 | 100.0 |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4.5 | 64.2 | 68.7 | 28.3 | 2.7 | 31.0 | .3 | 100.0 |
| | 15년 이상 | (275) | 3.6 | 57.5 | 61.1 | 35.3 | 3.6 | 38.9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100.0 | 100.0 | .0 | .0 | .0 | .0 | 100.0 |
| | 지역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4.9 | 58.2 | 63.1 | 33.9 | 3.0 | 36.9 | .0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1.8 | 70.9 | 72.7 | 25.5 | 1.8 | 27.3 | .0 | 100.0 |
| | 경북/대구 | (23) | 8.7 | 60.9 | 69.6 | 26.1 | 4.3 | 30.4 | .0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2.9 | 68.0 | 70.9 | 26.2 | 1.9 | 28.2 | 1.0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5.6 | 68.5 | 74.1 | 25.9 | .0 | 25.9 | .0 | 100.0 |
| | 계층 | | | | | | | | | |
| | 하층 | (175) | 4.0 | 52.6 | 56.6 | 38.9 | 4.6 | 43.4 | .0 | 100.0 |
| | 중상 | (439) | 4.4 | 60.9 | 65.3 | 31.9 | 2.6 | 34.5 | .2 | 100.0 |
| | 상층 | (329) | 5.5 | 63.5 | 69.0 | 29.2 | 1.8 | 31.0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0 | 100.0 | 100.0 | .0 | .0 | .0 | .0 | 100.0 |
| | 이념성향 | | | | | | | | | |
| | 진보 | (226) | 3.1 | 58.0 | 61.1 | 34.1 | 4.9 | 38.9 | .0 | 100.0 |
| | 중도 | (568) | 4.8 | 60.6 | 65.3 | 32.4 | 2.1 | 34.5 | .2 | 100.0 |
| | 보수 | (207) | 6.3 | 62.8 | 69.1 | 29.0 | 1.9 | 30.9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0 | 71.4 | 71.4 | 28.6 | .0 | 28.6 | .0 | 100.0 |

표8-6. 분야별 법준수 정도-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
| 전체 | 채별 | (1008) | 5.6 | 55.1 | 60.6 | 36.7 | 3.6 | 39.3 | .1 | 100.0 | | | |
| 남성 | 자별 | (818) | 6.1 | 53.3 | 59.4 | 36.3 | 4.2 | 40.5 | .1 | 100.0 | | | |
| 여성 | 자별 | (190) | 3.2 | 62.6 | 65.8 | 33.2 | 1.1 | 34.2 | .0 | 100.0 | | | |
| 연령 | 별 | | | | | | | | | | | | |
| 20대 | 대 | (122) | 12.3 | 49.2 | 61.5 | 36.1 | 2.5 | 38.5 | .0 | 100.0 | | | |
| 30대 | 대 | (349) | 4.3 | 59.6 | 63.9 | 32.4 | 3.4 | 35.8 | .3 | 100.0 | | | |
| 40대 | 대 | (352) | 4.8 | 55.1 | 59.9 | 36.9 | 3.1 | 40.1 | .0 | 100.0 | | | |
| 50대 이상 | 대 | (185) | 4.9 | 50.3 | 55.1 | 39.5 | 5.4 | 44.9 | .0 | 100.0 | | | |
| 직업 | 별 |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 (150) | 3.3 | 59.3 | 62.7 | 36.0 | 1.3 | 37.3 | .0 | 100.0 | | | |
| 국회의원 | | (49) | 4.1 | 44.9 | 49.0 | 44.9 | 6.1 | 51.0 | .0 | 100.0 | | | |
| 중앙직공무원 | | (208) | 3.4 | 60.6 | 64.0 | 31.5 | 4.4 | 35.0 | .0 | 100.0 | | | |
| 지방직공무원 | | (50) | 2.0 | 70.0 | 72.0 | 22.0 | 6.0 | 28.0 | .0 | 100.0 | | | |
| 판사 | | (46) | 2.2 | 60.9 | 63.0 | 30.4 | 6.5 | 37.0 | .0 | 100.0 | | | |
| 감정사 | | (56) | 5.4 | 67.9 | 73.2 | 26.8 | .0 | 26.8 | .0 | 100.0 | | | |
| 변호사 | | (101) | 5.9 | 57.4 | 63.4 | 35.6 | 1.0 | 36.6 | .0 | 100.0 | | | |
| 사법연수원생 | | (101) | 10.9 | 42.6 | 53.5 | 42.6 | 4.0 | 46.5 | .0 | 100.0 | | | |
| 대학교수 | | (202) | 6.9 | 50.0 | 56.9 | 38.6 | 4.5 | 43.1 | .0 | 100.0 | | | |
| 박사과정 | | (50) | 12.0 | 36.0 | 48.0 | 46.0 | 4.0 | 50.0 | 2.0 | 100.0 | | | |
| 직업분류 | 별 | | | | | | | | | | | | |
| 입행 | 장 | (199) | 3.5 | 55.8 | 59.3 | 38.2 | 2.5 | 40.7 | .0 | 100.0 | | | |
| 행정 | 장 | (253) | 3.2 | 62.5 | 65.6 | 29.6 | 4.7 | 34.4 | .0 | 100.0 | | | |
| 사학 | 장 | (304) | 6.9 | 54.9 | 61.8 | 35.5 | 2.6 | 38.2 | .0 | 100.0 | | | |
| 학계 | 계 | (252) | 7.9 | 47.2 | 55.2 | 40.1 | 4.4 | 44.4 | .4 | 100.0 | | | |
| 근무연수 | 별 | | | | | | | | | | | | |
| 5년 미만 | | (398) | 7.0 | 53.0 | 60.1 | 36.4 | 3.3 | 39.7 | .3 | 100.0 | | | |
| 5년 이상-15년 미만 | | (322) | 5.4 | 59.3 | 64.8 | 32.5 | 2.7 | 35.2 | .0 | 100.0 | | | |
| 15년 이상 | | (275) | 3.6 | 52.7 | 56.4 | 38.5 | 5.1 | 43.6 | .0 | 100.0 | | | |
| 모름/무응답 |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0 | 100.0 | | | |
| 지역 | 별 |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773) | 6.0 | 55.1 | 61.1 | 35.7 | 3.1 | 38.8 | .1 | 100.0 | | | |
| 부산/경남/울산 | | (55) | 3.6 | 67.3 | 70.9 | 27.3 | 1.8 | 29.1 | .0 | 100.0 | | | |
| 경북/대구 | | (23) | 4.3 | 52.2 | 56.5 | 26.1 | 17.4 | 43.5 | .0 | 100.0 | | | |
| 대전/충북/충남 | | (103) | 3.9 | 56.3 | 60.2 | 35.9 | 3.9 | 39.8 | .0 | 100.0 | | | |
| 전남/전북/광주 | | (54) | 5.6 | 40.7 | 46.3 | 48.1 | 5.6 | 53.7 | .0 | 100.0 | | | |
| 계 | 총 | | | | | | | | | | | | |
| 하 | 총 | (175) | 5.1 | 50.3 | 55.4 | 38.9 | 5.1 | 44.0 | .6 | 100.0 | | | |
| 중 | 간 | (493) | 5.6 | 55.3 | 60.9 | 35.5 | 3.6 | 39.1 | .0 | 100.0 | | | |
| 상 | 층 | (329) | 5.8 | 57.1 | 62.9 | 34.3 | 2.7 | 37.1 | .0 | 100.0 | | | |
| 모름/무응답 | | (5) | .0 | 60.0 | 60.0 | 40.0 | .0 | 40.0 | .0 | 100.0 | | | |
| 이연성 | 향 | 별 | | | | | | | | | | | |
| 진보 | 보 | (226) | 6.2 | 58.0 | 64.2 | 32.7 | 3.1 | 35.8 | .0 | 100.0 | | | |
| 중도 | 도 | (566) | 5.6 | 52.5 | 58.1 | 37.9 | 3.9 | 41.7 | .2 | 100.0 | | | |
| 보수 | 수 | (217) | 4.8 | 58.0 | 62.8 | 33.8 | 3.4 | 37.2 | .0 | 100.0 | | | |
| 모름/무응답 | | (7) | .0 | 85.7 | 85.7 | 14.3 | .0 | 14.3 | .0 | 100.0 | | | |

표8-7. 분야별 법준수 정도-환경

문)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계 |
|--------------|--------------|--------|--------------|---------------|------|---------------|---------------|------|-------|
| | |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체 | (1008) | 2.5 | 40.1 | 42.6 | 53.3 | 4.2 | 57.4 | 100.0 |
| 남자 | 자 | (818) | 2.8 | 41.3 | 44.1 | 51.8 | 4.0 | 55.9 | 100.0 |
| 여자 | 여 | (190) | 1.1 | 34.7 | 35.8 | 59.5 | 4.7 | 64.2 | 100.0 |
| 연령 | 연 | | | | | | | | |
| 20대 | 20대 | (122) | 4.1 | 35.2 | 39.3 | 56.6 | 4.1 | 60.7 | 100.0 |
| 30대 | 30대 | (349) | 1.4 | 42.1 | 43.6 | 52.1 | 4.3 | 56.4 | 100.0 |
| 40대 | 40대 | (352) | 3.1 | 39.2 | 42.3 | 54.3 | 3.4 | 57.7 | 100.0 |
| 50대 이상 | 50대 이상 | (185) | 2.2 | 41.1 | 43.2 | 51.4 | 5.4 | 56.8 | 100.0 |
| 직업 | 직 | | | | | | | | |
| 국회공무원 | 국회공무원 | (150) | 1.3 | 39.3 | 40.7 | 55.3 | 4.0 | 59.3 | 100.0 |
| 국회의원 | 국회의원 | (49) | 8.2 | 34.7 | 42.9 | 55.1 | 2.0 | 57.1 | 100.0 |
| 중앙직공무원 | 중앙직공무원 | (203) | 2.5 | 40.9 | 43.3 | 52.7 | 3.9 | 56.7 | 100.0 |
| 지방직공무원 | 지방직공무원 | (50) | 4.0 | 50.0 | 54.0 | 44.0 | 2.0 | 46.0 | 100.0 |
| 판사 | 판사 | (46) | .0 | 45.7 | 45.7 | 50.0 | 4.3 | 54.3 | 100.0 |
| 검사 | 검사 | (56) | 1.8 | 58.9 | 60.7 | 39.3 | .0 | 39.3 | 100.0 |
| 변호사 | 변호사 | (101) | 3.0 | 46.5 | 49.5 | 48.5 | 2.0 | 50.5 | 100.0 |
| 사법연수원생 | 사법연수원생 | (101) | 3.0 | 33.7 | 36.6 | 59.4 | 4.0 | 63.4 | 100.0 |
| 대학교수 | 대학교수 | (202) | 1.5 | 35.1 | 36.6 | 56.9 | 6.4 | 63.4 | 100.0 |
| 박사과정 | 박사과정 | (50) | 4.0 | 28.0 | 32.0 | 58.0 | 10.0 | 68.0 | 100.0 |
| 직업분류 | 직 | | | | | | | | |
| 인행 | 인행 | (199) | 3.0 | 38.2 | 41.2 | 55.3 | 3.5 | 58.8 | 100.0 |
| 행정 | 행정 | (253) | 2.8 | 42.7 | 45.5 | 51.0 | 3.6 | 54.5 | 100.0 |
| 사학 | 사학 | (304) | 2.3 | 44.4 | 46.7 | 50.7 | 2.6 | 53.3 | 100.0 |
| 학계 | 학계 | (252) | 2.0 | 33.7 | 35.7 | 57.1 | 7.1 | 64.3 | 100.0 |
| 근무연수 | 근 | | | | | | | | |
| 5년 미만 | 5년 미만 | (398) | 2.8 | 36.4 | 39.2 | 57.3 | 3.5 | 60.8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2.1 | 46.1 | 48.2 | 48.5 | 3.3 | 51.8 | 100.0 |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275) | 2.5 | 37.8 | 40.4 | 53.8 | 5.8 | 59.6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0 | 33.3 | 33.3 | 100.0 |
| 지역 | 지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서울/경기/인천 | (773) | 2.3 | 39.7 | 42.0 | 54.3 | 3.6 | 58.0 | 100.0 |
| 부산/경남/울산 | 부산/경남/울산 | (55) | .0 | 47.3 | 47.3 | 52.7 | .0 | 52.7 | 100.0 |
| 경북/대구 | 경북/대구 | (23) | 4.3 | 30.4 | 34.8 | 47.8 | 17.4 | 65.2 | 100.0 |
| 대전/충북/충남 | 대전/충북/충남 | (103) | 3.9 | 47.6 | 51.5 | 45.6 | 2.9 | 48.5 | 100.0 |
| 전남/전북/광주 | 전남/전북/광주 | (54) | 3.7 | 27.8 | 31.5 | 55.6 | 13.0 | 68.5 | 100.0 |
| 계 | 계 | | | | | | | | |
| 하층 | 하 | (175) | 2.9 | 38.9 | 41.7 | 52.6 | 5.7 | 58.3 | 100.0 |
| 중상 | 중 | (499) | 2.2 | 41.3 | 43.5 | 51.7 | 4.8 | 56.5 | 100.0 |
| 상 | 상 | (329) | 2.7 | 39.2 | 41.9 | 55.6 | 2.4 | 58.1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5) | .0 | 20.0 | 20.0 | 80.0 | .0 | 80.0 | 100.0 |
| 이념성향 | 이 | | | | | | | | |
| 진보 | 진 | (226) | 1.8 | 30.1 | 31.9 | 60.6 | 7.5 | 68.1 | 100.0 |
| 중보 | 중 | (568) | 2.6 | 42.8 | 45.4 | 50.9 | 3.7 | 54.6 | 100.0 |
| 보수 | 보 | (207) | 2.9 | 43.0 | 45.9 | 52.2 | 1.9 | 54.1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7) | .0 | 57.1 | 57.1 | 42.9 | .0 | 42.9 | 100.0 |

표9-1.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1순위)

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사태수 | 부정부패 | 탈세 | 이동 | 성폭력 | 부동산투기 | 조직폭력 | 강절도 | | |
|--------------|-------|-------|------|------|------|------|-------|------|-----|---|---|
| | | | | | 대상범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8) | 59.2 | 9.8 | 8.8 | 6.9 | 6.5 | 3.4 | 2.1 | | | |
| 성별 | | | | | | | | | | | |
| 남자 | (818) | 60.0 | 9.9 | 7.8 | 5.4 | 7.1 | 4.2 | 2.1 | | | |
| 여자 | (100) | 55.8 | 9.5 | 13.2 | 13.7 | 4.2 | .0 | 2.1 | | | |
| 연령 | | | | | | | | | | | |
| 20대 | (122) | 54.1 | 10.7 | 10.7 | 14.8 | 4.1 | .8 | 1.6 | | | |
| 30대 | (349) | 60.7 | 9.7 | 9.7 | 8.9 | 4.0 | 1.4 | 2.3 | | | |
| 40대 | (352) | 58.8 | 8.5 | 9.7 | 4.8 | 8.2 | 5.1 | 2.8 | | | |
| 50대 이상 | (185) | 60.5 | 11.9 | 4.3 | 2.2 | 9.7 | 5.4 | .5 | | | |
| 직업별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0) | 53.3 | 11.3 | 10.7 | 10.7 | 6.0 | 2.7 | 2.7 | | | |
| 국회의원 | (4) | 51.0 | 4.1 | 18.4 | 6.1 | 2.0 | 4.1 | 2.0 | | | |
| 중앙직공무원 | (23) | 42.4 | 18.7 | 9.9 | 7.9 | 9.4 | 5.4 | 4.4 | | | |
| 지방직공무원 | (50) | 56.0 | 8.0 | 14.0 | 2.0 | 8.0 | 8.0 | 2.0 | | | |
| 판사 | (46) | 71.7 | 2.2 | 13.0 | 4.3 | 4.3 | 2.2 | 2.2 | | | |
| 감사 | (5) | 80.4 | 3.6 | 7.1 | .0 | 7.1 | .0 | .0 | | | |
| 변호사 | (101) | 66.3 | 5.0 | 5.0 | 9.9 | 5.0 | 3.0 | 1.0 | | | |
| 사범연수원생 | (101) | 59.4 | 13.9 | 5.0 | 13.9 | 4.0 | 1.0 | .0 | | | |
| 대학교수 | (22) | 70.3 | 6.4 | 5.4 | 1.5 | 7.9 | 4.0 | 1.5 | | | |
| 박사과정 | (50) | 62.0 | 6.0 | 12.0 | 10.0 | 4.0 | .0 | 2.0 |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 입법 | (19) | 52.8 | 9.5 | 12.6 | 9.5 | 5.0 | 3.0 | 2.5 | | | |
| 행정 | (23) | 45.1 | 16.6 | 10.7 | 6.7 | 9.1 | 5.9 | 4.0 | | | |
| 사법 | (304) | 67.4 | 7.2 | 6.6 | 8.6 | 4.9 | 1.6 | .7 | | | |
| 학계 | (22) | 66.7 | 6.3 | 6.7 | 3.2 | 7.1 | 3.2 | 1.6 | |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 5년 미만 | (38) | 59.3 | 9.3 | 9.3 | 10.1 | 5.0 | 2.0 | 2.3 | | | |
| 5년 이상-10년 미만 | (32) | 61.4 | 9.6 | 9.0 | 6.0 | 6.0 | 3.0 | 1.8 | | | |
| 10년 이상 | (27) | 56.0 | 10.9 | 8.0 | 3.6 | 9.5 | 5.8 | 2.2 | | | |
| 모름/무응답 | (3) | 100.0 | .0 | .0 | .0 | .0 | .0 | .0 | | | |
| 지역별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58.2 | 10.0 | 8.7 | 8.3 | 6.9 | 2.8 | 2.2 | | | |
| 부산/경남/울산 | (5) | 63.6 | 10.9 | 7.3 | 1.8 | 10.9 | 3.6 | .0 | | | |
| 경북/대구 | (2) | 73.9 | 4.3 | .0 | .0 | 4.3 | 17.4 | .0 | | | |
| 대전/충북/충남 | (10) | 59.2 | 9.7 | 10.7 | 2.9 | 3.9 | 5.8 | 2.9 | | | |
| 전남/전북/광주 | (54) | 63.0 | 9.3 | 13.0 | 3.7 | 3.7 | .0 | 1.9 | | | |
| 계층 | | | | | | | | | | | |
| 하층 | (17) | 61.7 | 9.7 | 8.6 | 6.9 | 7.4 | .6 | 1.7 | | | |
| 중상 | (49) | 54.1 | 12.2 | 9.8 | 7.4 | 6.0 | 4.4 | 2.6 | | | |
| 상층 | (32) | 65.3 | 6.4 | 7.6 | 6.1 | 7.0 | 3.3 | 1.5 | | | |
| 모름/무응답 | (5) | 80.0 | .0 | .0 | 20.0 | .0 | .0 | .0 | | | |
| 이성성별 | | | | | | | | | | | |
| 진보 | (26) | 60.6 | 9.3 | 7.5 | 7.1 | 7.5 | 2.7 | 2.7 | | | |
| 중보 | (58) | 60.0 | 11.1 | 8.3 | 6.3 | 6.9 | 2.5 | 2.1 | | | |
| 보수 | (27) | 55.1 | 6.8 | 12.1 | 8.7 | 4.3 | 6.8 | 1.4 | | | |
| 모름/무응답 | (7) | 71.4 | 14.3 | .0 | .0 | 14.3 | .0 | .0 | | | |

(continued)

표9-1.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1순위)

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환경사범 | 음주운전 | 미약사범 | 가정폭력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9 | .9 | .7 | .3 | .3 | .1 | 100.0 |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 1.0 | 1.0 | .9 | .2 | .4 | .1 | 100.0 | | |
| 여자 | | .5 | .5 | .0 | .5 | .0 | .0 | 100.0 |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 .8 | .8 | .0 | .8 | .0 | .8 | 100.0 | | |
| 30대 | | .6 | .9 | .6 | .6 | .6 | .0 | 100.0 | | |
| 40대 | | .6 | .6 | .9 | .0 | .0 | .0 | 100.0 | | |
| 50대 이상 | | 2.2 | 1.6 | 1.1 | .0 | .5 | .0 | 100.0 | | |
| 직업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 1.3 | .7 | .7 | .0 | .0 | .0 | 100.0 | | |
| 국회의원 | | 6.1 | .0 | 4.1 | 2.0 | .0 | .0 | 100.0 | | |
| 중앙직공무원 | | .0 | 1.5 | .0 | .0 | .5 | .0 | 100.0 | | |
| 지방직공무원 | | 2.0 | .0 | .0 | .0 | .0 | .0 | 100.0 | | |
| 판사 | | .0 | .0 | .0 | .0 | .0 | .0 | 100.0 | | |
| 검사 | | .0 | 1.8 | .0 | .0 | .0 | .0 | 100.0 | | |
| 변호사 | | 1.0 | .0 | 3.0 | .0 | 1.0 | .0 | 100.0 | | |
| 사법연수원생 | | 1.0 | 1.0 | .0 | 1.0 | .0 | .0 | 100.0 | | |
| 대학교수 | | .5 | 1.5 | .5 | .5 | .0 | .0 | 100.0 | | |
| 박사과정 | | .0 | .0 | .0 | .0 | 2.0 | 2.0 | 100.0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 2.5 | .5 | 1.5 | .5 | .0 | .0 | 100.0 | | |
| 행정법 | | .4 | 1.2 | .0 | .0 | .4 | .0 | 100.0 | | |
| 사법 | | .7 | .7 | 1.0 | .3 | .3 | .0 | 100.0 | | |
| 학계 | | .4 | 1.2 | .4 | .4 | .4 | .4 | 100.0 |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 .3 | 1.3 | .0 | .8 | .3 | .3 | 100.0 | | |
| 5년 이상~15년 미만 | | 1.2 | .6 | .9 | .0 | .3 | .0 | 100.0 | | |
| 15년 이상 | | 1.5 | .7 | 1.5 | .0 | .4 | .0 | 100.0 | | |
| 모름/무응답 | | .0 | .0 | .0 | .0 | .0 | .0 | 100.0 | | |
| 지역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9 | .9 | .5 | .4 | .3 | .0 | 100.0 | | |
| 부산/경남/울산 | | 1.8 | .0 | .0 | .0 | .0 | .0 | 100.0 | | |
| 경북/대구 | | .0 | .0 | .0 | .0 | .0 | .0 | 100.0 | | |
| 대전/충북/충남 | | 1.0 | 1.9 | 1.0 | .0 | 1.0 | .0 | 100.0 | | |
| 전남/전북/광주 | | .0 | .0 | 3.7 | .0 | .0 | 1.9 | 100.0 | | |
| 계 | | | | | | | | | | |
| 하중상 | | 1.1 | 1.1 | .6 | .0 | .0 | .6 | 100.0 | | |
| 중상 | | .8 | .8 | 1.0 | .2 | .6 | .0 | 100.0 | | |
| 상 | | .9 | .9 | .3 | .6 | .0 | .0 | 100.0 | | |
| 모름/무응답 | | .0 | .0 | .0 | .0 | .0 | .0 | 100.0 |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 .9 | 1.3 | .0 | .0 | .0 | .4 | 100.0 | | |
| 중도 | | .4 | .7 | 1.1 | .2 | .5 | .0 | 100.0 | | |
| 보수 | | 2.4 | 1.0 | .5 | 1.0 | .0 | .0 | 100.0 | | |
| 모름/무응답 | | .0 | .0 | .0 | .0 | .0 | .0 | 100.0 | | |

표9-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1+2순위)

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사태수 | 부정부패 | 탈세 | 이동 | 부동산투기 | 성폭력 | 조직폭력 | 강절도 | | |
|---|------------|-------|-------|------|------|-------|------|------|------|---|---|
| | | | | | 대상범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8) | 70.9 | 34.6 | 21.9 | 20.0 | 16.5 | 13.5 | 6.4 | | |
| ■ | 성 별 | | | | | | | | | | |
| □ | 남 자 | (818) | 71.0 | 34.7 | 19.3 | 21.1 | 14.5 | 16.0 | 6.5 | | |
| □ | 여 자 | (190) | 70.5 | 34.2 | 33.2 | 15.3 | 24.7 | 2.6 | 6.3 | | |
| ■ | 연 령 | | | | | | | | | | |
| □ | 20 대 | (122) | 66.4 | 36.1 | 25.4 | 13.1 | 29.5 | 4.9 | 8.2 | | |
| □ | 30 대 | (349) | 72.2 | 35.0 | 24.6 | 18.3 | 19.5 | 12.3 | 6.0 | | |
| □ | 40 대 | (352) | 69.9 | 33.8 | 23.9 | 21.9 | 13.6 | 13.6 | 6.3 | | |
| □ | 50대 이상 | (185) | 73.5 | 34.6 | 10.8 | 24.3 | 7.6 | 21.1 | 6.5 | | |
| ■ | 직 업 |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0) | 64.7 | 37.3 | 31.3 | 16.7 | 21.3 | 10.7 | 8.0 | | |
| □ | 국회 의원 | (4) | 67.3 | 24.5 | 36.7 | 8.2 | 26.5 | 8.2 | 4.1 | | |
| □ | 중앙직공무원 | (23) | 52.2 | 41.9 | 20.7 | 22.2 | 19.2 | 16.7 | 7.9 | | |
| □ | 지방직공무원 | (50) | 70.0 | 28.0 | 30.0 | 18.0 | 10.0 | 20.0 | 6.0 | | |
| □ | 판 사 | (46) | 82.6 | 32.6 | 21.7 | 19.6 | 13.0 | 13.0 | 2.2 | | |
| □ | 감 사 | (56) | 87.5 | 25.0 | 16.1 | 26.8 | 1.8 | 25.0 | 7.1 | | |
| □ | 변 호 | (101) | 77.2 | 26.7 | 16.8 | 24.8 | 17.8 | 13.9 | 4.0 | | |
| □ | 사범연수원생 | (101) | 71.3 | 39.6 | 17.8 | 18.8 | 27.7 | 5.9 | 5.9 | | |
| □ | 대학 교수 | (22) | 83.2 | 34.7 | 16.3 | 21.3 | 7.4 | 14.9 | 6.9 | | |
| □ | 박사 과정 | (50) | 78.0 | 32.0 | 24.0 | 16.0 | 18.0 | 4.0 | 6.0 | |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 | 입 법 | (19) | 65.3 | 34.2 | 32.7 | 14.6 | 22.6 | 10.1 | 7.0 | | |
| □ | 행 정 | (23) | 55.7 | 39.1 | 22.5 | 21.3 | 17.4 | 17.4 | 7.5 | | |
| □ | 사 법 | (304) | 78.0 | 31.6 | 17.8 | 22.4 | 17.4 | 13.2 | 4.9 | | |
| □ | 학 계 | (22) | 82.1 | 34.1 | 17.9 | 20.2 | 9.5 | 12.7 | 6.7 | | |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 | 5년 미만 | (38) | 71.6 | 33.2 | 22.6 | 19.1 | 22.1 | 11.1 | 6.5 | | |
| □ | 5년이상-10년미만 | (32) | 73.8 | 35.1 | 23.2 | 19.9 | 14.2 | 11.4 | 5.1 | | |
| □ | 10년 이상 | (275) | 66.2 | 34.5 | 19.6 | 21.8 | 11.3 | 19.3 | 8.0 | | |
| □ | 모름/무응답 | (3) | 100.0 | 66.7 | .0 | .0 | .0 | 33.3 | .0 | | |
| ■ | 지 역 |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69.2 | 35.6 | 22.8 | 19.7 | 18.2 | 12.9 | 7.1 | | |
| □ | 부산/경남/울산 | (55) | 80.0 | 30.9 | 20.0 | 25.5 | 3.6 | 10.9 | 7.3 | | |
| □ | 경북/대구 | (23) | 87.0 | 39.1 | 13.0 | 13.0 | 8.7 | 21.7 | .0 | | |
| □ | 대전/충북/충남 | (103) | 69.9 | 31.1 | 17.5 | 22.3 | 12.6 | 18.4 | 3.9 | | |
| □ | 전남/전북/광주 | (54) | 81.5 | 29.6 | 24.1 | 18.5 | 14.8 | 11.1 | 3.7 | | |
| ■ | 계 층 | | | | | | | | | | |
| □ | 하 층 | (175) | 70.3 | 37.1 | 21.7 | 23.4 | 17.1 | 7.4 | 5.7 | | |
| □ | 중 간 | (49) | 68.1 | 34.9 | 23.2 | 18.2 | 17.4 | 15.0 | 6.6 | | |
| □ | 상 층 | (329) | 75.4 | 32.8 | 20.1 | 21.3 | 14.3 | 14.6 | 6.4 | | |
| □ | 모름/무응답 | (5) | 80.0 | 40.0 | 20.0 | .0 | 40.0 | .0 | 20.0 | | |
| ■ | 이성성별 | | | | | | | | | | |
| □ | 진 보 | (26) | 75.7 | 33.6 | 20.4 | 25.7 | 16.8 | 8.0 | 5.8 | | |
| □ | 중 도 | (58) | 70.2 | 36.6 | 23.1 | 19.2 | 16.4 | 13.4 | 6.3 | | |
| □ | 보 수 | (207) | 67.1 | 30.0 | 21.3 | 15.5 | 16.9 | 19.8 | 7.7 | | |
| □ | 모름/무응답 | (7) | 85.7 | 42.9 | .0 | 42.9 | .0 | 14.3 | .0 | | |

(continued)

표9-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1+2순위)

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환경사범 | | 가정폭력 | | 음주운전 | | 미약사범 | | 기타 | | 도박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5.5 | 4.0 | 2.7 | 2.0 | 1.1 | .1 | .1 | | | | | | | | |
| 성별 | | | | | | | | | | | | | | | |
| 남자 | 6.0 | 3.7 | 2.7 | 2.4 | 1.1 | .1 | .1 | | | | | | | | |
| 여자 | 3.2 | 5.3 | 2.6 | .0 | 1.1 | .0 | .0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 | |
| 20대 | 4.1 | 4.1 | 3.3 | 1.6 | 1.6 | .0 | .8 | | | | | | | | |
| 30대 | 3.7 | 4.6 | 1.7 | .9 | .9 | .0 | .0 | | | | | | | | |
| 40대 | 5.7 | 3.4 | 2.8 | 2.6 | .9 | .3 | .0 | | | | | | | | |
| 50대 이상 | 9.2 | 3.8 | 3.8 | 3.2 | 1.6 | .0 | .0 | | | | | | | | |
| 직업 | | | |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3.3 | 3.3 | .7 | .7 | .7 | .0 | .0 | | | | | | | | |
| 국회의원 | 8.2 | 8.2 | .0 | 6.1 | .0 | 2.0 | .0 | | | | | | | | |
| 중앙직공무원 | 7.4 | 3.4 | 4.9 | 1.5 | 1.0 | .0 | .0 | | | | | | | | |
| 지방직공무원 | 8.0 | 6.0 | 2.0 | 2.0 | .0 | .0 | .0 | | | | | | | | |
| 판사 | 4.3 | 6.5 | .0 | 2.2 | 2.2 | .0 | .0 | | | | | | | | |
| 검사 | 1.8 | 5.4 | 1.8 | 1.8 | .0 | .0 | .0 | | | | | | | | |
| 변호사 | 5.9 | 4.0 | 2.0 | 5.0 | 2.0 | .0 | .0 | | | | | | | | |
| 사법연수생 | 5.0 | 3.0 | 4.0 | 1.0 | .0 | .0 | .0 | | | | | | | | |
| 대학교수 | 4.5 | 3.0 | 3.5 | 2.0 | 1.5 | .0 | .0 | | | | | | | | |
| 박사과정 | 8.0 | 4.0 | 2.0 | .0 | 4.0 | .0 | 2.0 | | | | | | |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 | | |
| 입법 | 4.5 | 4.5 | .5 | 2.0 | .5 | .5 | .0 | | | | | | | | |
| 행정 | 7.5 | 4.0 | 4.3 | 1.6 | .8 | .0 | .0 | | | | | | | | |
| 사법 | 4.6 | 4.3 | 2.3 | 2.6 | 1.0 | .0 | .0 | | | | | | | | |
| 학계 | 5.2 | 3.2 | 3.2 | 1.6 | 2.0 | .0 | .4 | | | | | | |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 | | |
| 5년 미만 | 4.5 | 3.5 | 2.8 | .8 | 1.3 | .0 | .3 | | | | | | |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6 | 5.4 | 3.0 | 1.8 | 1.2 | .3 | .0 | | | | | | | | |
| 15년 이상 | 9.1 | 2.9 | 2.2 | 4.0 | .7 | .0 | .0 | | | | | | | | |
| 모름/무응답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지역 | | | |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4.1 | 4.1 | 2.7 | 1.6 | 1.2 | .1 | .0 | | | | | | | | |
| 부산/경남/울산 | 12.7 | 3.6 | 1.8 | 3.6 | .0 | .0 | .0 | | | | | | | | |
| 경북/대구 | 8.7 | 4.3 | 4.3 | .0 | .0 | .0 | .0 | | | | | | | | |
| 대전/충북/충남 | 12.6 | 2.9 | 1.9 | 3.9 | 1.9 | .0 | .0 | | | | | | | | |
| 전남/전북/광주 | 1.9 | 3.7 | 3.7 | 3.7 | .0 | .0 | 1.9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총합 | 6.3 | 5.1 | 2.9 | 1.1 | .0 | .0 | .6 | | | | | | | | |
| 중간 | 6.0 | 3.0 | 2.8 | 2.4 | 1.4 | .2 | .0 | | | | | | | | |
| 상 | 4.3 | 4.9 | 2.4 | 1.8 | 1.2 | .0 | .0 | | | | | | | | |
| 모름/무응답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 | | |
| 진보 | 4.0 | 3.5 | 3.5 | 1.3 | .9 | .0 | .4 | | | | | | | | |
| 중도 | 6.0 | 2.8 | 1.9 | 2.1 | 1.2 | .0 | .0 | | | | | | | | |
| 보수 | 5.8 | 7.7 | 3.9 | 2.4 | 1.0 | .5 | .0 | | | | | | | | |
| 모름/무응답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표10.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문)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계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100.0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만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녀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형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름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답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 <input type="checkbox"/> | |

표13.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 | 매우 잘되고 있다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전혀 못되고 있다 | | | | % | % |
| 전체 | (1008) | .8 | 22.8 | 23.6 | 66.5 | 9.4 | 75.9 | .5 | 100.0 | | | |
| 성별 | | | | | | | | | | | | |
| 남자 | (818) | .7 | 23.2 | 24.0 | 66.4 | 9.0 | 75.4 | .6 | 100.0 | | | |
| 여자 | (190) | 1.1 | 21.1 | 22.1 | 66.8 | 11.1 | 77.9 | .0 | 100.0 | | | |
| 연령 | | | | | | | | | | | | |
| 20대 | (122) | .8 | 20.5 | 21.3 | 68.9 | 9.8 | 78.7 | .0 | 100.0 | | | |
| 30대 | (349) | 1.4 | 21.8 | 23.2 | 69.1 | 7.4 | 76.5 | .3 | 100.0 | | | |
| 40대 | (362) | .3 | 23.3 | 23.6 | 64.5 | 11.1 | 75.6 | .9 | 100.0 | | | |
| 50대 이상 | (165) | .5 | 25.4 | 25.9 | 63.8 | 9.7 | 73.5 | .5 | 100.0 | | | |
| 직업 |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7 | 18.0 | 18.7 | 66.7 | 14.0 | 80.7 | .7 | 100.0 | | | |
| 국회의원 | (49) | .0 | 20.4 | 21.4 | 73.5 | 6.1 | 79.6 | .0 | 100.0 | | | |
| 중앙직공무원 | (203) | .5 | 27.1 | 27.6 | 63.5 | 8.9 | 72.4 | .0 | 100.0 | | | |
| 지방직공무원 | (50) | .0 | 34.0 | 34.0 | 62.0 | 4.0 | 66.0 | .0 | 100.0 | | | |
| 판사 | (46) | .0 | 19.6 | 19.6 | 69.6 | 6.5 | 76.1 | 4.3 | 100.0 | | | |
| 검사 | (56) | .0 | 33.9 | 33.9 | 64.3 | 1.8 | 66.1 | .0 | 100.0 | | | |
| 변호사 | (101) | 1.0 | 25.7 | 26.7 | 71.3 | 2.0 | 73.3 | .0 | 100.0 | | | |
| 사법연수원생 | (101) | 3.0 | 25.7 | 28.7 | 61.4 | 9.9 | 71.3 | .0 | 100.0 | | | |
| 대학교수 | (202) | 1.0 | 15.8 | 16.8 | 68.8 | 13.4 | 82.2 | 1.0 | 100.0 | | | |
| 박사과정 | (50) | .0 | 18.0 | 18.0 | 66.0 | 16.0 | 82.0 | .0 | 100.0 | | | |
| 직업분류 | | | | | | | | | | | | |
| 입법 | (199) | .5 | 18.6 | 19.1 | 68.3 | 12.1 | 80.4 | .5 | 100.0 | | | |
| 행정 | (253) | .4 | 28.5 | 28.9 | 63.2 | 7.9 | 71.1 | .0 | 100.0 | | | |
| 사법 | (304) | 1.3 | 26.3 | 27.6 | 66.4 | 5.3 | 71.7 | .7 | 100.0 | | | |
| 학계 | (252) | .8 | 16.3 | 17.1 | 68.3 | 13.9 | 82.1 | .8 | 100.0 | | | |
| 근무연수 | | | | | | | | | | | | |
| 5년 미만 | (338) | .8 | 20.6 | 21.4 | 68.8 | 9.5 | 78.4 | .3 | 100.0 | |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1.2 | 22.0 | 23.2 | 67.2 | 8.7 | 75.9 | .9 | 100.0 | | | |
| 15년 이상 | (275) | .4 | 27.3 | 27.6 | 61.8 | 10.2 | 72.0 | .4 | 100.0 | | | |
| 모름/무응답 | (3) | .0 | .0 | .0 | 100.0 | .0 | 100.0 | .0 | 100.0 | | | |
| 지역 |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1.0 | 21.7 | 22.8 | 66.6 | 10.1 | 76.7 | .5 | 100.0 | | | |
| 부산/경남/울산 | (55) | .0 | 10.9 | 10.9 | 80.0 | 7.3 | 87.3 | 1.8 | 100.0 | | | |
| 경북/대구 | (23) | .0 | 26.1 | 26.1 | 69.6 | 4.3 | 73.9 | .0 | 100.0 | | | |
| 대전/충북/충남 | (103) | .0 | 33.0 | 33.0 | 61.2 | 5.8 | 67.0 | .0 | 100.0 | | | |
| 전남/전북/광주 | (54) | .0 | 29.6 | 29.6 | 59.3 | 11.1 | 70.4 | .0 | 100.0 | | | |
| 계 | | | | | | | | | | | | |
| 하층 | (175) | .6 | 26.3 | 26.9 | 58.9 | 13.7 | 72.6 | .6 | 100.0 | | | |
| 중층 | (49) | 1.2 | 21.4 | 22.6 | 69.7 | 7.2 | 77.0 | .4 | 100.0 | | | |
| 상층 | (329) | .3 | 23.1 | 23.4 | 65.3 | 10.6 | 76.0 | .6 | 100.0 | | | |
| 모름/무응답 | (5) | .0 | 20.0 | 20.0 | 80.0 | .0 | 80.0 | .0 | 100.0 | | | |
| 이력사항 | | | | | | | | | | | | |
| 진종도 | (226) | .9 | 24.3 | 25.2 | 60.6 | 14.2 | 74.8 | .0 | 100.0 | | | |
| 중도 | (58) | .7 | 22.4 | 23.1 | 67.6 | 8.5 | 76.1 | .9 | 100.0 | | | |
| 번호수 | (207) | 1.0 | 22.7 | 23.7 | 69.6 | 6.8 | 76.3 | .0 | 100.0 | | | |
| 모름/무응답 | (7) | .0 | 14.3 | 14.3 | 71.4 | 14.3 | 85.7 | .0 | 100.0 | | | |

표16.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문) 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매우 영향을 미친다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①+②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④ | 모름/ 무응답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31.0 | 56.1 | 87.0 | 11.6 | 1.3 | 12.9 | .1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30.4 | 54.9 | 85.3 | 13.2 | 1.3 | 14.5 | .1 | 100.0 | |
| 여자 | 190 | 33.2 | 61.1 | 94.2 | 4.7 | 1.1 | 5.8 | .0 | 100.0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22.1 | 60.7 | 82.8 | 14.8 | 2.5 | 17.2 | .0 | 100.0 | |
| 30대 | 349 | 24.6 | 58.7 | 83.4 | 14.6 | 1.7 | 16.3 | .3 | 100.0 | |
| 40대 | 352 | 40.9 | 50.6 | 91.5 | 7.7 | .9 | 8.5 | .0 | 100.0 | |
| 50대 이상 | 185 | 29.7 | 58.4 | 88.1 | 11.4 | .5 | 11.9 | .0 | 100.0 | |
| 직업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52.0 | 45.3 | 97.3 | 2.0 | .7 | 2.7 | .0 | 100.0 | |
| 국회의원 | 49 | 26.5 | 61.2 | 87.8 | 12.2 | .0 | 12.2 | .0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8 | 40.9 | 54.7 | 95.6 | 3.9 | .0 | 3.9 | .5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34.0 | 56.0 | 90.0 | 10.0 | .0 | 10.0 | .0 | 100.0 | |
| 판사 | 46 | 2.2 | 28.3 | 30.4 | 52.2 | 17.4 | 69.6 | .0 | 100.0 | |
| 검사 | 56 | 5.4 | 69.6 | 75.0 | 23.2 | 1.8 | 25.0 | .0 | 100.0 | |
| 변호사 | 101 | 10.9 | 73.3 | 84.2 | 15.8 | .0 | 15.8 | .0 | 100.0 | |
| 사법연수원생 | 101 | 21.8 | 59.4 | 81.2 | 17.8 | 1.0 | 18.8 | .0 | 100.0 | |
| 대학교수 | 202 | 32.2 | 56.9 | 89.1 | 9.9 | 1.0 | 10.9 | .0 | 100.0 | |
| 박사과정 | 50 | 38.0 | 54.0 | 92.0 | 8.0 | .0 | 8.0 | .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임원 | 199 | 45.7 | 49.2 | 95.0 | 4.5 | .5 | 5.0 | .0 | 100.0 | |
| 행장 | 253 | 39.5 | 54.9 | 94.5 | 5.1 | .0 | 5.1 | .4 | 100.0 | |
| 사관 | 304 | 12.2 | 61.2 | 73.4 | 23.4 | 3.3 | 26.6 | .0 | 100.0 | |
| 학계 | 282 | 33.3 | 56.3 | 89.7 | 9.5 | .8 | 10.3 | .0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27.6 | 57.0 | 84.7 | 14.1 | 1.3 | 15.3 | .0 | 100.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28.0 | 57.8 | 85.8 | 11.7 | 2.1 | 13.9 | .3 | 100.0 | |
| 15년 이상 | 275 | 39.6 | 52.4 | 92.0 | 7.6 | .4 | 8.0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0 | 100.0 | |
| 지역별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33.8 | 54.5 | 88.2 | 10.1 | 1.6 | 11.6 | .1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16.4 | 56.4 | 72.7 | 27.3 | .0 | 27.3 | .0 | 100.0 | |
| 경북/대구 | 23 | 13.0 | 69.6 | 82.6 | 17.4 | .0 | 17.4 | .0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27.2 | 59.2 | 86.4 | 12.6 | 1.0 | 13.6 | .0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20.4 | 66.7 | 87.0 | 13.0 | .0 | 13.0 | .0 | 100.0 | |
| 계 | | | | | | | | | | |
| 하층 | 175 | 42.3 | 49.1 | 91.4 | 8.0 | .6 | 8.6 | .0 | 100.0 | |
| 중상 | 493 | 30.5 | 57.1 | 87.6 | 11.4 | 1.0 | 12.4 | .0 | 100.0 | |
| 상층 | 329 | 25.8 | 58.1 | 83.9 | 13.7 | 2.1 | 15.8 | .3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20.0 | 60.0 | 80.0 | 20.0 | .0 | 20.0 | .0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48.2 | 45.6 | 93.8 | 6.2 | .0 | 6.2 | .0 | 100.0 | |
| 중도 | 568 | 26.9 | 59.0 | 85.9 | 12.5 | 1.6 | 14.1 | .0 | 100.0 | |
| 보수 | 207 | 23.7 | 58.9 | 82.6 | 15.0 | 1.9 | 16.9 | .5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14.3 | 71.4 | 85.7 | 14.3 | .0 | 14.3 | .0 | 100.0 | |

표17.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문)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매우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 바람직하지 않다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체 | (1008) | 2.2 | 28.2 | 30.4 | 57.0 | 12.5 | 69.5 | .1 | 100.0 |
| 남성 | 자 | (818) | 2.6 | 26.4 | 29.0 | 57.8 | 13.2 | 71.0 | .0 | 100.0 |
| 여성 | 자 | (190) | .5 | 35.8 | 36.3 | 53.7 | 9.5 | 63.2 | .5 | 100.0 |
| 연령 | 연 | | | | | | | | | |
| 20대 | 대 | (122) | 4.1 | 30.3 | 34.4 | 54.1 | 11.5 | 66.6 | .0 | 100.0 |
| 30대 | 대 | (349) | 2.3 | 25.8 | 28.1 | 59.6 | 12.3 | 71.9 | .0 | 100.0 |
| 40대 | 대 | (352) | 1.4 | 31.8 | 33.2 | 53.1 | 13.4 | 66.5 | .3 | 100.0 |
| 50대 이상 | 대 | (185) | 2.2 | 24.3 | 26.5 | 61.6 | 11.9 | 73.5 | .0 | 100.0 |
| 직업 | 직 | | | | | | | | | |
| 국회공무원 | 원 | (15) | 4.0 | 49.3 | 53.3 | 43.3 | 3.3 | 46.7 | .0 | 100.0 |
| 국회의원 | 원 | (4) | .0 | 38.8 | 38.8 | 46.9 | 14.3 | 61.2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원 | (203) | 1.0 | 38.4 | 39.4 | 54.2 | 6.4 | 60.6 | .0 | 100.0 |
| 지방직공무원 | 원 | (5) | 10.0 | 24.0 | 34.0 | 58.0 | 8.0 | 66.0 | .0 | 100.0 |
| 판사 | 사 | (46) | .0 | 4.3 | 4.3 | 66.2 | 30.4 | 95.7 | .0 | 100.0 |
| 감사 | 사 | (56) | .0 | 7.1 | 7.1 | 71.4 | 21.4 | 92.9 | .0 | 100.0 |
| 변호사 | 사 | (101) | 1.0 | 23.8 | 24.8 | 58.4 | 16.8 | 75.2 | .0 | 100.0 |
| 사법연수원생 | 생 | (101) | 5.0 | 20.8 | 25.7 | 62.4 | 11.9 | 74.3 | .0 | 100.0 |
| 대학교수 | 교 | (202) | 1.0 | 17.8 | 18.8 | 63.9 | 16.8 | 80.7 | .5 | 100.0 |
| 박사과정 | 과 | (5) | 2.0 | 28.0 | 30.0 | 54.0 | 16.0 | 70.0 | .0 | 100.0 |
| 직업분류 | 분 | | | | | | | | | |
| 인법 | 법 | (199) | 3.0 | 46.7 | 49.7 | 44.2 | 6.0 | 50.3 | .0 | 100.0 |
| 행법 | 법 | (253) | 2.8 | 35.6 | 38.3 | 54.9 | 6.7 | 61.7 | .0 | 100.0 |
| 사법 | 법 | (304) | 2.0 | 16.8 | 18.8 | 63.2 | 18.1 | 81.3 | .0 | 100.0 |
| 학계 | 계 | (252) | 1.2 | 19.8 | 21.0 | 61.9 | 16.7 | 78.6 | .4 | 100.0 |
| 근무연수 | 연 | | | | | | | | | |
| 5년 미만 | 년 | (398) | 2.5 | 23.4 | 25.9 | 61.8 | 12.3 | 74.1 | .0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년 | (332) | 1.8 | 29.2 | 31.0 | 54.2 | 14.5 | 68.7 | .3 | 100.0 |
| 15년 이상 | 년 | (275) | 2.2 | 34.2 | 36.4 | 53.8 | 9.8 | 63.6 | .0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3) | .0 | .0 | .0 | 33.3 | 66.7 | 100.0 | .0 | 100.0 |
| 지역 | 지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지 | (773) | 2.2 | 30.1 | 32.3 | 57.1 | 10.5 | 67.5 | .1 | 100.0 |
| 부산/경남/울산 | 지 | (55) | 1.8 | 16.4 | 18.2 | 61.8 | 20.0 | 81.8 | .0 | 100.0 |
| 경북/대구 | 지 | (23) | .0 | 4.3 | 4.3 | 60.9 | 34.8 | 95.7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지 | (103) | 1.0 | 33.0 | 34.0 | 50.5 | 15.5 | 66.0 | .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지 | (54) | 5.6 | 13.0 | 18.5 | 63.0 | 18.5 | 81.5 | .0 | 100.0 |
| 계 | 총 | | | | | | | | | |
| 하층 | 층 | (175) | 3.4 | 35.4 | 38.9 | 49.7 | 11.4 | 61.1 | .0 | 100.0 |
| 중상 | 층 | (438) | 2.2 | 31.5 | 33.7 | 55.3 | 11.0 | 66.3 | .0 | 100.0 |
| 상층 | 층 | (329) | 1.5 | 19.5 | 21.0 | 63.8 | 14.9 | 78.7 | .3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5) | .0 | 20.0 | 20.0 | 40.0 | 40.0 | 80.0 | .0 | 100.0 |
| 이별성향 | 성 | | | | | | | | | |
| 진보 | 보 | (226) | 3.5 | 42.0 | 45.6 | 46.9 | 7.1 | 54.0 | .4 | 100.0 |
| 중보 | 보 | (508) | 1.9 | 27.1 | 29.0 | 60.2 | 10.7 | 71.0 | .0 | 100.0 |
| 보수 | 수 | (207) | 1.4 | 15.9 | 17.4 | 59.4 | 23.2 | 82.6 | .0 | 100.0 |
| 모름/무응답 | 응 | (7) | .0 | 28.6 | 28.6 | 57.1 | 14.3 | 71.4 | .0 | 100.0 |

표18. 입법과정시 국민의 참여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귀하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공청회제도 | 의사공개의 | 청원제도 | 입법 | 기타 | 모름/ | 계 | | | |
|------------|------|------|-------|-------|------|------|------|-------|---|---|---|---|
| | | | 및 | 원칙 | | 예고제도 | | 무응답 | | % | % | % |
| | | | 청문회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56.4 | 16.9 | 13.3 | 11.3 | 1.5 | .6 | 100.0 | | | | |
| 성별 | | | | | | | | | | | | |
| 남자 | 818 | 58.3 | 16.5 | 12.1 | 10.8 | 1.7 | .6 | 100.0 | | | | |
| 여성 | 190 | 48.4 | 18.4 | 18.4 | 13.7 | .5 | .5 | 100.0 | | | | |
| 연령 | | | | | | | | | | | | |
| 20대 | 122 | 50.8 | 19.7 | 16.4 | 12.3 | .0 | .8 | 100.0 | | | | |
| 30대 | 340 | 57.3 | 16.6 | 15.2 | 9.5 | 1.1 | .3 | 100.0 | | | | |
| 40대 | 352 | 55.4 | 18.8 | 11.4 | 11.1 | 2.6 | .9 | 100.0 | | | | |
| 50대 이상 | 185 | 60.5 | 11.9 | 11.4 | 14.6 | 1.1 | .5 | 100.0 | | | | |
| 직업 |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9.3 | 14.7 | 16.7 | 16.0 | 2.0 | 1.3 | 100.0 | | | | |
| 국회 의원 | 49 | 55.1 | 10.2 | 12.2 | 22.4 | .0 | .0 | 100.0 | | | | |
| 중앙직공무원 | 203 | 50.2 | 19.7 | 12.3 | 15.3 | 2.0 | .5 | 100.0 | | | | |
| 지방직공무원 | 50 | 62.0 | 16.0 | 6.0 | 16.0 | .0 | .0 | 100.0 | | | | |
| 판사 | 46 | 71.7 | 6.5 | 8.7 | 6.5 | 2.2 | 4.3 | 100.0 | | | | |
| 검사 | 56 | 51.8 | 26.8 | 16.1 | 5.4 | .0 | .0 | 100.0 | | | | |
| 변호사 | 101 | 64.4 | 14.9 | 7.9 | 8.9 | 4.0 | .0 | 100.0 | | | | |
| 사법연수원생 | 101 | 50.5 | 21.8 | 14.9 | 11.9 | .0 | 1.0 | 100.0 | | | | |
| 대학 교수 | 202 | 60.9 | 18.8 | 13.9 | 5.4 | 1.0 | .0 | 100.0 | | | | |
| 박사 과정 | 50 | 68.0 | 4.0 | 22.0 | 4.0 | 2.0 | .0 | 100.0 | | | | |
| 직업분류 | | | | | | | | | | | | |
| 입법 | 199 | 50.8 | 13.6 | 15.6 | 17.6 | 1.5 | 1.0 | 100.0 | | | | |
| 행정 | 253 | 52.6 | 19.0 | 11.1 | 15.4 | 1.6 | .4 | 100.0 | | | | |
| 사법 | 304 | 58.6 | 18.1 | 11.8 | 8.9 | 1.6 | 1.0 | 100.0 | | | | |
| 학계 | 232 | 62.3 | 15.9 | 15.5 | 5.2 | 1.2 | .0 | 100.0 | | | | |
| 근무연수 | | | | | | | | | | | | |
| 5년 미만 | 398 | 53.5 | 17.6 | 16.1 | 11.6 | .8 | .5 | 100.0 | | | | |
| 5년이상-15년미만 | 332 | 62.0 | 16.0 | 10.2 | 9.0 | 1.8 | .9 | 100.0 | | | | |
| 15년 이상 | 275 | 53.8 | 17.1 | 13.1 | 13.8 | 2.2 | .0 | 100.0 | | | | |
| 모름/무응답 | 3 | 66.7 | .0 | .0 | .0 | .0 | 33.3 | 100.0 | | | | |
| 지역 |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54.5 | 18.2 | 13.6 | 11.8 | 1.6 | .4 | 100.0 | | | | |
| 부산/경남/울산 | 55 | 65.5 | 7.3 | 16.4 | 7.3 | 1.8 | 1.8 | 100.0 | | | | |
| 경북/대구 | 23 | 52.2 | 21.7 | 13.0 | 13.0 | .0 | .0 | 100.0 | | | | |
| 대전/충북/충남 | 108 | 62.1 | 15.5 | 7.8 | 11.7 | 1.0 | 1.9 | 100.0 | | | | |
| 전남/전북/광주 | 54 | 66.7 | 7.4 | 16.7 | 7.4 | 1.9 | .0 | 100.0 | | | | |
| 계층 | | | | | | | | | | | | |
| 하층 | 175 | 56.6 | 14.3 | 13.7 | 13.1 | 1.7 | .6 | 100.0 | | | | |
| 중상 | 499 | 55.5 | 18.0 | 13.2 | 11.8 | .8 | .6 | 100.0 | | | | |
| 상층 | 329 | 57.4 | 16.7 | 13.4 | 9.7 | 2.4 | .3 | 100.0 | | | | |
| 모름/무응답 | 5 | 80.0 | .0 | .0 | .0 | .0 | 20.0 | 100.0 | | | | |
| 이념성향 | | | | | | | | | | | | |
| 진보 | 226 | 55.8 | 15.9 | 15.0 | 10.6 | 2.2 | .4 | 100.0 | | | | |
| 중도 | 558 | 54.2 | 19.4 | 13.7 | 10.9 | 1.2 | .5 | 100.0 | | | | |
| 보수 | 207 | 62.8 | 11.6 | 10.6 | 13.5 | 1.0 | .5 | 100.0 | | | | |
| 모름/무응답 | 7 | 71.4 | .0 | .0 | .0 | 14.3 | 14.3 | 100.0 | | | | |

표19.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

문) 귀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매우 필요하다 | 필요한 편이다 |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24.3 | 43.8 | 68.1 | 24.1 | 7.6 | 31.7 | 2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25.6 | 42.5 | 68.1 | 23.5 | 8.3 | 31.8 | .1 | 100.0 | |
| 여자 | (190) | 18.9 | 48.9 | 67.9 | 26.8 | 4.7 | 31.6 | .5 | 100.0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18.9 | 45.1 | 63.9 | 28.7 | 7.4 | 36.1 | .0 | 100.0 | |
| 30대 | (349) | 18.6 | 44.4 | 63.0 | 30.1 | 6.6 | 36.7 | .3 | 100.0 | |
| 40대 | (352) | 23.6 | 42.9 | 66.5 | 23.0 | 10.2 | 33.2 | .3 | 100.0 | |
| 50대 이상 | (185) | 40.0 | 43.2 | 83.2 | 11.9 | 4.9 | 16.8 | .0 | 100.0 | |
| 직업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15.3 | 46.0 | 61.3 | 30.7 | 7.3 | 38.0 | .7 | 100.0 | |
| 국회의원 | (49) | 46.9 | 30.6 | 77.6 | 18.4 | 4.1 | 22.4 | .0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25.6 | 49.8 | 75.4 | 18.7 | 5.9 | 24.6 | .0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28.0 | 50.0 | 78.0 | 18.0 | 4.0 | 22.0 | .0 | 100.0 | |
| 판사 | (46) | 23.9 | 34.8 | 58.7 | 34.8 | 4.3 | 39.1 | 2.2 | 100.0 | |
| 검사 | (56) | 44.6 | 42.9 | 87.5 | 12.5 | .0 | 12.5 | .0 | 100.0 | |
| 변호사 | (101) | 25.7 | 45.5 | 71.3 | 24.8 | 4.0 | 28.7 | .0 | 100.0 | |
| 사법연수원생 | (101) | 16.8 | 36.6 | 53.5 | 38.6 | 7.9 | 46.5 | .0 | 100.0 | |
| 대학교수 | (202) | 23.8 | 38.1 | 61.9 | 23.8 | 14.4 | 38.1 | .0 | 100.0 | |
| 박사과정생 | (50) | 12.0 | 62.0 | 74.0 | 12.0 | 14.0 | 26.0 | .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인법 | (199) | 23.1 | 42.2 | 65.3 | 27.6 | 6.5 | 34.2 | .5 | 100.0 | |
| 행정 | (253) | 26.1 | 49.8 | 75.9 | 18.6 | 5.5 | 24.1 | .0 | 100.0 | |
| 사법 | (304) | 26.0 | 40.5 | 66.4 | 28.6 | 4.6 | 33.2 | .3 | 100.0 | |
| 학계 | (252) | 21.4 | 42.9 | 64.3 | 21.4 | 14.3 | 35.7 | .0 | 100.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338) | 16.8 | 44.5 | 61.3 | 30.7 | 8.0 | 38.7 | .0 | 100.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25.9 | 41.0 | 66.9 | 23.5 | 9.0 | 32.5 | .6 | 100.0 | |
| 15년 이상 | (275) | 33.1 | 46.2 | 79.3 | 15.6 | 5.1 | 20.7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33.3 | 33.3 | 66.7 | .0 | 33.3 | 33.3 | .0 | 100.0 | |
| 지역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23.3 | 43.6 | 66.9 | 25.6 | 7.4 | 33.0 | .1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 | 27.3 | 49.1 | 76.4 | 18.2 | 3.6 | 21.8 | 1.8 | 100.0 | |
| 경북/대구 | (23) | 30.4 | 43.5 | 73.9 | 13.0 | 13.0 | 26.1 | .0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29.1 | 42.7 | 71.8 | 19.4 | 8.7 | 28.2 | .0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24.1 | 42.6 | 66.7 | 22.2 | 11.1 | 33.3 | .0 | 100.0 | |
| 계 | | | | | | | | | | |
| 하총 | (175) | 23.4 | 41.7 | 65.1 | 25.1 | 9.7 | 34.9 | .0 | 100.0 | |
| 중간 | (499) | 24.6 | 43.1 | 67.7 | 23.6 | 8.4 | 32.1 | .2 | 100.0 | |
| 상층 | (329) | 24.0 | 45.6 | 69.6 | 24.6 | 5.5 | 30.1 | .3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40.0 | 60.0 | 100.0 | .0 | .0 | .0 | .0 | 100.0 | |
| 이별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11.9 | 37.6 | 49.6 | 35.0 | 15.5 | 50.4 | .0 | 100.0 | |
| 중도 | (568) | 21.8 | 46.7 | 68.5 | 24.8 | 6.3 | 31.2 | .4 | 100.0 | |
| 보수 | (207) | 44.9 | 43.0 | 87.9 | 9.7 | 2.4 | 12.1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14.3 | 28.6 | 42.9 | 42.9 | 14.3 | 57.1 | .0 | 100.0 | |

표26-1. 헌법개정-대통령제

문)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전적으로 찬성하는 | 찬성하는 | | 반대하는 | 전적으로 반대하는 | | | |
| | | | 찬성한다 | 편이다 | | 편이다 |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1008) | 5.9 | 26.8 | 32.6 | 45.5 | 21.1 | 66.7 | 7.7 | 10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818) | 6.7 | 24.9 | 31.7 | 44.3 | 23.5 | 67.7 | .6 | 100.0 | |
| 여성 | (190) | 2.1 | 34.7 | 36.8 | 51.1 | 11.1 | 62.1 | 1.1 | 100.0 | |
| 연령 | | | | | | | | | | |
| 20대 | (122) | 5.7 | 27.9 | 33.6 | 48.4 | 17.2 | 65.6 | .8 | 100.0 | |
| 30대 | (349) | 2.9 | 26.1 | 28.9 | 51.3 | 19.8 | 71.1 | .0 | 100.0 | |
| 40대 | (352) | 6.5 | 26.7 | 33.2 | 40.9 | 24.4 | 65.3 | 1.4 | 100.0 | |
| 50대 이상 | (185) | 10.3 | 27.6 | 37.8 | 41.6 | 20.0 | 61.6 | .5 | 100.0 | |
| 직업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150) | 4.7 | 28.7 | 33.3 | 48.0 | 18.7 | 66.7 | .0 | 100.0 | |
| 국회의원 | (49) | 2.0 | 34.7 | 35.7 | 38.8 | 24.5 | 63.3 | .0 | 100.0 | |
| 중앙직공무원 | (203) | 6.4 | 26.1 | 32.5 | 47.8 | 18.2 | 66.0 | 1.5 | 100.0 | |
| 지방직공무원 | (50) | 10.0 | 24.0 | 34.0 | 44.0 | 22.0 | 66.0 | .0 | 100.0 | |
| 판사 | (46) | 2.2 | 23.9 | 26.1 | 58.7 | 13.0 | 71.7 | 2.2 | 100.0 | |
| 검사 | (56) | .0 | 21.4 | 21.4 | 42.9 | 35.7 | 78.6 | .0 | 100.0 | |
| 변호사 | (101) | 6.9 | 30.7 | 37.6 | 42.6 | 19.8 | 62.4 | .0 | 100.0 | |
| 사법연수원생 | (101) | 6.9 | 29.7 | 36.6 | 43.6 | 18.8 | 62.4 | 1.0 | 100.0 | |
| 대학교수 | (202) | 7.4 | 22.8 | 30.2 | 42.1 | 26.7 | 68.8 | 1.0 | 100.0 | |
| 박사과정 | (50) | 6.0 | 30.0 | 36.0 | 52.0 | 12.0 | 64.0 | .0 | 100.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 입법 | (199) | 4.0 | 30.2 | 34.2 | 45.7 | 20.1 | 65.8 | .0 | 100.0 | |
| 행정 | (253) | 7.1 | 25.7 | 32.8 | 47.0 | 19.0 | 66.0 | 1.2 | 100.0 | |
| 사법 | (304) | 4.9 | 27.6 | 32.6 | 45.4 | 21.4 | 66.8 | .7 | 100.0 | |
| 학계 | (252) | 7.1 | 24.2 | 31.3 | 44.0 | 23.8 | 67.9 | .8 | 100.0 | |
| 근우연수별 | | | | | | | | | | |
| 5년 미만 | (308) | 4.5 | 28.4 | 32.9 | 47.0 | 19.8 | 66.8 | .3 | 100.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5.7 | 22.6 | 28.3 | 47.3 | 23.5 | 70.8 | .9 | 100.0 | |
| 15년 이상 | (275) | 8.0 | 29.1 | 37.1 | 41.8 | 20.0 | 61.8 | 1.1 | 100.0 | |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0 | 33.3 | 33.3 | .0 | 100.0 | |
| 지역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773) | 5.0 | 26.5 | 31.6 | 46.1 | 21.7 | 67.8 | .6 | 100.0 | |
| 부산/경남/울산 | (55) | 5.5 | 29.1 | 34.5 | 47.3 | 16.4 | 63.6 | 1.8 | 100.0 | |
| 경북/대구 | (23) | 21.7 | 52.2 | 73.9 | 21.7 | 4.3 | 26.1 | .0 | 100.0 | |
| 대전/충북/충남 | (103) | 7.8 | 21.4 | 29.1 | 42.7 | 27.2 | 69.9 | 1.0 | 100.0 | |
| 전남/전북/광주 | (54) | 7.4 | 27.8 | 35.2 | 51.9 | 13.0 | 64.8 | .0 | 100.0 | |
| 계 | | | | | | | | | | |
| 하층 | (175) | 5.1 | 23.4 | 28.6 | 54.3 | 16.6 | 70.9 | .6 | 100.0 | |
| 중간층 | (409) | 5.2 | 28.9 | 34.1 | 44.9 | 20.4 | 65.3 | .6 | 100.0 | |
| 상층 | (329) | 7.3 | 25.2 | 32.5 | 42.2 | 24.3 | 66.6 | .9 | 100.0 | |
| 모름/무응답 | (5) | .0 | 40.0 | 40.0 | 20.0 | 40.0 | 60.0 | .0 | 100.0 |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 진보 | (226) | 7.1 | 28.8 | 35.8 | 44.2 | 19.5 | 63.7 | .4 | 100.0 | |
| 중도 | (568) | 5.5 | 26.8 | 32.2 | 46.0 | 20.8 | 66.7 | 1.1 | 100.0 | |
| 보수 | (207) | 5.3 | 25.1 | 30.4 | 46.4 | 23.2 | 69.6 | .0 | 100.0 | |
| 모름/무응답 | (7) | 14.3 | 14.3 | 28.6 | 28.6 | 42.9 | 71.4 | .0 | 100.0 | |

표26-2. 헌법개정-5년단임제

문)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전적으로 찬성하는 | | | 반대하는 | 전적으로 | | | |
| | | | 찬성한다 | 편이다 | | 편이다 |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체 | (1008) | 29.0 | 54.4 | 83.3 | 11.9 | 4.3 | 16.2 | .5 | 100.0 |
| 성별 | 성 | | | | | | | | | |
| 남자 | 남 | (818) | 32.4 | 53.3 | 85.7 | 9.9 | 3.9 | 13.8 | .5 | 100.0 |
| 여성 | 여 | (190) | 14.2 | 58.9 | 73.2 | 20.5 | 5.8 | 26.3 | .5 | 100.0 |
| 연령 | 연령 | | | | | | | | | |
| 20대 | 20대 | (122) | 31.1 | 50.8 | 82.0 | 13.9 | 4.1 | 18.0 | .0 | 100.0 |
| 30대 | 30대 | (349) | 22.6 | 63.6 | 86.2 | 10.3 | 3.4 | 13.8 | .0 | 100.0 |
| 40대 | 40대 | (352) | 30.1 | 51.1 | 81.3 | 12.8 | 4.8 | 17.6 | 1.1 | 100.0 |
| 50대 이상 | 50대 이상 | (186) | 37.3 | 45.4 | 82.7 | 11.9 | 4.9 | 16.8 | .5 | 100.0 |
| 직업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국회공무원 | (150) | 24.0 | 54.7 | 78.7 | 16.0 | 5.3 | 21.3 | .0 | 100.0 |
| 국회의원 | 국회의원 | (49) | 24.5 | 65.3 | 89.8 | 8.2 | 2.0 | 10.2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중앙직공무원 | (203) | 33.5 | 52.7 | 86.2 | 9.9 | 3.0 | 12.8 | 1.0 | 100.0 |
| 지방직공무원 | 지방직공무원 | (50) | 32.0 | 44.0 | 76.0 | 20.0 | 4.0 | 24.0 | .0 | 100.0 |
| 판사 | 판사 | (46) | 23.9 | 60.9 | 84.8 | 13.0 | .0 | 13.0 | 2.2 | 100.0 |
| 검사 | 검사 | (56) | 25.0 | 67.9 | 92.9 | 5.4 | 1.8 | 7.1 | .0 | 100.0 |
| 변호사 | 변호사 | (101) | 32.7 | 51.5 | 84.2 | 11.9 | 4.0 | 15.8 | .0 | 100.0 |
| 사법연수원생 | 사법연수원생 | (101) | 35.6 | 52.5 | 88.1 | 9.9 | 2.0 | 11.9 | .0 | 100.0 |
| 대학교수 | 대학교수 | (202) | 27.2 | 51.5 | 78.7 | 12.4 | 7.9 | 20.3 | 1.0 | 100.0 |
| 박사과정 | 박사과정 | (50) | 22.0 | 60.0 | 82.0 | 12.0 | 6.0 | 18.0 | .0 | 100.0 |
| 직업분류 | 직업분류 | | | | | | | | | |
| 입법 | 입법 | (199) | 24.1 | 57.3 | 81.4 | 14.1 | 4.5 | 18.6 | .0 | 100.0 |
| 행정 | 행정 | (253) | 33.2 | 51.0 | 84.2 | 11.9 | 3.2 | 15.0 | .8 | 100.0 |
| 사법 | 사법 | (304) | 30.9 | 58.3 | 87.2 | 10.2 | 2.3 | 12.5 | .3 | 100.0 |
| 학계 | 학계 | (252) | 26.2 | 53.2 | 79.4 | 12.3 | 7.5 | 19.8 | .8 | 100.0 |
| 근무연수 | 근무연수 | | | | | | | | | |
| 5년 미만 | 5년 미만 | (398) | 27.1 | 57.5 | 84.7 | 9.8 | 5.5 | 15.3 | .0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25.9 | 56.9 | 82.8 | 13.6 | 2.7 | 16.3 | .9 | 100.0 |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275) | 35.6 | 46.5 | 82.2 | 12.7 | 4.4 | 17.1 | .7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3) | .0 | 66.7 | 66.7 | 33.3 | .0 | 33.3 | .0 | 100.0 |
| 지역 | 지역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서울/경기/인천 | (773) | 27.7 | 54.1 | 81.8 | 13.2 | 4.7 | 17.9 | .4 | 100.0 |
| 부산/경남/울산 | 부산/경남/울산 | (55) | 21.8 | 67.3 | 89.1 | 7.3 | 1.8 | 9.1 | 1.8 | 100.0 |
| 경북/대구 | 경북/대구 | (23) | 26.1 | 69.6 | 95.7 | 4.3 | .0 | 4.3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대전/충북/충남 | (103) | 40.8 | 48.5 | 89.3 | 6.8 | 2.9 | 9.7 | 1.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전남/전북/광주 | (54) | 33.3 | 50.0 | 83.3 | 11.1 | 5.6 | 16.7 | .0 | 100.0 |
| 계 | 계 | | | | | | | | | |
| 하층 | 하층 | (175) | 28.0 | 53.7 | 81.7 | 13.7 | 4.0 | 17.7 | .6 | 100.0 |
| 중상 | 중상 | (499) | 31.3 | 54.1 | 85.4 | 11.2 | 3.2 | 14.4 | .2 | 100.0 |
| 상층 | 상층 | (329) | 26.4 | 55.9 | 82.4 | 10.9 | 5.8 | 16.7 | .9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5) | .0 | .0 | .0 | 80.0 | 20.0 | 100.0 | .0 | 100.0 |
| 이념성향 | 이념성향 | | | | | | | | | |
| 진보 | 진보 | (226) | 31.4 | 51.8 | 83.2 | 11.1 | 5.3 | 16.4 | .4 | 100.0 |
| 중도 | 중도 | (558) | 27.5 | 55.5 | 82.9 | 13.2 | 3.2 | 16.4 | .7 | 100.0 |
| 보수 | 보수 | (207) | 30.9 | 54.6 | 85.5 | 8.7 | 5.8 | 14.5 | .0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7) | 14.3 | 42.9 | 57.1 | 28.6 | 14.3 | 42.9 | .0 | 100.0 |

표26-3. 헌법개정-상대다수대표제



문)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전적으로 찬성하는 | | | 반대하는 | 전적으로 | | | |
| | | | 찬성한다 | 편이다 | | 편이다 |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체 | (1008) | 14.3 | 48.8 | 63.1 | 31.3 | 4.7 | 35.9 | 1.0 | 100.0 |
| 성별 | 성 | | | | | | | | | |
| 남자 | 남 | (818) | 15.0 | 46.8 | 61.9 | 31.9 | 5.4 | 37.3 | .9 | 100.0 |
| 여성 | 여 | (190) | 11.1 | 57.4 | 68.4 | 28.4 | 1.6 | 30.0 | 1.6 | 100.0 |
| 연령 | 연 | | | | | | | | | |
| 20대 | 20 | (122) | 13.1 | 52.5 | 65.6 | 30.3 | 2.5 | 32.8 | 1.6 | 100.0 |
| 30대 | 30 | (349) | 12.9 | 49.0 | 61.9 | 35.0 | 2.9 | 37.8 | .3 | 100.0 |
| 40대 | 40 | (352) | 15.6 | 48.3 | 63.9 | 29.8 | 4.8 | 34.7 | 1.4 | 100.0 |
| 50대 이상 | 50대 이상 | (186) | 15.1 | 47.0 | 62.2 | 27.6 | 9.2 | 36.8 | 1.1 | 100.0 |
| 직업 | 직 | | | | | | | | | |
| 국회공무원 | 국회공무원 | (150) | 18.7 | 57.3 | 76.0 | 21.3 | 1.3 | 22.7 | 1.3 | 100.0 |
| 국회의원 | 국회의원 | (49) | 4.1 | 53.1 | 57.1 | 40.8 | 2.0 | 42.9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중앙직공무원 | (203) | 11.3 | 55.7 | 67.0 | 28.6 | 3.0 | 31.5 | 1.5 | 100.0 |
| 지방직공무원 | 지방직공무원 | (50) | 10.0 | 62.0 | 72.0 | 24.0 | 4.0 | 28.0 | .0 | 100.0 |
| 판사 | 판사 | (46) | 10.9 | 41.3 | 52.2 | 39.1 | 4.3 | 43.5 | 4.3 | 100.0 |
| 검사 | 검사 | (56) | 8.9 | 44.6 | 53.6 | 44.6 | 1.8 | 46.4 | .0 | 100.0 |
| 변호사 | 변호사 | (101) | 12.9 | 42.6 | 55.4 | 37.6 | 6.9 | 44.6 | .0 | 100.0 |
| 사법연수원생 | 사법연수원생 | (101) | 21.8 | 43.6 | 65.3 | 29.7 | 5.0 | 34.7 | .0 | 100.0 |
| 대학교수 | 대학교수 | (202) | 16.3 | 42.1 | 58.4 | 30.7 | 9.4 | 40.1 | 1.5 | 100.0 |
| 박사과정 | 박사과정 | (50) | 16.0 | 40.0 | 56.0 | 40.0 | 4.0 | 44.0 | .0 | 100.0 |
| 직업분류별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입법 | 입법 | (199) | 15.1 | 56.3 | 71.4 | 26.1 | 1.5 | 27.6 | 1.0 | 100.0 |
| 행정 | 행정 | (253) | 11.1 | 56.9 | 68.0 | 27.7 | 3.2 | 30.8 | 1.2 | 100.0 |
| 사법 | 사법 | (304) | 14.8 | 43.1 | 57.9 | 36.5 | 4.9 | 41.4 | .7 | 100.0 |
| 학계 | 학계 | (252) | 16.3 | 41.7 | 57.9 | 32.5 | 8.3 | 40.9 | 1.2 | 100.0 |
| 근무연수별 | 근무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5년 미만 | (398) | 15.6 | 46.5 | 62.1 | 33.2 | 4.3 | 37.4 | .5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5년 이상-15년 미만 | (332) | 10.8 | 51.5 | 62.3 | 31.6 | 4.5 | 36.1 | 1.5 | 100.0 |
| 15년 이상 | 15년 이상 | (275) | 16.7 | 49.5 | 66.2 | 27.3 | 5.5 | 32.7 | 1.1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3) | .0 | .0 | .0 | 100.0 | .0 | 100.0 | .0 | 100.0 |
| 지역 | 지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서울/경기/인천 | (773) | 13.7 | 49.4 | 63.1 | 31.6 | 4.3 | 35.8 | 1.0 | 100.0 |
| 부산/경남/울산 | 부산/경남/울산 | (55) | 16.4 | 40.0 | 56.4 | 38.2 | 3.6 | 41.8 | 1.8 | 100.0 |
| 경북/대구 | 경북/대구 | (23) | 26.1 | 43.5 | 69.6 | 26.1 | 4.3 | 30.4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대전/충북/충남 | (103) | 16.5 | 49.5 | 66.0 | 26.2 | 6.8 | 33.0 | 1.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전남/전북/광주 | (54) | 11.1 | 50.0 | 61.1 | 31.5 | 7.4 | 38.9 | .0 | 100.0 |
| 계층 | 계 | | | | | | | | | |
| 하층 | 하 | (175) | 14.9 | 53.7 | 68.6 | 25.7 | 4.6 | 30.3 | 1.1 | 100.0 |
| 중상 | 중 | (499) | 12.8 | 49.1 | 61.9 | 33.1 | 4.0 | 37.1 | 1.0 | 100.0 |
| 상층 | 상 | (329) | 16.4 | 45.9 | 62.3 | 31.0 | 5.8 | 36.8 | .9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5) | .0 | 40.0 | 40.0 | 60.0 | .0 | 60.0 | .0 | 100.0 |
| 이념성향별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보 | 진 | (226) | 19.9 | 50.0 | 69.9 | 24.3 | 4.9 | 29.2 | .9 | 100.0 |
| 중도 | 중 | (558) | 12.9 | 50.4 | 63.2 | 32.7 | 3.2 | 35.9 | .9 | 100.0 |
| 보수 | 보 | (207) | 12.6 | 44.4 | 57.0 | 33.3 | 8.2 | 41.5 | 1.4 | 100.0 |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 (7) | .0 | 14.3 | 14.3 | 71.4 | 14.3 | 85.7 | .0 | 100.0 |

표26-4. 헌법개정-국무총리제

문)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전적으로 찬성하는 | | | 반대하는 | 전적으로 | | | |
| | | | 찬성한다 | 편이다 | | 편이다 |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 (1008) | 11.3 | 50.2 | 61.5 | 31.8 | 5.8 | 37.6 | .9 | 100.0 |
| 성별 | ■ | | | | | | | | | |
| 남자 | ■ | (818) | 13.0 | 49.3 | 62.2 | 30.8 | 6.4 | 37.2 | .6 | 100.0 |
| 여성 | ■ | (190) | 4.2 | 54.2 | 58.4 | 36.3 | 3.2 | 39.5 | 2.1 | 100.0 |
| 연령 | ■ | | | | | | | | | |
| 20대 | ■ | (122) | 9.0 | 45.1 | 54.1 | 40.2 | 5.7 | 45.9 | .0 | 100.0 |
| 30대 | ■ | (349) | 8.3 | 53.9 | 62.2 | 34.4 | 3.2 | 37.5 | .3 | 100.0 |
| 40대 | ■ | (352) | 11.9 | 52.8 | 64.8 | 26.7 | 6.5 | 33.2 | 2.0 | 100.0 |
| 50대 이상 | ■ | (186) | 17.3 | 41.6 | 58.9 | 31.4 | 9.2 | 40.5 | .5 | 100.0 |
| 직업 | ■ | | | | | | | | | |
| 국회공무원 | ■ | (150) | 10.0 | 54.7 | 64.7 | 32.7 | 1.3 | 34.0 | 1.3 | 100.0 |
| 국회의원 | ■ | (49) | 6.1 | 53.1 | 59.2 | 34.7 | 6.1 | 40.8 | .0 | 100.0 |
| 중앙직공무원 | ■ | (203) | 9.9 | 49.3 | 59.1 | 34.0 | 5.4 | 39.4 | 1.5 | 100.0 |
| 지방직공무원 | ■ | (50) | 10.0 | 54.0 | 64.0 | 32.0 | 4.0 | 36.0 | .0 | 100.0 |
| 판사 | ■ | (46) | 10.9 | 56.5 | 67.4 | 28.3 | .0 | 28.3 | 4.3 | 100.0 |
| 검사 | ■ | (56) | 14.3 | 50.0 | 64.3 | 32.1 | 3.6 | 35.7 | .0 | 100.0 |
| 변호사 | ■ | (101) | 12.9 | 50.5 | 63.4 | 31.7 | 5.0 | 36.6 | .0 | 100.0 |
| 사법연수원생 | ■ | (101) | 15.8 | 52.5 | 68.3 | 25.7 | 5.9 | 31.7 | .0 | 100.0 |
| 대학교수 | ■ | (202) | 12.4 | 45.5 | 57.9 | 29.2 | 11.9 | 41.1 | 1.0 | 100.0 |
| 박사과정 | ■ | (50) | 8.0 | 42.0 | 50.0 | 44.0 | 6.0 | 50.0 | .0 | 100.0 |
| 직업분류 | ■ | | | | | | | | | |
| 입법 | ■ | (199) | 9.0 | 54.3 | 63.3 | 33.2 | 2.5 | 35.7 | 1.0 | 100.0 |
| 행정 | ■ | (253) | 9.9 | 50.2 | 60.1 | 33.6 | 5.1 | 38.7 | 1.2 | 100.0 |
| 사법 | ■ | (304) | 13.8 | 52.0 | 65.8 | 29.3 | 4.3 | 33.6 | .7 | 100.0 |
| 학계 | ■ | (252) | 11.5 | 44.8 | 56.3 | 32.1 | 10.7 | 42.9 | .8 | 100.0 |
| 근무연수 | ■ | | | | | | | | | |
| 5년 미만 | ■ | (398) | 9.5 | 51.3 | 60.8 | 33.4 | 5.8 | 39.2 | .0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 | (332) | 10.8 | 48.8 | 59.6 | 34.0 | 4.8 | 38.9 | 1.5 | 100.0 |
| 15년 이상 | ■ | (275) | 14.5 | 49.8 | 64.4 | 27.3 | 6.9 | 34.2 | 1.5 | 100.0 |
| 모름/무응답 | ■ | (3) | .0 | 100.0 | 100.0 | .0 | .0 | .0 | .0 | 100.0 |
| 지역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 (773) | 9.7 | 51.6 | 61.3 | 31.8 | 6.0 | 37.8 | .9 | 100.0 |
| 부산/경남/울산 | ■ | (55) | 9.1 | 50.9 | 60.0 | 34.5 | 3.6 | 38.2 | 1.8 | 100.0 |
| 경북/대구 | ■ | (23) | 17.4 | 52.2 | 69.6 | 26.1 | 4.3 | 30.4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 | (103) | 19.4 | 45.6 | 65.0 | 27.2 | 6.8 | 34.0 | 1.0 | 100.0 |
| 전남/전북/광주 | ■ | (54) | 18.5 | 37.0 | 55.6 | 40.7 | 3.7 | 44.4 | .0 | 100.0 |
| 계 | ■ | | | | | | | | | |
| 하층 | ■ | (175) | 10.3 | 46.9 | 57.1 | 37.7 | 4.6 | 42.3 | .6 | 100.0 |
| 중상 | ■ | (499) | 11.8 | 52.9 | 64.7 | 30.1 | 4.2 | 34.3 | 1.0 | 100.0 |
| 상층 | ■ | (329) | 11.2 | 48.0 | 59.3 | 31.0 | 8.8 | 39.8 | .9 | 100.0 |
| 모름/무응답 | ■ | (5) | .0 | 40.0 | 40.0 | 60.0 | .0 | 60.0 | .0 | 100.0 |
| 이념성향 | ■ | | | | | | | | | |
| 진보 | ■ | (226) | 14.6 | 44.7 | 59.3 | 34.1 | 5.8 | 39.8 | .9 | 100.0 |
| 중도 | ■ | (568) | 11.1 | 51.9 | 63.0 | 31.7 | 4.4 | 36.1 | .9 | 100.0 |
| 보수 | ■ | (207) | 8.7 | 51.2 | 59.9 | 30.0 | 9.2 | 39.1 | 1.0 | 100.0 |
| 모름/무응답 | ■ | (7) | .0 | 57.1 | 57.1 | 28.6 | 14.3 | 42.9 | .0 | 100.0 |

표27-2. 헌법개정 우선순위(1+2순위)

문)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귀하는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사례수 | 4년중임제 | 절대다수 대표제 (결선 투표제) | 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양원제 | 기타 | 없다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1008) | 77.9 | 35.4 | 29.3 | 25.2 | 17.8 | 3.8 | 9.0 |
| 성별 | | | | | | | | | |
| 남자 | | (818) | 79.6 | 32.2 | 30.6 | 24.7 | 18.1 | 4.3 | 1.0 |
| 여자 | | (190) | 70.5 | 49.5 | 23.7 | 27.4 | 16.3 | 1.6 | 5.0 |
| 연령 | | | | | | | | | |
| 20대 | | (122) | 77.9 | 39.3 | 26.2 | 27.0 | 22.1 | 1.6 | 8.0 |
| 30대 | | (349) | 83.7 | 38.7 | 30.9 | 19.8 | 15.2 | 3.7 | 0.0 |
| 40대 | | (352) | 73.9 | 32.7 | 30.4 | 24.4 | 19.9 | 4.8 | 2.0 |
| 50대 이상 | | (185) | 74.6 | 31.9 | 25.9 | 35.7 | 15.7 | 3.2 | 5.0 |
| 직업 | | | | | | | | | |
| 국회공무원 | | (15) | 74.7 | 44.0 | 22.7 | 22.7 | 24.7 | 4.0 | 7.0 |
| 국회의원 | | (49) | 79.6 | 20.4 | 30.6 | 24.5 | 38.8 | 2.0 | 0.0 |
| 중앙직공무원 | | (203) | 78.8 | 35.5 | 29.6 | 25.6 | 17.7 | 1.5 | 0.0 |
| 지방직공무원 | | (50) | 74.0 | 32.0 | 28.0 | 34.0 | 26.0 | 0.0 | 0.0 |
| 판사 | | (46) | 80.4 | 28.3 | 30.4 | 23.9 | 8.7 | 2.2 | 22.0 |
| 검사 | | (56) | 89.3 | 39.3 | 41.1 | 16.1 | 7.1 | 0.0 | 0.0 |
| 변호사 | | (101) | 77.2 | 38.6 | 26.7 | 29.7 | 14.9 | 5.9 | 0.0 |
| 사법연수원생 | | (101) | 87.1 | 37.6 | 28.7 | 31.7 | 11.9 | 3.0 | 0.0 |
| 대학교수 | | (202) | 72.3 | 30.2 | 32.7 | 23.8 | 13.9 | 6.9 | 3.0 |
| 박사과정 | | (50) | 76.0 | 40.0 | 26.0 | 16.0 | 22.0 | 8.0 | 2.0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입법 | | (199) | 75.9 | 38.2 | 24.6 | 23.1 | 28.1 | 3.5 | 5.0 |
| 행정 | | (253) | 77.9 | 34.8 | 29.2 | 27.3 | 19.4 | 1.2 | 0.0 |
| 사법 | | (304) | 83.2 | 36.8 | 30.6 | 27.0 | 11.5 | 3.3 | 3.0 |
| 학계 | | (232) | 73.0 | 32.1 | 31.3 | 22.6 | 15.5 | 7.1 | 2.8 |
| 근우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 (398) | 80.2 | 38.9 | 29.1 | 23.6 | 16.6 | 3.3 | 8.0 |
| 5년 이상-15년 미만 | | (332) | 77.4 | 33.7 | 31.6 | 21.7 | 16.9 | 4.8 | 1.2 |
| 15년 이상 | | (275) | 75.3 | 32.7 | 25.5 | 31.3 | 20.7 | 3.3 | 7.0 |
| 모름/무응답 | | (3) | 66.7 | 0.0 | 33.3 | 66.7 | 0.0 | 0.0 | 0.0 |
| 지역별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773) | 77.0 | 36.7 | 29.5 | 24.2 | 18.6 | 3.8 | 8.0 |
| 부산/경남/울산 | | (55) | 70.9 | 29.1 | 27.3 | 23.6 | 23.6 | 10.9 | 1.8 |
| 경북/대구 | | (23) | 82.6 | 34.8 | 21.7 | 47.8 | 13.0 | 0.0 | 0.0 |
| 대전/충북/충남 | | (103) | 83.5 | 33.0 | 29.1 | 27.2 | 14.6 | 1.0 | 0.0 |
| 전남/전북/광주 | | (54) | 85.2 | 27.8 | 31.5 | 27.8 | 7.4 | 3.7 | 3.7 |
| 계 | | | | | | | | | |
| 총 | | (175) | 80.0 | 38.3 | 28.0 | 21.1 | 19.4 | 2.9 | 1.1 |
| 하 | | (49) | 80.2 | 34.3 | 28.9 | 27.1 | 17.8 | 2.8 | 1.0 |
| 상 | | (329) | 73.9 | 35.9 | 31.0 | 24.6 | 16.7 | 5.8 | 3.0 |
| 모름/무응답 | | (5) | 40.0 | 20.0 | 0.0 | 20.0 | 20.0 | 0.0 | 20.0 |
| 이념성향별 | | | | | | | | | |
| 진보 | | (226) | 76.5 | 36.7 | 30.1 | 27.9 | 16.4 | 4.9 | 9.0 |
| 중도 | | (59) | 77.6 | 35.6 | 29.4 | 24.3 | 18.7 | 3.9 | 5.0 |
| 보수 | | (207) | 80.7 | 34.3 | 29.0 | 24.2 | 16.9 | 1.4 | 1.9 |
| 모름/무응답 | | (7) | 57.1 | 14.3 | 0.0 | 42.9 | 14.3 | 28.6 | 0.0 |

(continued)

표27-2. 헌법개정 우선순위(1+2순위)

문)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귀하는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모름/ 무응답 | % |
|--------------------------|--------------|--------------------------|------|
| <input type="checkbox"/> | 전체 | <input type="checkbox"/> | .9 |
| <input type="checkbox"/> | 성남 | <input type="checkbox"/> | .7 |
| <input type="checkbox"/> | 여 | <input type="checkbox"/> | 1.6 |
| <input type="checkbox"/> | 연령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20대 | <input type="checkbox"/> | .8 |
| <input type="checkbox"/> | 30대 | <input type="checkbox"/> | .6 |
| <input type="checkbox"/> | 40대 | <input type="checkbox"/> | 1.1 |
| <input type="checkbox"/> | 50대 이상 | <input type="checkbox"/> | 1.1 |
| <input type="checkbox"/> | 직업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국회공무원 | <input type="checkbox"/> | .7 |
| <input type="checkbox"/> | 국회의원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중앙직공무원 | <input type="checkbox"/> | 1.0 |
| <input type="checkbox"/> | 지방직공무원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판사 | <input type="checkbox"/> | 2.2 |
| <input type="checkbox"/> | 검사 | <input type="checkbox"/> | 1.8 |
| <input type="checkbox"/> | 변호사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사법연수원생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대학교수 | <input type="checkbox"/> | 1.5 |
| <input type="checkbox"/> | 박사과정 | <input type="checkbox"/> | 2.0 |
| <input type="checkbox"/> | 직업분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인행 | <input type="checkbox"/> | .5 |
| <input type="checkbox"/> | 행정 | <input type="checkbox"/> | .8 |
| <input type="checkbox"/> | 사회 | <input type="checkbox"/> | .7 |
| <input type="checkbox"/> | 학계 | <input type="checkbox"/> | 1.6 |
| <input type="checkbox"/> | 근연수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5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 1.0 |
| <input type="checkbox"/> | 5년 이상~15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 1.2 |
| <input type="checkbox"/> | 1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 .4 |
| <input type="checkbox"/> | 모름/무응답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지역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서울/경기/인천 | <input type="checkbox"/> | 1.0 |
| <input type="checkbox"/> | 부산/경남/울산 | <input type="checkbox"/> | 1.8 |
| <input type="checkbox"/> | 경북/대구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대전/충북/충남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전남/전북/광주 | <input type="checkbox"/> | .0 |
| <input type="checkbox"/> | 계층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하층 | <input type="checkbox"/> | .6 |
| <input type="checkbox"/> | 중상 | <input type="checkbox"/> | .6 |
| <input type="checkbox"/> | 상층 | <input type="checkbox"/> | 1.2 |
| <input type="checkbox"/> | 모름/무응답 | <input type="checkbox"/> | 20.0 |
| <input type="checkbox"/> | 이념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진보 | <input type="checkbox"/> | .4 |
| <input type="checkbox"/> | 보수 | <input type="checkbox"/> | 1.1 |
| <input type="checkbox"/> | 보수 | <input type="checkbox"/> | 1.0 |
| <input type="checkbox"/> | 모름/무응답 | <input type="checkbox"/> | .0 |

표28. 국민참여재판제도

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느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 :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됨.

| | | 사례수 | ① 매우 효과적이다 | ② 효과적이다 | ①*② | ③ 효과적이지 않다 | ④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③*④ | 모름/무응답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 | (108) | 5.2 | 49.5 | 54.7 | 39.2 | 6.1 | 45.2 | .1 | 100.0 |
| 연령 | ■ | | | | | | | | | |
| 18-29 | ■ | (818) | 5.7 | 51.0 | 56.7 | 36.8 | 6.4 | 43.2 | .1 | 100.0 |
| 30-39 | ■ | (190) | 2.6 | 43.2 | 45.8 | 49.5 | 4.7 | 54.2 | .0 | 100.0 |
| 40-49 | ■ | (122) | 5.7 | 45.1 | 50.8 | 37.7 | 11.5 | 49.2 | .0 | 100.0 |
| 50대 이상 | ■ | (349) | 3.4 | 48.4 | 51.9 | 41.3 | 6.9 | 48.1 | .0 | 100.0 |
| 직업 | ■ | | | | | | | | | |
| 직업이 없음 | ■ | (332) | 6.0 | 52.0 | 58.0 | 37.2 | 4.8 | 42.0 | .0 | 100.0 |
| 직업이 있음 | ■ | (185) | 6.5 | 49.7 | 56.2 | 40.0 | 3.2 | 43.2 | .5 | 100.0 |
| 직업별 | ■ | | | | | | | | | |
| 주요직업이 없음 | ■ | (150) | 4.7 | 56.7 | 61.3 | 36.7 | 2.0 | 38.7 | .0 | 100.0 |
| 주요직업이 있음 | ■ | (49) | 2.0 | 55.1 | 57.1 | 40.8 | 2.0 | 42.9 | .0 | 100.0 |
| 직업이 없음 | ■ | (233) | 5.9 | 56.7 | 62.6 | 36.0 | 1.5 | 37.4 | .0 | 100.0 |
| 직업이 있음 | ■ | (50) | 4.0 | 62.0 | 76.0 | 24.0 | .0 | 24.0 | .0 | 100.0 |
| 직업이 없음 | ■ | (46) | 8.7 | 54.3 | 63.0 | 32.6 | 4.3 | 37.0 | .0 | 100.0 |
| 직업이 있음 | ■ | (56) | .0 | 16.1 | 16.1 | 60.7 | 23.2 | 83.9 | .0 | 100.0 |
| 직업이 없음 | ■ | (101) | 2.0 | 31.7 | 33.7 | 56.4 | 9.9 | 66.3 | .0 | 100.0 |
| 직업이 있음 | ■ | (101) | 11.9 | 43.6 | 55.4 | 34.7 | 9.9 | 44.6 | .0 | 100.0 |
| 직업이 없음 | ■ | (212) | 3.5 | 51.5 | 55.0 | 38.1 | 6.4 | 44.6 | .5 | 100.0 |
| 직업이 있음 | ■ | (50) | .0 | 54.0 | 54.0 | 34.0 | 12.0 | 46.0 | .0 | 100.0 |
| 행위 | ■ | | | | | | | | | |
| 행위 없음 | ■ | (199) | 4.0 | 56.3 | 60.3 | 37.7 | 2.0 | 39.7 | .0 | 100.0 |
| 행위 있음 | ■ | (233) | 7.5 | 57.7 | 65.2 | 33.6 | 1.2 | 34.8 | .0 | 100.0 |
| 행위 없음 | ■ | (304) | 5.9 | 36.2 | 42.1 | 46.4 | 11.5 | 57.9 | .0 | 100.0 |
| 행위 있음 | ■ | (22) | 2.8 | 52.0 | 54.8 | 37.3 | 7.5 | 44.8 | .4 | 100.0 |
| 연령 | ■ | | | | | | | | | |
| 5년 미만 | ■ | (388) | 4.5 | 47.2 | 51.8 | 41.7 | 6.5 | 48.2 | .0 | 100.0 |
| 5년 이상-15년 미만 | ■ | (332) | 4.2 | 49.7 | 53.9 | 38.0 | 7.8 | 45.8 | .3 | 100.0 |
| 15년 이상 | ■ | (275) | 7.3 | 53.1 | 60.4 | 36.7 | 2.9 | 39.6 | .0 | 100.0 |
| 모름/무응답 | ■ | (3) | .0 | .0 | .0 | 66.7 | 33.3 | 100.0 | .0 | 100.0 |
| 지역 | ■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 | (773) | 4.9 | 50.3 | 55.2 | 39.5 | 5.2 | 44.6 | .1 | 100.0 |
| 부산/경남/대구 | ■ | (55) | 1.8 | 49.1 | 50.9 | 41.8 | 7.3 | 49.1 | .0 | 100.0 |
| 전남/충북/충남 | ■ | (23) | .0 | 39.1 | 39.1 | 43.5 | 17.4 | 60.9 | .0 | 100.0 |
| 대전/충북/충남 | ■ | (103) | 9.7 | 51.5 | 61.2 | 33.0 | 5.8 | 38.8 | .0 | 100.0 |
| 전남/전북/경북 | ■ | (54) | 5.6 | 38.9 | 44.4 | 42.6 | 13.0 | 55.6 | .0 | 100.0 |
| 지역이 없음 | ■ | | | | | | | | | |
| 지역이 있음 | ■ | (175) | 9.7 | 49.1 | 58.9 | 37.7 | 3.4 | 41.1 | .0 | 100.0 |
| 지역이 없음 | ■ | (499) | 4.6 | 54.1 | 58.7 | 36.1 | 5.2 | 41.3 | .0 | 100.0 |
| 지역이 있음 | ■ | (329) | 3.3 | 43.2 | 46.5 | 44.4 | 8.8 | 53.2 | .3 | 100.0 |
| 지역이 없음 | ■ | (5) | 20.0 | 20.0 | 40.0 | 60.0 | .0 | 60.0 | .0 | 100.0 |
| 이성 | ■ | | | | | | | | | |
| 이성 없음 | ■ | (226) | 7.5 | 58.0 | 65.5 | 30.1 | 4.0 | 34.1 | .4 | 100.0 |
| 이성 있음 | ■ | (58) | 5.3 | 50.5 | 55.8 | 38.7 | 5.5 | 44.2 | .0 | 100.0 |
| 이성 없음 | ■ | (207) | 2.4 | 38.2 | 40.6 | 49.3 | 10.1 | 59.4 | .0 | 100.0 |
| 이성 있음 | ■ | (7) | .0 | 28.6 | 28.6 | 71.4 | .0 | 71.4 | .0 | 100.0 |

표28-1. 국민참여재판제도 보완점

문) (문28)에서 ‘효과적이지 않다(3,4번)’는 응답자만 그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사례수 | 배심원의 신뢰성 |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 |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 형사절차의 개선 | 검사의 항소권 남용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466) | 53.1 | 21.3 | 10.3 | 10.1 | 2.4 | 2.4 | 4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353) | 52.1 | 22.1 | 9.3 | 10.8 | 2.5 | 2.8 | 3 | |
| 여자 | (103) | 55.3 | 18.4 | 13.6 | 7.8 | 1.9 | 1.0 | 1.0 | |
| 연령 | | | | | | | | | |
| 20대 | (80) | 66.7 | 13.3 | 11.7 | 8.3 | .0 | .0 | .0 | |
| 30대 | (168) | 48.8 | 24.4 | 10.1 | 14.3 | .0 | 2.4 | .0 | |
| 40대 | (148) | 45.9 | 25.0 | 12.2 | 6.1 | 5.4 | 4.1 | 1.4 | |
| 50대 이상 | (80) | 65.0 | 13.8 | 6.3 | 10.0 | 3.8 | 1.3 | .0 | |
| 직업별 | | | | | | | | | |
| 국회공무원 | (58) | 51.7 | 24.1 | 15.5 | 3.4 | 1.7 | 1.7 | 1.7 | |
| 국회의원 | (21) | 57.1 | 19.0 | 14.3 | 9.5 | .0 | .0 | .0 | |
| 중앙직공무원 | (76) | 51.3 | 23.7 | 13.2 | 2.6 | 7.9 | .0 | 1.3 | |
| 지방직공무원 | (12) | 66.7 | 25.0 | 8.3 | .0 | .0 | .0 | .0 | |
| 판사 | (17) | 47.1 | .0 | .0 | 35.3 | 11.8 | 5.9 | .0 | |
| 검사 | (47) | 40.4 | 25.5 | .0 | 29.8 | .0 | 4.3 | .0 | |
| 변호사 | (67) | 50.7 | 23.9 | 7.5 | 11.9 | .0 | 6.0 | .0 | |
| 사법연수원생 | (45) | 62.2 | 15.6 | 8.9 | 13.3 | .0 | .0 | .0 | |
| 대학교수 | (90) | 54.4 | 21.1 | 13.3 | 5.6 | 2.2 | 3.3 | .0 | |
| 박사과정 | (23) | 65.2 | 17.4 | 13.0 | 4.3 | .0 | .0 | .0 | |
| 직업분류별 | | | | | | | | | |
| 일법 | (79) | 53.2 | 22.8 | 15.2 | 5.1 | 1.3 | 1.3 | 1.3 | |
| 행정 | (88) | 53.4 | 23.9 | 12.5 | 2.3 | 6.8 | .0 | 1.1 | |
| 사법 | (176) | 50.6 | 19.9 | 5.1 | 19.3 | 1.1 | 4.0 | .0 | |
| 학계 | (113) | 56.6 | 20.4 | 13.3 | 5.3 | 1.8 | 2.7 | .0 | |
| 근무연수별 | | | | | | | | | |
| 5년 미만 | (192) | 52.6 | 22.9 | 12.5 | 9.9 | .5 | 1.6 | .0 | |
| 5년 이상-15년 미만 | (192) | 49.3 | 22.4 | 8.6 | 13.2 | 2.6 | 3.3 | .7 | |
| 15년 이상 | (109) | 57.8 | 17.4 | 9.2 | 6.4 | 5.5 | 2.8 | .9 | |
| 모름/무응답 | (3) | 100.0 | .0 | .0 | .0 | .0 | .0 | .0 | |
| 지역별 | | | | | | | | | |
| 서울/경기/인천 | (345) | 52.5 | 20.9 | 11.6 | 10.4 | 2.3 | 1.7 | .6 | |
| 부산/경남/울산 | (27) | 44.4 | 29.6 | 7.4 | 7.4 | .0 | 11.1 | .0 | |
| 경북/대구 | (14) | 78.6 | 7.1 | 7.1 | 7.1 | .0 | .0 | .0 | |
| 대전/충북/충남 | (40) | 52.5 | 22.5 | 10.0 | 5.0 | 7.5 | 2.5 | .0 | |
| 전남/전북/광주 | (30) | 56.7 | 23.3 | .0 | 16.7 | .0 | 3.3 | .0 | |
| 계 | | | | | | | | | |
| 총합 | (72) | 48.6 | 27.8 | 9.7 | 8.3 | 4.2 | .0 | 1.4 | |
| 중간 | (206) | 53.9 | 20.4 | 10.2 | 9.2 | 1.9 | 3.9 | .5 | |
| 상층 | (175) | 53.1 | 20.0 | 10.9 | 12.0 | 2.3 | 1.7 | .0 | |
| 모름/무응답 | (3) | 100.0 | .0 | .0 | .0 | .0 | .0 | .0 | |
| 이별성향별 | | | | | | | | | |
| 진보 | (77) | 51.9 | 20.8 | 15.6 | 7.8 | .0 | 2.6 | 1.3 | |
| 중도 | (251) | 49.0 | 23.1 | 9.6 | 11.6 | 3.6 | 2.8 | .4 | |
| 보수 | (123) | 61.0 | 18.7 | 8.9 | 8.1 | 1.6 | 1.6 | .0 | |
| 모름/무응답 | (5) | 80.0 | .0 | .0 | 20.0 | .0 | .0 | .0 | |

(continued)

표28-1. 국민참여재판제도 보완점

문) (문28)에서 ‘효과적이지 않다(3,4번)’는 응답자만 그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계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전체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성남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여주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연령 | | |
| <input type="checkbox"/> | 20대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30대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40대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50대 이상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직업 | | |
| <input type="checkbox"/> | 국회의원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국회의원무원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중앙지방법원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지방법원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판사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변호사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사법연수원생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대학교수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박사과정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직업 | | |
| <input type="checkbox"/> | 인행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사행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학계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근무수 | | |
| <input type="checkbox"/> | 5년 미만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5년 이상~15년 미만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15년 이상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모름 / 무응답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지역 | | |
| <input type="checkbox"/> | 서울/경기/인천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부산/경남/울산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경북/대구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대전충북/충남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전남전북/광주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계 | | |
| <input type="checkbox"/> | 하계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중간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상계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모름 / 무응답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이념 | | |
| <input type="checkbox"/> | 진보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중도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보수 | 100.0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모름 / 무응답 | 100.0 | <input type="checkbox"/> |

<부록-3>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법전문가의 법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전문가들**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입법방향 및 법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이상윤 (02-3498-8772)

2009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

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김중주 / 서애리

실사연구원 박주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81

- 5-6 지역 :
- | | | | | | |
|--------|--------|--------|--------|--------|--------|
| 01) 서울 | 02) 부산 | 03) 대구 | 04) 인천 | 05) 광주 | 06) 대전 |
| 07) 울산 | 08) 경기 | | | | |
| 0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 | 15) 경남 | 16) 제주 | | | |

- 7-8 직업분류 :
- | | | | | |
|---------------------|----------|-------------|-------------|----------|
| 01) 국회 공무원 | 02) 국회의원 | 03) 중앙직 공무원 | 04) 지방직 공무원 | 05) 판사 |
| 06) 검사 | 07) 변호사 | 08) 사법연수원생 | 09) 대학교수 | 10) 박사과정 |
| 11) 기타(적을 것: _____) | | | | |

- 9 성별 :
- | | |
|-------|-------|
| 1) 남자 | 2) 여자 |
|-------|-------|

1.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고,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겉표지를 포함해 1~6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보기번호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내용을 적어주십시오.
4.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운 (02-3498-8772)
 - 한국갤럽 서애리 (02-3702-2115)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10-11 듭니까?

1. 공평하다
2. 민주적이다
3. 불공평하다
4. 권위적이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2) 귀하는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12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3)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
13 (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
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14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문4-1)로 갈 것**
2.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3.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문5)로 갈 것**
4.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문4-1)(문4)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1, 2번)’는 응답자만

15-16 그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3.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5.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

17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법전문가의 법생활

문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8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문7)로 갈 것**
2. 잘 지켜지는 편이다
3.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문6-1)로 갈 것**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문6-1)(문6)에서 ‘지켜지지 않는다(3,4번)’는 응답자만

19-20 그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킨다 **문8)로 갈 것**
2. 잘 지키는 편이다
3.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문7-1)로 갈 것**
4. 전혀 지키지 않는다

문7-1)(문7)에서 ‘지키지 않는다(3,4번)’는 응답자만

22-23 그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을 잘 몰라서
2.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7. 기타(적을 것 : _____)

문8) 귀하는 다음의 각 부문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
|--------|--------------|---------------|---------------|---------------|----|
| ㉠ 정치부문 | 1 | 2 | 3 | 4 | 24 |
| ㉡ 행정부문 | 1 | 2 | 3 | 4 | 25 |
| ㉢ 경제부문 | 1 | 2 | 3 | 4 | 26 |
| ㉣ 노사부문 | 1 | 2 | 3 | 4 | 27 |
| ㉤ 교육부문 | 1 | 2 | 3 | 4 | 28 |
| ㉥ 교통부문 | 1 | 2 | 3 | 4 | 29 |
| ㉦ 환경부문 | 1 | 2 | 3 | 4 | 30 |

문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31-32 | 2순위 | 33-34 |
|-----|-------|-----|-------|

1. 부정부패
2. 탈세
3. 부동산투기
4. 환경사범
5. 성폭력
6. 조직폭력
7. 마약사범
8. 도박
9. 강·절도
10. 음주운전
11. 아동대상범죄
12. 가정폭력
13.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5-36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11) 귀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37
1. 매우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한 편이다

3.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문12) 귀하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
38 (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자세히 읽는다
2. 대충 읽는다
3. 별로 읽지 않는다
4. 전혀 읽지 않는다

문13)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39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되고 있다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3. 별로 잘 못되고 있다
4. 전혀 못 되고 있다

문14) 귀하는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40-41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2.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3.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4.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 준법정신의 함양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15)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42-43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2.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3.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4.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 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44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17) 귀하는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45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한 편이다
3.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문18) 귀하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46-47 위하여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원제도
2. 입법예고제도
3. 공청회제도 및 청문회제도
4. 의사공개 원칙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19) 귀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48 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0) 귀하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행위를
49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
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21) 귀하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0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22) **이중국적(二重國籍)허용**과 관련하여 ‘세계적 고급인력
51 유치’와 ‘인권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중,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해외입양아,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 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23) 귀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뇌물제공
52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진술(Plea-Bargaining)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면책조건부진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문24) 53 귀하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항고제

영장 기각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25) 54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26) 다음 각 부문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구 분 | | | 전적으로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 | 반대하는 편이다 | 전적으로 반대한다 | |
|------------|---|------------------|-----------|----------|----------|-----------|----|
| 현 행 | → | 개 헌 | | | | | |
| ㉠ 대통령제 | → | 의원내각제 | 1 | 2 | 3 | 4 | 55 |
| ㉡ 5년단임제 | → | 4년중임제 | 1 | 2 | 3 | 4 | 56 |
| ㉢ 상대다수 대표제 | → | 절대다수 대표제 (결선투표제) | 1 | 2 | 3 | 4 | 57 |
| ㉣ 국무총리제 | → | 부통령제 | 1 | 2 | 3 | 4 | 58 |
| ㉤ 단원제 | → | 양원제 | 1 | 2 | 3 | 4 | 59 |

문27)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귀하는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60-61 | 2순위 | 62-63 |
|-----|-------|-----|-------|

1. 의원내각제
2. 4년중임제
3.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4. 부통령제
5. 양원제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28)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64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느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국민참여 재판제도 |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 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벌을 토의하 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됨. |
|----------------------|---|

- 1. 매우 효과적이다 **문29)로 갈 것**
- 2. 효과적인 편이다
- 3.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문28-1)로 갈 것**
-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문28-1)(문28)에서 ‘**효과적이지 않다(3,4번)**’는 응답자만

65-66 그럼,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검사의 항소권 남용
- 2. 배심원의 신뢰성
- 3. 형사절차의 개선
- 4.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
-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29)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7 귀하는 법관평가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
|--------------|---|
| 법관평가제 | 변호사들이 현직 법관을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2009년 1 월 첫 번째 법관평가가 시행되었음 |
|--------------|---|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문30) 2007년 한미 FTA 협상안 타결로 인한

68 대한민국 법률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전적으로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전적으로 반대한다

자료분류용 질문

D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69-70

만 _____ 세

DQ2) 귀하가 현재 직종에 종사한 연수는 올해로 어떻게 되십니까?

71-72

약 _____ 년

DQ3)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이라 할 때,

76-74

현재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보시고 1~10사이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 최하층 | | | 중간 | | | | 최상층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DQ4) 귀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75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
2. 진보
3. 중도
4. 보수
5. 매우 보수

후기록(응답자용)

※ 마지막으로 아래 응답자 후기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재해주신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
|----------------------------|---|
| 응답자 성명 | |
| 소속/직위 | |
| 응답자 연락처 | ()-()-() |
| 조 사 일 시 (반드시 적어 주세요) | 2009년 ___ 월 ___ 일 (오전/오후) ___ 시 ___ 분부터 ___ 분까지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후기록(면접원용)

※ 응답자 적을 필요 없음

| | | | |
|------------|-------|------|-------|
| 응답 신뢰도 | 1. 상 | 2. 중 | 3. 하 |
| 면접원 성명 | | ID | 76-80 |
| Supervisor | 검 증 원 | | |
| | 81-82 | | |

<부록-4> 정성조사 응답내용

1. 법에 대한 인상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법이 경직성 있는 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다는 생각</p> <p>▷ 전에는 입법발의 의원 수가 20명이었는데 지금 10명으로 대폭 낮춰졌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을 발의하는 게 쉬워지니까 발의건수는 대폭 늘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법은 고수해야 된다는 반면, 항상 개정되고 수정되고 바뀔 수 있다는 이중적 사고를 하지요.</p> |
| | 국 회 공무원 | <p>입법과정에 대한 아쉬움</p> <p>▷ 아직 선진국처럼 제도가 시스템화 되지 못해서 여야간이나 사회계층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할 때 몸싸움, 날치기 등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민주화가 거의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친근한 느낌</p> <p>▷ 궁금할 때 찾아보면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니까 도움이 되는 다소 친근한 느낌입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어렵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p> <p>▷ 일단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문구해석 하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구, 법조문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 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p> |
| 사 법 | 판 사 | <p>국민들에게는 어렵고 거리감, 해소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p> <p>▷ 국민들은 대체로 잘 모르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딱딱하고, 친근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문을 쉽게 풀어 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검 사 | <p>엄정하고 무사공평해야 한다</p> <p>▷ 법이란 것이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불법 또는 탈법시민에게는 다양한 민형사상 처벌을 통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정하고 무사공평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p> |
| | 변호사 | <p>사회적 규칙이자 룰(Rule)로서의 역할</p> <p>▷ 개인적으로는 게임의 룰이 아닌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p> <p>▷ 법하면 친숙하죠.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도구로서, 그리고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가 있어요. 일반인이 느낄 때 약간 딱딱하다든지 감정이 약간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법이라고 하면 일단 규범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법으로써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요.</p> |
| | 사 법 교 수 | <p>법은 시대속도에 맞추어야 하며, 명쾌해야 한다</p> <p>▷ 자체가 시장형성에 앞장서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같은 영역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쾌해야 됩니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은 법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속도전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명쾌한 룰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 전반의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

2. 악법에 대한 인식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현재는 악법이 존재하지 않음. 있더라도 개정 전까지는 지켜야</p> <p>▷악법이라는 게 정말 인권을 탄압하고 폭압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는 악법이 존재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사실상 현행법에는 악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악법은 없다고 봅니다.</p> <p>▷지금과 같은 시대는 개정도 쉽게 할 수 있고, 여론의 환기성이나 정치인들의 발 빠른 움직임, 얼마 전에 조두순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악법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는 있다고 치더라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p> |
| | 국 회 공무원 | <p>악법이라도 지켜야 하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해 줘야함</p> <p>▷악법이라는 게 저희도 근대국가의 단계를 넘어서 현대국가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악법이 있겠습니까? 시대상황에 맞게끔 빨리 빨리 법을 고쳐주고 개정해 줘야 되는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쟁점에 대해서는 쉽게 국회에서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악법이라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지요.</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악법의 존재는 피할 수 없으나 100% 악법은 없다고 생각</p> <p>▷악법의 정의가, 법이라는 것이 일단은 합의된 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렇기 때문에 100%의 악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고치기 전까지의 법에 대해서는 물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위헌사항이나 소급효가 있으니까</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p>까 구제가 되는 것인데 다른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위헌사항이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그 법을 적용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p> <p>▷그러므로 위헌심판이 나기 전까지 법은 악법인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위헌판단이라는 구제의 수단 전까지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악법도 따라야 하지만, 현실에 맞도록 빨리 개정가능해야 한다</p> <p>▷악법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고급법으로 적용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악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p> <p>▷현실에 안 맞아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적용 안에서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빨리 개정할 수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p> |
| 사 법 | 판 사 | <p>자기기준 안 맞으면 악법? 사회구성원의 의무 지켜야</p> <p>▷사회구성원이라면 법을 안 지켰을 때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는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최소한도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p> <p>▷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개인이 다들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악법이라고 해서 안 지켜버렸하면 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p> <p>▷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p> |
| | 검 사 | <p>합법적 절차 거쳐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p> <p>▷사회총의를 반영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키는 것이 시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변호사 | <p>악법도 법, 제도권 틀에는 지켜야 함</p> <p>▷악법도 법은 법인데 제도권 틀에 있어서는 지키는 것이 맞고, 단지 악법이라면 그것이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중국적으로 변해서 법다운 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뿐, 사실 악법도 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p>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p> <p>▷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상황이 있고, 또 악법일 때는 지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p> <p>▷그것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 전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가 간다든가 하면 악법이란,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서 악법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안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준수하면서 빨리 고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p> |
| | 사 법 교 수 | <p>현행법 자체는 지켜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p> <p>▷저는 악법은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 여론 등을 환기시켜서 법을 빨리 바꾸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순간만은 지켜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 |

3. 유전무죄에 대한 인식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p> <p>▷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입법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판결의 문제, 양형기준이라고 설정을 해놓았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데 어떤 판결은 더하고 덜하고, 그것을 들여다 보니까 변호사가 판사하고 어떻게 되더라 하는 식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국민적 정서가 깔리지 않겠느냐, 즉,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더 크지 않겠느냐 싶어요.</p> |
| | 국 회 공무원 | <p>일부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측면</p> <p>▷ 신문지상을 통해서 간혹 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비싼 수입료 내고 좋은 변호사 써서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사회 통념상 아직도 이 건 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사회가 부자에게 유리</p> <p>▷ (우리 사회는) 돈 있는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환경에 의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p> <p>▷ 저는 동의할 하는 쪽입니다. 우선은 태어나면서 90%는 만들어 진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의 생활을 사는데,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이 아닌 주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p> |
| 사 법 | 판 사 | <p>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p> <p>▷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법상으로 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있고 재벌총수</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p>나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변호사를 쓰고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괜히 형만 높아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p> |
| | 검 사 | <p>우리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표현 ▷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우리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봐요. 법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인정하기는 다소 불편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p> |
| | 변 호 사 | <p>존재하지만 적은 편이며, 줄어들고 있다 ▷ 유전무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임의 룰 자체는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서비스업이고, 돈 있는 사람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무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p>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소수 사례 존재,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 ▷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할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다수의 제대로 된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될 때 다루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p> |
| | 사 법 교 수 | <p>돈보다는 정보의 문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 ▷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기존 판결 등을 살펴보면 결국 가난한 자에게 정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돈의 문제라기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런 피해는 안 당하죠. 법에 대한 의식이 깨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4. 여성의 법률상 대우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남성우월 관행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성보호</p> <p>▷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남성우월적인 관행이 아직 있다고 보는데 입법적으로, 현행법상에 남존여비가 있느냐는 거꾸로 라고 보거든요.</p> <p>▷오히려 현행법에는, 법률상으로는 여성이 약자라고 해서 훨씬 더 형 집행 등,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가중처벌을 하는 현행법상에는 오히려 여성이 우월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누구를 상대한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일처리에 있어서는 남존여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현행법에서는 여성을 훨씬 더 보호하고 우대하는 법률적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p> |
| | 국 회 공무원 | <p>가부장적 문화의 잔존일 뿐 차별대우는 없음</p> <p>▷저희 법적으로 여성들을 차별대우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직 남존여비 기타 유교적 가족문화 등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남녀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p> <p>▷남녀 불평등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 당연히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여자분들이 비권력 집단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평등이 남녀 불평등으로 비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힘을 가진 집단이라면 불평등한 요소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합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 <p>남성위주의 법제도 존재, 그러나 좋아지고 있음</p> <p>▷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구청) | 깁니다.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리한 처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
| 사 법 | 판 사 | 법률상으로는 평등하나, 사회현실이 법을 따르지 못한 ▷ 헌법에 양성평등이 있고, 만약 그것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제도가 있으면 위헌법률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 자체는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법을 사회현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법에는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성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사회현실이 법을 못 따라가는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 검 사 | 법률적 대우는 동등, 전반적 분위기는 개선과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건,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근거하는 거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거든요. 법적인 불평등은 앞서 말했듯이 있어서도 안되고 현재 99% 없다고 봅니다. |
| | 변호사 | 여성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개선되는 과정 ▷ 여성분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급속도로 그런 부분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들보다 우월한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차별없음 ▷ 사회적으로는 남성우위이고, 가족 내에서는 여성우위이라고 봐요 |
| | 사 법 | 차별없음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교 수 | ▷ 법대도 여성이면 오히려 남성보다 뽑히기가 더 쉽게 되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

5.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90%이상의 국민들은 법을 잘 준수, 도덕적 성격의 법은 완화해야</p> <p>▷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 90%이상의 국민들은 병역이라든지, 납세의무, 안내면 가산세 붙고, 과태료 때리는 법률 집행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법을 잘 지키지요.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 잘 지킨다고 보거든요.</p> <p>▷ 도로교통법이나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이 있기 전에 도덕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법을 엄수해라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 기술적으로 여유 있게 방법이 있다면 풀어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p> |
| | 국 회 공무원 | <p>전반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편</p> <p>▷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정치 주도권 내지 정권투쟁 등의 현안이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안 지키지요.</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면 안 지키는 것 같고, 본인의 경우 자제하는 편</p> <p>▷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어길 마음이 있지 않나 안 들킨다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p> <p>▷ 저도 법을 어겼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해 잘 아니까 보통사람보다 일반 예방효과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 <p>대다수는 법 잘 지키는 편이나, 법적용에 대한 불만은 존재</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구청) | <p>▷ 본인 스스로는 교통법규 등 위반 경우 있음</p> <p>▷ 대다수는 잘 지키시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다른 때와 똑같이 부과 의무를 지웠는데도 이 사람은 크게 불법을 했고 나는 이만큼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똑같은 과태료를 받고 벌금을 내야 되느냐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p> <p>▷ 저 스스로는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저희한테는 그것이 큰 위반이지요.</p> |
| 사 법 | 판 사 | <p>선진국 대비 준법의식 낮은 편, 스스로는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p> <p>▷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만큼 확고하게 자리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해 보면 법률상으로 유리한 사람들은 법대로 해 달라고 하고, 법률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법이 전부냐고 합니다.</p> <p>▷ 위반한 사람들에게 대해 즉결재판을 할 때도 있고, 남한테 뭐라고 하다보면 제가 찢리는 게 많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말하자면 속도위반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는데 그때마다 반성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p> |
| | 검 사 | <p>준법정도 : 사회 전체적으로는 60%, 본인은 90%</p> <p>▷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 60%수준 정도로 생각합니다.</p> <p>▷ 저 개인적으로는 85-9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교통이나 그런 것들은 저 스스로 돌아볼 때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다 보면.</p> |
| | 변 호 사 | <p>법에 대한 인식 낮은 편, 본인도 지킬 수 있는 법만 지킴</p> <p>▷ 아직까지는 법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 준수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p> <p>▷ 지킬 수 있는 법만 지키고 있습니다.</p>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법 잘 안 지켜지고, 본인 스스로도 사소한 것은 어기는 편</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p>▷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많이 쓰면서도 규제가 들어가야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규제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법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률이 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p> <p>▷ 중요한 법은 지키지만 아침에 집을 나와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위반할 겁니다.</p> |
| | 사 법 교 수 | <p>준수 안되는 편,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에 기인</p> <p>▷ 지켜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단 승복을 하지 않아요. 일단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수이면 다수가 된 것을 존중하고 다시 소수가 되게 만들게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p> |

6. 시급되치 범죄유형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죄질이 나쁜 범죄에는 가중처벌 필요</p> <p>▷ 일반범죄가 있고, 죄질이 나쁜 범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잘 유지되는 국가로 평가를 받는데, 요즘에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들이 많습니다.</p> <p>▷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상당히 충격을 받거든요.</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국 회 공무원 | <p>아동폭력 및 성폭력</p> <p>▷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력, 성폭력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예컨대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자기 자식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격리시키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친권이 부모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폭행당하는 아동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p> <p>▷ 한 번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범죄나 부정부패범죄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자들, 특히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는 빨리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부정부패(뒷돈 거래 등)가 반감없이 받아들여져 문제</p> <p>▷ 뒷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껌값, 떡값으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p> <p>▷ 저희 같은 낮은 직책에서도 가능하고 별로 반감없이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뒷돈거래라든가 어두운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정부패 쪽이 빨리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
| 사 법 | 판 사 | <p>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정부패가 가장 문제</p> <p>▷ 사회에 범죄는 없을 수 없고 모든 범죄들이 다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라서 결국 선진국이나, 아니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p> <p>▷ 제 경험으로 볼 때 환경사범, 부동산투기나 탈세 등은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정부패가 있다 보면 환경사범이나 탈세, 부동산투기 등이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 | 검 사 |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부패가 문제 ▷ 가장 큰 것은 부패문제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 정당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상호불신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부정부패는 사회전체를 오염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과급효과가 크죠. |
| | 변 호 사 |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엄격한 대처 필요 ▷ 저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조금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폭력 관련된 문제인데,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모든 범죄가 다 문제 ▷ 사실 특별히 어떤 특정범죄를 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모든 범죄가 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아닌가요? |
| | 사 법 교 수 | 상습화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지책 요구됨 ▷ 제가 볼 때는 상습범이 될 수 있는 범죄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해악이 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옥 갔다가 교도소에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 조두순 같은 경우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실제 법집행에서 범죄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에서 괴리가 오면서 범죄를 더욱 더 자주 상습적으로 하게 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경우는 강력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7. 범죄피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법 교육 확대 및 교정시설 분류 차등화</p> <p>▷ 폭력을 줄이는데 있어서는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요인을 체벌한다든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범죄율을 낮추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 더 교정시설에 수용을 범죄자별로 차등했으면 좋겠습니다.</p> |
| | 국 회 공무원 | <p>정부의 사회보장장치 확대노력</p> <p>▷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과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의 전반적인 노력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p> <p>▷ 우선은 정부가 사회보장 장치를 선진국처럼 여러 가지 마련해서 잘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토록 교육 강화</p> <p>▷ 범죄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범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는다면 역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이성으로 본능을 조금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교육을 통한 접근</p> <p>▷ 일단 교육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걸 훑기만 있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지 못하고 크고 있습니다. 커서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작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p> |
| 사 법 | 판 사 | <p>준법의식 확립을 통한 공감대 형성</p> <p>▷ 준법의식이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이 왜 필요한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p> |
| | 검 사 | <p>자발적인 준법의식과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조성</p> <p>▷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과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p> |
| | 변 호 사 | <p>현실에 맞는 법 정비와 공정한 법집행</p> <p>▷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지킬 수 있는 법, 현실에 맞는 법을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법집행, 이 두 가지만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지켜버리는 것들, 그리고 유전무죄랄지... 공정한 법집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폭력적 표현물 규제</p> <p>▷아까 말씀하신 폭력, 성범죄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폭력을 가볍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을 더 엄하게 규제함으로써 폭력적인 표현물을 규제하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p> |
| | 사 법 교 수 | <p>빈부격차 해소와 평준화된 개발</p> <p>▷가장 시급한 문제는 빈부격차를 빨리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범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포악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손가정이 생긴다면 2세들이 또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높고,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라도 사회적으로 평준화되게 개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 |

8. 법교육 중점부문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p>추상적 법 개념이 아닌 기초질서 교육</p> <p>▷저희가 법 교육, 법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해를 못하고, 법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요.</p> <p>▷제가 볼 때는 유치원에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기초질서 등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p> |
| | 국 회 공무원 | <p>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험적 교육</p> <p>▷초·중·고에서 교사들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지요.</p> <p>▷정확히 모르긴 한데, 생활 체험적으로 법을 준수하게끔 적합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입시 위주</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법률행위 개념에 대한 이해 ▷저도 법 교육, 준법의식 이런 것은 도덕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법 교육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이 되는 법률행위 개념이랄까 계약의 성립, 기초적인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 교육 및 홍보창구 개설 ▷내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알려준다면 시행착오 같은 측면은 일상생활에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된 공개적인 법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법 사용 능력의 향상 ▷결국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잘만 활용하면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의 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 | 검 사 |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부터 확실하게 교육하는 게 좋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지금은 피상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구요. |
| | 변호사 |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준법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사법제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사법의 잘못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어릴 때부터의 질서교육 ▷ 초등학교부터 법이란 게 무엇이고,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가를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 | 사 법 교 수 | 학부모가 참여하는 법 교육 ▷ 법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어린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질서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부형들이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법교육을 실시한다면 부모도 참여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9.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교화 및 체험 프로그램 ▷ 제가 볼 때는 또래집단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담당관을 학교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100%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 왕따 체험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교화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하지, 사회적인 외부장치로 강제해서 경찰관이나 특별하게 요즘에는 돌봄이 부모를 맞게 배치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국 회 | 교사들의 관심과 그에 대한 평가부여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공무원 | <p>▷ 쉽게 생각하면 교사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의 형태 등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왕따현상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하는 교사들한테 근평 점수를 높게 주고, 만약 왕따의 현상을 교사가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주든지, 제재조치를 가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p>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p>소수자 인권 및 다름에 대한 포용교육 ▷ 그것을 없애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이러한 느낌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향, 조금만 다르면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름에 대한 포용교육 정도입니다.</p>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교사와 선배들의 멘티-멘토 역할 ▷ 예전에는 정말 약자 쪽에서 왕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멘티-멘토 역할을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해 주면서 소규모 그룹의 미팅 등을 자주 한다면 왕따 되는 사람이 눈에 쉽게 띄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초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p> |
| 사 법 | 판 사 | <p>학교, 교사들의 책임감 ▷ 문제해결하려면 일단 사실인정, 그러니까 먼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단 파악이라도 하고, 그래서 대상학생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게 문제되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대해서 손해 배상책임을 명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가장</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나 학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검 사 | 경각심 등 규제와 예방교육 병행 ▷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조화겠지요. 규제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신체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거든요. 예방교육도 걸치레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실시해야 할거구요. |
| | 변호사 | 배려와 관용을 위한 교육 ▷ 기본적으로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등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관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학생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배려를 안 하는 것, 그것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강인한 인성 교육 ▷ 학생들의 왕따라는 게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 예절,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여기에 더 구체적인 것은 학생들 개개인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심약성이 굉장히 많아서 왕따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하는, 강인한 인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 | 사 법 교 수 | 획일주의 탈피를 위한 교육 강화 ▷ 결국은 사회적 획일주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군중심리에서, 획일주의에서 동등한 심리를 공유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다르지 저게 못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게끔 어릴 때부터 미리 교육을 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헌법개정(대통령제→의원내각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시기상조로 반대 ▷저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반대의견 ▷저도 반대입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반대의견 ▷저도 반대입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반대의견 ▷저도 반대입니다. |
| 사 법 | 판 사 | 반대의견 ▷저도 반대 한 표 추가합니다. |
| | 검 사 | 반대의견 ▷저도 반대입니다. |
| | 변호사 | 반대의견 ▷ 반대합니다. 대통령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통치행위의 문제이지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 반대입니다. 저는 의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데요. |
| | 사 법 교 수 | 반대의견 ▷ 반대입니다. |

11. 헌법개정(5년단임제→4년중임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임기의 격차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 하신 대통령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와 여당간 협력관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4년 중임제라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4년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찬성의견 ▷ 저도 찬성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찬성의견 ▷ 저도 찬성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찬성의견 ▷ 저도 그렇습니다.(찬성) |
| | 검 사 | 찬성의견 ▷ 저도 찬성하죠 |
| | 변호사 | 찬성의견 ▷ 단임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은 4년 중임제라고 하면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찬성의견 ▷ 찬성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반대의견 ▷ 5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하니까 그나마 최선을 다하지, 4년 중임제를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5년 단임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썸에도 불구하고 견제가 되는 것이지, 중임제를 시행할 경우 어떤 보안장치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2. 헌법개정(상대다수대표제→절대다수대표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반대의견(너무 복잡함) ▷ 1등 한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더 낫지요. 결선투표제는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현행유지 ▷ 현재처럼이 좋습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찬성의견 ▷ 저는 찬성입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반대의견 ▷ 저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반대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찬성의견 ▷ 저도 이론은 찬성인데 다만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검 사 | 반대의견(비용의 문제) ▷ 저는 반대하는데요. 투입되는 자원의 측면을 무시하기 곤란하거든요. |
| | 변호사 | 찬성의견 ▷ 예, 찬성합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거운동 등을 봤을 때 반대입니다.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반대합니다. |
| | 사 법 교 수 | 반대의견 ▷ 저도 현행 그대로, 반대입니다. |

13. 헌법개정(국무총리제→부통령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반대의견(대통령에 더욱 큰 부담 줄 수 있어) ▷정부 대통령제를 하면 부통령은 사실 부가 되고, 오히려 모든 부담이 대통령께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걸러주는 총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반대의견(현행 유지가 좋을 듯) ▷저도 4년 중임제 정도로 하고 현재의 국무총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찬성의견 ▷찬성합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판단보류 ▷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
| 사 법 | 판 사 | 찬성의견 ▷찬성합니다. |
| | 검 사 | 반대의견(현행제도 문제없어) ▷지금의 제도가 문제가 크지 않은데, 굳이 이것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
| | 변호사 | 찬성의견 ▷예, 부통령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반대입니다. 저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찬성의견 ▷5년 단임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통령제를 찬성합니다. |

14. 헌법개정(단원제→양원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반대의견(준비 미비 및 불협화음 우려) ▷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 하기에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놓는다면 지금보다 더 문제점들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상임위 간, 법사위와 일반 상임위, 예결위와 일반 상임위 간에도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
| | 국 회 공무원 | 반대의견(시기상조) ▷ 저도 시기상조다, 통일되면 그때 가서 만드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반대의견 ▷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 | 지방정부 공무원 | 판단보류 ▷ 잘 모르겠습니다. |
| 사 법 | 판 사 | 반대의견(인원 추가 거부감) ▷ 저는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인원수를 조정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인원에 다 그만한 인원을 또 하는 것은 문제지만... |
| | 검 사 | 반대의견 ▷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
| | 변호사 | 반대의견 ▷ 반대의견입니다. 국회기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상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도 좀 안 좋거든요. 뭔가 옥상옥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국회의원 추가 반대) ▷ 양원제가 장점이 많은데 양원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반대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반대의견(국회의원 추가 반대) ▷ 지금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15. 헌법개정 우선순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영토조항 및 경계관련 사항 ▷ 우리나라 영토조항 같은 것과 경제에 관련된 조항들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지자체 관련 항목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현재 여러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고려 외 사항 ▷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고려 외 사항 ▷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 사 법 | 판 사 | 고려 외 사항 ▷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 | 검 사 | 고려 외 사항 ▷ 저도 통과하죠 |
| | 변호사 | 영토조항 ▷ 떠오르는 것은 영토문제인데요. 북한과의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이중배당청구조항 등 기본권 관련 조항 ▷ 기본권 분야 29조 2항 이중배당청구조항 같은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 | 사 법 교 수 | 환경 관련 의무조항 신설 ▷ 환경 관련해서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조항으로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선언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6. 사이버모욕죄 신설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기존의 법으로 처벌 가능 ▷ 어느 법으로 하든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불필요함 ▷ 저도 반대입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원칙적 찬성 ▷ 저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구성요건에 차이 있으므로 필요함 ▷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요새 새로 나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 | 검 사 | 인터넷 악플문제 방지 제도로 필요 ▷ 인터넷 악플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생명을 앗아갈 정도니까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
| | 변호사 |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통제 ▷ 큰 틀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일정한 통제를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 저는 반대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별 차이없는 법률 양산은 불필요 ▷ 저도 반대입니다.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법만 달리 해서, 여론에 따라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7. 안락사 허용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인명은 재천이므로 반대 ▷ 인명은 재천이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살아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사회적 비용 고려하면 찬성 ▷ 찬성합니다. 몸이 많이 아픈 한 분의 시한을 연장하는데 드는 사회적 코스트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로 낭비되는 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본인 승낙있을 경우 찬성 ▷ 본인의 승낙 혹은 강력한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도 그런 요건 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사 법 | 판 사 | 찬성의견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찬성)입니다. |
| | 검 사 |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논의가 더 필요 ▷품위 있는 죽음 및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 | 변호사 | 자기 삶에 대한 선택존중 차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요. 자기 삶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존엄사는 허용, 안락사는 반대 ▷지금 상황에서는 존엄사는 허용해야 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사 법 교 수 | 당사자 입장이 가장 중요 ▷저는 허용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당사자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18. 면책조건부진술제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사법정의를 반하는 것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지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죄값을 감해준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판단보류 ▷저는 비전문가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장점이 많음 ▷장점은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실 유죄인데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면 본인도 어색할 부분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는 느낌. |
| | 지방정부 공무원 | 이미 기존의 관행이라는 생각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지 이미 이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
| | 판 사 |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방지방안이 마련 후에 도입해야 ▷남용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할까. 법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몇몇 사건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건은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사 법 | 검 사 | 응답 보류 ▷검사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 | 변호사 | 우리나라와 환경 달라 ▷적극 반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쉽게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 반대입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형벌의 본질 위배 ▷저는 반대입니다. 면책조건으로 진술함으로써 형량을 깎는다는 것은 형벌의 본질상 자기가 금지된 행위를 행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필요하므로 찬성 ▷찬성하는 입장인데, 결국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증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컨대 공범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붙어야만 나머지 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 면책조건부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밝히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술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19. 영장항고제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찬성 ▷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기소독점주의 같이 독점권력에 의해서 자꾸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장치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영장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찬성의견 ▷ 저도 (보좌관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판단보류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판단보류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 사 법 | 판 사 | 원칙적 찬성 ▷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도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재청구하면 일반적으로는 관행으로 기각해 주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는 것만이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검 사 | 응답보류 ▷ 저는 민감한 얘기라서 응답을 보류합니다. |
| | 변호사 | 원칙적 찬성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 영장항고제도는 굳이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위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영장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사 법 | 반대의견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교 수 | ▷ 사실 검찰이 너무 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항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 국민참여재판제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전국 확산은 반대 ▷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반대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찬성의견 ▷ 찬성입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귀속력에 제한두면 찬성 ▷ 귀속력이 없는 조건하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유무죄의 판단을 전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정도. |
| | 지방정부 공무원 | 배심원 선정에 대한 의혹 우려 ▷ 무작위로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면을 통해서 아는 사람으로 인원수를 채우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관심이 낮은 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 제도 ▷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은 재판권이 하나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관점을 바꾸어서 재판이 굉장히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의무이고 국민들이 같이 부담을 나누어 갖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민들이 책임감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검 사 | 국민관심의 고조 효과 ▷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다소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 | 변호사 | 비효율적 제도 ▷ 저는 판사님과 똑같은 생각(비효율적)입니다.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비용 및 영향력 고려할 때 반대 ▷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문제입니다. ▷ 우리처럼 좁은 사회에서 굉장히 제한이 있고, 물론 판사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사 법 교 수 |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 ▷ 참여했던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심판을 받는 입장인데 본인이 심판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판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재판하는 과정을 알게 되어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1.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소통의 활성화 줄더라도 찬성 ▷ 실명을 꺼려하는 뒤에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하고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주장을 해서 상대방한테 용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내 할 말만 하고 끝내겠다는 심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인터넷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의 빈도수나 소통의 활성화는 줄더라도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실명제 찬성의견 ▷ 저도 보좌관님과 동일한 이유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 컴퓨터를 켜는 순간 실명이 확인되는 것에는 반대이지만, 어떤 홈페이지나 사이트 성격에 따라서 익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구분지어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p>일반적 차원에서는 실명제 불필요, 신상노출 등 부작용 우려</p> <p>▷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실명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실명을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는 (신상 노출 등의)문제는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
| 사 법 | 판 사 | <p>자기행동에 대한 책임 차원</p> <p>▷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자기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는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p> |
| | 검 사 | <p>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p> <p>▷찬성하죠.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p> |
| | 변호사 | <p>부분적 적용에는 찬성</p> <p>▷큰 틀에서는 실명제에 반대를 하고요.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을 해야 할 곳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p> |
| 학 계 | 공 법 교 수 | <p>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p> <p>▷반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면 실명제를 할 필요없고, 또 그에 대한 폐단은 우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없애야지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p> |
| | 사 법 교 수 | <p>굳이 할 필요 없음</p> <p>▷저도 반대입니다. 동일한 이유(굳이 할 필요 없다)입니다.</p> |

22. 이중국적 허용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국적선택 권한은 허용해야 ▷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미성년에 허용하되 성인이후에는 단일국적 선택하도록 ▷ 허용하되, 만19세에 군복무 문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법무부) | 판단보류 ▷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못하겠습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구청) |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주고 나중에 선택을 하게끔 유도 ▷ 국내인이나 외국인 똑같이 법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이중국적을 가져도 일정기간(6개월)을 주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끔, 내가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면 그쪽으로 가는 기회는 주어야 되겠지요. |
| 사 법 | 판 사 | 선택권 부여하면 문제 해결 ▷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엄격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지, 선택권만 준다고 하면 이중국적을 구태여 허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검 사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
| | 변호사 | 이미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 찬성의견 ▷ 이중국적이나 복수국적 등을 허용하고,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허용 쪽의 입장입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반대의견 ▷ 저는 이중국적은 반대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찬성의견 ▷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다루어지는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표현은 이중국적이 아니고 복수국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3. 군가산점제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국가차원의 제도화에는 반대 ▷ 반대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에 의해서 병역의무가 남성에게 국한됐다고 보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요.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일반기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 | 국 회 공무원 | 국가에 봉사한 사람에게 혜택주는 것은 긍정적 ▷ 군 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고쳐서 근거조항을 두든지...젊은 기간 동안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기회를 놓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한테 그 정도 혜택은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수위조절하면 찬성 ▷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론을 잘 수렴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절을 해서 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혜택에는 동의하나 호봉제와 중복되는 측면 ▷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봉호봉제까지 합산해주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받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사 법 | 판 사 | 쉬운 가산점제 외의 방안 모색이 필요 ▷ 의무를 이행한 것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가산점 제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라 군대 다녀온 사람이 보람과 명예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 | 검 사 | 원칙적 찬성(의무에 대한 보상) ▷ 원칙적인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
| | 변호사 | 원칙적 찬성(의무에 대한 보상) ▷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한 배려의 문제니까 정도의 문제이지 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현행헌법상 위헌이므로 무의미 ▷ 군 가산점제도 자체가 현행 헌법으로는 용인이 안 됩니다. ▷ 개인적, 감정적으로는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제도상으로 안 됩니다. 만약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지 않는 한 현재에 가면 다시 위헌판결 납니다. |
| | 사 법 교 수 | 다른 형태의 혜택 부여하도록 ▷ 지금 위헌인데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산점 외에 군대에 가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컨대 토익시험을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한 기준에 맞춰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4. 법관평가제도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찬성의견 ▷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 | 국 회 공무원 | 찬성의견 ▷ 찬성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강의 평가제도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p>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행 그대로 있는 것보다 한 번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뀌가는 것이지요.</p> |
| 행 정 | <p>중앙정부 공무원</p> | <p>찬성의견 ▷ 법관의 독립이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적 독립은 판결을 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금지하는 것이고, 인적 독립은 판사의 신분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직 법관평가 제도는 둘 다에 별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리는 만무할 것 같고, 자체 징계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면 법관 독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p> |
| | <p>지방정부 공무원</p> | <p>반대의견 ▷ 저희 조직에서 보면 다면평가라는 게 같은 성향, 성분에 있는 분들하고 상위조직 간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있는 쪽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같은 조직 내에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더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p> |
| <p>사 법</p> | <p>판 사</p> | <p>판사도 서비스업, 필요하지만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 대부분의 판사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판사도 서비스업이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받는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평가받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단 이상하고 엉뚱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말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된 전제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공급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변해가야 되는 것은 법조계 전체가 함께 변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 검 사 | 경쟁과 평가 측면에서 찬성 ▷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경쟁과 평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
| | 변호사 | 서로의 시각 공유차원에서 적극 찬성 ▷ 적극 찬성입니다. ▷ 서로의 시각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이는, 예를 들어서 같은 상대방이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 어떻게 시행할지의 문제가 있지,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참고자료로만 유효해야 ▷ 지금 같은 시스템은 반대이고, 하나의 단순 참고 자료 등을 위해서 판사들 자신의 직무태도 등을 바꾸는 것에 활용해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 | 사 법 교 수 | 이익단체인 변호사가 평가주체여서는 곤란 ▷ 법관평가제는 필요한데, 그것을 변호사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 선정이 된 사람이라든가, 여론단체는 몰라도, 당장 변호사들은 이익단체거든요. |

25. 법률시장개방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입 법 | 보좌관 | 시장에서의 서비스개방은 필요 ▷ 시장인데 서비스는 열어놓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
| | 국 회 공무원 | 건전한 경쟁 기대 ▷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고, 미국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행 정 | 중앙정부 공무원 | 찬성하되 단계 설정에 유의해야 ▷ 독일 같은 경우 개방을 했는데 영국 로펌에 다 합병이 되어서 토종 로펌 하나가 남았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단계를 잘 설정해서 외국 로펌의 자본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잠식당하는 문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 | 지방정부 공무원 | 실력배양을 통해 기회증가 ▷ 외국 회사에 잠식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실력을 쌓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기회가 더 많아지는 쪽으로 응원을 하는 쪽이지요. |
| 사 법 | 판 사 | 대세라면 능동적 대처 필요 ▷ 개방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왕 대세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 | 검 사 | 경쟁 통한 더 나은 서비스 가능 ▷ 저도 찬성하는데, 국내외 법무법인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거든요. |
| | 변호사 | 불가피한 개방이므로 범위와 방식에 주목해야 ▷ 결국은 개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지 문제는 개방의 범위라든지,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
| 학 계 | 공 법 교 수 | 시너지 효과 기대 ▷ 저는 당연히 관여를 했으니까 찬성입니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국내시장의 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재미교포들이 활동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너지 |

부 록

| 분 류 | 구 분 | 주요 응답내용 |
|-----|---------|---|
| | |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세계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 사 법 교 수 | 기회와 가능성 증가 ▷우리도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